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Insurance Guide Book**

**대한정형외과학회
보험청구 지침서**



대한정형외과학회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대한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장 이한준입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수시로 변화하는 진료 환경 속에서 회원 여러분께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정확한 보험청구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대한정형외과학회 보험청구 지침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는 각 분과학회의 다양한 경험을 집약하여 제작된 통합 지침서로, 정형외과학의 전문성과 학문적 성과가 실무적 가치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보험제도의 세부 기준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청구 과정의 혼선과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은 진료 현장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지침서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회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정형외과 진료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지침서 발간은 단순한 자료 편찬을 넘어, 우리 학회가 진료의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보험제도 정착이라는 학술적·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침서 제작에 참여해 주신 TF 위원님들과 각 분과학회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지침서가 향후 정형외과 진료 환경의 발전과 회원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장
이한준 드림

대한정형외과학회

「보험청구 지침서」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대한정형외과학회	이한준	중앙의대	보험위원회 위원장
편집간사	대한정형외과학회	김성훈	일산병원	보험위원회 간사
편집위원	대한건·주관절의학회	김용태	한림의대	보험위원회 위원
	대한고관절학회	변성은	차의과대	보험위원회 간사
		이환희	가톨릭의대	보험위원회 부간사
	대한골절학회	손휘승	영남의대	보험위원회 부간사
		박영창	연세의대	상대가치위원회 위원
	대한관절경학회	정규성	한양의대	보험위원회 간사
		박종훈	가톨릭의대	보험위원회 위원
	대한근골격증양학회	조상현	원자력병원	보험위원회 위원
		김성민	전남의대	보험위원회 위원
		김갑중	울지의대	회장, 보험위원회 위원장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박경현	연세의대	보험위원회 위원
		성기혁	서울의대	학술위원회 위원
	대한수부외과학회	김주학	명지병원	보험위원회 위원장
		강홍제	원광의대	보험위원회 간사
	대한슬관절학회	김희준	경북의대	보험위원회 위원
		이오성	울지의대	보험위원회 위원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	김정우	원광의대	보험위원회 위원장	
대한족부족관절학회	김대유	인제의대	보험위원회 간사	
	김종길	예수병원	보험위원회 간사	
대한척추외과학회	선승덕	선정형외과	보험위원회 위원	
	이한동	아주의대	보험위원회 총무	

Contents

Part 1 견주관절

I. 견주관절 분야 추가목록표	10
II. 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11
III. 주관절 수술	16

Part 2 고관절

I. 고관절 분야 추가목록표	20
II. 고관절치환술	21
III. 치환술 외 추가 술기	24

Part 3 골절

I. 외상 분야 추가목록표	28
II. 골절 수술	37
III. 골절 연관 합병증 수술	46
IV. 외상 분야 처치재료 청구사항	49
V. 외상 분야 신의료기술 신청 항목 중 심사기준 운용 항목	57

Part 4 관절경

견관절

I. 견관절 분야 관절경 수술 추가목록표	60
II. 회전근개 봉합술	61
III. 견관절 불안정증 및 관절와순 수술	65
IV. 석회화건염	66

수부

I. 수부 분야 추가목록표	67
II. 연골성형술	67
III. 기타관절경수술	68

고관절

I. 고관절 분야 추가목록표	69
II. 고관절 관절경술	69

슬관절

I. 관절경: 슬관절 분야 추가목록표	72
II. 반월상연골(Meniscus)	73
III. 인대(Ligament)	75
IV. 연골(cartilage)	77
V. 슬개대퇴(Patellofemoral)	79
VI. 기타수술	80
VII. 수술관련재료	82

족부족관절

I. 족부족관절 분야 추가목록표	85
II. 족부족관절 관절경 수술	85
III. 관절경 수술 산정 사례	90
IV. 수술관련 재료	91

척추

I. 관절경: 척추 분야 추가목록표	92
II. 척추 내시경 수술	92

Part 5 근골격종양

I. 양성 연부 조직 종양의 수술 청구	96
II. 악성 연부 조직 종양의 수술 청구	96
III. 양성 골 종양의 수술 청구	97
IV. 악성 골 종양의 수술 청구	97
V. 골전이에 의한 병적 골절 또는 병적 압박 골절의 수술 청구	99

Part 6 수부

I. 관절경검사	102
II. 기본처치	102
III. 피부 및 연부조직	107
IV. 근골격	118
V. 치료재료	146

Part 7 슬관절

I. 슬관절 분야 추가목록표	162
II. 절골술, 인공관절 수술	163
III. 주요검사	171

Part 8 족부

I. 족부족관절 분야 추가목록표	178
II. Great toe	190
III. Lesser toe	192
IV. 신경 질환	196
V. 신경근육성 장애	198
VI. 편평족	202
VII. 요족	203
VIII. 아킬레스건염	205
IX. 아킬레스건 파열	206
X. 족저근막염	207
XI. 장무지굴곡건질환	208
XII. 후경골건 기능장애	210
XIII. 비골건질환	211
XIV. 신전건 질환	214
XV. 당뇨발	215
XVI. 절단술	218
XVII. 관절염	219
XVIII. 스포츠 손상	224
XIX. 부골	238
XX. 족근골 결합	241
XXI. 골연골증	242
XXII. 발톱	247
XXIII. 골수염 및 감염	248

Part 9 척추

I. 척추 분야 추가 목록표	252
II. 척추 MRI	256
III. 척추 시술	260
IV. 척추 수술	267
V. 척추변형	286
VI. 기타 재료 및 수술 장비 관련	289

Part 1

견주관절

I. 견주관절 분야 수가목록표

II. 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III. 주관절 수술

Part 1 견주관절

I. 견주관절 분야 수가목록표

I-1. 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일차치환술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견관절]-해부학적	자71가(2)(가)	N2080	10,151.12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견관절]-해부학적-복잡	자71가(2)(가)주	N2081	15,752.01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견관절]-역행성	자71가(2)(나)	N2082	9,063.50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견관절]-역행성-복잡	자71가(2)(나)주	N2083	14,064.30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견관절]	자71나(2)	N2711	8,218.76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견관절]-복잡	자71나(2)주	N2716	9,848.50
재치환술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견관절]	자71-1가(2)	N3711	11,653.02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견관절]-복잡	자71-1가(2)주1	N3716	14,362.75
	인공관절삽입물의 제거	자71-1가(2)주2	N3721	6,446.77
	인공관절삽입물의 제거-복잡	자71-1가(2)주3	N3726	7,454.74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술[견관절]	자71-1나(2)	N4711	8,842.2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술[견관절]-복잡	자71-1나(2)주1	N4716	10,894.53
	인공관절삽입물의 부분제거	자71-1나(2)주2	N4721	5,623.62
	인공관절삽입물의 부분제거-복잡	자71-1나(2)주3	N4726	6,497.71

I-2. 주관절 수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주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일차치환술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주관절]	자71가(4)	N2073	6,920.72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주관절]-복잡	자71가(4)주	N2078	10,759.30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주관절]	자71나(4)	N2713	6,096.25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주관절]-복잡	자71나(4)주	N2718	7,725.99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재치환술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주관절]	자71-1가(4)	N3713	8,801.21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주관절]-복잡	자71-1가(4)주	N3718	10,427.11
	인공관절삽입물의 제거	자71-1가(4)주2	N3723	4,554.67
	인공관절삽입물의 제거-복잡	자71-1가(4)주3	N3728	5,305.00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술[주관절]	자71-1나(4)	N4713	6,587.07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술[주관절]-복잡	자71-1나(4)주	N4718	8,639.39
	인공관절삽입물의 부분제거	자71-1나(4)주2	N4723	3,583.72
	인공관절삽입물의 부분제거-복잡	자71-1나(4)주3	N4728	4,457.81
각 수술				
내/외상과염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절제, 봉합, 박리]	자-93가	N0931	3,728.23
불안정성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절제, 봉합, 박리]	자-93가	N0931	3,728.23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이식, 이전, 교환, 인공건 성형]	자-93나	N0932	5,328.79
신경포착증후군	신경성형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 구간 등]	자-459다	S4595	3,616.08
관절염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주관절	자-70라	N0703	3,621.05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주관절-복잡	자-70라주	N0708	4,341.71

II. 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II-1. 인공관절치환술의 인정기준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일차치환술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견관절]-해부학적	자71가(2)(가)	N2080	10,151.12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견관절]-역행성	자71가(2)(나)	N2082	9,063.50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견관절]	자71나(2)	N2711	8,218.76

보험인정기준

고시 제2023-294호(행위)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 진행된 외상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드관절염, 혈우병성 관절병증

나) 상완골 골절

- (1) 근위부 4분 골절
- (2)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의 3분 골절
- (3) 골두의 분열골절 또는 상완골두관절면의 40% 이상을 침범한 골두의 갑입골절

다) 상완골두의 무혈성 괴사

라) 악성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2) 역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 65세 이상 환자의 회전근개 파열로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복원술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 (1)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 (2) 봉합이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에서 가성마비가 동반된 경우
- (3) 심한 류마티드관절염에서 회전근개 대형 파열이 동반된 경우

나) 악성 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다) 상완골 골절

- (1) 상완골 경부 골절에서 1차 수술이 실패하여 다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 (2) 70세 이상의 상완골 근위부 3, 4분 골절 중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3) 골다공증이 있는 65세 이상 환자의 4분 골절

3) 상기 1)~2)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상기 가. 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 1)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 2) 성장기 아동
- 3) 수술 후 일상생활, 재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행일자: 2024.1.1.

II-2. 인공관절치환술의 복잡기준 및 기타 고시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일차치환술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견관절]-해부학적-복잡	자71가(2)(가)주	N2081	15,752.01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견관절]-역행성	자71가(2)(나)	N2082	9,063.50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견관절]-역행성-복잡	자71가(2)(나)주	N2083	14,064.30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견관절]	자71나(2)	N2711	8,218.76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견관절]-복잡	자71나(2)주	N2716	9,848.50

인공관절 복잡 수술 산정 기준

(1) 해당 전문의(내과는 세부전문분야) 협진으로 아래의 질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1-1) 만성 신부전증 환자
- (1-2)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필요한 환자
- (1-3) 심혈관 스텐트를 가지고 있어 혈전제를 복용중인 자
- (1-4) 고도의 심근 경색/협심증이 있는 자 - Goldman cardiac risk III 이상
- (1-5) 조절되지 않는 당뇨(HbA1C > 7.0) 환자
- (1-6) 간경화가 있는 환자
- (1-7) 혈액암 환자
- (1-8) 혈우병 환자 또는 혈액 응고이상인 환자
- (1-9) 고도의 폐쇄성 폐질환 환자
- (1-10) 정맥혈전색전증으로 치료 과거력이 있는 자
- (1-11) 뇌경색 등으로 aspirin보다 상위의 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

(2) 치료 중인 상태의 류마티스 질환자로 DAS 28이 5.1 초과일 때

(3) 말초동맥 폐색성 질환을 가진 자

(4) 진행성 척수마비 또는 마미 증후군 환자

(5) 병적 골절이 동반된 환자 : 원발성 골암, 전이성 골암 및 골다공증이 동반된 환자

(6) 감염성 후유증이나 삽입물 주위 감염 후 인공관절치환술

(7) 장축 1 inch 이상의 골결손이 동반된 인공관절치환술

(8) 15° 이상의 골변형이 동반된 인공관절치환술

- "상완골 대결절, 소결절의 부정 유합 등 골절 후유증으로 인한 상완골의 변형이 동반된 경우"로 현실화
"15도 이상의 관절와 골 변형이 동반된 경우"로 구체화

(9) 가성마비, 회전근개파열관절증, 광범위 파열 후 인공관절치환술을 재수술로 시행하는 경우

- 가성마비: 가성마비로 인한 추가적인 유리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므로, 가성 마비는 복잡 기준에서 제외
- 인공관절 수술을, failed primary surgery로 시행한 경우
(골절 내고정 수술, 회전근개 봉합술, 불안정성 수술의 합병증 등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한 경우)

II-3. 재치환술 수술료 청구 예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재치환술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견관절]	자71-1가(2)	N3711	11,653.02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견관절]-복잡	자71-1가(2)주1	N3716	14,362.75
	인공관절삽입물의 제거	자71-1가(2)주2	N3721	6,446.77
	인공관절삽입물의 제거-복잡	자71-1가(2)주3	N3726	7,454.74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술[견관절]	자71-1나(2)	N4711	8,842.2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술[견관절]-복잡	자71-1나(2)주1	N4716	10,894.53
	인공관절삽입물의 부분제거	자71-1나(2)주2	N4721	5,623.62
	인공관절삽입물의 부분제거-복잡	자71-1나(2)주3	N4726	6,497.71

N3711/N3716 : aTSA or RTSA 수술 후 감염, loosening 등 다양한 원인 등으로 인해 single-stage revision OP시 주수술료로 산정

N3721/N3726 : 감염 등의 이유로 인해 재수술시 stem과 같은 삽입물을 제거하며 postalac 등을 넣는 경우
 * 2-stage revision OP시 첫번째 수술(1st stage)에 해당되며 이를 주수술료로 선택
 * single-stage revision OP시 N3711 or N3716 의 주수술료와 함께 부수술료로 산정

N4711/N4716 : hemiarthroplasty 수술 후 감염, loosening 등 다양한 원인 등으로 인해 single-stage revision OP시 주수술료로 산정

N4721/N4726 : "감염 등의 이유로 인해 재수술시 stem과 같은 삽입물을 제거하며 postalac 등을 넣는 경우
 * 2-stage revision OP시 첫번째 수술(1st stage)에 해당되며 이를 주수술료로 선택
 * single-stage revision OP시 N3711 or N3716 의 주수술료와 함께 부수술료로 산정

(10) 관절구축이 20° 이상인 경우

- 견·주관절의 관절 구축은 20° 로 정의할 수 없음
 견·주관절의 stiffness가 동반된 경우는, 슬관절 등의 인공 관절 치환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유리술이 필요한 경우이고 액와 신경 등의 손상이 가능하므로, 복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수동적으로 측정된 견관절 범위가 전체 범위의 40% 이상 감소한 경우
 복지부 개정 견의, 심사자의 사례별 판단 (수술 전 기록 작성 필요)

(11) 인공관절재치환술의 재치환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3호 관련 복잡행위 기준

인공어깨관절치환술에서 3D CT 기반의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를 이용한 관절와 위치 설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18호, 2021. 9. 13.

가. 기술명

- 한글명 : 인공어깨관절치환술에서 3D CT 기반의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를 이용한 관절와 위치 설정
- 영문명 : Glenoid Positioning using Patient Specific Instrument with 3D CT in Shoulder Arthroplasty Surgery

나. 사용목적

- 수술 전 계획 수립을 통해 수술 시 최적의 관절와 위치를 설정하여 인공어깨관절 삽입에 도움

다. 사용대상

- 인공어깨관절치환술(전치환/역치환)을 받는 환자

라. 사용방법

- 환자의 CT 이미지를 3D로 구현 후 3D 프린터로 제작한 환자 맞춤형 골 모형 및 의료용 관절와 가이드를 이용하여 수술 전 계획을 수립하고 수술 시 관절와 위치를 설정함

마. 사용기간

- 2021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사용기간 종료 이후 7일 이내 재평가 실시)

바. 실시기관

- 혁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인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자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원장에게 신고·접수한 의료기관

사. 실시의사

- 실시기관에 소속된 의사

아. 참고사항

- 고시된 사항 외 혁신의료기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및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름

III. 주관절 수술

III-1. 세부 처방 예시 및 고시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주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일차치환술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주관절]	자71가(4)	N2073	6,920.72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주관절]-복잡	자71가(4)주	N2078	10,759.30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주관절]	자71나(4)	N2713	6,096.25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주관절]-복잡	자71나(4)주	N2718	7,725.99
재치환술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주관절]	자71-1가(4)	N3713	8,801.21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주관절]-복잡	자71-1가(4)주	N3718	10,427.11
	인공관절삽입물의 제거	자71-1가(4)주2	N3723	4,554.67
	인공관절삽입물의 제거-복잡	자71-1가(4)주3	N3728	5,305.00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술[주관절]	자71-1나(4)	N4713	6,587.07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술[주관절]-복잡	자71-1나(4)주	N4718	8,639.39
	인공관절삽입물의 부분제거	자71-1나(4)주2	N4723	3,583.72
	인공관절삽입물의 부분제거-복잡	자71-1나(4)주3	N4728	4,457.81
각 수술				
내/외상과염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절제, 봉합, 박리]	자-93가	N0931	3,728.23
불안정성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절제, 봉합, 박리]	자-93가	N0931	3,728.23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이식, 이전, 교환, 인공건 성형]	자-93나	N0932	5,328.79
신경포착증후군	신경성형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 구간 등]	자-459다	S4595	3,616.08
관절염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주관절	자-70라	N0703	3,621.05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주관절-복잡	자-70라주	N0708	4,341.71

외상과염 수술 수가 청구의 권고안

- 관혈적 수술 (Open debridement [Multiple drilling, repair 포함]: N0931 청구
- A/S ECRB Debridement와 A/S synovectomy를 시행: N0931 또는 N0703(사지관절절제술)과 관절경 재료대를 청구

주관절신경포착증후군 수술 수가 청구의 권고안

- In site decompression: S4595 신경성형술(중요말초신경)
- In site decompression + medial epicondylectomy: S4595(주수술) + N0311 골편절제술(부수술)
- Subcutaneous anterior transposition + fascia sling: S4595 (주수술) + N0912 건인대피하단열수술(부수술)
- Submuscular anterior transposition + FCU Z-plasty: S4595(부수술) + N0931 건인대간단(주수술)

금속 재질의 요골두 치환용 치료재료(Bipolar Radial Head Prosthesis 등)의 인정기준

1. 급성 요골두 골절중 분쇄가 심하여 내고정이 어려운 제3형 골절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가. 요골두골절을 동반한 주관절탈구(제4형)
- 나. 내측 측부인대 동반손상
- 다. 동반되거나 지연된 외측 측부인대 기능부전
- 라. 주두와 요골두 골절이 동반된 Monteggia 변형(variant)
- 마. 구상돌기 골절동반
- 바. 동반원위 요척관절 손상

2. 과거 요골두를 제거한 후 속발한 합병증(주관절의 만성 불안정, 특히 외반 불안정, 후외반 회전 불안정, 요골의 근위 이동으로 인한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과 통증, 회전 제한 등)으로 인한 재건술.

* 참고사항 : 수기료는 자71나(2) 인공관절부분치환술(주관절)에 해당.

(고시 제2009-135호, '09.8.1. 시행)

Part 2

고관절

I. 고관절 분야 추가목록표

II. 고관절치환술

III. 치환술 외 추가 술기

Part 2 고관절

I. 고관절 분야 수가목록표

수술명	행위명	분류코드	수가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인공관절 치환술				
일차치환술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고관절]	N7011	자71가(1)	9,372.79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고관절]-복잡	N2070	자71가(1)주	14,970.23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고관절]	N0715	자71나(1)	7,293.97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고관절]-복잡	M2710	자71나(1)주	9,002.04
재치환술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고관절]	N1711	자71-1가(1)	13,548.96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고관절]-복잡	N3710	자71-1가(1)주1	16,728.64
	인공관절삽입물의 제거	N1721	자71-1가(1)주2	7,031.81
	인공관절삽입물의 제거-복잡	N3720	자71-1가(1)주3	8,229.9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고관절]	N1715	자71-1나(1)	9,480.26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고관절]-복잡	N4710	자71-1나(1)주1	11,820.91
	인공관절삽입물의 부분제거	N1725	자71-1나(1)주2	6,232.66
	인공관절삽입물의 부분제거-복잡	N4720	자71-1나(1)주3	7,225.85
기타 수술				
	절제관절성형술[고관절]	N0721	자72가	9,197.62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 포함]-고관절	N0701	자70가	5,420.71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 포함]-고관절-복잡	N0706	자70가주	6,386.79
	관절고정술[고관절]	N0731	자73가	7,313.57
	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고관절]	N0681	자68가	4,419.61
	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고관절]-복잡	N0680	자68가주	5,180.90
	사지관절이단술[고관절]	N0562	자56나	12,420.32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골천공술, 골개창술, 배형성형술, 골부분절제술포함]-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N0021	자29가	4,980.29

II. 고관절치환술

II-1. 일차치환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인공관절전치환술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고관절]	N7011	자71가(1)	9,372.79
인공관절부분치환술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고관절]	N0715	자71나(1)	7,293.97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음 -

1. 적응증

- 가. 관절파괴가 심하여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호전되지 않은 관절염
 - 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 (Ficat 병기 IIb 이상)
 - 다. 대퇴골두 분쇄골절
 - 라. 대퇴골 경부 및 전자간 골절
 - 분쇄와 전위가 있는 대퇴골 경부 및 전자간골절(Garden 분류 제3,4형)
 - 고관절질환(종양, 과사 등), 파킨슨, 치매질환을 동반된 대퇴골 경부 및 전자간 골절
 - 마. 대퇴골 경부 및 전자간부 골절의 불유합 혹은 고정실패
 - 바. 치료받지 않은 발달성 고관절 탈구 및 신경근육성 장애에 의한 아탈구와 탈구
 - 사. 기타
 - 대퇴골 근위부 혹은 비구의 종양
 - 고관절 강직 혹은 가관절증
 - 실패한 고관절 주변 재건술
- 아. 위 가.~사.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함.

2. 금기증

-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 성장기 아동
-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시 제2014-79호, '14.6.1. 시행)

II-2. 일차치환술 -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인공관절전치환술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고관절]-복잡	N2070	자71가(1)주	14,970.23
인공관절부분치환술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고관절]-복잡	M2710	자71나(1)주	9,002.04

복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아래-

(1) 해당 전문의(내과는 세부전문분야) 협진으로 아래의 질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1-1) 만성 신부전증 환자
- (1-2)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필요한 환자
- (1-3) 심혈관 스텐트를 가지고 있어 혈전제를 복용중인 자
- (1-4) 고도의 심근 경색/협심증이 있는 자 - Goldman cardiac risk III 이상
- (1-5) 조절되지 않는 당뇨(HbA1C > 7.0) 환자
- (1-6) 간경화가 있는 환자
- (1-7) 혈액암 환자
- (1-8) 혈우병 환자 또는 혈액 응고이상인 환자
- (1-9) 고도의 폐쇄성 폐질환 환자
- (1-10) 정맥혈전색전증으로 치료 과거력이 있는 자
- (1-11) 뇌경색 등으로 aspirin보다 상위의 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

(2) 치료 중인 상태의 류마티스 질환자로 DAS 28이 5.1 초과일 때

(3) 말초동맥 폐색성 질환을 가진 자

(4) 진행성 척수마비 또는 마미 증후군 환자

(5) 병적 골절이 동반된 환자: 원발성 골암, 전이성 골암 및 골다공증이 동반된 환자

(6) 감염성 후유증이나 삽입물 주위 감염 후 인공관절치환술

(7) 장축 1 inch 이상의 골결손이 동반된 인공관절치환술

(8) 15° 이상의 골변형이 동반된 인공관절치환술

- ⊙ "상완골 대결절, 소결절의 부정 유합 등 골절 후유증으로 인한 상완골의 변형이 동반된 경우"로 현실화
"15도 이상의 관절과 골 변형이 동반된 경우"로 구체화

(9) 가성마비, 회전근개파열관절증, 광범위 파열 후 인공관절치환술을 재수술로 시행하는 경우

- ⊙ 가성마비: 가성마비로 인한 추가적인 유리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므로, 가성 마비는 복잡 기준에서 제외
- ⊙ 인공관절 수술을, failed primary surgery로 시행한 경우
(골절 내고정 수술, 회전근개 봉합술, 불안정성 수술의 합병증 등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한 경우)

(10) 관절구축이 20° 이상인 경우

- ⊙ 견·주관절의 관절 구축은 20° 로 정의할 수 없음
견·주관절의 stiffness가 동반된 경우는, 슬관절 등의 인공 관절 치환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유리술이 필요한 경우이고 액와 신경 등의 손상이 가능하므로, 복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수동적으로 측정된 견관절 범위가 전체 범위의 40% 이상 감소한 경우
복지부 개정 건의, 심사자의 사례별 판단 (수술 전 기록 작성 필요)

(11) 인공관절재치환술의 재치환술

II-3. 재치환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인공관절전재치환술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고관절]	N1711	자71-1가(1)	13,548.96
인공관절삽입물 제거술	인공관절삽입물의 제거	N1721	자71-1가(1)주2	7,031.81
인공관절부분재치환술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고관절]	N1715	자71-1나(1)	9,480.26
인공관절삽입물 부분제거술	인공관절삽입물의 부분제거	N1725	자71-1나(1)주2	6,232.66

1. 일단계 재치환술

- 가. 비구/대퇴삽입물 '모두' 제거 및 재치환술 동시에 시행 (Single stage total revision)
고관절 재치환술(자71-1가(1), N1711) + 제거료(자71-1가(1)주2, N1721)
- 나. 비구 '또는' 대퇴삽입물을 제거 및 재치환술 동시에 시행 (Single stage partial revision)\
고관절 부분재치환술(자71-1나(1), N1715) + 부분제거료 (자71-1나(1)주2, N1725)

2. 이단계 재치환술(감염으로 인하여 복잡수술의 항목에 해당, 복잡수술 수가 산정가능)

- 가. 감염으로 비구/대퇴 삽입물 모두 제거
1) (주수술)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 골반골, 대퇴골(자-29가주, N0024) + (부수술)제거료(복잡) (자71-1가(1)주3, N3720)
2) 고관절 재치환술-복잡(자71-1가(1)주1, N3710)
- 나. 감염으로 비구 또는 대퇴 삽입물 중 하나만 제거
1) (주수술)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골반골, 대퇴골(자-29가주, N0024) + (부수술)부분제거료(복잡) (자71-1나(1)주3, N4720)
2) 고관절 부분재치환술-복잡(자71-1나(1)주1, N4710)

3. 라이너 또는 대퇴골두만 교체하는 경우

- 고관절 부분재치환술(자71-1나(1), N1715)
* 제거료 산정 불가

II-4. 재치환술 -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인공관절전재치환술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고관절]-복잡	N3710	자71-1가(1)주1	16,728.64
인공관절삽입물 제거술	인공관절삽입물의 제거-복잡	N3720	자71-1가(1)주3	8,229.91
인공관절부분재치환술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고관절]-복잡	N4710	자71-1나(1)주1	11,820.91
인공관절삽입물 부분제거술	인공관절삽입물의 부분제거-복잡	N4720	자71-1나(1)주3	7,225.85

수술명	수술료 산정
고관절전치환술 시 Medial wall osteotomy 시행한 경우	Medial wall osteotomy는 산정할 수 없음. 고관절치환술 (THR: Total Hip Replacement)은 대퇴골 삽입물 동시에 Acetabulum쪽으로 시행한 Medial Wall Osteotomy는 THR 시술에 따른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07-46호, '07.6.1. 시행)

III-1. 기타 수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절제관절성형술	절제관절성형술[고관절]	N0721	자72가	9,197.62
활액막절제술/변연절제술	사지관절절제술[활액절제 포함]-고관절	N0701	자70가	5,420.71
관절고정술	관절고정술[고관절]	N0731	자73가	7,313.57
급성 화농성 관절염 절개배농술	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고관절]	N0681	자68가	4,419.61
사지관절이단술	사지관절이단술[고관절]	N0562	자56나	12,420.32
핵심감압술 혹은 다발성천공술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골천공술, 골개창술, 배형성형술, 골부분절제술포함]-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N0021	자29가	4,980.29

III-2. 기타 수술 -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활액막절제술/변연절제술	사지관절절제술[활액절제포함]-고관절-복잡	N0706	자70가주	6,386.79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아래 -

- 결핵, 루마티스관절염, 통풍, 색소성용모결절성 활액막염(PVNS), 화농성관절염으로 광범위한 활액막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과거수술 후 호전되지 않아 전원되어 재수술 하는 경우

급성 화농성 관절염 절개배농술	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고관절]-복잡	N0680	자68가주	5,180.90
------------------	---------------------	-------	-------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아래 -

- 골수염 또는 골농양 수술 또는 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해당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해부학적 범위를 포함하는 다발성 골수염
- 골수염, 골농양, 화농성관절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 감입 골 시멘트를 삽입하는 경우

재치환술 복잡기준: 전치환술과 동일

1. 일단계 재치환술

- 가. 비구/대퇴삽입물 '모두' 제거 및 재치환술 동시에 시행 (Single stage total revision)
고관절 재치환술-복잡(자71-1가(1)주1, N3710) + 제거료(복잡) (자71-1가(1)주3, N3720)
* 재치환술, 제거에 대해 각각 복합가산 산정

- 나. 비구 '또는' 대퇴삽입물을 제거 및 재치환술 동시에 시행 (Single stage partial revision)
고관절 부분재치환술-복잡(자71-1나(1)주1, N4710) + 부분제거료(복잡) (자71-1나(1)주3, N4720)
* 재치환술, 제거에 대해 각각 복합가산 산정

2. 이단계 재치환술

- 가. 감염으로 비구/대퇴 삽입물 모두 제거
1) (주수술)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 골반골, 대퇴골(자-29가주, N0024) + (부수술)제거료(복잡) (자71-1가(1)주3, N3720)
2) 고관절 재치환술-복잡(자71-1가(1)주1, N3710)
- 나. 감염으로 비구 또는 대퇴 삽입물 중 하나만 제거
1) (주수술)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골반골, 대퇴골(자-29가주, N0024) + (부수술)부분제거료(복잡) (자71-1나(1)주3, N4720)
2) 고관절 부분재치환술-복잡(자71-1나(1)주1, N4710)

3. 라이너 또는 대퇴골두만 교체하는 경우

- 고관절 부분재치환술-복잡(자71-1나(1)주1, N4710)
* 제거료 산정 불가

III. 치환술 외 추가 술기

수술명	수술료 산정
고관절 치환술 시 기존의 골절 내고정물 제거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별도의 피부절개로 시행한 경우 자60-2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산정가능 인공관절과 동일피부절개로 시행한 경우 의무기록 등을 통하여 간단히 제거되지 않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60-2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산정 가능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체내 제거 제외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자60-2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중 술에 삽입한 금속제의 제거는 단순히 제거한 경우는 주된 수술의 일환의 과정으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고관절 치환술 시 내전근 절단술 (adductor tenotomy) 시행한 경우	별도의 피부절개로 내전근 절단술 시행한 경우 자91-1 인대미탐단열수술(부수술) 산정가능 * 인공고관절전치환술시 탈구방지를 위해 별도의 피부절개로 내전근 절단술(Adductor Tenotomy)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71가(1) 고관절전치환술 소정점수와 자91-1 인대미탐단열수술 소정점수의 50%(중합법)(신금중합법 포함시) 약 70% 산정. (2014.8.1. 시행) (고시 제2014-126호 일부개정)

Part 3

골절

I. 외상 분야 추가목록표

II. 골절 수술

III. 골절 연관 합병증 수술

IV. 외상 분야 처치재료 청구사항

V. 외상 분야 신의료기술 신청 항목 중
심사기준 운용 항목

Part 3 골절

I. 외상 분야 수가목록표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골절 수술				
상지 골절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상완골, 견갑골 Humerus, Scapula	자60가(2)	N0602	5,780.26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상완골, 견갑골 Humerus, Scapula-복잡	자60가(2)주	N0612	8,795.23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전완골-요골, Radius	자60가(3)(가)	N1601	4,282.59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전완골-요골, Radius-복잡	자60가(3)(가)주	N1611	6,726.75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전완골-척골, Ulnar	자60가(3)(나)	N1602	4,282.59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전완골-척골, Ulnar-복잡	자60가(3)(나)주	N1612	6,726.75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전완골-요척골 동시, Radius and Ulnar	자60가(3)(다)	N1603	5,939.88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전완골-요척골 동시, Radius and Ulnar-복잡	자60가(3)(다)주	N1613	8,756.08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쇄골, 슬개골 [슬개골적출술 포함], 수근골, 족근골 Clavicle, Patella, Carpal Bone, Tarsal Bone	자60가(5)	N0604	4,625.36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쇄골, 슬개골 [슬개골적출술 포함], 수근골, 족근골 Clavicle, Patella, Carpal Bone, Tarsal Bone-복잡	자60가(5)주	N0614	6,819.29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자60가(6)	N0605	3,499.89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복잡	자60가(6)주	N0615	5,173.45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상지 골절 Closed Pinning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Closed Pinning-상완골, 견갑골 Humerus, Scapula	자60나(2)	N0992	2,498.46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Closed Pinning-전완골 Forearm-요골 Radius	자60나(3)(가)	N0996	3,017.51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Closed Pinning-전완골 Forearm-척골 Ulnar	자60나(3)(나)	N0997	3,017.51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Closed Pinning-전완골 Forearm-요척골 동시 Radius and Ulnar	자60나(3)(다)	N0998	3,705.20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Closed Pinning-쇄골, 슬개골 [슬개골적출술 포함], 수근골, 족근골 Clavicle, Patella, Carpal Bone, Tarsal Bone	자60나(5)	N0995	1,997.52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Closed Pinning-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자60나(6)	N0606	1,974.14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	자60-1나	N0982	3,555.60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복잡	자60-1나주	N0986	4,254.03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전완골 Forearm Bone	자60-1다	N0983	3,048.25
상지 골절 External Fixation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수근골, 족근골 Carpal Bone, Tarsal Bone	자60-1라	N0984	3,082.83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자60-1마	N0985	2,202.81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Removal of Implant for Internal Fixation-상완골, 견갑골 Humerus, Scapula	자60-2나	N0973	3,323.28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Removal of Implant for Internal Fixation-전완골, 하퇴골 Forearm Bone, Crus-요골과 척골 중하나, 경골과 비골 중 하나 Radius or Ulnar, Tibia or Fibula	자60-2다(1)	N0977	2,625.36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Removal of Implant for Internal Fixation-전완골, 하퇴골 Forearm Bone, Crus-요척골 동시, 경비골 동시 Radius and Ulnar, Tibia and Fibula	자60-2다(2)	N0974	3,576.76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Removal of Implant for Internal Fixation-쇄골, 슬개골, 수근골, 족근골 Clavicle, Patella, Carpal, Tarsal	자60-2라	N0975	2,209.67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Removal of Implant for Internal Fixation-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자60-2마	N0976	1,711.60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Removal of External Fixation-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	자60-3나	N1902	1,777.81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Removal of External Fixation-전완골 Forearm Bone	자60-3다	N1903	1,524.1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Removal of External Fixation-수근골, 족근골 Carpal Bone, Tarsal Bone	자60-3라	N1904	1,541.41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Removal of External Fixation-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자60-3마	N1905	660.85
상지 골절 도수 정복술	쇄골골절고정술 Closed Reduction and Immobilization of Clavicular Fracture	자52	N0521	637.56
Closed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	쇄골골절고정술 Closed Reduction and Immobilization of Clavicular Fracture 주: 1. 견 및 쇄골절탈구 도수정복술 후 봉대교환 또는 쇄골 골절고정술 후 봉대교환을 실시한 경우에는 532.66점을 산정한다. 2. 치료기간 중 3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3회까지만 산정하며 4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그 재료대만 별도 산정한다.	자52주	N0522	
	사지골절도수정복술 Closed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	자64나	N0642	2,130.44
	사지골절도수정복술 Closed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전완골 Forearm Bone	자64다	N0643	1,131.38
	사지골절도수정복술 Closed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수근골, 족근골 Carpal Bone, Tarsal Bone	자64라	N0644	892.09
	사지골절도수정복술 Closed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자64마	N0645	786.42
골반 비구 골절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 and Dislocation of Spine or Pelvis-비구 Acetabulum	자59나	N0592	13,297.38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 and Dislocation of Spine or Pelvis-골반 Pelvis	자59다	N0593	12,937.33
골반 비구 골절 Closed Pinning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 and Dislocation of Spine or Pelvis-골반 Pelvis (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	자59다주	N0594	6,468.665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소정점수의 50%)
골반 비구 골절 External Fixation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External Fixation-골반골, 대퇴골 Pelvis, Femur	자60-1가	N0981	6,820.75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골반 비구 골절 Removal	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 Removal of Implant for Internal Fixation-골반골, 대퇴골 Pelvis, Femur	자60-2가	N0972	3,551.02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Removal of External Fixation-골반골, 대퇴골 Pelvis, Femur	자60-3가	N1901	3,410.38
골반 비구 골절 도수 정복술 Closed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	사지골절도수정복술 Closed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골반골, 대퇴골 Pelvis, Femur	자64가	N0641	2,887.63
하지 골절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대퇴골 Femur	자60가(1)	N0601	7,427.79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대퇴골 Femur-복잡	자60가(1)주	N0611	10,877.39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하퇴골 Crus-경골 Tibia	자60가(4)(가)	N1604	4,986.73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하퇴골 Crus-경골 Tibia-복잡	자60가(4)(가)주	N1614	7,622.76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하퇴골 Crus-비골 Fibula	자60가(4)(나)	N1605	4,005.80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하퇴골 Crus-비골 Fibula-복잡	자60가(4)(나)주	N1615	6,376.59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하퇴골 Crus-경비골 동시 Tibia and Fibula	자60가(4)(다)	N1606	6,478.56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하퇴골 Crus-경비골 동시 Tibia and Fibula-복잡	자60가(4)(다)주	N1616	9,423.19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쇄골, 슬개골 [슬개골적출술 포함], 수근골, 족근골 Clavicle, Patella, Carpal Bone, Tarsal Bone	자60가(5)	N0604	4,625.36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쇄골, 슬개골 [슬개골적출술 포함], 수근골, 족근골 Clavicle, Patella, Carpal Bone, Tarsal Bone-복잡	자60가(5)주	N0614	6,819.29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자60가(6)	N0605	3,499.89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복잡	자60가(6)주	N0615	5,173.45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하지 골절 Closed Pinning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Closed Pinning-대퇴골 Femur	자60나(1)	N0991	3,311.11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Closed Pinning-하퇴골 Crus-경골 Tibia	자60나(4)(가)	N0999	3,017.51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Closed Pinning-하퇴골 Crus-비골 Fibula	자60나(4)(나)	N1000	3,017.51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Closed Pinning-하퇴골 Crus-경비골 동시 Tibia and Fibula	자60나(4)(다)	N1001	3,705.20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Closed Pinning-쇄골, 슬개골 [슬개골적출술 포함], 수근골, 족근골 Clavicle, Patella, Carpal Bone, Tarsal Bone	자60나(5)	N0995	1,997.52
사지골절정복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Closed Pinning-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자60나(6)	N0606	1,974.14	
하지 골절 External Fixation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골반골, 대퇴골 Pelvis, Femur	자60-1가	N0981	6,820.75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	자60-1나	N0982	3,555.60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복잡	자60-1나	N0986	4,254.03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수근골, 족근골 Carpal Bone, Tarsal Bone	자60-1라	N0984	3,082.83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자60-1마	N0985	2,202.81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하지 골절 Removal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Removal of Implant for Internal Fixation-골반골, 대퇴골 Pelvis, Femur	자60-2가	N0972	3,551.02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Removal of Implant for Internal Fixation-전완골, 하퇴골 Forearm Bone, Crus-요골과 척골중하나, 경골과 비골중 하나 Radius or Ulnar, Tibia or Fibula	자60-2다(1)	N0977	2,625.36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Removal of Implant for Internal Fixation-전완골, 하퇴골 Forearm Bone, Crus-요척골 동시, 경비골 동시 Radius and Ulnar, Tibia and Fibula	자60-2다(2)	N0974	3,576.76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Removal of Implant for Internal Fixation-쇄골, 슬개골, 수근골, 족근골 Clavicle, Patella, Carpal, Tarsal	자60-2라	N0975	2,209.67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Removal of Implant for Internal Fixation-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자60-2마	N0976	1,711.60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Removal of External Fixation-골반골, 대퇴골 Pelvis, Femur	자60-3가	N1901	3,410.38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Removal of External Fixation-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	자60-3나	N1902	1,777.81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Removal of External Fixation-수근골, 족근골 Carpal Bone, Tarsal Bone	자60-3라	N1904	1,541.41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Removal of External Fixation-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자60-3마	N1905	660.85
	하지 골절 도수 정복술 Closed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	사지골절도수정복술 Closed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골반골, 대퇴골 Pelvis, Femur	자64가	N0641
사지골절도수정복술 Closed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		자64다	N0642	2,130.44
사지골절도수정복술 Closed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수근골, 족근골 Carpal Bone, Tarsal Bone		자64라	N0644	892.09
사지골절도수정복술 Closed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자64마	N0645	786.42
금속 제거술 (공통)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Removal of Implant for Internal Fixation-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등을 간단히 제거한 경우 근막절개 하에 실시한 경우	자60-2주	N0978	885.59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Removal of Implant for Internal Fixation-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등을 간단히 제거한 경우 근막절개 없이 실시한 경우	자60-2주	N0979	576.92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근막절개술	근막절개술 Fasciotomy-단순 절개 Simple	자92-2가	N0922	2,185.48
	근막절개술 Fasciotomy-복잡 절개 [여러구획이나 근육 및 신경의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Complex	자92-2나	N0923	3,738.01
견인술 Traction	주: 1. 입원의 경우에만 소정 시술행위에 따라 1회만 산정한다. 2. 견인장치기간 중 시행일로부터 감시료로 1일당 124.78점을 산정한다.	자65주	N0655	
	골견인술 Bone Traction-두개골	자65가(1)	N0651	1,535.58
	골견인술 Bone Traction-사지골	자65가(2)	N0652	1,333.93
	골견인술 Bone Traction-Halovest	자65가(3)	N0653	950.65
	피부견인술 Skin Traction [골반, 반창고, Halter Traction] 주: 입원중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7장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자65나	N0654	212.42
캐스트 Cast	견수상 [흉부로부터 수부까지] Shoulder Spica	자601	T6010	525.25
	장상지 [상완으로부터 수부까지] Long Arm	자602	T6020	359.28
	단상지 [전완으로부터 수부까지] Short Arm	자603	T6030	302.14
	고수상 [요부로부터 족부까지, 척추 Cast 포함] Hip Spica	자604	T6040	812.56
	장하지 [대퇴로부터 족부까지] Long Leg-Long Leg Cast without Walker	자605가	T6051	539.37
	장하지 [대퇴로부터 족부까지] Long Leg-Long Leg Cast with Walker	자605나	T6052	624.19
	단하지 [하퇴로부터 족부까지] Short Leg-Short Leg Cast without Walker	자606가	T6060	319.07
	단하지 [하퇴로부터 족부까지] Short Leg-Short Leg Cast with Walker	자606나	T6061	358.88
	단하지 [하퇴로부터 족부까지] Short Leg-슬개건 부하캐스트 Patella Tendon Bearing Cast	자606다	T6063	420.42
	체간캐스트 Body Cast-Minerva 형	자607가	T6070	816.95
	체간캐스트 Body Cast-Risser 형	자607나	T6080	805.25
	손가락캐스트 Finger Cast	자609	T6090	172.43
	벨포캐스트 Velpeau Cast	자611	T6110	406.97
	8자형 석고 Figure of Eight Cast	자612	T6120	401.49
	석고제거 Removal of Cast 주: 석고제거는 이미 장치된 캐스트를 다른 요양기관에서 제거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자613		
	석고제거 Removal of Cast -견수상, 고수상, 체간 Shoulder Spica, Hip Spica, Body Cast	자613가	T6131	268.11
	석고제거 Removal of Cast-장상지, 장하지, 벨포 Long Arm, Long Leg, Velpeau	자613나	T6132	251.93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석고제거 Removal of Cast-단상지, 단하지, 8자형 석고 Short Arm, Short Leg, Figure of Eight	자613다	T6133	225.56
	캐스트 절할 사용-견수상, 고수상, 체간 Shoulder Spica, Hip Spica, Body Cast	자613-1가	T6136	206.98
	캐스트 절할 사용-장상지, 장하지, 벨포 Long Arm, Long Leg, Velpeau	자613-1나	T6137	190.95
	캐스트 절할 사용-단상지, 단하지, 8자형 석고 Short Arm, Short Leg, Figure of Eight	자613-1다	T6138	164.34
	석고의 수선 Repair of Cast	자614	T6140	148.19
	부목 Splint-장상지 [상완으로부터 수부까지] Long Arm	자615가	T6151	299.54
	부목 Splint-단상지 [전완으로부터 수부까지] Short Arm	자615나	T6152	253.54
	부목 Splint-장하지 [대퇴로부터 족부까지] Long Leg	자615다	T6153	388.41
	부목 Splint-단하지 [하퇴로부터 족부까지] Short Leg	자615라	T6154	259.06
	부목 Splint-수지부 Finger	자615마	T6155	141.52
	반창고부착술 Strapping 주: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한다.	자616		
	반창고부착술 Strapping-흉곽부, 하요추부 Thorax, Low Back	자616가	T6161	239.52
	반창고부착술 Strapping-견관절부, 고관절부 Shoulder, Hip	자616나	T6162	162.78
	반창고부착술 Strapping-주관절부, 슬관절부, 완관절부, 족관절부 Elbow, Knee, Wrist, Ankle	자616다	T6163	148.52
골절 연관 합병증 수술				
불유합	가관절수술 Repair of Nonunion or Malunion-대퇴골 Femur	자62가	N0621	11,284.50
	가관절수술 Repair of Nonunion or Malunion-대퇴골 Femur-복잡	자62가주	N0631	12,958.53
	가관절수술 Repair of Nonunion or Malunion-상완골, 전완골, 하퇴골 Humerus, Forearm Bone, Tibia	자62나	N0622	7,057.23
	가관절수술 Repair of Nonunion or Malunion-상완골, 전완골, 하퇴골 Humerus, Forearm Bone, Tibia-복잡	자62나주	N0632	8,315.36
	가관절수술 Repair of Nonunion or Malunion-쇄골, 슬개골, 수근골, 족근골 Clavicle, Patella, Carpal, Tarsal	자62다	N0624	5,985.76
	가관절수술 Repair of Nonunion or Malunion-쇄골, 슬개골, 수근골, 족근골 Clavicle, Patella, Carpal, Tarsal-복잡	자62다주	N0634	6,835.17
	가관절수술 Repair of Nonunion or Malunion-중수골, 중족골 Metacarpal, Metatarsal	자62라	N0623	4,918.22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가관절수술 Repair of Nonunion or Malunion- 중수골, 중족골 Metacarpal, Metatarsal-복잡	자62라주	N0633	5,702.86
	가관절수술 Repair of Nonunion or Malunion- 지골 Finger, Toe	자62마	N0625	4,389.03
	가관절수술 Repair of Nonunion or Malunion- 지골 Finger, Toe-복잡	자62마주	N0635	5,042.92
	골편절제술 Osteotomy 주: 환자가 아닌 자로부터 골편절제를 한 경우에는 골편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자31	N0311	2,707.13
	골이식술 Bone Graft 주: "제1절 [산정지침] (5)"에도 불구하고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제1절 [산정지침]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7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를 산정한다. 다만,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자31-1	N0312	1,193.82
골수염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Pelvis, Femur, Crus	자29가	N0021	4,980.29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Pelvis, Femur, Crus-복잡	자29가주	N0024	6,6065.85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상완골, 전완골, 쇄골 Humerus, Forearm, Clavicle	자29나	N0022	4,495.90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상완골, 전완골, 쇄골 Humerus, Forearm, Clavicle-복잡	자29나주	N0025	5,345.94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기타 Others	자29다	N0023	3,761.27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기타 Others-복잡	자29다주	N0026	4,409.57

II. 골절 수술

II-1. 사지골절정복수술 -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상지 골절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사지골절정복수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상완골, 견갑골 Humerus, Scapula-복잡	자60가(2)주	N0612	8,795.23	
	사지골절정복수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전완골-요골, Radius-복잡	자60가(3)(가)주	N1611	6,726.75	
	사지골절정복수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전완골-척골, Ulnar-복잡	자60가(3)(나)주	N1612	6,726.75	
	사지골절정복수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전완골-요척골 동시, Radius and Ulnar-복잡	자60가(3)(다)주	N1613	8,756.08	
	사지골절정복수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쇄골, 슬개골 [슬개골적출술 포함], 수근골, 족근골 Clavicle, Patella, Carpal Bone, Tarsal Bone-복잡	자60가(5)주	N0614	6,819.29	
	사지골절정복수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복잡	자60가(6)주	N0615	5,173.45	
	하지 골절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사지골절정복수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대퇴골 Femur-복잡	자60가(1)주	N0611	10,877.39
		사지골절정복수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하퇴골 Crus-경골 Tibia-복잡	자60가(4)(가)주	N1614	7,622.76
		사지골절정복수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하퇴골 Crus-비골 Fibula-복잡	자60가(4)(나)주	N1615	6,376.59
		사지골절정복수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하퇴골 Crus-경비골 동시 Tibia and Fibula-복잡	자60가(4)(다)주	N1616	9,423.19
사지골절정복수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쇄골, 슬개골 [슬개골적출술 포함], 수근골, 족근골 Clavicle, Patella, Carpal Bone, Tarsal Bone-복잡		자60가(5)주	N0614	6,819.29	
사지골절정복수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관혈적-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복잡		자60가(6)주	N0615	5,173.45	

사지골절정복술 복잡산정기준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1) 해당 전문의(내과는 세부전문분야) 협진으로 아래의 질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1-1) 만성 신부전증 환자
- (1-2)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필요한 환자
- (1-3) 심혈관 스텐트를 가지고 있어 혈전제를 복용 중인 자
- (1-4) 고도의 심근 경색/협심증이 있는 자 - Goldman cardiac risk III 이상
- (1-5) 조절되지 않는 당뇨(HbA1C > 7.0) 환자
- (1-6) 간경화가 있는 환자
- (1-7) 혈액암 환자
- (1-8) 혈우병 환자 또는 혈액 응고이상인 환자
- (1-9) 고도의 폐쇄성 폐질환 환자
- (1-10) 정맥혈전색전증으로 치료 과거력이 있는 자
- (1-11) 뇌경색 등으로 aspirin보다 상위의 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

(2) 치료 중인 상태의 류마티스 질환자로 DAS 28이 5.1 초과일 때

(3) 말초동맥 폐색성 질환을 가진 자

(4) 진행성 척수마비 또는 마미 증후군 환자

(5) 병적 골절이 동반된 환자 : 원발성 골암, 전이성 골암 및 골다공증이 동반된 환자

(6) ISS(Injury Severity Score) >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 혹은 3곳 이상의 수술을 필요로 하는 다발성 골절환자

(7) 인공삽입물 주위 골절

(8) 관절 내 골절

(9) 사지골절정복술 또는 가관절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가 재발되어 재수술한 경우

(10) 장축 1 inch 이상의 심한 골결손이 동반된 경우

(11) G-A type III 이상의 개방성 골절, 탈장갑 손상이 있는 개방성 골절

(12) 혈관 손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골절

(13) 구획 증후군이 동반된 골절

(14) 신경손상이 동반된 골절

(고시 제2014-113호, '14.8.1 시행)

II-2. 사지골절 관혈적 정복술 관련 수가 산정 방법

II-2-(1). 쇄골탈구 관혈적정복술 수가 산정방법

쇄골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술은 자60가(5) 사지골절 정복술 [복잡골절 포함]-관혈적-쇄골로 준용하여 산정하되, 관혈적정복술과 동시에 견이식, 견이전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93나 견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 [이식, 이전, 교환, 인공견 성형]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함.

(고시 제2023-56호, '23.3.29. 시행)

II-2-(2). Trimalleolar Fracture의 관혈적정복술시 수가 산정방법

Trimalleolar Fracture의 관혈적 정복술은 자60가 (4)(다)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관혈적-하퇴골 -경비골동시 소정점수의 100%와 자60가(4)(가)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관혈적-하퇴골-경골 소정점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70%]를 산정함.

(고시 제2023-56호, '23.3.29. 시행)

II-2-(3). 뼈전이암에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박병적골절(Impending pathologic fractures)에 실시한 자60 사지골절정복술 급여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

뼈전이암에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박병적골절 (Impending pathologic fractures)에 실시한 사지골절정복술은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 급여를 인정함.

- 다음 -

가. 대퇴 근위부의 2.5cm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나. 병변이 피질골의 50% 이상을 파괴한 경우

다. 소전자부의 병적 견열 골절이 있는 경우

라. 방사선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통증이 있는 경우

마. 병적 골절의 예측을 위한 점수(Mirel's score) 8점 이상인 경우

(고시 제2019-315호, '20.1.1. 시행)

II-3. 체외금속 고정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상지 골절 External Fixation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	자60-1나	N0982	3,555.60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복잡	자60-1나주	N0986	4,254.03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전완골 Forearm Bone	자60-1다	N0983	3,048.25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수근골, 족근골 Carpal Bone, Tarsal Bone	자60-1라	N0984	3,082.83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자60-1마	N0985	2,202.81
하지 골절 External Fixation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골반골, 대퇴골 Pelvis, Femur	자60-1가	N0981	6,820.75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	자60-1나	N0982	3,555.60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복잡	자60-1나주	N0986	4,254.03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수근골, 족근골 Carpal Bone, Tarsal Bone	자60-1라	N0984	3,082.83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자60-1마	N0985	2,202.81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음 -

1. 적응증

- 가. 왜소증 및 사지부동에 실시한 골연장술 시
 - 1) 왜소증 : 「기질적 왜소증에 실시한 사지골 연장술의 급여 인정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 2) 사지부동 : 좌·우 길이 차이가 상지는 6cm 이상, 하지는 2.5cm 이상인 경우
- 나. 골 및 연부조직의 기형 및 결손: 단지증 상병에는 1cm 이상 단축이 있는 경우
- 다. 악성종양 절제술, 만성골수염 등으로 인한 골소실
- 라. 후 외상성 및 후 감염성 골단판 손상
- 마. 불유합 및 부정유합
- 바. 관절고정술에 선별적으로 시행 시
- 사. 골절
 - 1) 일반적인 인정기준
 - 가) Intra-articular comm. Fx (knee, ankle, wrist, elbow)
 - 나) 간부의 분쇄골절, 개방성 골절에 선별적으로 시행 시

2) 소아골절의 인정기준

- 가) 위 "1) 일반적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나) 6-10세 사이의 다발성 장관골 골절을 동반한 대퇴골 간부골절
- 다) 대퇴골 간부골절에서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 중 교정이 필요할 정도의 단축 또는 각변형이 진행되는 경우

2. 수가 산정방법

동일 부위에 자60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 또는 자30 절골술과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을 동시 실시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3. 치료재료 산정방법

치료재료는 체내고정용 재료와 체외고정용 기구로 구분하여 보상토록 하되 반드시 요양기관에서 직접 구입·사용하여야 함.
 가. 체외 고정용: 제품별 요양기관 실구입가÷재사용 가능 횟수
 나. 체내 고정용: 제품별 요양기관 실구입가×실사용 개수

(고시 제2023-56호, '23.3.29. 시행)

II-4. 체외금속 고정술 -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상지 골절 External Fixation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복잡	자60-1나주	N0986	4,254.03
하지 골절 External Fixation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복잡	자60-1나주	N0986	4,254.03

체외금속고정술 복잡 산정 기준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아래 -

- 왜소증 및 사지부동에 실시한 골연장술 시
- 악성종양절제술, 만성골수염 등으로 인한 골소실
- 불유합 또는 부정유합
- 관절을 포함하여 체외금속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2014.8.1 시행)

II-5.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상지 골절 Removal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Removal of External Fixation-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	자60-3나	N1902	1,777.81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Removal of External Fixation-전완골 Forearm Bone	자60-3다	N1903	1,524.1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Removal of External Fixation-수근골, 족근골 Carpal Bone, Tarsal Bone	자60-3라	N1904	1,541.41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Removal of External Fixation-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자60-3마	N1905	660.85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Removal of External Fixation-골반골, 대퇴골 Pelvis, Femur	자60-3가	N1901	3,410.38
하지 골절 Removal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Removal of External Fixation-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	자60-3나	N1902	1,777.81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Removal of External Fixation-수근골, 족근골 Carpal Bone, Tarsal Bone	자60-3라	N1904	1,541.41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Removal of External Fixation-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자60-3마	N1905	660.85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Removal of External Fixation-골반골, 대퇴골 Pelvis, Femur	자60-3가	N1901	3,410.38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Removal of External Fixation-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	자60-3나	N1902	1,777.81

체외고정용 금속제거를 위해 절개 또는 소파술(curettage), 봉합을 시행한 경우 자60-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을 산정한다. 다만, 체내금속고정을 동반한 수술 등을 시행하면서 자60-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주수술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고시 제2021-229호, '21.9.1. 시행)

II-6.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골시멘트 보강술 급여기준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골시멘트 보강술은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 내고정술 시행 시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olymethyl methacrylate, PMMA)계 시멘트를 주입하는 행위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1. 급여대상

가. 골다공증성 골절(상지골, 하지골, 골반골) 환자에서 내고정술 시행 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 1) 65세 이상
- 2)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으로 측정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 3) 척추 골절 등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었던 환자에서 발생한 골절

2. 추가산정방법

가. 행위료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고시되어 있는 다음의 해당 관혈적 수술의 범주에 해당되어 별도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 1) 자59다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
 - 2) 자60가(1)~(4)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 포함]
- 나. 치료재료: 사용된 골시멘트는 별도 산정함.

3. 실시횟수

가. 골절에 대한 내고정술 시행 시 해부학적 부위 당 1회

나. 단, 재골절 발생 혹은 불유합으로 인하여 내고정물 제거 후 재고정술 시행할 때 추가인정

(고시 제2023-121호, '23.7.1. 시행)

II-7. 사지골절도수정복술 관련 추가산정방법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사지골절도수정복술 Closed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	사지골절도수정복술 Closed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골반골, 대퇴골 Pelvis, Femur	자64가	N0641	2,887.63
	사지골절도수정복술 Closed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	자64나	N0642	2,130.44
사지골절도수정복술 Closed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	사지골절도수정복술 Closed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전완골 Forearm Bone	자64다	N0643	1,131.38
	사지골절도수정복술 Closed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수근골, 족근골 Carpal Bone, Tarsal Bone	자64라	N0644	892.09
사지골절도수정복술 Closed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	사지골절도수정복술 Closed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자64마	N0645	786.42

동일 부위에 자64 사지골절도수정복술과 동시에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또는 자2 창상봉합술시 수가 산정방법
 동일 부위에 자64 사지골절도수정복술과 동시에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또는 자2 창상봉합술 등 외과적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행위이므로 해당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고시 제2023-56호, '23.3.29. 시행)

슬개골도수정복술 (Patella Closed Reduction) 수가 산정방법
 슬개골도수정복술(Patella Closed Reduction)은 자64라 사지골절도수정복술-수근골, 족근골의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함.

(고시 제2023-56호, '23.3.29. 시행)

II-8. 견인술 관련 수가산정방법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견인술 Traction	골견인술 Bone Traction-두개골	자65가(1)	N0651	1,535.58
	골견인술 Bone Traction-사지골	자65가(2)	N0652	1,333.93
	골견인술 Bone Traction-Halovest	자65가(3)	N0653	950.65
	피부견인술 Skin Traction [골반, 반창고, Halter Traction]	자65나	N0654	212.42

주: 입원중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7장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

견인술 주

1. 입원의 경우에만 소정 시술행위에 따라 1회만 산정한다.
 N0655 2. 견인장치기간 중 시행일로부터 감시료로 1일당 124.78점을 산정한다.

피부견인술 주

입원중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7장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여러 부위에 견인술시 견인감시료 산정방법

견인장치기간 중 감시료는 자65 견인술 '주2'에 1일당으로 산정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여러 부위에 자65 견인술을 시행한 경우 1일당 소정점수로 산정함.

(고시 제2018-3호, '18.4.1. 시행)

II-9. 캐스트로 산정지침

캐스트로 산정지침

- (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며,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시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 (3) 제2절에 기재되지 아니한 시술료는 제2절에 기재되어 있는 시술 중에서 가장 비슷한 분류항목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 (4) 캐스트에 사용되는 석고붕대 또는 합성캐스트는 실사용 개수 및 규격에 불문하고 부위별 및 시술방법에 따라 정한 「부위별 석고붕대 사용기준」 또는 「부위별 합성 캐스트 사용기준」에 의한다.
- (5) 캐스트에 사용되는 재료 중 석고붕대, 합성캐스트,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 (합성수지 Splint, 석고 Splint Roll), Cast heel, 고정용 신축성 붕대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하되, Stockinet, Cotton bandage, Cast wire, Cast remove wire 등의 재료대는 소정 캐스트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6) Cast heel, 고정용 신축성 붕대는 실사용한 개수 및 규격에 따라 산정한다.

II-10. 캐스트 관련 수기로 및 재료대 산정방법

뺨기모양절개 캐스트(Wedging Cast)의 수기로 및 치료재료 산정방법

뺨기모양절개 캐스트(Wedging Cast)는 자80가 변형도수교정술(골절변형교정술)과 자614 석고의 수선 소정점수로 산정하며, 이때 사용한 석고붕대는 실사용량으로 산정함.

(고시 제2007-46호, '07.6.1. 시행)

Both Hip Spica 수기로 및 재료대 산정방법 (자604 Hip spica)

Both Hip Spica 수기로는 자604 고수상(Hip Spica Cast)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며, 석고붕대는 Hip Spica 석고붕대 사용기준 갯수의 50%를 가산한 갯수로 산정함.

(고시 제2007-46호, '07.6.1. 시행)

손가락캐스트 수가 산정방법 (자609 손가락캐스트)

손가락캐스트(Finger Cast)를 2지이상 실시하는 경우 수기로는 자609 손가락캐스트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고시 제2007-46호, '07.6.1. 시행)

원거리피판술시 시행한 캐스트(Cast) 수기로 산정방법 (자611 벨포캐스트)

손가락부위에 원거리 피판술후 단순히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한 캐스트는 자611 벨포캐스트(Velpeau Cast) 소정점수에 준용하여 산정함.

(고시 제2007-46호, '07.6.1. 시행)

Shoulder Spica Splint 및 Hip Spica Splint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자615 부목)

Shoulder Spica splint는 자615가 부목-장상지 소정 금액으로 산정하고, Hip Spica Splint는 자615다 부목(장하지) 소정금액으로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III. 골절 연관 합병증 수술

III-1. 불유합 -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불유합	가관절수술 Repair of Nonunion or Malunion-대퇴골 Femur-복잡	자62가주	N0631	12,958.53
	가관절수술 Repair of Nonunion or Malunion-상완골, 전완골, 하퇴골 Humerus, Forearm Bone, Tibia-복잡	자62나주	N0632	8,315.36
	가관절수술 Repair of Nonunion or Malunion-쇄골, 슬개골, 수근골, 족근골 Clavicle, Patella, Carpal, Tarsal-복잡	자62다주	N0634	6,835.17
	가관절수술 Repair of Nonunion or Malunion- 중수골, 중족골 Metacarpal, Metatarsal-복잡	자62라주	N0633	5,702.86
	가관절수술 Repair of Nonunion or Malunion- 지골 Finger, Toe-복잡	자62마주	N0635	5,042.92

가관절수술 복잡산정기준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1) 해당 전문의(내과는 세부전문분야) 협진으로 아래의 질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1-1) 만성 신부전증 환자
- (1-2)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필요한 환자
- (1-3) 심혈관 스텐트를 가지고 있어 혈전제를 복용중인 자
- (1-4) 고도의 심근 경색/협심증이 있는 자 - Goldman cardiac risk III 이상
- (1-5) 조절되지 않는 당뇨(HbA1C > 7.0) 환자
- (1-6) 간경화가 있는 환자
- (1-7) 혈액암 환자
- (1-8) 혈우병 환자 또는 혈액 응고이상인 환자
- (1-9) 고도의 폐쇄성 폐질환 환자
- (1-10) 정맥혈전색전증으로 치료 과거력이 있는 자
- (1-11) 뇌경색 등으로 aspirin보다 상위의 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

(2) 치료 중인 상태의 류마티스 질환자로 DAS 28이 5.1 초과일 때

- (3) 말초동맥 폐색성 질환을 가진 자
- (4) 진행성 척수마비 또는 마미 증후군 환자
- (5) 병적 골절이 동반된 환자: 원발성 골암, 전이성 골암 및 골다공증이 동반된 환자
- (6) ISS(Injury Severity Score) >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 혹은 3곳 이상의 수술을 필요로 하는 다발성 골절환자
- (7) 인공삽입물 주위 골절
- (8) 관절 내 골절
- (9) 사지골절정복술 또는 가관절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가 재발되어 재수술한 경우
- (10) 장축 1 inch 이상의 심한 골결손이 동반된 경우
- (11) G-A type III 이상의 개방성 골절, 탈장갑 손상이 있는 개방성 골절
- (12) 혈관 손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골절
- (13) 구획 증후군이 동반된 골절
- (14) 신경손상이 동반된 골절

(고시 제2014-113호, '14.8.1 시행)

III-2. 불유합 - 골편절제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골편 절제술	편측 전·후 장골능에서 골편 채취시	자31	N0311	2,707.13

편측의 전·후 장골능에서 골편 채취시 동일 피부 절개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골편의 개수를 불문하고 자31 골편절제술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서로 다른 피부 절개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자31 골편절제술 소정점수 200%를 산정함.

(고시 제2017-118호, '17.7.1. 시행)

III-3. 불유합 - 골이식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골이식술	골이식술	자31-1	N0312	1,193.82

골 결손 부위에 보존 및 보강 목적으로 실시하는 자31-1 골이식술(Bone graft)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31 골편절제술 후 자가골 이식의 경우

나.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를 사용하여 골이식하는 경우

- 1) 골성 종양 수술시 골결손이 있는 경우
- 2) 사지 장관골 골절 수술후 불유합이나 지연유합이 있는 경우
- 3) 사지 관절(견관절, 주관절, 완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재수술시 불유합이나 지연유합이 있는 경우

(고시 제2017-118호, '17.7.1. 시행)

III-4. 불유합 - 전기자극기 삽입술

전기자극기 삽입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전기자극기 삽입술은 장골 골절의 1차 수술이후 불유합시 골유합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차 수술시에는 적용할 수 없고, 불유합으로 인한 절단술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실시한 2차 수술 부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전극 삽입술

- 1) 부분침습형전기자극기 삽입: 자62 가관절수술의 소정점수의 25%를 산정함.
- 2) 매몰형전기자극기 삽입: 자62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3) 골이식술을 실시하면서 전기자극기 삽입:

자62 가관절수술과 자31-1 골이식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골편절제를 추가로 시행한 경우에는 자62 가관절수술과 자31 골편절제술, 자31-1 골이식술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나. 전극제거술

1) 체외고정한 전극을 제거시 Pure Titanium Cathode에 연결된 Pure Titanium Wire Insulated With Extruded Polyethylene을 제거하게 되므로 자3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 피하내 고정한 전극을 제거시에는 Batteries and Electronics Encapsulation in Silicone resin인 Pure Titanium Case와 Pure Titanium Anode 및 Pure Titanium Wire를 제거하게 되므로 자3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치료재료

요양기관이 자체에서 제작한 경우에는 실비로 산정하며, 구입한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 산정함.

(고시 제2017-201호, '17.11.6. 시행)

III-5. 골수염 -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골수염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Pelvis, Femur, Crus-복잡	자29가주	N0024	6,065.85
골수염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상완골, 전완골, 쇄골 Humerus, Forearm, Clavicle-복잡	자29나주	N0025	5,345.94
골수염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기타 Others-복잡	자29다주	N0026	4,409.57

골수염 복잡 수술 산정 기준

- (1) 골수염 또는 골농양 수술 또는 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해당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
- (2) 2개 이상의 해부학적 범위를 포함하는 다발성 골수염
- (3) 골수염, 골농양, 화농성관절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 감입 골 시멘트를 삽입하는 경우

IV. 외상 분야 처치재료 청구사항

IV-1. 석고붕대 사용개수

캐스트로 산정지침에 석고붕대의 사용개수는 6인치 기준으로 정하여져 있는 바, 요양기관은 환자의 상태나 골절부위에 따라 3인치, 4인치, 6인치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3인치, 4인치 석고붕대의 개수 비율을 1:1.5의 기준으로 인정하되 기준 개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 (예: 6인치 석고붕대의 기준개수가 10개인 경우 3인치 또는 4인치를 사용하였을 경우 15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임.)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IV-2. 캐스트에 사용하는 파일패드의 별도 산정여부

캐스트에 사용되는 재료 중 "Stockinet, Cotton Bandage"의 재료대는 그 소요비용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소정 캐스트료(캐스트기술료와 재료대)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파일패드"는 면과 스판덱스를 결합하여 제직(製織)한 제품으로 캐스트시행시 Stockinet과 Cotton Bandage의 대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Stockinet, Cotton Bandage와 동일하게 소정 캐스트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IV-3. 합성캐스트 재료대 산정방법

합성캐스트 재료대 산정방법은 실 사용 개수 및 규격에 불문하고 「부위별 합성캐스트 사용기준」에서 정한 개수와 규격에 의하며
 • 「부위별 합성캐스트 사용기준」에서 기준규격(3인치 4야드 또는 4인치 4야드)이외의 규격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규격별 길이등을 고려한 사용 개수를 감안하여 실제 구입한 규격의 가격으로 인정하되 기준개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으며 개수 환산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산정함.

기준 규격	사용 규격	개수 환산방법
3"	2"	3"와 동일 개수 인정
	4"	3"와 동일 개수 인정
	5"	3"인정 개수의 1/2 인정
4"	2"	4"인정 개수의 1과 1/2 인정
	3"	4"와 동일 개수 인정
	5"	4"와 동일 개수 인정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IV-4. Splint Roll의 부위별 사용기준

외고정용 소모성치료재료 중 Splint Roll(합성수지, 석고)의 부위별 사용기준을 규격은 실사용규격으로 하고, 길이는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분 류	(단위: cm)	
	성인	소아
자-615가 장상지 [상완으로부터 수부까지] (Long Arm Splint)	70	45
자-615나 단상지 [전완으로부터 수부까지] (Short Arm Splint)	40	30
자-615다 장하지 [대퇴부에서 족부까지] (Long leg Splint)	120	70
자-615라 단하지 [하퇴로부터 족부까지] (Short Leg Splint)	80	50

(고시 제2008-80호, '08.8.1. 시행)

IV-5. 합성수지스프린트의 인정기준

- 합성수지스프린트 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열가소성수지 재질(Poly vinyl acrylate 또는 Vinyl acetate copolymer 등)은 치료기간 중 1개 인정함.
- 재사용이 불가능한 습기경화형 폴리우레탄수지 재질(Poly Roll 등)은 골정복 및 인대 고정의 유지가 곤란한 다음의 경우에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 다 음 -

- 가. 환부의 부종감소로 인하여 골정복 및 인대고정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 나. 골정복 및 인대고정 중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다. 부목 고정 후 압박으로 인한 통증이나 신경증상이 발생한 경우

(고시 제2013-208호, '14.1.1. 시행)

IV-6. 골절환자 견인술(Traction) 시행시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대의 별도 산정여부

골절환자 견인술(Traction) 시행시 사용하는 K-wire, Steinman pin은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holder (K-wire, Steinman pin)는 병원준비물이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IV-7. 자65나 피부견인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별도 산정여부

자65나 피부견인술(Skin Traction) 시 사용하는 Skin Traction Strip은 관련 행위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8-281호, '19.1.1. 시행)

IV-8. Drill Bit의 급여여부

Drill Bit는 체내 고정용 나사를 삽입하기 위하여 구멍을 뚫는데 사용하며 소독하여 수회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 제제이므로 소정 수술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IV-9. Intramedullary supra-condylar Nail Set의 Nail 고정재료인 Stable-Lock Nut & Step Screw의 별도 산정여부

Stable-Lock Nut & Step Screw는 이미 등재되어 있는 Intramedullary supra-condylar Nail Set의 Nail을 고정하는 Locking Screw 대신 사용하는 바, 등재된 Set품목 내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1-40호, '01.7.1. 시행)

IV-10. 금속 재질의 요골두 치환용 치료재료(Bipolar Radial Head Prosthesis 등)의 인정기준

- 급성 요골두 골절중 분쇄가 심하여 내고정이 어려운 제3형 골절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 가. 요골두골절을 동반한 주관절 탈구(제4형)
- 나. 내측 측부인대 동반손상
- 다. 동반되거나 지연된 외측 측부인대 기능부전
- 라. 주두와 요골두 골절이 동반된 Monteggia 변형(variant)
- 마. 구상돌기 골절 동반
- 바. 동반 원위 요척관절 손상

2. 과거 요골두를 제거한 후 속발한 합병증(주관절의 만성 불안정, 특히 외반 불안정, 후외반 회전 불안정, 요골의 근위 이동으로 인한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과 통증, 회전 제한 등)으로 인한 재건술.

* 참고사항: 수기로는 자71나(2)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주관절)에 해당

(고시 제2009-135호, '09.8.1. 시행)

IV-11. Unreamed Femoral Nail의 급여기준

Unreamed Femoral Nail Set(UFN)는 다듬질(reaming)없이 못박음(nailing)하여 수술시간과 골유합 기간 단축, 혈액손실 감소, 감염예방 등의 효과가 있어 급여대상으로 하며, 골절 상태에 따라 추가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Nail용 선택 사용 품목인 spiral blade, locking sleeve는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17-173호, '17.10.1. 시행)

IV-12. Proximal 또는 Reconstruction nail set의 급여기준

Proximal 또는 Reconstruction nail set는 대퇴골 골절에 골수내로 직접 삽입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 가. Proximal nail set: Compression Hip Screw로는 고정이 어려운 대퇴경부골절(Femur Neck Fx)이나 대퇴전자부 골절(Femur Trochanteric Fx)
- 나. Reconstruction nail set: 대퇴 경부골절(Femur Neck Fx)과 대퇴간부골절(Femur Shaft Fx)이 Combine된 경우

(고시 제2017-91호, '17.6.1. 시행)

IV-13. ANGULAR STABLE LOCKING SYSTEM 급여기준

골절치료시 사용하는 ANGULAR STABLE LOCKING SYSTEM은 Nail의 선택사용품으로 흡수성 재질의 SLEEVE를 끼워 사용하여 ANGULAR STABILITY를 높여주는 재료로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게 고정력을 얻기 어려운 경우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22-110호, '22.5.1. 시행)

IV-14.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급여기준

1. 자가골을 대체하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는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가.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 나.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 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 또는 골다공증($T\text{-score} \leq -2.5$: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된 값)
- 라. 안면-두개골 수술 시
- 바. 사지 및 골반골 수술 시 골결손이 심해 자가골 이식만으로 부족한 경우
- 사. 수술 중 허혈성 속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 아. 악골에 골결손이 심해 자가골 이식이 어려운 경우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상기 1., 2.의 경우에도 다음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 가. 골대체제간의 병용 사용
- 나. 슬관절치환술시 수술과정에서 기구 장착을 위해 발생하는 원위 대퇴골 골수강내 구멍(intramedullary hole)을 메우는데 사용한 경우

(고시 제2023-85호, '23.5.1. 시행)

IV-15. 골시멘트(Bone Cement) 혼합기의 급여기준

골시멘트(Bone Cement) 혼합기는 골시멘트 분말과 액체를 혼합하고 혼합된 시멘트를 수술부위에 넣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식약처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가. 적응증
 - 1) 인공관절치환술
 - 2) 골다공증성 골절환자에서의 골시멘트 보강술
- 나. 골시멘트 혼합 방식: 도수 또는 진공
- 다. 혼합기 형태: Bowl 또는 Syringe Type

(고시 제2023-119호, '23.7.1. 시행)

IV-16. 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

1. 수용성 합성물질로 만들어진 뼈 지혈제는 BONE WAX에 비해 뼈 생성 및 골 융합 용이성, 뼈 감염을 방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하되, 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 한하여 사용량을 5g까지 인정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다음의 경우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 가. 상기 1항의 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서 인정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나. 65세 미만의 흉골 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
- 다. 출혈이 많은 수술인 골반골절 수술
- 라. 비구골절 수술
- 마. 장관골의 관혈적 정복술
- 바. 척추수술
- 사. 인공관절 삽입술

(고시 제2023-293호, '24.1.1. 시행)

IV-17.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 급여기준

지혈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급여기준 이외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로 적용함.

- 다 음 -

- 가. 급여대상
 - 1) 간절제술(자722), 간파열봉합술(자724), 췌장수술(자751, 자752, 자754, 자756, 자757, 자758, 자759, 자816), 간, 췌, 십이지장절제술(자723)
 - 2) 개두술, 경막을 여는 수술(자462, 자462-1, 자463, 자464, 자465, 자466, 자468, 자471, 자472, 자473, 자473-1, 자476, 자477, 자478, 자479, 자480-1, 자480-2, 자34나, 자482나 척추신경근절제술(Spinal Rhizotomy))
 - 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자164, 자168, 자170, 자170-1, 자170-2, 자181, 자183, 자184), 개심술 [인공판막치환술(자179), 복잡심장수술(자180, 자185) 등]
 - 4) 척추수술(자469, 자467-1)
 - 5) 장기이식(간절제술[이식용](생체) 등)

나. 급여개수: 한 수술 당 1개

다. 사용 인정기준

- 1) 상기 수술에서 한 수술 당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1종을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Applicator형은 상기 수술을 복강경/흉강경으로 시행한 경우 인정함
- 2) 상기 가. 급여대상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나. 급여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2종 이상 중복 사용한 경우 또는 국소지혈제(약제)와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소견서 참조하여 사례 별로 인정함.

(고시 제2024-39호, '24.3.1. 시행)

IV-18. 근막내 압력계 주사기 급여기준

구획증후군(compartment syndrome) 진단을 위해 너774 조직압의 측정[설치에서 제거까지, 치료기간 중 1회 산정] 검사 시 사용하는 근막내압력계주사기는 입원환자에서 임상증상(5P)으로 확실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 1개를 인정하되, 하퇴부인 경우에는 최대 4개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 5P(Pain, Pallor, Paresthesia, Paralysis, Pulselessness)

(고시 제2018-281호, '19.1.1. 시행)

IV-19. 진공음압창상 처치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1. 진공음압창상처치(창상부위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음압 장비와 연결하여 불순물을 흡인하는 치료방법)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진공음압창상처치 전의 진료 기록(창상의 크기와 깊이 등 명시)과 해당 환부의 사진이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진공음압창상처치용 드레싱류

- 1) 육아조직 형성이 필요한 급성 개방성 창상 중에서 다른 국소치료로는 육아조직 형성 촉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 2) 만성 개방성 창상 중에서 당뇨병성 궤양, 압박성 궤양 :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 3) 그물망형 이식(Meshed graft), 피판(Flap) : 3개 이내/주, 2주 이내로 인정

나.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 상기 가.1)~3)에 사용 시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2. 상기 1. 급여대상의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금기증

- 가. 딱지가 있는 괴저성 조직
- 나. 아직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골수염
- 다. 장(腸)이 아닌 진료하지 않은 루(瘻) (Non-enteric and unexplored fistulas)
- 라. 악성 상처(Malignancy in the wound)
- 마. 노출된 맥관(脈管)
- 바. 노출된 신경(Nerves)
- 사. 노출된 문합부위(Anastomotic site)
- 아. 노출된 장기(Organs)
- 자. 상처부위에 암(cancer)이 있는 경우

(고시 제2018-59호, '18.4.1. 시행)

V. 외상 분야 신의료기술 신청 항목 중 심사기준 운용 항목

V-1.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 2를 이용한 골 이식 시 수가 산정방법

외상성 상하지 급성골절, 요추 유합술(단분절 후외방 유합술, 단분절 전방/사측방 추체간 유합술) 환자에서 재조합 골형성 단백질 2를 적용 시 행위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 적 수술의 범주에 해당됨.

다만, 골이식술의 급여기준 내 시술 시 자-31-1 골이식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아울러,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21- 102호)

V-2. 진공음압창상처치 Vacuum-Assisted Closure Therapy(Negative Pressure Wound Therapy)

Dressing 재료 교환당일에는 자-2-1 가(2) 염증성 처치, 교환당일이 아닌 경우에는 자-2-1가(1) 단순처치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고시 제2009-214호)

V-3.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골유합술 Minimally invasive plate osteosynthesis

상완골, 경골 골절환자에게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골유합술(MIPO)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60-가.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관혈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14-126호)

Part 4

관절경

견관절

I. 견관절 분야 관절경 수술 수가목록표

II. 회전근개 봉합술

III. 견관절 불안정증 및 관절와순 수술

IV. 석회화건염

수부

I. 수부 분야 수가목록표

II. 연골성형술

III. 기타관절경수술

고관절

I. 고관절 분야 수가목록표

II. 고관절 관절경술

슬관절

I. 관절경: 슬관절 분야 수가목록표

II. 반월상연골(Meniscus)

III. 인대(Ligament)

IV. 연골(cartilage)

V. 슬개대퇴(Patellofemoral)

VI. 기타수술

VIII. 수술관련재료

족부족관절

I. 족부족관절 분야 수가목록표

II. 족부족관절 관절경 수술

III. 관절경 수술 산정 사례

IV. 수술관련 재료

척추

I. 관절경: 척추 분야 수가목록표

II. 척추 내시경 수술

Part 4 관절경 견관절·수부·고관절·슬관절·족부족관절·척추

견관절

I. 견관절 분야 관절경 수술 수가목록표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1.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성형술	견봉성형술	자93-1가(1)	N1010	3,926.56
관절막 절제술	유착박리술 및 관절막 절제술	자93-1가(2)	N1011	3,926.56
일차 봉합술	건 파열 봉합술 - 2.5cm 미만 (1개 힘줄 복원 수술의 난이도 감안)	자93-1가(3)	N1012 (가)	6,243.66
	건 파열 봉합술 - 2.5cm 미만 - 극상건, 극하건 파열 봉합과 견갑하건 파열 봉합을 동시에 하는 경우 (2개 힘줄 복원 수술의 난이도 감안)	자93-1가(3)	N1013 (가)주	7,223.14
	건 파열 봉합술 - 2.5cm 이상 (2개 힘줄 복원 수술의 난이도 감안)	자93-1가(3)	N1014 (나)	7,223.14
	건 파열 봉합술 - 2.5cm 이상 - 극상건, 극하건 파열 봉합과 견갑하건 파열 봉합을 동시에 하는 경우 (3개 힘줄 복원 수술의 난이도 감안)	자93-1가(3)	N1015 (나)주	8,872.55
상부 관절막 재건술 (SCR)	상부 관절막 재건술	자93-1가(4)	N1016	7,921.92
	자가대퇴근막 사용시	자93-1가(4)	N1016	7,921.92
	상부 관절막 재건술 +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 자91	+ N0911	+ 1,874.73
	Biceps Re-routing 상부 관절막 재건술 + (부) 건박리술	자93-1가(4) + (부) 자94	N1016 + (부) N0941	7,921.92 + (부) 2,932.98
재봉합술	회전근개 재봉합술	자93-1가(5)	N1017	8,872.55
동반 수술				
이두건 절제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두건 고정술	건박리술	자94	(부)N0941	2,932.98
원위 쇄골 절제술	쇄골절제술	자51	(부)N0510	3,529.53
관절낭 유리술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포함]-견관절	자70-나	(부)N0700	3,886.41
Nerve release	신경성형술 [감압, 박리 등]-중요말초신경 [사지부, 구간 등]	자459-다	(부)S4595	3,616.08
Muscle advancement	근막절개술-단순 절개	자92-2가	(부)N0922	2,185.48
Latissimus dorsi or Pectoralis major transfer	건및인대성형술-복잡한 것-근에 대한 봉합술, 이식술, 이형술, 교환술을 실시한 경우	자93-나주	(부)N0934	4,779.31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Lower Trapezius Transfer (Tendon graft 사용)	건및인대성형술-복잡한것[이식, 이전, 교환, 인공건성형]	자93-나	(부)N0932	5,328.79
2. 견관절 불안정증 및 관절와순 수술				
단순 관절와순 봉합술	상부 관절와순 봉합술	자93-1나(1)	N1018	3,505.86
	단순 관절와순 수술	자93-1나(2)	N1019	6,243.66
복합 관절와순 봉합술 or 재봉합술	복합 관절와순 수술	자93-1나(3)	N1020	7,223.14
뼈이식술 (Bone augmentation)	오구돌기 이전술	자93-1나(4)	N1021	7,921.92
3. 석회화건염				
석회 제거술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포함]-견관절	자70-나	N0700	3,886.41

II. 회전근개 봉합술

II-1. 견봉성형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견봉성형술	견봉성형술	자93-1가(1)	N1010	3,926.56

보험인정기준

고시 제2023-242호(행위)

자93-1가(1)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회전근개수술 [견봉성형술 포함]-견봉성형술
: 회전근개 복원술이 필요하지 않은 견봉성형술 또는 견봉하 감압술을 실시한 경우 산정함.

- 적절한 기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등)이 지속되는 경우에 인정함.

II-2. 관절막 절제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관절막 절제술	유착박리술 및 관절막 절제술	자93-1가(2)	N1011	3,926.56

보험인정기준

고시 제2023-242호(행위)

자93-1가(2)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회전근개수술 [견봉성형술 포함]-유착박리술 및 관절막절제술
: 심한 구축이 있어 유착박리술과 관절막 절제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산정함.

- 적절한 기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등)이 지속되는 경우에 인정함.

II-3. 일차 봉합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일차 봉합술	건 파열 봉합술 - 2.5cm 미만 (1개 힘줄 복원 수술의 난이도 감안)	자93-1가(3)(가)	N1012	6,243.66
	건 파열 봉합술 - 2.5cm 미만 - 극상건, 극하건 파열 봉합과 견갑하 건 파열 봉합을 동시에 하는 경우 (2개 힘줄 복원 수술의 난이도 감안)	자93-1가(3)(가)주	N1013	7,223.14
	건 파열 봉합술 - 2.5cm 이상 (2개 힘줄 복원 수술의 난이도 감안)	자93-1가(3)(나)	N1014	7,223.14
	건 파열 봉합술 - 2.5cm 이상 - 극상건, 극하건 파열 봉합과 견갑하 건 파열 봉합을 동시에 하는 경우 (3개 힘줄 복원 수술의 난이도 감안)	자93-1가(3)(나)주	N1015	8,872.55

보험인정기준

고시 제2023-242호(행위)

자93-1가(3)(가)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회전근개수술 [견봉성형술 포함]-건 파열 봉합술-2.5cm 미만 (1개 힘줄 복원 수술의 난이도 감안)

- 1) 2.5cm 미만의 극상건·극하건 파열을 봉합하는 경우 산정함.
- 2) 2.5cm 미만의 견갑하건 파열을 봉합하는 경우 산정함.

자93-1가(3)(가)주.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회전근개수술 [견봉성형술 포함]-건 파열 봉합술-2.5cm 미만 극상건·극하건 파열 봉합과 견갑하건파열 봉합을 동시에 하는 경우 (2개 힘줄 복원 수술의 난이도 감안)

- 1) 2.5cm 미만의 극상건·극하건 파열과 견갑하건 파열을 동시에 봉합하는 경우 산정함.

자93-1가(3)(나)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회전근개수술 [견봉성형술 포함]-건 파열 봉합술-2.5cm 이상 (2개 힘줄 복원 수술의 난이도 감안)

- 1) 2.5cm 이상의 극상건·극하건 파열을 봉합하는 경우 산정함.
- 2) 2.5cm 이상의 견갑하건 파열을 봉합하는 경우 산정함.

자93-1가(3)(나)주.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회전근개수술 [견봉성형술 포함]-건 파열 봉합술-2.5cm 이상 극상건·극하건 파열 봉합과 견갑하건파열 봉합을 동시에 하는 경우 (3개 힘줄 복원 수술의 난이도 감안)

- 1) 2.5cm 이상의 극상건·극하건 파열과 견갑하건 파열을 동시에 봉합하는 경우 산정함.

* 극상건·극하건 파열(후상부 회전근개 파열) 봉합은 극상건 또는 극하건, 극상건과 극하건 전체 파열의 앞뒤 길이 또는 퇴축된 길이를 2.5cm 기준으로 산정함.

* 극상건·극하건 파열과 동시에 봉합하는 견갑하건파열의 경우, 부분 파열이 건 두께의 50%이상에 해당하며 상완골 소결절의 해부학적 부착 부위 노출이 확인될 때 인정함.

수술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보험인정기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96호, 2022. 8. 18.)

가. 기술명

- 한글명 : 수술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 영문명 : Intraoperative Autologous Platelet Rich Plasma Application

나. 사용목적

- 재발 방지 및 통증 완화

다. 사용대상

- 회전근개봉합술이 필요한 회전근개 파열 환자

라. 시술방법

- 회전근개 봉합술(Rotator cuff repair)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을 회전근개 손상 부위에 주입

마.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 수술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은 문헌에서 관련 합병증 및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한 기술임
- 수술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은 회전근개 봉합술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을 주입한 군이 미주입군에 비해 재파열률이 낮았으며 수술 후 통증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유효한 기술임
- 따라서, 수술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은 회전근개봉합술이 필요한 회전근개 파열 환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및 통증을 완화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임

II-4. 상부 관절막 재건술 (SCR)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상부 관절막 재건술 (SCR)	상부 관절막 재건술	자93-1가(4)	N1016	7,921.92
	자가대퇴근막 사용시	자93-1가(4)	N1016	7,921.92
	상부 관절막 재건술 +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 자91	+ N0911	+ 1,874.73
	Biceps Re-routing 상부 관절막 재건술 + (부) 건박리술	자93-1가(4) + (부) 자94	N1016 +(부) N0941	7,921.92 + (부) 2,932.98

보험인정기준

고시 제2023-242호(행위)

자93-1가(4)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회전근개수술 [견봉성형술 포함]-상부 관절막 재건술 : 봉합이 불가능한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시 산정함.

- 자가대퇴근막 (Autograft) 사용시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N0911)을 주수술로 추가 산정
- Biceps Re-routing시 자94 건박리술 (N0941)을 부수술로 추가 산정

II-5. 재봉합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재봉합술	회전근개 재봉합술	자93-1가(5)	N1017	8,872.55

보험인정기준

고시 제2023-242호(행위)

자93-1가(5)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회전근개수술 [견봉성형술 포함]-회전근개 재봉합술 : 회전근개가 재파열되어 재봉합한 경우 산정함.

II-6. 동반 수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이두건 절제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두건 고정술	건박리술	자94	(부)N0941	2,932.98
원위 쇄골 절제술	쇄골절제술	자51	(부)N0510	3,529.53
관절낭 유리술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포함]-견관절	자70-나	(부)N0700	3,886.41
Nerve release	신경성형술 [감압, 박리 등]-중요말초신경 [사지부, 구간 등]	자459-다	(부)S4595	3,616.08
Muscle advancement	근막절개술-단순 절개	자92-2가	(부)N0922	2,185.48
Latissimus dorsi or Pectoralis major transfer	건밋인대성형술-복잡한 것-근에 대한 봉합술, 이식술, 이행술, 교환술을 실시한 경우	자93-나주	(부)N0934	4,779.31
Lower Trapezius Transfer (Tendon graft 사용)	건밋인대성형술-복잡한 것 [이식, 이전, 교환, 인공건성형]	자93-나	(부)N0932	5,328.79

보험인정기준

고시 제2023-242호(행위)

자93-1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과 동시 실시한 이두건 고정술(Biceps tenodesis)은 자94 건박리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로 산정하되, 이두건 절단 후 고정시키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함.

- 다 음 -

- 가. 관절경 소견 상 상완이두근 장두의 50% 이상의 부분 파열이거나 상완이두근구(Bicipital groove)에서의 탈구 또는 아탈구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 나. 관절경 소견 상 상완이두근 장두의 50% 이하의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수술 전 신체검사 상 상완이두근구(Bicipital groove)의 압통이나 적절한 이학적 검사 (Yergason test, Speed test 등) 양성 등의 소견이 확인되어 명백한 이두건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 다. SLAP 병변의 치료를 위해 상완이두근 장두의 견고정술이 필요한 경우
- 라. 견갑하건 봉합술과 동반하여 상완이두근 장두의 견고정술이 필요한 경우

자93-1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과 동시 실시한 원위쇄골절제술(Distal clavicle resection)은 자51 쇄골절제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로 산정하되, 원위쇄골 상부까지 완전 절제한 경우에 한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함.

- 다 음 -

- 가. 수술 전 실시한 신체검사(압박 테스트(Compression test), Lidocaine test 등)에서 견봉-쇄골 관절의 압통 등의 소견이 확인되며, 영상검사로 일반 방사선 사진과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에서 견봉-쇄골 관절의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나. 수술 전 실시한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또는 수술 중 관절경 소견 상 견봉-쇄골 관절 주위의 골극이나 원위 쇄골의 골극 또는 원위 쇄골에 의한 회전근개의 충돌이 확인되는 경우

- ① 이두건 절제술 시 회전근개 수술에 대해서만 주수술코드 적용
- ② 관절낭 유리술 시 일련의 시술로 조정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심사기준실 회의 결과이나 선택적으로 심사자 판단 하에 자70 사지관절절제술-견관절을 부수술로 인정.

- 인정 기준 -

회전근 개 파열과 견관절 강직을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 중

- 1) 수술 전 운동 범위 기록이나 사진을 첨부하고
- 2) 관절경상 inflammatory capsule을 사진 찍고
- 3) 실제 관절경적 관절막 해리술하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① Nerve release 시 Transverse scapular ligament 의 절단 전/후 사진을 첨부하고 Suprascapular nerve 감압을 시행하였음을 명시

- ② Muscle advancement 시 등(back)에 별도의 절개를 한 사진을 첨부하고, 극상근 전체 박리를 하여 이동시켰음을 수술기록지에 기입 필요

III. 견관절 불안정증 및 관절와순 수술

III-1. 단순 관절와순 봉합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단순 관절와순 봉합술	상부 관절와순 봉합술	자93-1나(1)	N1018	3,505.86
	단순 관절와순 수술	자93-1나(2)	N1019	6,243.66

보험인정기준

고시 제2023-242호(행위)

자93-1나(1)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관절와순수술-상부 관절와순 봉합술

: 상부관절와순 병변 복원술 (Superior Labrum from Anterior to Posterior, SLAP Repair) 시 산정함.

자93-1나(2)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관절와순수술-단순 관절와순 수술

가) 방카트병변 복원술(Bankart Repair) 시 산정함.

나) 전방 또는 후방 관절막 이동술(Capsular Plication) 시 산정함.

III-2. 복잡 관절와순 봉합술 or 재봉합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복잡 관절와순 봉합술 or 재봉합술	복잡 관절와순 수술	자93-1나(3)	N1020	7,223.14

보험인정기준

고시 제2023-242호(행위)

자93-1나(3)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관절와순수술-복잡 관절와순 수술

- 가) 골성 방카트 복원술(Bony Bankart Repair) 시 산정함.
 나) 방카트 병변 복원술(Bankart Repair)과 렘프리지지(Remplissage) 술식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산정함.
 다) 관절와(Glenoid) 180도(절반)를 초과하는 관절와순 봉합술(Panlabral Repair) 시 산정함.
 라) 방카트 병변의 재봉합술(Revision Bankart Repair) 시 산정함.
 마) 다방향성 불안정성(Multidirectional Instability, MDI)에서 관절막 이동술(Capsular Plication) 시 산정함.

III-3. 뼈이식술(Bone augmentation)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뼈이식술(Bone augmentation)	오구돌기 이전술	자93-1나(4)	N1021	7,921.92

보험인정기준

고시 제2023-242호(행위)

자93-1나(4)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관절와순수술-오구돌기 이전술

- : 견관절 불안정성으로 오구돌기 이전술(Coracoid Process Transfer) 시 산정함.
 ● Bone block procedure에서 allo-bone 사용시 추가 산정 없음
 ● Bone block procedure에서 auto-bone 사용시 골채취를 타부위인 골반 등에서 하는 경우 자31 골편절제술(N0311) 100% 청구, 동부위인 어깨에서 하는 경우 (distal clavicle, scapular spine 등), 골편절제술을 부수술로 청구

IV. 석회화건염

IV-1. 석회 제거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석회 제거술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포함]-견관절	자70-나	N0700	3,886.41

보험인정기준

고시 제2023-242호(행위)

석회화 건염(Calcific Tendonitis)에 석회 침착물 제거 시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하되, 동시에 회전근개 건 파열 봉합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93-1가(3)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회전근개수술 [견봉성형술 포함]-건 파열 봉합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 관절경 제거술만 시행한 경우 관절경 치료재료 정액수가 (N0031003)와 관절경하 수술 (Q9923) 산정 불가

수부

I. 수부 분야 수가목록표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연골성형술				
연골성형술	연골성형술 단순	자69-1	N0693	3,757.53
기타 관절경 수술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 단순	자70(다)	N0703	3,621.05
주관절, 완관절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 복잡	자70(다)주	N0708	4,341.71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 지관절	자70	N0704	1,535.63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 단순	자70(다)	N0703	3,621.05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 복잡	자70(다)주	N0708	4,341.71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 지관절	자70	N0704	1,535.63

II. 연골성형술

II-1. 연골성형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연골성형술	연골성형술 단순	자69-1	N0693	3,757.53

보험인정기준

연골 재생을 위한 연골성형술(Chondroplasty)의 수가는 시술과정 및 난이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또는 다발성 천공술(Multiple drilling)의 방법으로 연골손상의 크기가 1.5cm² 이상 인 경우에 시행

: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의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

나. '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또는 다발성 천공술(Multiple drilling)의 방법으로 연골손상의 크기가 1.5cm² 미만 인 경우에 시행한 경우' 또는 '관절연마(Abrasion) 등 기타 방법으로 시행한 경우'

: 자-70 사지관절절제술의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 다만, 타 수술 시 부수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12-153호, '12.12.1. 시행)

III. 기타관절경수술

III-1.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 단순	자70(다)	N0703	3,621.05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 복잡	자70(다)주	N0708	4,341.71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 지관절	자70	N0704	1,535.63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 단순	자70(다)	N0703	3,621.05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 복잡	자70(다)주	N0708	4,341.71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 지관절	자70	N0704	1,535.63

보험인정기준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Synovectomy)은 자70 사지관절절제술 [활액막절제를 포함] 해당 부위별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관절경하 수술 시 사용된 생리식염수는 총사용량이 500ml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고시 제2023-56호, '23.3.29. 시행)

복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공고 제 2019-429호)

-아 래-

- 결핵, 류마티스, 통풍, 색소용모결절성 활액막염(PVNS), 화농성 관절염으로 광범위한 활액막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과거수술 후 호전되지 않아 전원되어 재수술하는 경우

('14.8.1. 시행)

고관절

I. 고관절 분야 수가목록표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관절경 검사	관절경검사	나750-주	E7501 (치료재료비용) 청구	2,911.48
관절와순 수술	관절와순절제술,	자70가	N0701	5420.71
	관절와순절제술 - 복잡	자70가-주	N0706	6383.79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	자70가	N0701	5420.71
	관절와순봉합술	자70가	N0701	5420.71
		자93가	N0931	3728.23
관절와순재건술	관절와순재건술	자70가	N0701	5420.71
		자93나	N0932	5328.79
대퇴골성형술 및 비구성형술	대퇴골성형술 또는 비구골성형술	자70가	N0701	5420.71
	대퇴골성형술 +비구골성형술	자72가	N0721	9197.62
관절와순봉합술 + 대퇴골성형술 and/or 비구골성형술	관절와순봉합술 + 대퇴골성형술 and/ or 비구골성형술	자93가	N0931	3728.23
		자72가	N0721	9197.62
활액막절제술	광범위 활액막 절제술 또는 재수술	자70가	N0701	5420.71
	광범위 활액막 절제술 또는 재수술 - 복잡	자70가-주	자70가-주 N0706	6383.79

II. 고관절 관절경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Arthroscopic exploration	관절경검사	나750-주	E7501 (치료재료비용) 청구	2,911.48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모두 금액이 하나로 통일 되었습니다.)

가. 관절경·복강경·흉강경하 수술시

1)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시행 시에만 인정함.

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관절경검사 - 고관절(나75주, E7501)

*고관절부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2,911.48점을 산정한다.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Labral resection / debridement 등	관절와순절제술,	자70가	N0701	5420.71
	관절와순절제술 - 복잡	자70가-주	N0706	6383.79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 - 고관절(자70가, N0701)

* 관절와순절제술 복잡 수술 산정 기준

(1)재수술: 사지관절절제술 복잡[활막절제를 포함] - 고관절(자70가, N0706)

Foreign body removal (bony fragment 등)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	자70가	N0701	5420.71
---	-------------	------	-------	---------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은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 - 고관절(자70가, N0701)의 소정점수(관절경수기로 포함)로 준용하여 산정함. 단, 단순 유리체제거술만 시행한 경우 관절경 치료재료대를 산정할 수 없음.

*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Labral repair	관절와순봉합술	자70가	N0701	5420.71
		자93가	N0931	3728.23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 - 고관절(자70가, N0701) + 건 및 인대성형술, 간단(자93가, N0931)

Labral reconstruction	관절와순재건술	자70가	N0701	5420.71
		자93나	N0932	5328.79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 - 고관절(자70가, N0701) + 건 및 인대성형술, 복잡(자93나, N0932)

Femoroplasty or acetabuloplasty	대퇴골성형술 또는 비구골성형술	자70가	N0701	5420.71
---------------------------------	------------------	------	-------	---------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 - 고관절(자70가, N0701)

* 대부분의 경우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 - 고관절(자70가, N0701)으로 수술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제관절성형술 - 고관절(자72가, N0721)'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심평원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인정/조정될 수 있으니 수술료 산정시 주의를 요합니다.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Femoroplasty + acetabuloplasty	대퇴골성형술 + 비구골성형술	자72가	N0721	9197.62

절제관절성형술 - 고관절(자72가, N0721)

Labral repair + Femoroplasty and/or acetabuloplasty	관절와순봉합술 + 대퇴골성형술 and/or 비구골성형술	자93가	N0931	3728.23
		자72가	N0721	9197.62

건 및 인대성형술, 간단(자93가, N0931) + 절제관절성형술 - 고관절(자72가, N0721)

Radical synovectomy or revision surgery (Excision of Joint [Including Synovectomy])	광범위 활막 절제술 또는 재수술 광범위 활막 절제술 또는 재수술 - 복잡	자70가	N0701	5420.71
		자70가-주	N0706	6383.79

관절경하 활막절제술(Synovectomy)은 자70 사지관절절제술의 해당부위별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된 생리식염수는 총사용량이 500ml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 사지관절절제술 복잡 수술 산정 기준

- 1) 결핵, 류마티스, 통풍, 색소용모결절성 활막염(PVNS), 화농성관절염으로 광범위한 활막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2) 과거수술 후 호전되지 않아 전원되어 재수술 하는 경우
- 3) 활막성 연골종증(synovial chondromatosis) 제거술도 포함

슬관절

I. 관절경: 슬관절 분야 수가목록표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반월상연골 (Meniscus)				
	반월판 연골절제술-내측 혹은 외측-단순	자82가	N0821	3,085.44
	반월판 연골절제술-내측 혹은 외측-복잡	자82가-주	N0826	4,003.12
	반월판 연골절제술-내외측 동시-단순	자82나	N0822	4,011.07
	반월판 연골절제술-내외측 동시-복잡	자82나-주	N0827	5,204.06
	반월상연골 봉합술-내측 혹은 외측-단순	자82-1가	N0823	4,319.61
	반월상연골 봉합술-내측 혹은 외측-복잡	자82-1가-주	N0828	5,604.37
	반월상연골 봉합술-내외측동시-단순	자82-1나	N0824	6,047.46
	반월상연골 봉합술-내외측동시-복잡	자82-1나-주	N0829	7,846.12
	반월상연골 이식술 (Meniscal Allograft transplantation)-단순	자82-2	N0825	7,869.29
	반월상연골 이식술 (Meniscal Allograft transplantation)-복잡	자82-2주2	N0820	9,826.53
인대 (Ligament)				
	십자인대성형술-단순	자88	N0880	5,867.74
	십자인대성형술-복잡	자88주	N0881	7,195.70
	십자인대접합술	자89	N0890	4,298.60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1	N0911	1,874.73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3.13
	건 및 인대 성형술-단순	자93가	N0931	3,728.23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연골 (Cartilage)				
	자가골연골이식술-단순	자69-1	N0693	3,757.53
	자가골연골이식술-복잡	자69-1주	N0695	4,853.25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채취	자69가	N0691	2,813.14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골막이용	자69나(1)	N0692	4,100.96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피브린글루이용	자69나(2)	N0694	3,751.78
슬개대퇴 (Patellofemoral)				
	건 및 인대 성형술-단순	자93가	N0931	3,728.23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1	N0911	1,874.73
	사지골절정복술-복잡	자60가(5)주	N0614	6,819.29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전완골,하퇴골-요골과 척골중 하나, 경골과 비골중 하나	자30-1다(1)	N0304	5,923.37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기타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슬관절-단순	자70다	N0710	3,886.41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슬관절-복잡	자70다-주2	N0718	4,806.94
	관절경검사	나750	E7500	2,030.49

II. 반월상연골(Meniscus)

II-1. 반월상연골절제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반월상연골 절제술: 내측 혹은 외측	반월판 연골절제술-내측 혹은 외측-단순	자82가	N0821	3,085.44
반월상연골 절제술: 내외측동시	반월판 연골절제술-내외측 동시-단순	자82나	N0822	4,011.07
반월상연골 절제술: 내측 혹은 외측(복잡)	반월판 연골절제술-내측 혹은 외측-복잡	자82가-주	N0826	4,003.12
반월상연골 절제술: 내외측동시(복잡)	반월판 연골절제술-내외측 동시-복잡	자82나-주	N0827	5,204.06

보험인정기준

1. 자82 반월판 연골절제술은 영상검사 또는 관절내시경검사서 뚜렷한 파열이 확인되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가. 관절의 잠김(locking symptom)
- 나. 인대손상, 골절 등을 동반한 급성손상의 경우
- 다. 연골판봉합술 시행 중 불가피하게 절제술로 전환한 경우
- 라.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중 2가지 이상의 임상소견을 동반하는 경우

- 아 래 -

- 1) 관절삼출액
- 2) 관절면의 압통
- 3) 체중부하 또는 관절운동과 관련된 통증
- 4) 무력감(giving way)
- 5) 연골판병변 신체 검진의 양성소견

2. 단, 고도의 관절염(Kellgren-Lawrence grade IV)에서 단독으로 시행 하거나, 만성 변성에 의해 닳아해어진 (fraying) 병변에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21-244호(행위) '21.10.01. 시행)

II-2. 반월상연골 봉합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반월상연골 봉합술:내측 혹은 외측	반월상연골 봉합술-내측 혹은 외측-단순	자82-1가	N0823	4,319.61
반월상연골 봉합술:내외측동시	반월상연골 봉합술-내외측동시-단순	자82-1나	N0824	6,047.46
반월상연골 봉합술:내측 혹은 외측(복합)	반월상연골 봉합술-내측 혹은 외측-복합	자82-1가-주	N0828	5,604.37
반월상연골 봉합술:내외측동시(복합)	반월상연골 봉합술-내외측동시-복합	자82-1나-주	N0829	7,846.12

복합행위기준

자82-1 반월상 연골봉합술을 후방골 기시부에 시행할 때 Suture Anchor나 Transosseous tunnel 등을 사용하여 봉합한 경우는 '복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적용함.

(공고 제2020-340호(행위) '20.12.21. 시행)

II-3. 반월상연골이식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반월상연골 절제술: 내측 혹은 외측(복합)	반월판 연골절제술-내측 혹은 외측-복합	자82가-주	N0826	4,003.12
반월상연골 절제술: 내외측동시(복합)	반월판 연골절제술-내외측 동시-복합	자82나-주	N0827	5,204.06

보험인정기준

1. 반월상연골이식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연령: 20세~45세

나. 적응증

내측(medial meniscus) 또는 외측(lateral meniscus) 반월상연골의 아전절제술 또는 전절제술 시행(MRI, 관절경 사진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후 보존적 치료로 무릎 통증이 소실되지 않거나 급격한 퇴행성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하되, 수술 전 병변부위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아 래 -

(1) 연골의 상태

손상부위 연골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Outerbridge grade I~II)로서 퇴행성 변화가 없는 경우

(2) 슬관절 주변조직의 여건

하지 정렬(alignment)과 인대(ligament)의 안정성이 정상인 경우. 다만, 정상이 아닌 경우에 시행 시는 인대 재건술을 이식술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3) 보존적 치료기간

보존적 치료기간은 아전절제술 또는 전절제술 시행 후 내측은 1년, 외측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함.(다만, 조기시행시 그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첨부)

(4) 인정횟수: 관절 당 1회(내측 또는 외측)만 인정함.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23-293호(행위), '24.1.1. 시행)

복합인정기준

보험급여과-2502

동종 반월상연골 이식술(MAT)에 부가적으로 근위경골 절골술, 원위 대퇴골절골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미세 골절술, 골극 제거술, 자가골 연골이식술 등이 같이 필요한 환자

('14.8.1.시행)

III. 인대(Ligament)

III-1. 십자인대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전방십자인대재건술-단순	십자인대성형술-단순	자88	N0880	5,867.74
후방십자인대재건술-단순				
전방십자인대재건술-복합	십자인대성형술-복합	자88주	N0881	7,195.70
후방십자인대재건술-복합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				
후방십자인대 재-재건술				
전방 혹은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고정술	십자인대접합술	자89	N0890	4,298.60
자가건 채취 시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1	N0911	1,874.73
자가건 채취 시(골편포함)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3.13
전외측인대 재건술	건 및 인대 성형술-단순	자93가	N0931	3,728.23
외측 관절외 고정술				

복합행위기준

복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아 래-

- 십자인대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해당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
- 아래의 복잡한 술식을 시행한 경우
 - 인대 잔존 술식
 - 기본 삽입구 이외 추가로 별도의 전내측 또는 전외측 삽입구를 이용한 인대 재건술
 - 이중 다발을 이용한 인대 재건술
- 2개 이상의 인대를 동시에 재건한 경우

(2014.8.1 시행)

십자인대성형술 시 Tendon 채취 수가 산정방법

1. 십자인대성형술시 동시에 시행한 건이식(Tendon transfer)은 자88 십자인대성형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2. 십자인대성형술시 타 부위에서 Tendon을 채취한 경우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소정점수를 Tendon별로 각각 산정하되, Tendon을 골편과 같이 채취한 경우에는 자31 골편절제술 소정점수의 100%와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고시 제2023-56호(행위), '23.3.29. 시행)

III-2. 그 외 인대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후외측인대 수술-단순봉합 내측측부인대-봉합	건 및 인대 성형술-단순	자93가	N0931	3,728.23
후외측인대 수술-이식건을 이용한 재건술 내측측부인대-이식건을 이용한 재건술	건 및 인대 성형술-복합	자93나	N0932	5,328.79

IV. 연골(cartilage)**IV-1. 자가골연골이식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자가골연골이식술-단순	자가골연골이식술-단순	자69-1	N0693	3,757.53
자가골연골이식술-복합	자가골연골이식술-복합	자69-1주	N0695	4,853.25

급여인정기준

1. 슬관절 및 족관절에의 자가골연골이식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슬관절

1) 대상질병

- 박리성 골연골염
- 국소부위의 외상성 연골 또는 골연골 결손 등

2) 대상부위: femoral condyle

3) 연골손상의 크기: 1.5-4.0cm² 이하

4) 연골손상 상태: Outerbridge grade III이상 (photo, MRI, 관절경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함)

5) 대상연령: 15-55세

6) 치료재료 인정개수: 1세트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슬관절 및 족관절에 자가골연골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2024.1.1. 시행)

복잡인정기준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아 래-

- 슬관절의 경우

- 5° 이상의 심한 변형이 동반된 경우
- 연골손상크기가 3cm² 이상인 경우

(2014.8.1 시행)

연골성형술 수가 산정방법

연골 재생을 위한 연골성형술(Chondroplasty)의 수가는 시술과정 및 난이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또는 다발성 천공술(Multiple drilling)의 방법으로 연골손상의 크기가 1.5cm² 이상인 경우에 시행 :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의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

나. '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또는 다발성 천공술(Multiple drilling)의 방법으로 연골손상의 크기가 1.5cm² 미만인 경우에 시행한 경우' 또는 '관절연마(Abrasion) 등 기타 방법으로 시행한 경우' : 자-70 사지관절절제술의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 다만, 타 수술시 부수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12.12.1.부터 시행)

IV-2.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채취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채취	자69가	N0691	2,813.14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골막이용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골막이용	자69나(1)	N0692	4,100.96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피브리글루이용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피브리글루이용	자69나(2)	N0694	3,751.78

자가유래연골세포(품명: 콘드론) 급여인정기준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질병 : 대퇴과(Femur condyle)의 연골손상

나. 연골손상의 크기

- 1) 4cm²를 초과하는 단독 병변
- 2) 2cm² 이상 4cm² 이하의 단독 또는 다발성 병변: 관절경하 시술(Chondroplasty, Debridement 등) 또는 수술적 복원술(Subchondral bone stimulation - abrasion, Multiple drilling, Microfracture 등)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았을 경우(통증, 기능저하 등) 다만, 수술적 복원술을 한 경우 6개월 이상의 관찰 기간 후 투여하여야 함

다. 연골손상의 상태 : 국소적이며 전층의 연골 손상(Outerbridge III~IV)으로 손상부위 인접 연골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Outerbridgel~II)로서 체중부하 방사선 촬영(weight-bearing radiography) 상 슬관절 간격이 50%이상 유지되어 있는 경우

라. 연령 : 만 15세 ~ 만 55세

마. 투여 용량 : 시술당 1개

(고시 제2022-184호, 2022.8.1. 시행)

V. 슬개대퇴(Patellofemoral)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내측지대 중첩술 및 외측지대유리술	건 및 인대 성형술-단순	자93가	N0931	3,728.23
내측 슬개대퇴인대 재건술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자가건 채취 시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1	N0911	1,874.73
유리체 고정술	사지골절정복술-복잡	자60가(5)주	N0614	6,819.29
경골결절 이전술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전완골,하퇴골-요골과 척골중 하나, 경골과 비골중 하나	자30-1다(1)	N0304	5,923.37

수술료 산정방법

1) 내측 슬개대퇴인대 재건술 수술료 산정방법

건 및 인대성형술 복잡(이식, 이전, 교환, 인공건 성형)(자93나, N0932)을 산정

(자가건을 사용한 경우 건,인대피하단열수술(자91, N0911) 주 수술로 추가 산정함.

유리체에 대하여 고정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 슬개골골절(N0614, 관절내 골절)을 부수술로 추가 산정함.

추가적인 수술(외측지대 유리술 및 유리체 제거술 등)이 동시에 시행된 경우 수술 필요성 및 술기의 적정성이 인정된 경우 부수술로 산정함

2) 경골결절 이전술 수술료 산정

N0304 (자30-1-다,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요척골 중 하나, 경비골 중 하나)를 산정함. 내측 슬개대퇴인대 재건술 (자93나, N0932) 등과 함께 시행된 경우 절골술을 주수술로 하고 함께 시행된 수술을 부수술로 산정함.

유리체 고정술 복잡인정기준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아 래 -

(1) 해당 전문의(내과는 세부전문분야) 협진으로 아래의 질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1-1) 만성 신부전증 환자
- (1-2)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필요한 환자
- (1-3) 심혈관 스텐트를 가지고 있어 혈전제를 복용 중인 자
- (1-4) 고도의 심근 경색/협심증이 있는 자 - Goldman cardiac risk III 이상
- (1-5) 조절되지 않는 당뇨(HbA1C > 7.0) 환자
- (1-6) 간경화가 있는 환자
- (1-7) 혈액암 환자
- (1-8) 혈우병 환자 또는 혈액 응고이상인 환자
- (1-9) 고도의 폐쇄성 폐질환 환자
- (1-10) 정맥혈전색전증으로 치료 과거력이 있는 자
- (1-11) 뇌경색 등으로 aspirin보다 상위의 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

- (2) 치료 중인 상태의 류마티스 질환자로 DAS 28이 5.1 초과일 때
- (3) 말초동맥 폐색성 질환을 가진 자
- (4) 진행성 척수마비 또는 마미 증후군 환자
- (5) 병적 골절이 동반된 환자 : 원발성 골암, 전이성 골암 및 골다공증이 동반된 환자
- (6) ISS(Injury Severity Score) >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 혹은 3곳 이상의 수술을 필요로 하는 다발성 골절환자
- (7) 인공삽입물 주위 골절
- (8) 관절 내 골절
- (9) 사지골절정복술 또는 가관절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가 재발되어 재수술한 경우
- (10) 장축 1 inch 이상의 심한 골결손이 동반된 경우
- (11) G-A type III 이상의 개방성 골절, 탈장갑 손상이 있는 개방성 골절
- (12) 혈관 손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골절
- (13) 구획 증후군이 동반된 골절
- (14) 신경손상이 동반된 골절

(2014.8.1 시행)

VI. 기타수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단순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슬관절-단순	자70다	N0710	3,886.41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복잡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슬관절-복잡	자70다-주2	N0718	4,806.94
십자인대 수술 후 금속제거술 시 이차적 관절경술	관절경검사	나750	E7500	2,030.49
십자인대 수술 후 금속제거술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자60-2주	N0978	885.59

사지관절절제술 복잡기준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아 래-

- 결핵, 류마티스, 통풍, 색소용모결절성 활액막염(PVNS), 화농성관절염으로 광범위한 활액막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과거수술 후 호전되지 않아 전원되어 재수술 하는 경우

(2014.8.1 시행)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 급여인정기준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은 자70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 포함] 소정점수(관절경수기로 포함)로 준용하여 산정함.
(2023.3.29. 시행)

십자인대 수술 후 금속제거술 시 이차적 관절경술 재료대 산정 원칙

가. 산정대상

- 1) 자992가 복강경을 사용한 경우 : 복강경하(내시경하 갑상선 수술 포함) 수술 시
- 2) 자992나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 흉강경하 수술 시
- 3) 자992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관절경하 수술 시

나. 산정방법

- 1) 동일 경으로 양측 또는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1회만 산정 하며, 다른 경으로 수술할 경우는 경별로 각각 산정함.
- 2) 관혈적 수술 또는 내시경 수술(2가지 이상 수술 시에는 주된 수술)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도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다.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아 래-

- 1) 자992나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에 시행한 경우를 제외한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 교정(Nuss OP) 수술
- 2) 자992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에 시행한 경우

(고시 제2024-227호, 2024.11.1.시행)

VII. 수술관련재료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Endoscopy 하에 실시한 수술료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자992다	Q9923	918.05
관절경 치료재료			N0031003	

수술료 급여인정기준

1.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의 행위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다만, 별도 산정토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산정함.
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시에는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을 다음과 같이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산정대상

- 1) 자992가 복강경을 사용한 경우: 복강경하(내시경하 갑상선 수술 포함) 수술 시
- 2) 자992나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흉강경하 수술 시
- 3) 자992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관절경하 수술 시

나. 산정방법

- 1) 동일 경으로 양측 또는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1회만 산정 하며, 다른 경으로 수술할 경우는 경별로 각각 산정함.
- 2) 관혈적 수술 또는 내시경 수술(2가지 이상 수술 시에는 주된 수술)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도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다.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아 래 -

- 1) 자992나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에 시행한 경우를 제외한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 교정(Nuss OP) 수술
- 2) 자992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에 시행한 경우

(고시 제2024-227호, 2024.11.1.시행)

치료재료 급여인정기준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관절경·복강경·흉강경하 수술시

관절경 등을 이용한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산정함.

1) 관절경(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아래와 같이 인정함.

- 아 래 -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시행 시에만 인정함.

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2)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내시경하 유방절제술 포함, 코드 N0031001)

3) 흉강경(코드 N0031002)

다만, 특수융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 등),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HALS), 절삭기(초음파절삭기, 전파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관절경 Cannular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치료재료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160,000원 (N0031004)

연부조직 조각 및 지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체의 치료재료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다. 진단적 경검사 시

진단적 경검사 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2개까지 인정함.

라. 기타

1) 뇌실 복강간 셉트 수술시 복막유착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Peritoneal Catheter 삽입을 위한 투관침(Trocar)은 2개까지 인정함.

2)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 교정(Nuss Op)시 치료재료는 투관침(Trocar) 1개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으로 흉강경하 수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에 의하여 산정함.

(고시 제2024-227호, 2024.11.1.시행)

동종건 급여기준	<p>1) 전방십자인대(ACL) 재건 시 자가건 사용이 어려운 아래와 같은 경우 가) 여러개의 이식건이 필요한 경우 나) 자가건 중 필요한 형태의 이식건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다) 재수술로 인해 적절한 자가건이 없을 경우</p> <p>2) 후방십자인대(PCL) 재건 시</p> <p>3) 외측측부인대(LCL)와 불안정성후외측 회전 인대(PLRI) 동시 재건 시</p> <p>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p> <p>(고시 제2020-85호, '20.5.1.시행)</p>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및 측부 인대 성형술 등에 사용하는 Bio Absorbable Interference Screw 및 Staple의 인정기준	<p>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성형술 등에 사용하는 Bio Absorbable Interference Screw 및 Staple은 금속제 Interference Screw 및 Ligament Staple에 비해 가격이 고가이긴 하나 인체내 삽입시 일정기간 경과후 완전 흡수됨으로써 내고정물 제거를 위한 재수술이 필요없고, Reaction이 적다는 장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대상으로 하되,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성형술, 슬개건 재건술에 한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음.</p> <p>(고시 제2005-83호, '05.12.15. 시행)</p>
일반인대고정용 흡수성 Interference Screw (Biotenodesis Screw 등)의 급여기준	<p>1. 일반인대고정용(견,슬,소관절용)-INTERFERENCE SCREW(흡수성)는 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슬관절 전후방십자인대 및 측부인대성형술, 슬개건 재건술 나. 족관절, 완관절의 인대 재건술 Suture Anchor(봉합나사못)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Suture Anchor(봉합나사못) 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함. 다. 견관절 상완이두근건 고정술: 1개</p> <p>2. 상기 1항 나. 족관절, 완관절의 인대 재건술 시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p> <p>(고시 제2022-110호(치료재료), 2022.5.1.시행)</p>

족부족관절

I. 족부족관절 분야 수가목록표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연골수술				
연골 성형술	사지관절절제술 준용	자-70	N0703	3,621.05
	자가골연골이식술 준용	자-69-1	N0693	3,757.53
자가골연골이식술	자가골연골이식술	자-69-1	N0693	3,757.53
	자가골연골이식술 - 복잡	자-69-1	N0695	4,853.25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조-85	SZ085	3,621.05
인대수술				
인대 봉합술	건 및 인대 성형술	자-93	N0931	3,728.23
	건 및 인대 성형술 - 복잡	자-93	N0932	5,328.79
인대 재건술	건 및 인대 성형술 - 복잡	자-93	N0932	5,328.79
	관절경검사	나-750	E7500	2,030.49
	사지관절절제술	자-70	N703	3,621.05
	사지관절절제술 - 복잡	자-70	N708	4,341.71

II. 족부족관절 관절경 수술

II-1. 관절경검사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관절경적 탐침술	관절경검사 (Arthroscopy)	나-750	E7500	2,030.49

급여인정기준

2014-05-02 관절경검사 인정여부 등 4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 다 음 -

가.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등 수술료와 동시 산정된 관절경검사의 심사기준 설정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 별도의 인정기준 마련보다는 관절면 및 활막의 손상이 있는 경우, stiffness 등 객관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발목 관절에서 잠김 현상(locking), 원위경비인대결합이개(diastasis)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 선별적으로 인정하기로 함

II-2. 사지관절절제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활액절제술	사지관절절제술	자-70	N0703	3,621.05
유리체제거술	사지관절절제술	자-70	N0703	3,621.05
이물제거술, 추벽제거술	사지관절절제술	자-70	N0703	3,621.05
부골제거술	사지관절절제술	자-70	N0703	3,621.05

급여인정기준

- 다 음 -

1.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Elbow, Wrist, Ankle

- 가.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활액막 제거술, 부골제거술 등 하나 이상의 술기 시행 시 산정 가능
- 나. 2개 이상의 술기 동시 시행 시 치료재료비용(N0031003) 추가 산정 가능
- 다. 사지관절절제술과 골편절제술(N0311) 동시 산정 불가

2.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가. 결핵, 류마티스, 통풍, 색소용모결절성 활액막염(PVNS), 화농성관절염으로 광범위한 활액막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나. 과거수술 후 호전되지 않아 전원되어 재수술 하는 경우

비고: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은 자-70 사지관절절제술의 소정점수(관절경수기로 포함)로 준용하여 산정함.

(고시 제2007-46호, 2007. 6. 1. 시행)

II-3. 연골수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미세천공술 1.5cm ² 미만	사지관절절제술 준용	자-70	N0703	3,621.05
미세천공술 1.5cm ² 이상	자가골연골이식술 준용	자-69-1	N0693	3,757.53
자가골연골이식술(OATS)	자가골연골이식술	자-69-1	N0693	3,757.53
자가골연골이식술(OATS)	자가골연골이식술 - 복잡	자-69-1	N0695	4,853.25
BMAC, BMIC	자가 골수 출기세포 치료 (Autologous Bone Marrow Stem Cell Treatment)	조-85	SZ085	

급여인정기준

- 다 음 -

1. 연골 재생을 위한 연골성형술(Chondroplasty)의 수가는 시술과정 및 난이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 가. 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또는 다발성 천공술(Multiple drilling)의 방법으로 연골손상의 크기가 1.5cm² 이상인 경우에 시행: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의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
 - 1.5cm² 이상 골연골병변에 미세천공술 시행시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준용하여 산정하나, 해당 술기의 대상 연령에만 산정하는 것은 아님.
 - 나. '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또는 다발성 천공술(Multiple drilling)의 방법으로 연골손상의 크기가 1.5cm² 미만인 경우에 시행한 경우' 또는 '관절연마(Abrasion) 등 기타 방법으로 시행한 경우': 자-70 사지관절절제술의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 다만, 타 수술시 부수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비고: 고시 제2012-153호, 2012. 2. 1. 시행

2. 족관절에서의 자가골연골이식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적응증

- 박리성 골연골염
- 골 연골 결손 등

나. 대상부위: talar dome

다. 연골손상의 크기: 1.5-3.0cm²

라. 연골손상 상태

- 족관절면의 연골 손상에 대해 일차적인 관절경적 변연부 절제술(debridement) 즉 소파술(curettage)이나 천공술(drilling)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골연골성 병변이 지속적으로 손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 거골의 골연골성 병변이 연골 결손 하에 낭종(cyst)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자가 연골 이식술이 가능

마. 대상연령: 만15-55세

바. 치료재료 인정개수: 1세트

3. 족관절에서의 자가골연골이식술의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가. 적응증

- 관절절개로 도달할 수 없어 절골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
- 연골손상크기가 2cm² 이상인 경우
- 절골술을 함께 시행시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N03034 추가산정 불가

나. 상기 급여대상 이외 족관절에 자가골연골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비고: 고시 제2017-152호, 2017. 9. 1. 시행, 고시 제2022-110호, 2022. 4. 29. 시행

4. 연골결손(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 미세천공술 및 관절경 치료재료대 포함)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Autologous Bone Marrow Stem Cell Treatment)

가. 적응증

- 사용대상은 ①, ②, ③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산정한다.
 - ①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층
 - ② 외상, 박리성 골연골염(osteochondritis dissecans)으로 인한 연골 손상(ICRS grade 3-4)
 - ③ 최대 연골 손상의 크기 2~10cm² 환자

나. 시술방법은 ① 또는 ② 의 방법으로 실시한 후 산정한다.

- ① Collagen powder 또는 Hyaluronic acid membrane을 지지대로 사용하여 이식한다
- ② 자가 골수 세포 농축액을 응혈 형태로 만들어 병변 부위에 붙인 후, 그 위에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로 국내에서 허가된 골수세포 보호용 membrane(생체적합성, 생분해성, 무독성의 특성 보유)을 덮고 고정한다.

비고: 고시 제2012-169호, 2012. 12. 21. 시행

II-4. 인대수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외측 인대 봉합술	건 및 인대 성형술	자-93	N0931	3,728.23
외측 인대 봉합술 및 원위경비인대 봉합술	건 및 인대 성형술 - 복잡	자-93	N0932	5,328.79
삼각 인대 봉합술	건 및 인대 성형술	자-93	N0931	3,728.23
인대 재건술	건 및 인대 성형술 - 복잡	자-93	N0932	5,328.79

급여인정기준

1. 간단한 것 [절제, 봉합, 박리] Simple
2. 복잡한 것 [이식, 이전, 교환, 인공건 성형] Complex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1. 굴곡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200%까지 산정

2. 신전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개: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2-3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4-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라)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비고: 실제 건·인대 봉합술의 경우 급여기준의 전신이 된 근, 건의 절제술에 비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며, 해당 술기 자체도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으므로, 해당 시술의 보상 차원에서 6개 이상의 시술시 가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0% → 20%) 고시함.

(고시 제 2017-118호, 2017. 7. 1. 시행)

III. 관절경 수술 산정 사례

수술명	수술료 산정
관절경적 활액막절제술 + 개방적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신전지지대 봉합술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 N0931) 1.0 +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 (자-70, N0703) 0.5(0.7) + 관절경하 수술. 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자-992, Q9923)
관절경적 활액막절제술 + 관절경적 전거비인대 봉합 + 신전지지대 봉합술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 N0931) 1.0 +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 (자-70, N0703) 0.5(0.7) + 관절경하 수술. 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자-992, Q9923) +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N0031001 (*2028년 이후 산정불가) * 치료재료비용(N0031001)은 2개 이상의 관절경 술기 동시 시행시 산정
관절경적 활액막절제술 + 관절경적 비골하부골 절제술 + 관절경적 전거비인대 봉합 + 신전지지대 봉합술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 N0931) 1.0 +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 (자-70, N0703) 0.5(0.7) + 관절경하 수술. 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자-992, Q9923) +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N0031001 (*2028년 이후 산정불가) * 관절경적 비골하부골 절제시 사지관절절제술(N0703)과 골편절제술(N0311) 동시 산정 불가
관절경적 활액막절제술 + 관절경적 골극 제거술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 (자-70, N0703) 1.0 + 관절경하 수술. 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자-992, Q9923) +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N0031001 (*2028년 이후 산정불가)
관절경적 활액막절제술 + 관절경적 골극 제거술 + 개방적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신전지지대 봉합술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 N0931) 1.0 +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 (자-70, N0703) 0.5(0.7) + 관절경하 수술. 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자-992, Q9923) +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N0031001 (*2028년 이후 산정불가)
관절경적 활액막절제술 + 개방적 비골하부골 절제술 + 개방적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신전지지대 봉합술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 (자-70, N0703) 1.0 + 골편절제술 (자-31, N0311) 0.5(0.7) + 관절경하 수술. 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자-992, Q9923) +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 N0931) 1.0
관절경적 활액막절제술 + 관절경적 골극 제거술 + 1.5cm ² 이상 골연골병변 미세천공술 + 개방적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신전지지대 봉합	자가골연골이식술, 간단 (자-69-1, N0693) 1.0 +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 N0931) 1.0 +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 (자-70, N0703) 0.5(0.7) + 관절경하 수술. 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자-992, Q9923) +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N0031001 (*2028년 이후 산정불가)
관절경적 활액막절제술 + 관절경적 골극 제거술 + 1.5cm ² 미만 골연골병변 미세천공술 + 관절경적 전거비인대 봉합, 신전지지대 봉합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 N0931) 1.0 +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 (자-70, N0703) 0.5(0.7) + 관절경하 수술. 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자-992, Q9923) +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N0031001 (*2028년 이후 산정불가)
관절경적 활액막절제술 + 관절경적 골극 제거술 + 2cm ² 이상 골연골병변 절골술을 통한 자가골연골이식술(OATS) + 개방적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신전지지대 봉합	자가골연골이식술, 복잡 (자-69-1, N0695) 1.0 +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 (자-70, N0703) 0.5(0.7) +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 N0931) 0.5(0.7) + 관절경하 수술. 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자-992, Q9923) +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N0031001 (*2028년 이후 산정불가)

수술명	수술료 산정
관절경적 활액막절제술 + 관절경적 골극 제거술 + 동종건을 이용한 관절경적 외측인대 재건술	건 및 인대 성형술, 복잡 (자-93, N0932) 1.0 +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 (자-70, N0703) 0.5(0.7) + 관절경하 수술. 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자-992, Q9923) +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N0031001 (*2028년 이후 산정불가)
관절경적 탐침술 + 경비골 과상절골술	경비골 동시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자-30-1, N0307) 1.0 + 관절경하 수술. 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자-992, Q9923) + 관절경 검사 (나-750, E7500) * 관절경 검사 산정은 별도의 인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선별적으로 심사하므로 객관적인 의무기록 작성이 필요함.
관절경적 활액막절제술 + 골극 제거술 + 1.5cm ² 미만 골연골병변 미세천공술 + 경비골 과상절골술	경비골 동시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자-30-1, N0307) 1.0 +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 (자-70, N0703) 1.0 + 관절경하 수술. 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자-992, Q9923) +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N0031001 (*2028년 이후 산정불가)
관절경적 족관절 유합술	관절고정술. 라. 족관절 (자-73, N0733) 1.0 + 관절경하 수술. 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자-992, Q9923) +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N0031001 (2개 이상의 관절경 술기 동시 시행시 산정. *2028년 이후 산정불가)
비골건 혹은 아킬레스건에 대한 내시경적 변연절제술 (tendoscope)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 N0931) 1.0 + 관절경하 수술. 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자-992, Q9923)

IV. 수술관련 재료

수술명	수술료 산정
일반인대고정용 흡수성 Interference Screw (Biotenodesis Screw 등)	1. 일반인대고정용 흡수성 Interference Screw는 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적응증 1) 족관절의 인대 재건술 나. 인정개수: Suture Anchor(봉합나사못)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Suture Anchor(봉합나사못) 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 다. 상기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 80%로 적용함.

척추

I. 관절경: 척추 분야 수가목록표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추간판절제술	경추부 내시경하 추간판절제술	자49	N1494	6,363.46
	요추부 내시경하 추간판절제술	자49	N1494	6,363.46
척추후궁절제술	내시경하 척추후궁절제술	자49	N1494	6,363.46

II. 척추 내시경 수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추간판절제술	경추부 내시경하 추간판절제술	자49	N1494	6,363.46
	요추부 내시경하 추간판절제술	자49	N1494	6,363.46
척추후궁절제술	내시경하 척추후궁절제술	자49	N1494	6,363.46

보존적 치료

- 척추수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척추수술 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도록 하는 경우 세부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보존적 치료의 범위: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해당 질환으로 임상적 진단을 받고 증상에 대한 진료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한방치료
- 보존적 치료에 대한 기간의 시작시점: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해당 질환으로 임상적 진단을 받은 날을 시작시점으로 하되,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임상적 진단 시점과 증상이 악화된 시점이 다른 경우 증상이 악화된 시점으로 함.
- 보존적 치료의 확인방법
 - 보존적 치료 내용 및 기간에 대해 작성된 진료기록
 - 타 요양기관 치료내역의 경우 해당기관의 진료기록, 소견서 등

내시경 치료재료 비용

H42821 (N0031004)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재료대

* 여러 분절 관계없이 1회 산정

Laser Kit

N0071001 Laser 시술을 병용한 경우

경추부에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 급여기준

- 다 음 -

- 경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은 후외측(postero-lateral)으로 전위된 심한 연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소견이 명확하고 수술 전 12주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지방사통이 있는 경우에 인정함.

요추부에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 급여기준

- 다 음 -

- 요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은 수술 전 4~6주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함.
- 다만, 다음의 가.~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함.

- 다 음 -

-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저하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약화가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한 결과로, 영상소견에서 해당 병변에 의한 신경의 압박부위와 일치하여야 하며 이는 진료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함.)
 -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영상검사에서 해당 병변의 신경압박 증가가 확인되어야 함.)
 - 적극적인 통증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주사치료와 함께 진통제(마약성진통제 포함)의 종류 및 용량을 단계별로 증량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의미함. 다만, 해당 치료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소견서로 확인되어야 함.)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시각 통증 등급(Visual Analogue Scale, VAS) 7 이상의 참기 힘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 상기 1., 2.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금기증에 해당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 불안정성이 동반된 경우
- 전방전위증이 동반된 경우

Part 5

근골격계종양

I. 양성 연부 조직 종양의 수술 청구

II. 악성 연부 조직 종양의 수술 청구

III. 양성 골 종양의 수술 청구

IV. 악성 골 종양의 수술 청구

V. 골전이에 의한 병적 골절 또는 병적
임박 골절의 수술 청구

Part 5 근골격종양

I. 양성 연부 조직 종양의 수술 청구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양성 연부 조직 종양 절제술 Benign Soft tissue tumor excisional biopsy	피부양성종양적출술 Excision of Skin Benign Tumor 가. 간단한 것 [표재성인 것] Simple	자14	N0141	1,231.94
	피부양성종양적출술 Excision of Skin Benign Tumor 나. 기타의 것 [근육층에 달하는 것] Others	자14	N0142	1,568.93
	연부조직종양적출술 [지방종, 혈관종, 섬유종, 거대세포종, 화골성 근염, 근육육종, 혈관육종, 활액막육종] Removal of Soft Tissue Tumor (1) 피하양성종양 Subcutaneous Benign Tumor	자-23	N0233	1,939.16
	연부조직종양적출술 [지방종, 혈관종, 섬유종, 거대세포종, 화골성 근염, 근육육종, 혈관육종, 활액막육종] Removal of Soft Tissue Tumor (2) 근막하 또는 근육내양성종양 Subfascial or Intramuscular Benign Tumor	자-23	N0234	2,532.50
	갱그리온 적출술 Excision of Ganglion	자-090	N0900	1,665.75
연부조직종양생검술 Soft tissue tumor incisional biopsy	절개생검 Incisional Biopsy 가. 표재성 Superficial (3) 기타부위 Others 주: 림프절, 액와, 안, 비, 이, 구강, 안면, 외부 생식기 등을 생검한 경우에 산정한다.	나-853	C8532	551.74
	절개생검 Incisional Biopsy 가. 표재성 Superficial (2) 근육 및 연부조직 Muscle and Soft Tissue	나-853	C8535	908.18

II. 악성 연부 조직 종양의 수술 청구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악성 연부 조직 종양 광범위 절제술 Malignant Soft tissue tumor wide excision	피부양성종양적출술과 임파선 절제술 Wide Excision of Skin Malignant Tumor and Lymph node dissection	자15	N0152	9,793.25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악성 연부조직종양 광범위 절제술 Removal of Malignant Soft Tissue Tumor	자-23	N0232	5,454.39
	악성 신경종 절제술 Excision of Neuroma(Malignant)	자461-1	S4616	6,232.97

III. 양성 골 종양의 수술 청구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양성 골종양의 소파술 또는 절제술 Curettage or Excision of Benign Bone Tumor	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Pelvis, Femur, Crus	자28	N0281	5,591.21
	상완골, 전완골, 쇄골 Humerus, Forearm, Clavicle	자28	N0282	3,855.01
	기타 Others	자28	N0283	3,017.67

IV. 악성 골 종양의 수술 청구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악성골종양의 광범위 절제술 Radical Resection of malignant bone tumor	악성골종양의 광범위 절제술(상완골, 전완골, 쇄골) Radical resection of malignant bone tumor (Humerus, Forearm, Clavicle)	자28-1나	N0285	11,283.02
	악성골종양의 광범위 절제술(기타) Radical resection of malignant bone tumor (Others)	자28-1다	N0286	7,086.28
악성골종양의 사지구제술 Limb salvage operation	악성종양의 사지구제술(골반부) Limb salvage surgery with malignant tumor (Pelvis)	자28-2가	NA281	30,947.64
	악성종양의 사지구제술(대퇴부, 견갑부, 상완부) Limb salvage surgery with malignant tumor (Thigh, Scapula, Upper arm)	자28-2나	NA282	26,084.10
	악성종양의 사지구제술(전완부, 하퇴부) Limb salvage surgery with malignant tumor (Forearm, Lower leg)	자28-2다	NA283	20,144.57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악성종양의 사지구제술(수족부) Limb salvage surgery with malignant tumor (Hand, Foot)	자28-2라	NA284	13,141.46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	사지골절정복술(대퇴골) Open reduction of fractured femur	자60가(1)	N0611	10,877.39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 (악성 골종양의 광범위 절제술 후 재건술을 하는 경우 복잡 수가 적용이 가능)	사지골절정복술(상완골, 견갑골) Open reduction of fractured humerus, scapula	자60가(2)	N0612	8,795.23
	사지골절정복술(요골) Open reduction of fractured radius	자60가(3)(가)	N1611	6,726.75
	사지골절정복술(척골) Open reduction of fractured ulna	자60가(3)(나)	N1612	6,726.75
	사지골절정복술(요, 척골 동시) Open reduction of fractured radius and ulna	자60가(3)(다)	N1613	8,756.08
	사지골절정복술(경골) Open reduction of fractured tibia	자60가(4)(가)	N1614	7,622.76
	사지골절정복술(비골) Open reduction of fractured fibula	자60가(4)(나)	N1605	6,376.59
	사지골절정복술(경비골) Open reduction of fractured tibia and fibula	자60가(4)(다)	N1616	9,423.19
	사지골절정복술(쇄골, 슬개골, 수근골, 족근골) Open reduction of fractured clavicle, patella, carpal bone, and tarsal bone	자60가(5)	N0614	6,819.29
	사지골절정복술(중수골, 중족골, 지골) Open reduction of fractured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and toe	자60가(6)	N0615	5,173.45

V. 골전이에 의한 병적 골절 또는 병적 압박 골절의 수술 청구

V-1. 고관절 치환술 - 복잡

수술명	영문	분류번호	복잡 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고관절 전치환술 (복잡)	Total hip arthroplasty (complex)	자70가	N2070	14970.23
고관절 부분치환술 (복잡)	Hemiarthroplasty of hip (complex)	자70라	N2710	9002.04

V-2. 사지 ORIF 그리고 CRIF(전이 골절에 대해서는 도수정복과 외고정술은 관혈적 정복에 준한다) - 복잡

수술명	영문	분류번호	복잡 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대퇴골 ORIF (복잡)	Femur ORIF (complex)	자60가(1)	N0611	10877.39
상완골·견갑골 ORIF (복잡)	Humerus, Scapula ORIF (complex)	자60가(2)	N0612	8795.23
요골 ORIF (복잡)	Radius ORIF (complex)	자60가(3)(가)	N1611	6726.75
척골 ORIF (복잡)	Ulna ORIF (complex)	자60가(3)(나)	N1612	6726.75
요·척골 동시 ORIF (복잡)	Radius & Ulna ORIF (complex)	자60가(3)(다)	N1613	8756.08
경골 ORIF (복잡)	Tibia ORIF (complex)	자60가(4)(가)	N1614	7622.76
비골 ORIF (복잡)	Fibula ORIF (complex)	자60가(4)(나)	N1615	6376.59
경·비골 동시 ORIF (복잡)	Tibia & Fibula ORIF (complex)	자60가(4)(다)	N1616	9423.19
쇄골·슬개골·수근골·족근골 ORIF (복잡)	Clavicle, Patella, Carpal, Tarsal ORIF (complex)	자60가(5)	N0614	6819.29
중수골·중족골·지골 ORIF (복잡)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ORIF (complex)	자60가(6)	N0615	5173.45

Part 6

수부

I. 관절경검사

II. 기본처치

III. 피부 및 연부조직

IV. 근골격

V. 치료재료

Part 6 수부

I. 관절경검사

수술명	코드	행위명	분류번호	점수
관절경검사		[내시경] 주: 1. 기기(Scopy, Fibroscopy, Microscopy)의 종류를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다만,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는 해당 분류번호의 주사항의 가산율을 적용 한다. 3. 내시경하 생검을 하는 경우 해당 내시경 점수의 2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E7500	관절경검사 Arthroscopy	나750	2,030.49
	E7501	주: 고관절부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2,911.48점을 산정한다.	나750주	2,911.48

(1) 나750 관절경검사를 양측으로 시행시 수기로 산정방법

관절염이 양측에 각각 있어 양측으로 관절경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나750 관절경검사의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II. 기본처치

II-1. 창상봉합술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1		절개술 Incision 1. 절개술의 길이는 절개창의 길이에 의한다. 2. 근접하지 아니한 여러 부위에 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두부, 복부, 배부, 좌·우·상·하지의 7부위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한다. 3. "주2"의 각 부위내에 절개창이 둘 이상일때 여러 절개창이 4"×4"거즈 범위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범위 분류항목을 산정하고, 4"×4"거즈 한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장째 범위부터 1범위당 제2범위의 분류항목으로 각각 산정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가. 안면 또는 경부 Face or Neck			
(1) 제1범위			
S0011		(가) 1cm 미만	201.76
S0012		(나) 1cm 이상~2cm 미만	244.48
S0013		(다) 2cm 이상	329.42
(2) 제2범위부터 [1범위당]			
S0014		(가) 1cm 미만	72.16
S0015		(나) 1cm 이상~2cm 미만	87.35
S0016		(다) 2cm 이상	110.14
나. 안면과 경부 이외 Others			
(1) 제1범위			
SA011		(가) 1cm 미만	177.50
SA012		(나) 1cm 이상~2cm 미만	195.42
SA013		(다) 2cm 이상	208.81
(2) 제2범위부터 [1범위당]			
SA014		(가) 1cm 미만	52.35
SA015		(나) 1cm 이상~2cm 미만	62.79
SA016		(다) 2cm 이상	78.44
자-2		창상봉합술 Suture of the Wound 주: 1. 근접하지 아니한 여러 부위에 창상봉합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두부, 복부, 배부, 좌·우·상·하지의 7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한다. 2. "주1"의 각 부위별 창상봉합 길이에 따라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단, 부위내 창상이 둘 이상인 경우는 그 길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가. 안면 또는 경부 Face or Neck			
(1) 단순봉합 Simple Suture			
(가) 표재성인 것			
S0021		1) 길이 1.5cm 미만	332.20
S0022		2)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465.08
S0027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604.60
S0028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725.52
S0029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870.63
S0030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59.8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59.80점을 추가 가산한다.	
(나) 근육에 달하는 것			
S0031		1) 길이 1.5cm 미만	585.64
S0032		2)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676.74
S0037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767.84
S0038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921.41
S0039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1,105.70
S0040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59.8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59.80점을 추가 가산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2) 변연절제를 포함 Including Debridement			
(가) 표재성인 것			
SA021	1)	길이 1.5cm 미만	407.70
SA022	2)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570.78
SA027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742.01
SA028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890.41
SA029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1,068.50
SA030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73.38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73.38점을 추가 가산한다.		
(나) 근육에 달하는 것			
SA031	1)	길이 1.5cm 미만	733.41
SA032	2)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837.88
SA037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942.36
SA038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1,130.83
SA039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1,356.99
SA040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73.38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73.38점을 추가 가산한다.		
나. 안면과 경부 이외 Others			
(1) 단순봉합 Simple Suture			
(가) 표재성인 것			
SB021	1)	길이 2.5cm 미만	250.77
SB022	2)	길이 2.5cm 이상~5.0cm 미만	461.07
SB029	3)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688.00
SB030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90.28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10cm 증가될때마다 90.28점을 추가 가산한다.		
(나) 근육에 달하는 것			
SB031	1)	길이 2.5cm 미만	518.91
SB032	2)	길이 2.5cm 이상~5.0cm 미만	696.34
SB039	3)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873.76
SB040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78.5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10cm 증가될때마다 78.50점을 추가 가산한다.		
(2) 변연절제를 포함 Including Debridement			
(가) 표재성인 것			
SC021	1)	길이 2.5cm 미만	329.48
SC022	2)	길이 2.5cm 이상~5.0cm 미만	565.86
SC029	3)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844.35
SC030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118.61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10cm 증가될때마다 118.61점을 추가 가산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나) 근육에 달하는 것			
SC031	1)	길이 2.5cm 미만	686.64
SC032	2)	길이 2.5cm 이상~5.0cm 미만	879.49
SC039	3)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1072.33
SC040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118.61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10cm 증가될때마다 118.61점을 추가 가산한다.		
SC027	다. 창상청소 및 변연절제만 실시한 경우 Only Cleaning or Debridement of Wound		337.08
SC028	주: 근육에 달하는 창상의 경우 428.09점을 산정한다.		

(1) 자2 창상봉합술

손·발톱이 압박 좌멸되어 발조술후 봉합술 시행시 수기로 산정방법

손·발톱부분이 압박 좌멸되어 발조술 시행후 골이 노출 되어 봉합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자20 발조술과 자2나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 이외)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산정지침] (5)항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고시 제2016-204호, '16.11.1. 시행)

(2) 부위내 창상봉합 부위가 둘 이상일 때 자2 창상봉합술 수가 산정방법

한 부위에 여러 형태의 창상이 존재하는 경우 난이도가 높은 창상의 형태로 산정한다. 단, 창상의 길이는 각 창 상의 형태를 불문하고 부위내 길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고시 제2021-291호, '21.12.1. 시행)

(4) 초음파 창상소파술 및 변연절제술 Ultrasonic assisted Wound Curettage and Debridement

자2다 창상봉합술-창상청소 및 변연절제만 실시한 경우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22-26호)

II-2. 일반처치 및 창상 처치

분류번호	분류	코드	점수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 [1일당] Dressing or Post Operative Dressing etc. 주: 1. 수술후 처치료는 수술 익일부터 산정한다. 2. 사용된 거즈, 탈지면, 붕대, 반창고의 비용은 소정 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같은 날에 「다」와 「라」, 「마」와 「사」, 「바」와 「자」 또는 「아」와 「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둘 중 한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한다. 4. 같은 날에 「가」의 (1) 또는 (2)를 여러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두부, 복부, 배부, 좌·우·상·하지 7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한다. 5. 다만,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또는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인 상급종합병원에 입원중인 경우에는 [1일당], '주3' 및 '주4'에도 불구하고 1일에 「가」는 2회 이내, 「라」와 「바」는 3회 이내로 산정한다. (기본코드 5번째 자리에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경우 5,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상급종합병원에 입원중인 경우 6으로 기재)		
가. 창상처치 Wound Dressing			
	(1) 단순처치 Simple Dressing 주: 수술창의 처치(경미한 염증 포함), 열상 및 좌상의 처치에 산정한다.	M0111	75.51
	(2) 염증성 처치 Infectious Wound Dressing 주: 수술창의 심한 염증 처치, 심한 욕창, 염증이 심한 상처의 처치에 산정한다.	M0121	141.38

(1) 자2-1 식피술후 수술실에서 실시한 dressing 산정방법

식피술후 Aseptic Area를 유지하고 Air Contamination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수술실에서 dressing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2-1가(2) 염증성 처치를 준용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2) 진공음압창상처치 Vacuum-Assisted Closure Therapy(Negative Pressure Wound Therapy)

Dressing 재료 교환당일에는 자-2-1 가(2) 염증성 처치, 교환당일이 아닌 경우에는 자-2-1가(1) 단순처치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고시 제2009-214호)

Heparin dropping 과 거머리 처치

Heparin dropping 과 거머리 처치는 의사의 복잡한 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술기로 염증성 처치 보다는 단순 처치로 인정함.

(2015년 근로복지공단 진료비 심사 사례)

II-3. 이물제거술

분류번호	분류	코드	점수
자-3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 [봉침, 파편 등] Removal of Foreign Body in Skin, Subcutaneous Tissue or Muscle		
	가. 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 with Incision of Fascia	M0031	1060.88
	나. 기타 Others	M0032	590.08

III. 피부 및 연부조직

주: 화상 치료 목적으로 「자-16」, 「자-17」, 「자-17-1」, 「자-17-2」, 「자-18-1」, 「자-18-2」, 「자-18-3」, 「자-24」, 「자-24-1」, 「자-24-2」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III-1. 피부종양

분류번호	분류	코드	점수
자-14	피부양성종양적출술 Excision of Skin Benign Tumor		
	가. 간단한 것 [표재성인 것] Simple	N0141	1,231.94
	나. 기타의 것 [근육층에 달하는 것] Others	N0142	1,568.93
자-14-1	티눈제거술 Removal of Pressure Corn		
	가. 전기소작, 냉동응고술 또는 약물밀봉대	N0143	389.06
	나. 절제 [근층심부 포함] Excision	N0144	1,001.97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 Removal of Molluscum Contagiosum		
	가. 전신성인 것 Generalized	N0147	405.70
	나. 기타의 것 Others	N0148	279.00
자-14-3	사마귀제거술 Removal of Warts		
	가. 절제술 Excision		
	(2) 기타 Others	N1431	389.06
	주: 단, 근층심부 포함 시에는 1,001.97점을 산정한다.	N1432	
자-15	피부악성종양적출술 Excision of Skin Malignant Tumor		
	가. 광역수술 Wide Excision	N0151	6,322.90
	나. 모즈 미세도식수술 Mohs Micrographic surgery	N0153	6,836.52
	다. 광역수술 및 림프절수술 Wide Excision and Lymph Node Dissection	N0152	9,793.25

(1) 자-14 다발성 황색종[Xanthoma] 제거시 수가 산정방법

- 사지에 다발성으로 산재된 황색종(Xanthoma)을 제거하는 경우 수기료는 Rule of nine 기준으로 자14 피부양성 종양적출술을 산정하며, 근접부위에 산재되어 있어 동일 시야에서 제거할 때에는 자14 피부양성종양적출술 소정 점수만 산정함.

(고시 제2007-92호, '07.11.1. 시행)

(2) 자14 피부양성 종양적출술, 자23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 피부 및 연부조직 양성종양적출술을 여러 부위에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 자14 피부양성종양적출술 또는 자23가 연부조직종양적출술(양성종양)을 여러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8부위(두경부 전·후면, 몸통(Trunk) 전·후면, 상·하지 좌·우)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제1병변은 소정점수의 100%, 제2병변부터는 50%를 산정하되 부위별 최대 200%까지 산정함.

(고시 제2021-244호, '21.10.1. 시행)

(3) 자-14-1 티눈이 수개처에 있는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 티눈제거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1호 나목에 의거 비급여 대상이나 손·발에 실시한 티눈제거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1) 손(2부위): ①다섯 손가락, ②손등과 손바닥
- 2) 발(2부위): ①다섯 발가락, ②발등과 발바닥

나. 산정방법

손·발 각 부위별로 산정하며, 각각의 동일 부위내에서 2개 이상을 제거하는 경우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제1의 것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고시 제2023-121호, '23.7.1. 시행)

(3)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 급여기준

-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전신을 7부위 (두부, 복부, 배부, 좌·우·상·하지)로 구분하여, 2부위 이상 실시시 자14-2가 전염성연속종제거술-전신성인 것으로 산정하며, 그 외에는 자14-2나 전염성연속종제거술-기타의 것으로 산정함.

나.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은 1일 1회 산정으로, 치료기간 중 최대 3회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다. 상기 나.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율 90%로 적용함.

(고시 제2020-19호, '20.2.1. 시행)

(4) 자14-3 사마귀제거술

- 사마귀제거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1호 나목에 의거 비급여 대상이나 항문생식기, 손·발에 실시한 사마귀제거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나. 손·발

- 1) 손·발 부위의 사마귀제거술은 자14-3 사마귀제거술 가~다.의 (2)기타로 분류된 소정점수를 산정함.
- 2) 손·발은 각각 2부위로 구분하여 부위별로 산정하며, 동일부위 내에서 2개 이상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1의 것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 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 3) 손·발 부위 구분(2부위)
 - 가) 손: ①다섯 손가락, ②손등과 손바닥
 - 나) 발: ①다섯 발가락, ②발등과 발바닥

다. 상기 가. 나. 에도 불구하고 자14-3 다. 사마귀제거술-국소도포는 여러 부위에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함.

(고시 제2022-163호, '22.7.1. 시행)

(5) 피부 및 연부조직 양성종양적출술을 여러 부위에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 자14 피부양성종양적출술 또는 자23가 연부조직종양적출술(양성종양)을 여러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8부위(두경부 전·후면, 몸통(Trunk) 전·후면, 상·하지 좌·우)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제1병변은 소정점수의 100%, 제2병변부터는 50%를 산정하되 부위별 최대 200%까지 산정함.

(고시 제2021-244호, '21.10.1. 시행)

III-2. 피판작성술

주: 화상 치료 목적으로 「자-16, 「자-17, 「자-17-1, 「자-17-2, 「자-18-1, 「자-18-2, 「자-18-3, 「자-24, 「자-24-1, 「자-24-2」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16	피판작성술 Flap Operation		
	가. 피부피판술 Skin Flap		
	(1) 국소피판술 Local Flap		
	SB161	(가) 안면부 Face	6,217.38
	S0161	(나) 기타 Others	4,696.35
	(2) 원거리피판술 Distant Flap		
	(가) 수부이외 원거리 [서혜부, 복부, 둔부, 교차상지, 교차하지 등] Except Hand		
	SB162	1) 안면부 Face	9,675.08
	S0162	2) 기타 Others	8,501.06
	(나) 수부내 [교차수지피판, 무지구피판 등] within Hand		
	SB163	1) 안면부 Face	10,596.20
	S0163	2) 기타 Others	8,545.67
	나. 도서형피판술 Island Flap		
	SB164	(1) 안면부 Face	11,525.50
	S0164	(2) 기타 Others	8,919.64
	다. 근피판술 Muscle Flap		
	SB165	(1) 안면부 Face	9,421.03
	S0165	(2) 기타 Others	7,520.29
	라. 근-피부피판술 Musculocutaneous Flap or Myocutaneous Flap		
	SB166	(1) 안면부 Face	13,073.60
	S0166	(2) 기타 Others	10,734.48
	마. 근막피판술 Fascia Flap		
	SB167	(1) 안면부 Face	10,150.13
S0167	(2) 기타 Others	7,859.48	
바. 근막-피부피판술 Fasciocutaneous Flap			
SB168	(1) 안면부 Face	12,970.55	
S0168	(2) 기타 Others	10,766.53	
사. 유리 피판술 [피부 또는 근육] Free Flap			
SC161	(1) 안면부 Face	30,971.16	
SA161	(2) 기타 Others	23,910.28	
아. 유리 감각피판술 [근육-신경] Free Sensory Flap			
SC162	(1) 안면부 Face	31,553.87	
SA162	(2) 기타 Others	24,994.78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 유리복합조직이식술 Free Composite Tissue Flap			
(1) 유리 건-피부피판술 [피부-건-신경 또는 피부-건] Free Tendocutaneous Flap			
SC163	(가) 안면부 Face		35,809.64
SA163	(나) 기타 Others		28,263.71
(2) 유리 근육-피부 피판술 [피부-근육-신경 또는 피부-근육] Free Musculocutaneous Flap			
SC164	(가) 안면부 Face		36,152.44
SA164	(나) 기타 Others		28,263.71

(1) 자16가(2) 피판작성술-피부피판술-원거리피판술 수가 산정방법

자16 피판작성술은 피판작성부터 박리술까지 일련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 요양기관에서 입원기간이 동일하거나 상이 할지라도 자16가(2) 피판작성술-피부피판술-원거리피판술은 1회만 산정함.

(고시 제2023-56호, '23.3.29. 시행)

(2) 자23가 연부조직종양 적출술과 동시 실시한 자16가(1) 국소피판작성술 인정여부

피부 이외 부위에서 발생한 양성 연부조직종양의 경우 피부 결손을 동반하지 않으므로 자23가 연부조직종양적출술과 동시 실시한 자16가(1) 국소 피판작성술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공고 제2020-340호, 2021.1.1. 진료분부터 적용)

III-3. 피부이식술

주: 화상 치료 목적으로 「자-16, 「자-17, 「자-17-1, 「자-17-2, 「자-18-1, 「자-18-2, 「자-18-3, 「자-24, 「자-24-1, 「자-24-2」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17	식피술 Skin Graft		
	가. 전층피부이식술 Full Thickness Skin Graft		
	주: 마이크로편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해당 부위 및 범위의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1) 안면부 Face		
	S0171	(가) 25cm ² 미만	6,057.03
	S0172	(나) 25cm ² 이상	8,159.20
	(2) 수족부 Hand, Foot		
	S0173	(가) 25cm ² 미만	5,217.55
	S0174	(나) 25cm ² 이상	7,368.81
	(3) 기타 Others		
	S0175	(가) 25cm ² 미만	5,702.59
	S0176	(나) 25cm ² 이상	7,398.93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나. 부분층피부이식술 Split Thickness Skin Graft 주: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해당 부위 및 범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1) 안면 또는 관절부 Face or Joint	
N0173		(가) 25cm ² 미만	3,841.98
N0174		(나) 25cm ² 이상	6,655.15
		(2) 기타 Others	
N0175		(가) 25cm ² 미만 3,005.21	3,455.99
N0176		(나) 25cm ² 이상~100cm ² 미만	4,164.94
N0178		(다) 100cm ² 이상~400cm ² 미만	5,607.11
N0179		(라) 400cm ² 이상~900cm ² 미만	10,644.87
N0170		(마) 900cm ² 이상	16,251.73
자-17-1		생물학적처치 Biological Dressing	
N0071		가. 25cm ² 미만	495.26
N0072		나. 25cm ² 이상~100cm ² 미만	860.48
N0073		다. 100cm ² 이상	1,406.32
자-17-2		사체피부이식술 [이식시 가피절제 포함] Cadaveric Skin Graft 주: 1. 시술시 사용된 이식용 피부는 별도 산정한다. 2. 자가피부이식술과 동시에 시행한 경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가(1)1), 가(2)2), 나(1)3), 나(2)4), 나(3)5), 나(4)6), 나(5)7))	
		가. 안면 또는 관절부 Face or Joint	
SB171		(1) 25cm ² 미만	3,298.94
SB172		(2) 25cm ² 이상	4,380.38
		나. 기타 Others	
SB173		(1) 25cm ² 미만	2,307.74
SB174		(2) 25cm ² 이상~100cm ² 미만	3,309.84
SB175		(3) 100cm ² 이상~400cm ² 미만	5,146.41
SB176		(4) 400cm ² 이상~900cm ² 미만	8,390.39
SB177		(5) 900cm ² 이상	13,430.59

(1) 자-17 반흔구축 성형술 이후 식피술 수기로 산정방법

반흔구축성형술 이후 Bleeding 등이 있어 Scar Revision을 시행하고 2~7일 후에 Delayed Skin Graft을 실시한 경우 자17 식피술 소정점수로 산정함.

(고시 제2023-56호, '23.3.29. 시행)

(2) 자-17 식피술 수가산정방법

1. 식피술을 여러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7부위(두부, 복부, 배부, 좌·우 상·하지)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자 17 식피술 해당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하되, 7부위 중 한 부위에 2군데 이상 식피술을 시행하는 경우 1군데는 소정점수의 100%를, 2군데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부위별로 최대 200%까지 산정함.
2. 수·족지부의 식피술시 손등·손바닥(발등·발바닥)까지는 7부위(두부, 복부, 배부, 좌·우 상·하지) 구분에 포함 하여 산정하고, 손가락(발가락) 부위는 소정점수의 100%를 각각 산정함.

(고시 제2023-56호, '23.3.29. 시행)

(3) 자17가'주'의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의 급여기준

자17가'주'의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은 백반증에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23-56호, '23.3.29. 시행)

(4) 자-17-1 동종건조양막을 이용한 상처 치료시 수가산정방법

동종건조양막을 이용한 상처치료는 당뇨병성 발괴양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에 한해 자17-1 생물학적처치,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17-15호, '17.2.1. 시행)

(5) 자-17-2 인공피부 이식술시 수기로 산정방법

화상이나 외상 등에 인공피부를 이용하여 이식하는 경우에는 자17-2 사체피부이식술[이식시 가피절제 포함]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고시 제2018-281호, '19.1.1. 시행)

(6) 동종진피이식술 Acellular Dermal Graft

자17-2 사체피부이식술[이식시 가피절제 포함]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10-100호)

III-4. 화상처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18-1		화상처치 Burn Dressing	
		주: 1. 화상부위가 수개 부위일 경우에는 수개 부위의 화상 범위를 합하여 아래 항목에 의거하여 산정하되 화상 범위 산정시 1도 화상 범위는 제외한다. 2. 사용된 거즈, 봉대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하되 탈지면, 반창고 등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 열탕, 화염, 동상, 화학화상 등의 경우 Scald, Flame, Frostbite, Chemical Burn etc.	
		(1) 9% 이하의 범위	
N0011	(가) 수, 족, 지, 안면, 경부, 성기를 포함하는 경우 Including Hand, Foot, Finger or Toe, Face, Neck, Genitalia		443.85
N0012	(나) 수, 족, 지, 안면, 경부, 성기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Excluding Hand, Foot, Finger or Toe, Face, Neck, Genitalia		313.05
N0053	(2) 하지의 1지, 복부 또는 배부에 준하는 범위 [10%~18%] One Lower Extremity, Abdomen or Back		1,120.53
N0054	(3) 양하지 또는 동체(복부 및 배부)에 준하는 범위 [19%~36%] Both Lower Extremities or Trunk		1,769.17
NA055	(4) 상·하지 대부분, 양하지와 복부 또는 배부에 준하는 범위 [37%~54%] Upper·Lower Extremities, Both Lower Extremities and Abdomen or Back		2,615.39
NA056	(5) 전신대부분의 범위 [55% 이상의 범위] more than 55% of Body Surface Area		3,992.40
		나. 전기화상의 경우 Electrical Burn	
N0057	(1) 근육, 골격, 인대의 손상이 포함된 경우 with Injury of Muscle, Skeletal or Tendon		1,865.14
NA057	주: 섬광 또는 화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3,099.71점을 산정한다.		
N0058	(2) 기타의 경우 Others		
NA058	주: 섬광 또는 화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1,977.85점을 산정한다.		1,197.84
자-18-2		화상의 가피절제술 Escharectomy	
		가. 9% 이하의 범위	
N0041	(1) 수, 족, 지에 준하는 범위 Hand, Foot, Finger or Toe		2,477.66
N0042	(2) 상지대부분(하지의 반) 또는 두부, 경부 및 안면의 대부분에 준하는 범위 Upper Extremity, Half of Lower Extremity, Head, Neck or Face		2,841.52
N0043	나. 하지의 1지, 복부 또는 배부에 준하는 범위 [10%~18%] One Lower Extremity, Abdomen or Back		4,547.93
N0044	다. 양하지 또는 동체(복부 및 배부)에 준하는 범위 [19%~36%] Both Lower Extremities or Trunk		7,965.51
N0048	라. 상·하지 대부분, 양하지와 복부 또는 배부에 준하는 범위 [37%~54%] Upper·Lower Extremities, Both Lower Extremities and Abdomen or Back		12,961.56
N0049	마. 전신대부분의 범위 [55% 이상의 범위] more than 55% of Body Surface Area		19,433.53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18-3		화상치료탱크 [1일당] Burn Tank	
	N0046	가. 36% 이상의 범위인 경우	2,659.77
	N0047	나. 기타의 범위	1,894.44

(1) 자18-1 화상처치 : 화상 이외의 피부질환에 시행한 자18-1 화상처치 인정기준

괴저병, 괴사성 근막염, Stevens-Johnson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증, 천포창 등 화상 이외의 피부질환으로 진피 이상의 피부가 손상되어 화상처치에 준하는 처치가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자18-1 화상처치를 인정하며, 이 경우 사진 및 진료기록부 등에서 피부조직의 손상 및 상태 등이 확인되어야 함.

(고시 제2021-291호, '21.12.1. 시행)

(2)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를 사용한 화상처치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자18-1 화상처치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시술시 사용된 약제(사람유래피부 각질세포)는 단독 또는 타 시술과 동시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07-25호)

III-5. 손톱 발톱의 수술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20	N0200	발조술 Extraction of Nail	215.74
자-21	N0210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Operation for Ingrowing Nail	626.83
자-21-1	N0215	조갑 거터술 Guttering for Ingrowing Nail	275.97

(1) 손·발톱이 압박 좌멸되어 발조술후 봉합술 시행시 수기로 산정방법

손·발톱부분이 압박 좌멸되어 발조술 시행후 골이 노출 되어 봉합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자20 발조술과 자2나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 이외)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산정지침] (5)항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고시 제2016-204호, '16.11.1. 시행)

III-6. 연부조직 종양제거 (피부종양 제외)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23		연부조직종양적출술 [지방종, 혈관종, 섬유종, 거대세포종, 화골성 근염, 근육육종, 혈관육종, 활액막육종] Removal of Soft Tissue Tumor 주: 피부이외 부위에서 발생한 종양인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가. 양성 종양	
	N0233	(1) 피하양성종양 Subcutaneous Benign Tumor	1,939.16
	N0234	(2) 근막하 또는 근육내양성종양 Subfascial or Intramuscular Benign Tumor	2,532.50
	N0232	나. 악성종양 Malignant Tumor	5,454.39
자-90	N0900	갱그리온 적출술 Excision of Ganglion	1,665.75

(1) 자-23 신경섬유종 수술시 수기로 산정방법

신경섬유종은 연부조직종양에 해당되므로 자23가 연부조직종양적출술-양성 종양의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하며, 여러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8부위(두경부 전·후면, 몸통(Trunk) 전·후면, 상·하지 좌·우)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제1병변은 소정점수의 100%, 제2병변부터는 50%를 산정하되 부위별 최대 200%까지 산정함.

(고시 제2023-56호, '23.3.29. 시행)

(2) 자90 갱그리온 적출술 : 활액낭절제술 (Bursectomy)의 수기로 산정방법

활액낭절제술(Bursectomy)은 해부학적 위치와 수술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자90 갱그리온적출술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함.

(고시 제2007-46호, '07.6.1. 시행)

III-7. 반흔구축술

주: 화상 치료 목적으로 「자-16」, 「자-17」, 「자-17-1」, 「자-17-2」, 「자-18-1」, 「자-18-2」, 「자-18-3」, 「자-24」, 「자-24-1」, 「자-24-2」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24	N0241	반흔구축성형술 [운동제한이 있는 것] Release of Scar Contracture	5,398.88
자-24-1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 [운동제한이 있는 것] Release of Scar Contracture and Skin Graft	
		가. 전층 Full Thickness	
	N0242	(1) 25cm ² 미만	9,322.57
	N0243	(2) 25cm ² 이상	11,147.80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나. 부분층 Split Thickness	
		(1) 안면 또는 관절부 Face or Joint	
	N0244	(가) 25cm ² 미만	7,391.94
	N0245	(나) 25cm ² 이상	9,298.05
		(2) 기타 Others	
	N0246	(가) 25cm ² 미만	6,368.18
	N0247	(나) 25cm ² 이상~100cm ² 미만	7,383.21
	NA241	(다) 100cm ² 이상~400cm ² 미만	8,780.94
	NA242	(라) 400cm ² 이상~900cm ² 미만	11,269.94
	NA243	(마) 900cm ² 이상	17,212.73
자-24-2	N0249	반흔구축 성형술 및 국소피판술 [운동제한이 있는 것] Release of Scar Contracture and Flap Operation	8,590.80
자-21	NX0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Autogenous Fat Graft or Dermo-Fat Graft	6,157.95

(1) 자-24 화상으로 인한 관절구축 상병에 실시한 수술 수가 산정방법

화상으로 인한 관절구축에 Z-plasty 및 혈관, 건, 근 성형술을 Axilla, Elbow, Wrist 등 관절에 실시시 각각 서로 다른 관절부위로 보아 각각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7-77호, '07.8.30. 시행)

IV. 근골격

IV-1. 선천성 질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25		다지증수술 Operation of Polydactyly	
	N0251	가. 건 및 골성형을 요하는 경우 Construction of Tendon and Bone	5,634.56
	N0252	나. 기타 Others	2,034.48
자-26	N0260	지유착증수술 Operation of Syndactyly	4,882.34
자-27	N0270	골성장판성장억제술 [스태플링 포함] Epiphysiodesis [Including Stapling]	4,925.97

(1) 자26 지유착증 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 자26 지유착증수술은 지간(web space)에 따라 산정하며, 피판작성 및 봉합까지의 과정을 포함하는 수가임.
- 상기 1.에도 불구하고 피부이식이 필요하여 자26 지유착 증수술과 자17 식피술을 동시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산정지침] (5) 항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포함)은 70%]로 산정함.

(고시 제2020-19호, '20.2.1. 시행)

IV-2. 골종양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28		양성골종양의 소파술 또는 절제술 Curettage or Excision of Benign Bone Tumor	
	N0281	가. 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Pelvis, Femur, Crus	5,591.21
	N0282	나. 상완골, 전완골, 쇄골 Humerus, Forearm, Clavicle 3	3,855.01
	N0283	다. 기타 Others	3,017.67
자-28-1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 Radical Resection of Malignant Bone Tumor	
	N0284	가. 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Pelvis, Femur, Crus	17,033.87
	N0285	나. 상완골, 전완골, 쇄골 Humerus, Forearm, Clavicle	11,283.02
	N0286	다. 기타 Others	7,086.28
자-28-2		악성종양의 사지구제술 주: 악성종양의 광범위 절제술, 골재건술(골이식, 관절치환 등), 연부조직재건술을 모두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NA281	가. 골반부 Pelvis	30,947.64
	NA282	나. 대퇴부, 견갑부, 상완부 Thigh, Scapula, Upper Arm	26,084.10
	NA283	다. 전완부, 하퇴부 Forearm, Lower Leg	20,144.57
	NA284	라. 수족부 Hand, Foot	13,141.46

(1) 골이식술

주: "제1절 [산정지침] (5)"에도 불구하고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

(2) 자31-1 골이식술의 급여기준

골 결손부위에 보존 및 보강 목적으로 실시하는 자31-1 골이식술(Bone graft)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자31 골편절제술 후 자가골 이식의 경우
-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를 사용하여 골이식하는 경우
 - 골성 종양 수술시 골결손이 있는 경우
 - 사지 장관골 골절 수술 후 불유합이나 지연유합이 있는 경우
 - 사지 관절(견관절, 주관절, 완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재수술시 불유합이나 지연유합이 있는 경우

(고시 제2017-118호, '17.7.1. 시행)

(3) 골종양 재발 방지를 위한 냉동수술

자28 양성골종양의 소파술 또는 절제술 또는 자28-1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고시 제2002-69호)

IV-3. 골수염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29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 [골천공술, 골개창술, 배형성형술, 골부분절제술 포함] Operation of Osteomyelitis or Bone Abscess [Drilling, Fenestration, Saucerization, Partial Excision] 주: 농양의 단순한 절개는 「자-1 절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N0021	가. 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Pelvis, Femur, Crus	4,980.29
	N0024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274.65점을 산정한다.	
	N0022	나. 상완골, 전완골, 쇄골 Humerus, Forearm, Clavicle	4,495.90
	N0025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648.64점을 산정한다.	
	N0023	다. 기타 Others	3,761.27
	N0026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834.41점을 산정한다.	

(1) 자29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 자68 급성화농성관절염 절개술 복잡기준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아 래-

- 1) 골수염 또는 골농양 수술 또는 급성화농성관절염 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해당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
- 2) 2개 이상의 해부학적 범위를 포함하는 다발성 골수염
- 3) 골수염, 골농양, 화농성관절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 감입 골 시멘트를 삽입하는 경우

(2014.8.1.시행) <보험급여과-2502>

IV-4. 근농양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84		근농양 배농술 Drainage of Intramuscular Abscess	
		다. 대퇴근농양 Thigh Abscess	2,695.65
	N0844	라. 기타 근농양 Others	1,003.64

IV-5. 절골술, 골편절제술, 골이식술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30		절골술 Osteotomy	
	N0303	가. 척추, 골반 Spine, Pelvis	20,156.67
	N0302	나. 상하지 Upper and Lower Extremity	5,038.01
	N03016	다. 수근골, 족근골 Carpal, Tarsal	2,974.87
	N03017	라. 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2,124.69
자-30-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Osteotomy and Internal Fixation	
	N0305	가. 대퇴골 Femur	13,260.94
	N0306	나. 상완골 Humerus	6,348.91
		다. 전완골, 하퇴골 Forearm, Crus	
	N0304	(1) 요골과 척골중 하나, 경골과 비골중 하나 Radius or Ulnar, Tibia or Fibula	5,923.37
	N0307	(2) 요척골 동시, 경비골 동시 Radius and Ulnar, Tibia and Fibula	6,468.27
	N0318	라. 수근골, 족근골 Carpal, Tarsal	4,387.53
	N0319	마. 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3,616.12
자-31	N0311	골편절제술 Osteotomy	2,707.13
		주: 환자가 아닌 자로부터 골편절제를 한 경우에는 골편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자-31-1	N0312	골이식술 Bone Graft	1,193.82
		주: "제1절 [산정지침] (5)"에도 불구하고 타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1) 자31 골편절제술: 편측 전·후 장골능에서 골편채취시 수기로 산정방법

편측의 전·후 장골능에서 골편채취시 동일 피부절개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골편의 개수를 불문하고 자31 골편절제술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서로 다른 피부 절개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자31 골편절제술 소정점수 200%를 산정함.

(고시 제2017-118호, '17.7.1. 시행)

(2) 자31-1 골이식술의 급여기준

골 결손부위에 보존 및 보강 목적으로 실시하는 자31-1 골이식술(Bone graft)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가. 자31 골편절제술 후 자가골 이식의 경우

나.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를 사용하여 골이식하는 경우

- 1) 골성 종양 수술시 골결손이 있는 경우
- 2) 사지 장관골 골절 수술 후 불유합이나 지연유합이 있는 경우
- 3) 사지 관절(견관절, 주관절, 완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재수술시 불유합이나 지연유합이 있는 경우

(고시 제2017-118호, '17.7.1. 시행)

(3)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 2를 이용한 골 이식 시 수가 산정방법

외상성 상하지 급성골절, 요추 유합술(단분절 후외방 유합술, 단분절 전방/사측방 추체간 유합술) 환자에서 재조합 골형성 단백질 2를 적용 시 행위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범주에 해당됨.

다만, 골이식술의 급여기준 내 시술 시 자-31-1 골이식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아울러,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21- 102호)

IV-6. 절단술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56		사지관절이단술 Disarticulation of Extremities	
	N0561	가. 견갑흉곽간 Interthoracoscapular	14,209.38
	N0562	나. 고관절 Hip	12,420.32
	N0563	다. 견관절 Shoulder	8,609.60
	N0564	라. 슬관절 Knee	6,715.24
	N0565	마.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Elbow, Wrist, Ankle	4,214.09
	N0566	바. 지관절 Finger, Toe	2,113.98
		사지절단술 Amputation of Extremities	
	N0571	가. 골반 Pelvis	16,254.24
	N0572	나. 대퇴 Thigh	8,022.47
	N0573	다. 상완, 전완, 하퇴 Upper Arm, Forearm, Lower Leg	6,730.88
	N0574	라. 수족 Hand, Foot	4,681.75
	N0575	마. 지 Finger, Toe	1,836.73
자-58		단단성형술 Revision of Amputated Stump	
		가. 골성형을 요하는 것 Need Osteoplasty	
	N0581	(1) 대퇴, 하퇴, 상완, 전완 Thigh, Lower Leg, Upper Arm, Forearm	3,263.41
	N0582	(2) 지 Finger, Toe	2,137.57
		나. 연부조직의 성형을 요하는 것 Need Plastic Operation on Soft Tissue	
	N0583	(1) 대퇴, 하퇴, 상완, 전완 Thigh, Lower Leg, Upper Arm, Forearm	2,699.67
	N0584	(2) 지 Finger, Toe	1,862.17

IV-7. 사지접합수술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58-1		사지접합수술 Replantation of Extremities 주: 혈관성형술, 신경성형술, 건성형술, 골절내고정술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혈관, 신경 및 건의 수에 관계없이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N0587	가. 사지	33,495.33
	N0588	나. 수·족지	18,693.53
자-58-2	N1581	수지의 무지화 성형술 Pollicization of a Digit	10,355.53
자-58-3	N1582	족지를 이용한 수지재건술 [공여부절단술 포함] Reconstruction Thumb with Toe	26,406.54
자-58-4		생골 및 생피부판 이식술 Vascularized Osteocutaneous Free Flap	
	N1583	가. 혈관 부착 골이식술 Vascularized Bone Graft	24,178.54
	N1584	나. 혈관 부착 골피부판이식술 Vascularized Osteocutaneous Graft	30,986.80
	N1585	다. 유경혈관화 골이식술 Pedicled Vascularized Bone Graft	11,358.52
자-813	Q8130	팔적출술 [이식용] (편측) Hand/Arm Procurement	15,865.98
자-814	Q8131	팔이식술 (편측) Hand/Arm Transplantation	109,860.85

(1)자58-1 사지접합수술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출자료

사지접합수술은 다음의 자료를 통해 혈관성형술, 신경성형술, 건성형술, 골절내고정술 시행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함.

- 다 음 -

- 가. 수술 전 병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임상 사진 및 방사선 사진
- 나. 수술 중 건 봉합, 신경 봉합, 혈관 봉합과 혈류개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술기록 및 임상 사진
- 다. 수술 후 임상 사진

(공고 제2022-305호, 2023.1.1.진료분부터 적용)

IV-8. 관혈적 사지골절정복술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60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	
		가. 관혈적	
N0601	(1) 대퇴골 Femur		7,427.79
N0611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877.39점을 산정.		
N0602	(2) 상완골, 견갑골 Humerus, Scapula		5,780.26
N0612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795.23점을 산정.		
	(3) 전완골 Forearm		
N1601	(가) 요골 Radius		4,282.59
N1611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726.75점을 산정.		
N1602	(나) 척골 Ulnar		4,282.59
N1612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26.75점을 산정.		
N1603	(다) 요척골 동시 Radius and Ulnar		5,939.88
N1613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756.08점을 산정.		
	(4) 하퇴골 Crus		
N1604	(가) 경골 Tibia		4,986.73
N1614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622.76점을 산정.		
N1605	(나) 비골 Fibula		4,005.80
N1615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376.59점을 산정.		
N1606	(다) 경비골동시 Tibia and Fibula		6,478.56
N1616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423.19점을 산정.		
N0604	(5) 쇄골, 슬개골 [슬개골적출술 포함], 수근골, 족근골Clavicle, Patella, Carpal Bone, Tarsal Bone		4,625.36
N0614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819.29점을 산정.		
N0605	(6) 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3,499.89
N0615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173.45점을 산정.		

(1) 뼈전이암에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박병적골절(Impending pathologic fractures)에 실시한 자60 사지골절정복술 급여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

뼈전이암에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박병적골절(Impending pathologic fractures)에 실시한 사지골절정복술은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가. 대퇴 근위부의 2.5cm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 나. 병변이 피질골의 50% 이상을 파괴한 경우
- 다. 소전자부의 병적 견열 골절이 있는 경우
- 라. 방사선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통증이 있는 경우
- 마. 병적 골절의 예측을 위한 점수(Mirel's score) 8점 이상인 경우

(고시 제2019-315호, '20.1.1. 시행)

(2) 자-60가 사지골절정복술, 자-62 가관절수술 복잡행위기준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다 음 -

- (1) 해당 전문의(내과는 세부전문분야) 협진으로 아래의 질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1-1) 만성 신부전증 환자
 - (1-2)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필요한 환자
 - (1-3) 심혈관 스텐트를 가지고 있어 혈전제를 복용 중인 자
 - (1-4) 고도의 심근 경색/협심증이 있는 자 - Goldman cardiac risk III 이상
 - (1-5) 조절되지 않는 당뇨(HbA1C > 7.0) 환자
 - (1-6) 간경화가 있는 환자
 - (1-7) 혈액암 환자
 - (1-8) 혈액병 환자 또는 혈액 응고 이상이 있는 환자
 - (1-9) 고도의 폐쇄성 폐질환 환자
 - (1-10) 정맥혈전색전증으로 치료 과거력이 있는 자
 - (1-11) 뇌경색 등으로 aspirin보다 상위의 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
- (2) 치료 중인 상태의 류마티스 질환자로 DAS 28이 5.1 초과일 때
- (3) 말초동맥 폐색성 질환을 가진 자
- (4) 진행성 척수마비 또는 마미 증후군 환자
- (5) 병적 골절이 동반된 환자 : 원발성 골암, 전이성 골암 및 골다공증이 동반된 환자
- (6) ISS(Injury Severity Score) >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 혹은 3곳 이상의 수술을 필요로 하는 다발성 골절환자
- (7) 인공삽입물 주위 골절
- (8) 관절 내 골절
- (9) 사지골절정복술 또는 가관절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가 재발되어 재수술한 경우
- (10) 장축 1 inch 이상의 심한 골결손이 동반된 경우
- (11) G-A type III 이상의 개방성 골절, 탈장갑 손상이 있는 개방성 골절
- (12) 혈관 손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골절
- (13) 구획 증후군이 동반된 골절
- (14) 신경손상이 동반된 골절

(고시 제2014-113호, '14.8.1 시행)

(3)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골시멘트 보강술 급여기준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골시멘트 보강술은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 내고정술 시행 시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polymethyl methacrylate, PMMA)계 시멘트를 주입하는 행위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1. 급여대상

가. 골다공증성 골절(상지골, 하지골, 골반골) 환자에서 내고정술 시행 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 1) 65세 이상
- 2)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으로 측정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 3) 척추 골절 등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었던 환자에서 발생한 골절

2. 수가산정방법

가. 행위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고시되어 있는 다음의 해당 관혈적 수술의 범주에 해당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 1) 자59다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
- 2) 자60가(1)~(4)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 포함]

나. 치료재료: 사용된 골시멘트는 별도 산정함.

3. 실시횟수

가. 골절에 대한 내고정술 시행 시 해부학적 부위 당 1회

나. 단, 재골절 발생 혹은 불유합으로 인하여 내고정물 제거 후 재고정술 시행할 때 추가인정

(고시 제2023-121호, '23.7.1. 시행)

IV-9. 골절 Closed Pinning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60		나. 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	
	N0991	(1) 대퇴골 Femur	3,311.11
	N0992	(2) 상완골, 견갑골 Humerus, Scapula	2,498.46
		(3) 전완골 Forearm	
	N0996	(가) 요골 Radius	3,017.51
	N0997	(나) 척골 Ulnar	3,017.51
	N0998	(다) 요척골 동시 Radius and Ulnar	3,705.20
		(4) 하퇴골 Crus	
	N0999	(가) 경골 Tibia	3,017.51
	N1000	(나) 비골 Fibula	3,017.51
	N1001	(다) 경비골 동시 Tibia and Fibula	3,705.20
	N0995	(5) 쇄골, 슬개골 [슬개골적출술 포함], 수근골, 족근골 Clavicle, Patella, Carpal Bone, Tarsal Bone	1,997.52
	N0606	(6) 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1,974.14

IV-10. 체외금속 고정술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	
	N0981	가. 골반골, 대퇴골 Pelvis, Femur	6,820.75
	N0982	나. 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	3,555.60
	N0986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254.03점을 산정한다.	
	N0983	다. 전완골 Forearm Bone	3,048.25
	N0984	라. 수근골, 족근골 Carpal Bone, Tarsal Bone	3,082.83
	N0985	마. 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2,202.81
자-60-2	N0978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Removal of Implant for Internal Fixation	
	N0979	주: 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등을 간단히 제거한 경우 근막절개 하에 실시한 경우 ⁸⁾ 에는 885.59점을 산정하고, 근막절개 없이 실시한 경우 ⁹⁾ 에는 576.92점을 산정한다.	
	N0972	가. 골반골, 대퇴골 Pelvis, Femur	3,551.02
	N0973	나. 상완골, 견갑골 Humerus, Scapula	3,323.28
		다. 전완골, 하퇴골 Forearm Bone, Crus	
	N0977	(1) 요골과 척골중 하나, 경골과 비골중 하나 Radius or Ulnar, Tibia or Fibula	2,625.36
	N0974	(2) 요척골 동시, 경비골 동시 Radius and Ulnar, Tibia and Fibula	3,576.76
	N0975	라. 쇄골, 슬개골, 수근골, 족근골 Clavicle, Patella, Carpal, Tarsal	2,209.67
	N0976	마. 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1,711.60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60-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Removal of External Fixation	
	N1901	가. 골반골, 대퇴골 Pelvis, Femur	3,410.38
	N1902	나. 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	1,777.81
	N1903	다. 전완골 Forearm Bone	1,524.13
	N1904	라. 수근골, 족근골 Carpal Bone, Tarsal Bone	1,541.41
	N1905	마. 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660.85

(1)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의 급여기준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왜소증 및 사지부동에 실시한 골연장술 시

- 1) 왜소증: 「기질적 왜소증에 실시한 사지골연장술의 급여 인정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 2) 사지부동: 좌·우 길이 차이가 상지는 6cm 이상, 하지는 2.5cm 이상인 경우

나. 골 및 연부조직의 기형 및 결손: 단지증 상병에는 1cm 이상 단축이 있는 경우

다. 악성종양 절제술, 만성골수염 등으로 인한 골소실

라. 후 외상성 및 후 감염성 골단판 손상

마. 불유합 및 부정유합

바. 관절고정술에 선별적으로 시행 시

사. 골절

1) 일반적인 인정기준

- 가) Intra-articular comm. Fx (knee, ankle, wrist, elbow)
- 나) 간부의 분쇄골절, 개방성 골절에 선별적으로 시행 시

2) 소아골절의 인정기준

- 가) 위 "1) 일반적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나) 6-10세 사이의 다발성 장관골 골절을 동반한 대퇴골 간부골절
- 다) 대퇴골 간부골절에서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 중 교정이 필요할 정도의 단축 또는 각변형이 진행되는 경우

2. 수가 산정방법 동일 부위에 자60 사지골절정복술 [복합골절 포함] 또는 자30 절골술과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을 동시 실시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3. 치료재료 산정방법 치료재료는 체내고정용 재료와 체외고정용 기구로 구분하여 보상토록 하되 반드시 요양기관에서 직접 구입·사용하여야 함. 가. 체외 고정용: 제품별 요양기관 실구입가÷ 재사용 가능 횟수 나. 체내 고정용: 제품별 요양기관 실구입가× 실사용 개

(고시 제2023-56호, '23.3.29. 시행)

(2) 체외금속 고정술의 복잡기준

자60-1나 체외금속고정술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2014.8.1 시행) <보험급여과-2502>

- 왜소증 및 사지부동에 실시한 골연장술 시
- 악성종양절제술, 만성골수염 등으로 인한 골소실
- 불유합 또는 부정유합
- 관절을 포함하여 체외금속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자60-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수가산정방법

체외고정용 금속제거를 위해 절개 또는 소파술(curettage), 봉합을 시행한 경우 자60-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을 산정한다. 다만, 체내금속고정을 동반한 수술 등을 시행하면서 자60-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주수술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고시 제2021-229호, '21.9.1. 시행)

(4)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자60-2 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의 인정여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자60-2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중 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등을 간단히제거한 경우는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공고 제2021-124호, 2021.5.1. 진료분부터 적용)

IV-11. 수족골 적출술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61	N0610	수족골 적출술 Excision of Carpal and Tarsal Bone	2,909.87

IV-12. 가관절 수술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62		가관절수술 Repair of Nonunion or Malunion	
	N0621	가. 대퇴골 Femur	11,284.50
	N0631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2,958.53점을 산정한다.	
	N0622	나. 상완골, 전완골, 하퇴골 Humerus, Forearm Bone, Tibia	7,057.23
	N0632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8,315.36점을 산정한다.	
	N0624	다. 쇄골, 어깨골, 수근골, 족근골 Clavicle, Patella, Carpal, Tarsal	5,985.76
	N0634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835.17점을 산정한다.	
	N0623	라. 중수골, 중족골 Metacarpal, Metatarsal	4,918.22
	N0633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702.86점을 산정한다.	
	N0625	마. 지골 Finger, Toe	4,389.03
	N0635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042.92점을 산정한다.	

(1) 자62 가관절수술: 전기자극기 삽입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전기자극기 삽입술은 장골 골절의 1차 수술이후 불유합시 골유합 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차 수술시에는 적용할 수 없고, 불유합으로 인한 절단술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실시한 2차 수술 부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전극 삽입술

- 1) 부분침습형전기자극기 삽입: 자62 가관절수술의 소정점수의 25%를 산정함.
- 2) 매몰형전기자극기 삽입: 자62 가관절수술의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 3) 골이식술을 실시하면서 전기자극기 삽입: 자62 가관절수술과 자31-1 골이식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골편절제를 추가로 시행한 경우에는 자62 가관절수술과 자31 골편절제술, 자31-1 골이식술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나. 전극제거술

- 1) 체외고정한 전극을 제거시 Pure Titanium Cathode에 연결된 Pure Titanium Wire Insulated With Extruded Polyethylene를 제거하게 되므로 자3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2) 피하내 고정된 전극을 제거시에는 Batteries and Electronics Encapsulation in Silicone resin인 Pure Titanium Case와 Pure Titanium Anode 및 Pure Titanium Wire를 제거하게 되므로 자3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치료재료 요양기관이 자체에서 제작한 경우에는 실비로 산정하며, 구입한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 산정함.

(고시 제2017-201호, '17.11.6. 시행)

(3) 자-60가 사지골절정복술, 자-62 가관절수술 복잡기준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14-113호, '14.8.1 시행)

- 다 음 -

(1) 해당 전문의(내과는 세부전문분야) 협진으로 아래의 질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1-1) 만성 신부전증 환자
- (1-2)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필요한 환자
- (1-3) 심혈관 스텐트를 가지고 있어 혈전제를 복용 중인 자
- (1-4) 고도의 심근 경색/협심증이 있는 자 - Goldman cardiac risk III 이상
- (1-5) 조절되지 않는 당뇨(HbA1C > 7.0) 환자
- (1-6) 간경화가 있는 환자
- (1-7) 혈액암 환자
- (1-8) 혈우병 환자 또는 혈액 응고이상인 환자
- (1-9) 고도의 폐쇄성 폐질환 환자
- (1-10) 정맥혈전색전증으로 치료 과거력이 있는 자
- (1-11) 뇌경색 등으로 aspirin보다 상위의 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

(2) 치료 중인 상태의 류마티스 질환자로 DAS 28이 5.1 초과일 때

(3) 말초동맥 폐색성 질환을 가진 자

(4) 진행성 척수마비 또는 마미 증후군 환자

(5) 병적 골절이 동반된 환자 : 원발성 골암, 전이성 골암 및 골다공증이 동반된 환자

(6) ISS(Injury Severity Score) > 15점 이상 중증외상환자 혹은 3곳 이상의 수술을 필요로 하는 다발성 골절환자

(7) 인공삽입물 주위 골절

(8) 관절 내 골절

(9) 사지골절정복술 또는 가관절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가 재발되어 재수술한 경우

(10) 장축 1 inch 이상의 심한 골결손이 동반된 경우

(11) G-A type III 이상의 개방성 골절, 탈장갑 손상이 있는 개방성 골절

(12) 혈관 손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골절

(13) 구획 증후군이 동반된 골절

(14) 신경손상이 동반된 골절

IV-13. 사지골절 도수 정복술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64		사지골절도수정복술 Closed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	
	N0641	가. 골반골, 대퇴골 Pelvis, Femur	2,887.63
	N0642	나. 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	2,130.44
	N0643	다. 전완골 Forearm Bone	1,131.38
	N0644	라. 수근골, 족근골 Carpal Bone, Tarsal Bone	892.09
	N0645	마. 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786.42

(1) 동일 부위에 자64 사지골절도수정복술과 동시에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또는 자2 창상봉합술시 수가 산정방법

동일 부위에 자64 사지골절도수정복술과 동시에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또는 자2 창상봉합술 등 외과적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행위가므로 해당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고시 제2023-56호, '23.3.29. 시행)

IV-14. 급성 화농성 관절염 절개술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68		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 Arthrotomy for Acute Septic Joint	
	N0681	가. 고관절 Hip	4,419.61
	N0680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180.90점을 산정한다.	
	N0684	나. 견관절, 슬관절 Shoulder, Knee	3,248.95
	N0687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849.29점을 산정한다.	
	N0685	다.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Elbow, Wrist, Ankle	2,989.37
	N0688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542.35점을 산정한다.	
	N0686	라. 지관절 Finger, Toe	1,692.77
	N0689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115.72점을 산정한다	

(1) 자29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 자68 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 의 복잡기준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2014.8.1.시행) <보험급여과-2502>

-아 래-

- 골수염 또는 골농양 수술 또는 급성화농성관절염 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해당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해부학적 범위를 포함하는 다발성 골수염
- 골수염, 골농양, 화농성관절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 감입 골시멘트를 삽입하는 경우

IV-15. 사지관절절제술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70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 포함] Excision of Joint	
	N0701	가. 고관절 Hip	5,420.71
	N0706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386.79점을 산정한다.	
	N0700	나. 견관절 Shoulder	3,886.41
	N0709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806.94점을 산정.	
	N0710	다. 슬관절 Knee	3,886.41
	N0705	주: 1. Baker's Cyst 절제술을 행한 경우 3,264.69점을 산정.	
	N0718	2.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179.95점을 산정한다.	
	N0703	라.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Elbow, Wrist, Ankle	3,621.05
	N0708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341.71점을 산정한다.	
	N0704	마. 지관절 Finger, Toe	1,535.63

(1) 관절경하 활막절제술 (Synovectomy)의 수가 산정방법

관절경하 활막절제술(Synovectomy)은 자70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 포함] 해당부위별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된 생리식염수는 총사용량이 500ml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고시 제2023-56호, '23.3.29. 시행)

(2)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은 자70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 포함] 소정점수(관절경수기로 포함)로 준용하여 산정함.

(고시 제2023-56호, '23.3.29. 시행)

(3)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의 산정방법

개정 주요내용: (변경전)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 비용의 50% 인정, 치료재료 정액수가 금액 명시 (변경후)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관절경 치료재료 비용의 100% 인정, 치료재료 정액수가 비용 연차별 변경에 따라 금액 삭제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관절경·복강경·흉강경하 수술시 관절경 등을 이용한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산정함.

1) 관절경(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아래와 같이 인정함.

-아 래-

-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시행 시에만 인정함.
- 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다. 진단적 경검사 시

진단적 경검사 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2개까지 인정함.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

(4) 관절경 등 내시경하 수술을 양측 시행시 내시경 치료재료 산정방법

관절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동시에 양측 수술을 하는 경우 내시경 치료재료는 1회만 인정함.

(공고 제2019-429호,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5) 자70가·나·다 사지관절절제술 복잡기준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2014.8.1 시행) <보험급여과-2502>

-아 래-

- 결핵, 류마티스, 통풍, 색소용모결절성 활액막염(PVNS), 화농성관절염으로 광범위한 활액막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과거수술 후 호전되지 않아 전원 되어 재수술 하는 경우

(6) 연골성형술 (Chondroplasty) 수가 산정방법

연골 재생을 위한 연골성형술(Chondroplasty)의 수가는 시술과정 및 난이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다 음-

가. 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또는 다발성 천공술(Multiple drilling)의 방법으로 연골손상의 크기가1.5cm² 이상인 경우에 시행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의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

나. '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또는 다발성 천공술(Multiple drilling)의 방법으로 연골손상의 크기가 1.5cm² 미만인 경우에 시행한 경우' 또는 '관절연마(Abrasion) 등 기타 방법으로 시행한 경우'

:자-70 사지관절절제술의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 다만, 타 수술시 부수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12-153호, '12.12.1. 시행)

IV-16. 인공관절치환술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71		인공관절치환술 Replacement Arthroplasty	
		가. 전치환 Total Arthroplasty	
		(2) 견관절 Shoulder	
N2080	(가) 해부학적 Anatomical		10,151.12
N2081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5,752.01점을 산정.		
N2082	(나) 역행성 Reverse		9,063.50
N2083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4,064.30점을 산정.		
N2073	(4) 주관절 Elbow		6,920.72
N2078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759.30점을 산정.		
N2074	(5) 완관절 Wrist		6,921.36
N1714	(7) 지관절 Finger, Toe		2,739.45
		나. 부분치환술 Hemiarthroplasty	
N2711	(2) 견관절 Shoulder		8,218.76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9,848.50점		
N2713	(4) 주관절 Elbow		6,096.25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8,583.51점		
N2714	(5) 완관절 Wrist		5,991.71
N0717	(7) 지관절 Finger, Toe		2,163.60
		인공관절재치환술 Revision of Replacement Arthroplasty	
		가. 전치환 Total Arthroplasty	
N3711	(2) 견관절 Shoulder		11,653.02
N3716	주: 1.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4,362.75점		
N3721	2. 인공관절 삽입물의 제거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예는 5,737.56점을 별도 산정.		
N3726	3. '주2'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745.52점을 별도 산정.		
N3713	(4) 주관절 Elbow		8,801.21
N3718	주: 1.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0,427.11점을 산정.		
N3723	2. 인공관절 삽입물의 제거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4,554.67점을 별도 산정.		
N3728	3. '주2'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305.00점을 별도 산정.		
N3714	(5) 완관절 Wrist		8,224.74
N3724	주: 인공관절 삽입물의 제거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4,232.91점을 별도 산정.		
N1714	(7) 지관절 Finger, Toe		3,341.74
N1724	주: 인공관절 삽입물의 제거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1,518.22점을 별도 산정.		
		나. 부분치환 Hemiarthroplasty	
N4713	(4) 주관절 Elbow		6,587.07
N4718	주: 1.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639.39점을 산정.		
N4723	2. 인공관절 삽입물의 제거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3,583.72점을 별도 산정.		
N4728	3. '주2'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457.81점을 별도 산정.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N4714	(5) 완관절 Wrist		6,587.07
N4724		주: 인공관절 삽입물의 제거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3,583.88점을 별도 산정함.	
N1717	(7) 지관절 Finger, Toe		2,992.94
N1727		주: 인공관절 삽입물의 제거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1,242.95점을 별도 산정.	

(1) 자71 인공관절 치환술 : 골육종 상병에 외과적 치료 시 수가 산정방법

1. 골육종 상병으로 종양제거 후 인공관절치환술(또는 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 자71 인공관절치환술(또는 자73 관절 고정술)과 자28-1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각각 산정함.
2. 또한, 열처리된 자가골이식술은 저온 열처리부터 재삽입, 고정술 등의 과정이 필요한 바, 자가골이식술료는 자31 골편 절제술과 자31-1 골이식술로 산정하고, 체내금속고정술 행위료는 자60 사지골절정복술 [복합골절 포함] 해당 행위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고시 제2023-56호, '23.3.29. 시행)

(2) 인공관절치환술 (견관절)의 급여기준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행된 외상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드관절염, 혈우병성 관절병증

나) 상완골 골절

(1) 근위부 4분골절

(2)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의 3분골절

(3) 골두의 분열골절 또는 상완골두관절면의 40% 이상을 침범한 골두의 감입골절

다) 상완골두의 무혈성 괴사

라) 악성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2) 역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 만 65세 이상 환자의 회전근개 파열로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복원술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1)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2) 봉합이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에서 가성마비가 동반된 경우

(3) 심한 류마티드 관절염에서 회전근개 대형 파열이 동반된 경우

나) 악성 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다) 상완골 골절

(1) 상완골 경부 골절에서 1차 수술이 실패하여 다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2) 만70세 이상의 상완골 근위부 3, 4분 골절 중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3) 골다공증이 있는 만 65세 이상 환자의 4분 골절

3) 상기 1)~2)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상기 가. 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 하지 아니함.

- 아 래 -

1)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2) 성장기 아동

3) 수술 후 일상생활, 재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시 제2022-110호, '22.5.1. 시행)

(3) 금속 재질의 요골두 치환용 치료재료(Bipolar Radial Head Prosthesis 등)의 인정기준

1. 급성 요골두 골절중 분쇄가 심하여 내고정이 어려운 제3형 골절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요골두골절을 동반한 주관절탈구(제4형)

나. 내측 측부인대 동반손상

다. 동반되거나 지연된 외측 측부인대 기능부전

라. 주두와 요골두 골절이 동반된 Monteggia 변형(variant) 마. 구상돌기 골절동반

바. 동반원위 요척관절 손상

2. 과거 요골두를 제거한 후 속발한 합병증(주관절의 만성 불안정, 특히 외반 불안정, 후외반 회전 불안정, 요골의 근위 이동으로 인한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과 통증, 회전 제한 등)으로 인한 재건술.

* 참고사항 : 수기료는 자71나(2) 인공관절부분치환술(주관절)에 해당.

(고시 제2009-135호, '09.8.1. 시행)

(4) 자71 인공관절치환술·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술 복잡기준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2014.8.1 시행) <보험급여과-2502>

-아 래-

(1) 해당 전문의(내과는 세부전문분야) 협진으로 아래의 질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1-1) 만성 신부전증 환자
- (1-2)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필요한 환자
- (1-3) 심혈관 스텐트를 가지고 있어 혈전제를 복용중인 자
- (1-4) 고도의 심근 경색/협심증이 있는 자 - Goldman cardiac risk III 이상
- (1-5) 조절되지 않는 당뇨(HbA1C > 7.0) 환자
- (1-6) 간경화가 있는 환자
- (1-7) 혈액암 환자
- (1-8) 혈우병 환자 또는 혈액 응고이상인 환자
- (1-9) 고도의 폐쇄성 폐질환 환자
- (1-10) 정맥혈전색전증으로 치료 과거력이 있는 자
- (1-11) 뇌경색 등으로 aspirin보다 상위의 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

- (2) 치료 중인 상태의 류마티스 질환자로 DAS 28이 5.1 초과일 때
- (3) 말초동맥 폐색성 질환을 가진 자
- (4) 진행성 척수마비 또는 마미 증후군 환자
- (5) 병적 골절이 동반된 환자: 원발성 골암, 전이성 골암 및 골다공증이 동반된 환자
- (6) 감염성 후유증이나 삽입물 주위 감염 후 인공관절치환술
- (7) 장축 1 inch 이상의 골결손이 동반된 인공관절치환술
- (8) 15° 이상의 골변형이 동반된 인공관절치환술
- (9) 가성마비, 회전근개파열관절증, 광범위 파열 후 인공관절치환술을 재수술로 시행하는 경우
- (10) 관절구축이 20° 이상인 경우
- (11) 인공관절재치환술의 재치환술

(5) 인공관절치환술 후 재수술시 중간부속품만 교체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인공관절치환술 후 일부 부속품만 교체하는 재수술시 수가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가. 고관절

- 1) Stem 또는 Cup을 포함하여 교체시
: 자71-1나(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고관절)의 소정점수와 제거료[자71-1나(1) 주2 또는 주3] 를 산정
- 2) Stem과 Cup은 그대로 두면서 poly liner, femoral head 등과 같은 중간부속품만 교환한 경우
: 자71-1 나(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고관절)의 소정점수만 산정(제거료 산정 불가)

나. 슬관절

- 1) 슬개골(patella), 대퇴골(femur), 경골(tibia)부품을 교체시
예시)
① 슬개골·대퇴골 또는 경골을 단독 시행
② 슬개골과 대퇴골을 동시 시행
③ 슬개골과 경골을 동시 시행
: 자71-1나(3)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의 소정점수와 제거료
[자71-1나(3) 주2 또는 주3]를 산정
- 2) 위 '1)'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 부속품(bearing, poly liner 등)만 교체시 자71-1 나(3) 인공관절 재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의 소정점수를 산정(제거료 산정 불가)

(고시 제2018-281호, '19.1.1. 시행)

(6) 로봇보조 인공관절치환술 (Robot-assisted arthroplasty)

인공관절치환술 시, 로봇수술기를 이용하여 절삭 및 절골후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자71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18-70호)

IV-17. 절제관절성형술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72		절제관절성형술 Resection Arthroplasty	
	N0721	가. 고관절 Hip	9,197.62
	N0722	나. 견관절, 슬관절,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Shoulder, Knee, Elbow, Wrist, Ankle	4,655.98
	N0724	다. 지관절 Finger, Toe	2,421.51

IV-18. 관절고정술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73		관절고정술 Arthrodesis	
	N0731	가. 고관절 Hip	7,313.57
	N0738	나. 견관절 Shoulder	6,561.57
	N0739	다. 슬관절 Knee	6,561.57
	N0733	라.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Elbow, Wrist, Ankle	6,376.16
	N0736	주: 1.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7,354.04점 산정.	
	N0735	2. 족관절에 삼중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 6,497.22점을 산정.	
	N0737	3. '주2'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7,746.41점을 산정.	
	N0734	마. 지관절 Finger, Toe	3,150.10

(1) 자73다·자73다주 관절고정술 복잡기준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2014.8.1 시행) <보험급여과-2502>

-아 래-

- 관절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해당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
- 해당 관절의 감염(화농성관절염, 골수염)으로 인한 수술
- 골변형 교정이 필요한 경우
- 신경병증성 관절증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
- 인공관절치환술 실패 후 시행한 경우

IV-19. 관절 탈구 정복술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75		관절탈구 관혈적정복술 Open Reduction of Dislocation	
	N0751	가. 고관절 Hip	6,214.09
	N0752	나. 견관절 Shoulder	4,559.95
	N0753	다. 주관절 Elbow	4,083.21
	N0754	라. 슬관절 Knee	4,147.15
	N0755	마. 완관절, 족관절 Wrist, Ankle	3,619.98
	N0756	바. 지관절 Finger, Toe	2,309.12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76		관절탈구 도수정복술 Closed Reduction of Dislocation	
	N0761	가. 고관절 Hip	2,265.14
	N0762	나. 견관절 Shoulder	1,075.91
	N0763	다. 주관절, 슬관절 Elbow, Knee	872.72
	N0764	라. 완관절, 족관절, 지관절 Wrist, Ankle, Finger, Toe	839.39
	N0765	마. 요골골두 아탈구 Radial Head Subluxation	486.08
자-78	N0780	비관혈관절수동술 Brisement Force [Manipulation of Joint]	1,121.02

(1)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

1. 견관절, 슬관절에 실시하는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 (Brisement Force [Manipulation of Joint])은 보존적 치료 (약물치료, 관절강내 주사,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Passive ROM)가 50% 이상 감소 하여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20-163호, '20.8.1. 시행)

IV-20. 건에 대한 수술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83	N0830	용수지수술 Trigger finger	1,227.80
자-90	N0900	갱그리온 적출술 Excision of Ganglion	1,665.75
자-91	N091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Subcutaneous Tenotomy	1,874.73
	N0912	주: 간단한 건 봉합을 한 경우에는 2,186.20점을 산정한다.	
자-92	N0920	아킬레스건 재건술 Reconstruction of Achilles Tendon	3,992.59
	N0921	주: 아킬레스건 연장술(Heel Cord Lengthening)을 시행한 경우에는 5,439.10점을 산정한다.	
자-92-2		근막절개술 Fasciotomy	
	N0922	가. 단순 절개 Simple	2,185.48
	N0923	나. 복잡 절개 [여러구획이나 근육 및 신경의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Complex	3,738.01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 Reconstruction of Tendon and Ligament	
	N0931	가. 간단한 것 [절제, 봉합, 박리] Simple	3,728.23
	N0933	주: 근에 대한 봉합술, 이식술, 이행술, 교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2,945.79점을 산정한다.	
	N0932	나. 복잡한 것 [이식, 이전, 교환, 인공건 성형] Complex	5,328.79
	N0934	주: 근에 대한 봉합술, 이식술, 이행술, 교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4,779.31점을 산정한다.	
자-94	N0941	건박리술 Tenolysis	2,932.98
	N0942	주: 간단한 건박리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2,220.08점을 산정한다.	

(1) 활액낭절제술 (Bursectomy)의 수기로 산정방법

활액낭절제술(Bursectomy)은 해부학적 위치와 수술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자90 갱리온적출술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함.

(고시 제2007-46호, '07.6.1. 시행)

(2)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고시 제2017-118호, '17.7.1. 시행)

- 다 음 -

가. 굴곡측

- 1) 건·인대 개수가 1-2개 :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2) 건·인대 개수가 3-5개 :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3)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나. 신전측

- 1) 건·인대 개수가 1개 :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2) 건·인대 개수가 2-3개 :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3) 건·인대 개수가 4-5개 :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4)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3)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

Carpal Tunnel Release의 수기로 산정방법

Carpal Tunnel Release는 자93가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한 것)로 산정함. 다만, 신경박리술(neurolysis)을 병행시에는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 소정점수로 산정함.

(고시 제2018-281호, '19.1.1. 시행)

(4) 자88 십자인대 성형술, Tendon 채취 수기로 산정방법

1. 십자인대성형술시 동시에 시행한 건이식(Tendon transfer)은 자88 십자인대성형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2. 십자인대성형술시 타 부위에서 Tendon을 채취한 경우 자91 건·인대피하단열수술 소정점수를 Tendon별로 각각 산정하되, Tendon을 골편과 같이 채취한 경우에는 자31 골편절제술 소정점수의 100%와 자91 건·인대피하단열수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 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고시 제2017-118호, '17.7.1. 시행)

IV-21. 혈관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163	혈관성형술 Angioplasty		
	가. 직접 봉합 End-to-End Anastomosis		
	OA633	(3) 기타 Others	4,683.15
	OA639	(나) 자가혈관 이용 [채취료 포함] Autologous Vessel	10,772.77
자-207	혈관결찰술 Vessel Ligation		
	O2073	다. 기타 Others	3,892.73
	O2074	주: 혈관결찰술 및 혈관봉합술의 간단한 것의 경우에는 2,894.52점을 산정한다.	

(1) 자207 혈관결찰술

외상으로 인한 사지말단 부위 혈관(요·척골 또는 경·비골 동맥 이하) 손상의 단단문합술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외상으로 인한 사지말단 부위에 있는 혈관(요·척골 또는 경·비골 동맥 이하) 손상으로 동일 절개 하 단단문합술 (end-to-end anastomosis)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207다 혈관결찰술(기타)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동시에 여러 개의 혈관을 봉합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혈관은 소정 점수의 100%를, 두 번째 혈관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 산정함.

(고시 제2010-115호, '11.1.1. 시행)

IV-22. 신경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459	신경성형술 [감압, 박리 등] Neuroplasty		
	S4594	나. 상완 및 요, 천추 신경총 Brachial, Lumbar, Sacral Plexus	4,808.18
	S4595	다. 중요말초신경 [사지부, 구간 등] Major Peripheral Plexus	3,616.08
	S4596	라. 수족지부 Hand and Foot	2,894.68
자-460	신경이식술 Nerve Graft		
	가. 자가신경 이용 [채취료 포함]		
	S4605	(1) 4cm 미만	8,215.99
	S4606	(2) 4cm 이상	11,727.54
	S4607	나. 동종신경 이용	8,209.28
자-460-1	신경봉합술 Neurorrhaphy		
	S4602	나. 상완 및 요, 천추 신경총 Brachial, Lumbar, Sacral Plexus	5,428.51
	S4603	다. 중요 말초신경 [사지부, 구간 등] Major Peripheral Nerve	3,890.20
	S4604	라. 수족지부 Hand or Foot	2,496.22
자-461	신경절단술 Neurectomy		
	S4612	나. 중요 말초신경 [사지부, 구간 등] Major Peripheral Nerve	2,941.04
	S4613	다. 수족지부 Hand or Foot	2,783.37
자-461-1	신경종양절제술 Excision of Neuroma		
	S4615	가. 양성 Benign	3,018.04
	S4616	나. 악성 Malignant	6,232.97

(1) 자 459 신경성형술 : 신경재접합술, 신경재위치술, Nerve Reposition

자459 신경성형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2) 자-460 신경이식술의 수가 산정방법

신경이식술은 외상이나 병변 등으로 인한 신경의 결손부위에 환자 자신의 신경을 이식하는 수술로서, 안면신경마비 등에 신경 이식술시 한군데의 공여부에서 신경을 분리하여 이를 나누어 각기 다른 두군데 이상의 신경분지에 각각 이식하는 경우 제1신경은 자460 신경이식술 소정금액에 의하고, 제2신경부터 제3신경까지는 소정금액의 100%를 가산하며, 제4신경 이상은 소정금액의 200%를 가산하며 자163 혈관성형술 등 다른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고시 제2018-281호(행위), '19.1.1. 시행)

(3) 자-460 세군데 공여부에서 채취하여 한군데 신경에 신경이식시 수가 산정방법

신경이식술시 두군데 이상의 각기 다른 공여부에서 신경을 분리하여 하나의 신경에 이식할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공여 부위에 따라 제1신경은 자460 신경이식술 소정점수 100% 산정하고, 제2신경부터 제3신경까지는 자460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며, 제4신경 이상은 자460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함.

(고시 제2007-92호, '07.11.1. 시행)

(4) 자460가 신경이식술-자가신경이용[채취료 포함]의 수가 산정방법

자460가 신경이식술-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고시 제2019-190호, '19.9.1. 시행)

- 다 음 -

1. 단일 공여부에서 하나의 신경을 채취하여 이를 나누어 두 곳 이상의 신경분지에 각각 이식하는 경우
 - 가. 신경개수가 1개: 자460가 신경이식술-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 소정점수 산정
 - 나. 신경개수가 2-3개: 자460가 신경이식술-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 소정점수의 200% 산정
 - 다. 신경개수가 4개 이상: 자460가 신경이식술-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 소정점수의 300% 산정
2. 두 곳 이상의 각기 다른 공여부에서 신경을 채취하여 이를 단일 부위에 이식하는 경우
 - 가. 신경개수가 1개: 자460가 신경이식술-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 소정점수 산정
 - 나. 신경개수가 2-3개: 자460가 신경이식술-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 소정점수의 200% 산정
 - 다. 신경개수가 4개 이상: 자460가 신경이식술-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 소정점수의 300% 산정
3. 자460가 신경이식술-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을 자163 혈관성형술 등 다른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항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5) 자460나 신경이식술- 동종신경이용의 급여기준

1. 자460나 신경이식술-동종신경 이용 및 해당 행위에서 사용되는 동종신경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9-190호, '19.9.1. 시행)

- 다 음 -

- 가. 급여대상 : 사용되는 이식재의 길이가 5cm 이하이면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 공여부에서 필요한 자가 신경을 얻을 수 없는 경우
 - 2) 재수술로 인해 적절한 자가 신경이 없을 경우
 - 3) 당뇨, 말초혈관질환 등 상처 치유의 지연 요인이 되는 기저질환으로 자가 신경을 얻을 수 없는 경우
- 나. 동종신경 급여개수
- 1) 부위 당 1개 * 부위: 7부위(두부, 복부, 배부, 좌·우·상·하지)
 - 2) 손가락 1개 당 1개, 발가락 1개 당 1개
2. 상기 1.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6) Supercharged End to side nerve transfer

주관절에서 척골 신경 감압

자 459. S4595 신경성형술(주요말초신경) (주수술) 적용.

손목에서 AIN 과 척골신경 봉합

자460-1 S4603 신경봉합술(주요말초신경) (주수술) 적용하고, Guyon canal release 는 신경봉합술의 과정으로 자 93가 건인대 간단 불인정.

단, Guyon canal 부위에서 결절종, 종양등의 병소가 있어 추가적인 재건술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인정할 수 있음.

- 적용증 -

1. 심한 팔꿈치 터널 증후군 환자.(손의 내재근 위축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 C8-T1 신경근 손상 환자.
3. Brachial plexus medial cord가 손상된 환자.
4. 손목 근위부와 팔꿈치 사이에서 신경이 손상된 경우.

[2020.11.19.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7) 자461 신경절단술

동일 피부 절개하에 Adductor Tenotomy, Obturator Neurectomy 수가 산정방법

뇌성마비 상병에 동일 피부 절개하에 Adductor Tenotomy와 Obturator Neurectomy를 동시 실시시 자461 신경절단술 소정점수 100%와 자91 건·인대 피하 단열수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고시 제2014-126호, '14.8.1. 시행)

V. 치료재료 (“2024년 7월판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참고)

V-1. 일반사항

V-1-(1) 관절경하 수술용 지혈·소작기(VAPR Electrode, Arthrowand 등)의 별도 산정여부

관절경하 수술용 지혈·소작기(VAPR Electrode, Arthrowand 등)는 관절경 수가(N0031003, Q9923)에 포함됨.
(고시 제2023-242호, '24.1.1. 시행)

V-1-(2) 전기 수술기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교체용 팁(Plasmawand)의 별도 산정여부

수술시 전기수술기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교체용 팁 (Plasmawand 등)은 소정 행위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9-200호, '09.11.1. 시행)

V-1-(3) “CTR Blade Assembly”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CTR Blade Assembly”는 관절경하 수근관확장술시 사용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03.1.1. 시행)

V-1-(4) “KNIFELIGHT”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KNIFELIGHT”는 수근관 인대절제용 칼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03.1.1. 시행)

V-1-(5) 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Burr, 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 방법

검사 및 수술시 전동장비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골 및 조직을 절삭, 연마하는데 사용되는 Burr, Saw 등 절삭기류는 시술 과정상 여러종류가 동시에 반복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류 및 사용개수를 불문하고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하고, 2가지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시술되는 경우 등의 수기로 산정방법에 따른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의 세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코드 N0051001~N0051020)

- 다 음 -

가.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한 경우

- 1) 동일 피부 절개 하 수술 시(동일 병소에 대하여 절개부위를 달리 하는 수술 시 포함) 주된 수술에 해당하는 치료재료 비용(정액수가)만 1회 산정함.
 - 2) 양측 수술 또는 병소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피부 절개 하수술의 경우 해당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각각 산정함.
- 나. Burr, Saw 등 절삭기류와 관절경 수가(N0031003, Q9923)는 동일병소에 동시(중복) 산정할 수 없음.
- 다. 치과의 치아 당(또는 1/3약당) 시술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는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1회만 산정함

(고시 제2023-242호, '24.1.1. 시행)

V-1-(6)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의 산정방법

개정 주요내용: (변경전)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 비용의 50% 인정, 치료재료 정액수가 금액 명시.
(변경후)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관절경 치료재료 비용의 100% 인정, 치료재료 정액수가 비용 연차별 변경에 따라 금액 삭제.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관절경·복강경·흉강경하 수술시 관절경 등을 이용한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산정함.

1) 관절경(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아래와 같이 인정함.

- 아 래 -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시행 시에만 인정함.

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2)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코드 N0031001)

3) 흉강경(코드 N0031002)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 등),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HALS), 절삭기(초음파절삭기, 전파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관절경 Cannular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치료재료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160,000원 (N0031004)

연부조직 소작 및 지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체의 치료재료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다. 진단적 경검사 시

진단적 경검사 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2개까지 인정함.

라. 기타

- 1) 뇌실 복강간 셉트 수술시 복막유착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Peritoneal Catheter 삽입을 위한 투관침(Trocar)은 2개까지 인정함.
- 2)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 교정(Nuss Op)시 치료재료는 투관침(Trocar) 1개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으로 흉강경하 수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에 의하여 산정함.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

V-1-(7) 관절경 등 내시경하 수술을 양측 시행시 내시경 치료재료 산정방법

관절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동시에 양측 수술을 하는 경우 내시경 치료재료는 1회만 인정함.

(공고 제2019-429호,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V-2. 처치 및 수술료

V-2-(1) 필름 드레싱류 및 폼 드레싱류, 항균 성분함유의 급여기준

1. 필름 드레싱류 및 폼 드레싱류, 항균 성분함유는 염증반응이 없는 상처부위(Clean Wound)에 사용하는 재료로 1회 사용으로 장기간의 드레싱 유지가 가능하여 처치횟수 감소의 장점이 있으므로 다음의 경우에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가. Central Venous Catheter(PICC, Port 포함) site
- 나. Skin Graft Donor Site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 시는 해당 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8-206호, '18.10.1. 시행)

V-2-(2)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1.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는 창상 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 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요양 급여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 1) 체표면적 20% 미만의 경우 4개/주, 4주간
- 2) 체표면적 20% 이상의 경우 실사용량, 4주간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4개/주, 4주간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실사용량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 (단, 규격별 세부분류 이하 명시는 생략함)

- 아 래 -

가. 첨가제가 없는 경우

- 1) 폼 드레싱류(SHEET TYPE)
- 2) 폼 드레싱류(CAVITY TYPE/원통형)
- 3) 폼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 4) 폼 드레싱류(입체형/hand)
- 5)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SHEET TYPE)

(고시 제2021-48호, '21.7.1. 시행)

V-2-(3) '은 함유'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1. '은 함유' 드레싱류는 은이온 성분의 살균작용에 의하여 창상 치유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어 화상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가. 사체피부 또는 인공피부 이식 병변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 나. 피부이식 2주 후 또는 화상이 치료 3주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불완전 창상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 다. 공여피부 부족으로 2회 이상 같은 부위를 채피한 경우 1회 인정
- 라. 감염된 채피창(donor site) 병변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 마. 피부가 얇아 연골이나 인대가 쉽게 노출되는 귀, 코 등 부위의 경우 치료기간 중 2장/2주 인정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중증(major burn)이상의 심부2도 화상처치(Burn dressing)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8-59호, '18.4.1. 시행)

V-2-(4) 진공음압창상 처치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1. 진공음압창상처치(창상부위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음압장비와 연결하여 불순물을 흡인하는 치료방법)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진공음압창상처치 전의 진료 기록(창상의 크기와 깊이 등 명시)과 해당 환부의 사진이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가. 진공음압창상처치용 드레싱류
 - 1) 육아조직 형성이 필요한 급성 개방성 창상 중에서 다른 국소처치로는 육아조직 형성 촉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 2) 만성 개방성 창상 중에서 당뇨병성 궤양, 압박성 궤양 :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 3) 그물망형 이식(Meshed graft), 피판(Flap) : 3개 이내/주, 2주 이내로 인정
- 나.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 상기 가.1)~3)에 사용 시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2. 상기 1. 급여대상의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금기증

- 가. 딱지가 있는 괴저성 조직
- 나. 아직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골수염
- 다. 장(腸)이 아닌 진료하지 않은 루(瘻) (Non-enteric and unexplored fistulas)
- 라. 악성 상처(Malignancy in the wound)
- 마. 노출된 맥관(脈管)
- 바. 노출된 신경(Nerves)
- 사. 노출된 문합부위(Anastomotic site)
- 아. 노출된 장기(Organs)
- 자. 상처부위에 암(cancer)이 있는 경우

(고시 제2018-59호, '18.4.1. 시행)

V-2-(5) 봉합사 산정기준

1. 산정방법 : 처치 및 수술시 사용된 봉합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사용량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치료재료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함.

- 다 음 -

- 가. 천자, 생검, 내시경 검사 등에 사용한 경우
- 나. 중재적(경피적, 내시경적) 시술시 사용한 경우
- 다. 다른 특수기기(레이저, 감마나이프 등)를 이용하는 경우
- 라. 안면수술을 제외한 2cm이하의 피부봉합 또는 피부고정

2. 기타 : 봉합사 제품명(catalog No.), 굵기(Gauge), 사용량 등을 진료기록부(수술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고시 제2007-143호, 2008.1.1. 시행)

V-2-(6) 이종 진피대체물의 급여기준

1. 전층이 손실된 피부조직 재건을 위하여 치료기간 중 자가 부분층이식재와 함께 사용하는 치료재료인 이종 진피대체물은 수술 후 반흔 구축을 최소화하고 이식부위 관절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 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가. 관절부위를 포함하는 3도 화상
- 나. 건, 뼈, 신경, 혈관, 관절낭의 노출이 동반된 창상
- 다. 운동제한(관절부위)을 동반한 반흔 구축의 재건

2. 상기 1항 급여대상 이외 전층 피부결손 동반한 연부조직 손상에 사용한 이종 진피대체물의 요양급여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상기 1항 및 2항 급여대상은 임상적으로 명확한 감염 징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Medical photo, 진료기록부(화상, 창상의 정도와 넓이 명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고시 제2020-304호, '21.1.1. 시행)

V-2-(7) 동종피부 및 동종진피(GRAFT용) 급여기준

1. 화상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피부조직이 결손된 부위에 사용하는 드레싱용 동종피부와 전층이 손실된 피부조직 재건을 위하여 자가부분층이식재와 함께 사용하는 동종진피 (GRAFT용)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동종피부

1) 급여대상

가) 2도 화상이 체표면적 30%이상

나) 3도 화상이 체표면적 10% 이상

2) 인정횟수 : 부위별 1회

3) 인정개수 : 실사용량

나. 동종진피

1) 급여대상

가) 관절부위를 포함하는 3도 화상

나) 건, 뼈, 신경, 혈관, 관절낭의 노출이 동반된 창상

다) 운동제한(관절부위)을 동반한 반흔 구축의 재건

2) 인정횟수 : 부위별 1회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아래의 경우에 사용한 동종피부 및 동종진피(GRAFT용)의 요양급여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동종피부

급여대상 이외의 중증화상(major burn)의 경우

나. 동종진피

1) 상기 1항 나.2) 인정횟수(부위별 1회)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 전층 피부결손 동반한 연부조직 손상에 사용한 경우

3. 상기 1항과 2항의 동종진피(GRAFT용) 급여대상은 임상적으로 명확한 감염 징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Medical photo, 진료기록부(화 상, 창상의 정도와 넓이 명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고시 제2020-304호, '21.1.1. 시행)

V-2-(8)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급여기준

1. 자가골을 대체하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는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나.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 또는 골다공증(T-score ≤ -2.5 :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된 값)

라. 안면-두개골 수술 시

바. 사지 및 골반골 수술 시 골결손이 심해 자가골 이식만으로 부족한 경우

사. 수술 중 허혈성 속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아. 악골에 골결손이 심해 자가골 이식이 어려운 경우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상기 1., 2.의 경우에도 다음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골대체제간의 병용 사용

나. 슬관절치환술시 수술과정에서 기구 장착을 위해 발생하는 원위 대퇴골 골수강내 구멍(intramedullary hole)을 메우는데 사용한 경우

(고시 제2023-85호, '23.5.1. 시행)

V-2-(9) 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

1. 수용성합성물질로 만들어진 뼈 지혈제는 BONE WAX에 비해 뼈 생성 및 골 융합 용이성, 뼈 감염을 방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하되, 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 한하여 사용량을 5g까지 인정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다음의 경우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상기 1항의 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서 인정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나. 65세 미만의 흉골 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

다. 출혈이 많은 수술인 골반골절수술

라. 비구골절수술

- 마. 장관골의 관혈적정복술
- 바. 척추수술
- 사. 인공관절 삽입술

(고시 제2023-293호, '24.1.1. 시행)

V-2-(10) Drill Bit의 급여여부

Drill Bit는 체내 고정용 나사를 삽입하기 위하여 구멍을 뚫는데 사용하며 소독하여 수회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 제제이므로 소정 수술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V-2-(11) 금속 재질의 요골두 치환용 치료재료(Bipolar Radial Head Prosthesis 등)의 인정기준

1. 급성 요골두 골절중 분쇄가 심하여 내고정이 어려운 제3형 골절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 가. 요골두골절을 동반한 주관절탈구(제4형)
- 나. 내측 측부인대 동반손상
- 다. 동반되거나 지연된 외측 측부인대 기능부전
- 라. 주두와 요골두 골절이 동반된 Monteggia 변형(variant)
- 마. 구상돌기 골절동반
- 바. 동반원위 요척관절 손상

2. 과거 요골두를 제거한 후 속발한 합병증(주관절의 만성 불안정, 특히 외반 불안정, 후외반 회전 불안정, 요골의 근위 이동으로 인한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과 통증, 회전 제한 등)으로 인한 재건술.

* 참고사항 : 수술료는 자71나(2) 인공관절부분치환술(주관절)에 해당

(고시 제2009-135호, '09.8.1. 시행)

V-2-(12) 1회용 제모용 클리퍼 급여기준

1회용 제모용 클리퍼는 감염예방을 위해 체모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두개, 장·장간막·허니아,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남성생식기, 직장 및 항문, 인공관절치환(고관절) 수술에 방해가 될 정도로 체모가 있는 경우 사용 시1개 인정함. * 두개는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분류에서 [기본처치]를 제외한 두개부위 수술임.

(고시 제2017-198호, '17.11.1. 시행)

V-2-(13) 1회용 Air Blanket류 급여기준

1. 1회용 Air Blanket류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수술부위 감염 예방을 도와주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 수술당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 가. 만 6세미만 전신마취 수술
- 나. 만 70세 이상 전신 및 척추마취 수술
- 다. 장기이식 수술
- 라. 심장 수술
- 마. 대장, 직장, 회음부 전신마취 수술

2. 다만, 상기 '마'에 해당하는 수술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아래의 분류에 포함되는 수술에 대하여, 3시간 이상 장시간 수술한 경우 인정함.

- 아 래 -

- 가. [장·장간막·허니아]
- 나. [직장 및 항문] 중 대장 및 직장 수술
- 다. [남성생식기]
- 라.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중 임신과 분만을 제외한 회음부 수술

(고시 제2017-198호, '17.11.1. 시행)

V-2-(14) 일반인대고정용(견,슬,소관절용)-INTERFERENCE SCREW(흡수성)의 급여기준

1. 일반인대고정용(견,슬,소관절용)-INTERFERENCE SCREW(흡수성)는 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가. 슬관절 전후방십자인대 및 측부인대성형술, 슬개건 재건술
- 나. 족관절, 완관절의 인대 재건술
Suture Anchor(봉합나사못)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Suture Anchor(봉합나사못)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함.
- 다. 견관절 상완이두근건 고정술: 1개

2. 상기 1항 나. 족관절, 완관절의 인대 재건술시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22-110호, '22.5.1. 시행)

V-2-(15) Suture Anchor의 급여기준

1. 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Suture Anchor(봉합 나사못)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가. 견관절(shoulder)
 - 1) 단독병변일 경우: 6개 이내
 - 2) 복합병변일 경우: 8개 이내
 - 나. 주관절(elbow), 슬관절(knee), 완관절(wrist), 족관절(ankle), 고관절(hip) : 2개
 - 단, 완관절, 족관절에 일반인대고정용(견,슬,소관절용)-INTERFERENCE SCREW(흡수성)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대고정용(견,슬,소관절용)-INTERFERENCE SCREW(흡수성)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함.
 - 다. 지관절(finger, toe) : 1개
2. 상기 1항 급여대상의 적응증별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22-110호, '22.5.1. 시행)

V-2-(16) 인조인대의 급여기준

1. 인대 손상 시 사용하는 인조인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가. 자신의 인대나 근을 이식 또는 재건할 수 없는 경우
- 나. Rockwood type III,IV,V,VI에 해당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 다. 오구쇄골 간격이 견 축에 비해 100% 이상 증가한 불안정형의 원위 쇄골의 골절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20-85호, '20.5.1. 시행)

V-2-(17) 동종건의 급여기준

1. 건 및 인대 손상 시 사용하는 동종건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 급여를 인정함.

- 라. 주관절
 - 1) 주관절 인대 재건술 후 재발하여 다시 재건하는 경우
 - 2) 상완 삼두근 원위부 결손으로 인해 재건하는 경우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20-85호, '20.5.1. 시행)

V-2-(18) 1회용 수술(시술)팩의 급여기준

1회용 수술(시술)팩은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환자용, 의료진용, 수술기구용, 기타 구성품으로 구성된 패키지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해당 치료재료비용을 산정함. 또한, 적응증 이외의 경우에는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 가. 적응증
 - 1) 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 2) 중재적 방사선시술
 - 3)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를 위해 Cannula를 삽입하는 시술
 - 4) 중심정맥관 삽입술
 - 5) 자연분만
- 나. 인정개수 : 수술(시술) 당 1개 인정
 - 단, 협의 진료료 2가지 이상 수술(시술)을 동시에 시행하여 수술(시술)팩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인정.
- 다. 산정방법
 - 1) 적응증 '가. 1)'의 경우 'CABG 수술팩', 'Shoulder, Knee, Hip 관절치환 수술팩', '눈 수술팩', '마취시간별 수술팩 (I)~(IV) 중 해당 수술팩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 2) 적응증 '가. 2)~4)'의 경우 '중재적 방사선 시술팩', 'ECMO 시술팩',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팩' 중 해당 시술팩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 3) 적응증 '가. 5)'의 경우 '수술팩(I)(마취시간 1시간이하)'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 라. 다만, 1회용 수술(시술)팩을 사용하지 않고 린넨팩을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해당 린넨팩 관리료(자-0)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고시 제2018-19호, '18.2.1. 시행)

V-2-(19)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급여기준

1. 미세혈관 자동문합기는 말초혈관 계통에 미세수술 시 혈관 문합을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미세혈관 문합을 시행하는 경우 혈관 당 1개, 시술 시 최대 2개까지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함.

2. 상기1.의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함.

(고시 제2019-258호, '19.12.1.시행)

V-2-(20) 합성거즈 드레싱류 급여기준

상처 흡착면이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의 재질인면서 은이나 기타 조성액이 함유되지 않은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삼출물 흡수 및 창상 보호에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21-48호, '21.7.1. 시행)

V-2-(21)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 급여기준

1.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는 식약처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 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1) 심부 2도 이상의 화상
- 2) 당뇨병성 족부궤양

나. 급여횟수: 2회/주, 3주간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 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고시 제2021-344호, '22.7.1. 시행)

V-2-(22) 일시적 피부대체 드레싱류 급여기준

1. 일시적 피부대체 드레싱류는 식약처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 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1) 체표면적 30% 이상의 2도 화상
- 2) 체표면적 10% 이상의 3도 화상
- 3) 건, 뼈, 신경, 혈관, 관절낭의 노출이 동반된 창상(사지 절단면 포함)

나. 급여횟수: 부위별 1회

다. 급여개수: 실사용량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다음의 경우에 사용한 요양급여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1) 체표면적 20% 이상 30% 미만의 2도 화상
- 2) 전층 피부결손을 동반한 연부조직 손상

나. 급여횟수: 부위별 1회

다. 급여개수: 실사용량

3. 상기 1.가.3) 및 2.가.2)에 사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Medical photo, 진료기록부(창상의 정도와 넓이 명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4. 상기 1. 및 2.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 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고시 제2021-344호, '22.7.1. 시행)

V-2-(23) 피부봉합 유지기,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콜라겐함유 창상치유 촉진 드레싱류

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피부봉합 유지기	90%	2019-09-01	5년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90%	2023-04-01	5년
콜라겐함유 창상치유 촉진 드레싱류	80%	2022-07-01	3년

고시 제2023-145, 2023년 8월 1일 시행

V-2-(24)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Film type)

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수술후 유착방지용	80%	2024-01-01	3년

고시 제2023-225 2023.11.28시행

Part 7

슬관절

I. 슬관절 분야 추가목록표

II. 절골술, 인공관절 수술

III. 주요검사

Part 7 슬관절

I. 슬관절 분야 수가목록표

수술	행위명	분류코드	수가코드
인공관절			
primary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	N2072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복잡	N2077	자71가(3)주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	N2712	자71나(3)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복잡	N2717	자71나(3)주
Revision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슬관절]	N3712	자71-1가(3)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슬관절]-복잡	N3717	자71-1가(3)주1
	인공관절삽입물의 제거	N3722	자71-1가(3)주2
	인공관절삽입물의 제거-복잡	N3727	자71-1가(3)주3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	N4712	자71-1나(3)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복잡	N4717	자71-1나(3)주1
	인공관절삽입물의 부분제거	N4722	자71-1나(3)주2
	인공관절삽입물의 부분제거-복잡	N4727	자71-1나(3)주3
골절수술			
	관절탈구 도수정복술(슬관절)	N0763	자76다
	관절탈구 관혈적정복술(슬관절)	N0754	자75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슬개골)	N0604	자60가(5)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슬개골)-복잡	N0614	자60가(5)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closed pinning(슬개골)	N0995	자60나(5)
	가관절수술(슬관절)	N0624	자62다
	가관절수술(슬관절)-복잡	N0634	자62다주
	골편절제술	N0311	자31
	골이식술	N0312	자31-1
	관절경검사	E7500	나750
	관절절개생검술(슬관절)	C8602	나860나
	골수염또는골농양수술[골천공술,골개창술,배형성형술,골부분절제술 포함]-골반골,대퇴골,하퇴골	N0021	자29가
	골수염또는골농양수술[골천공술,골개창술,배형성형술,골부분절제술 포함]-골반골,대퇴골,하퇴골-복잡	N0024	자29가주

수술	행위명	분류코드	수가코드
	절골술[상하지]	N0302	자30나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하퇴골]-경골 또는 비골	N0304	자30-1다(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하퇴골]-경비골 동시	N0307	자30-1다(2)
	사지관절이단술(슬관절)	N0564	자56라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슬관절)	N0975	자60-2라
	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슬관절)	N0684	자68나
	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슬관절)-복잡	N0687	자68나주
	절제관절성형술(슬관절)	N0722	자72나
	관절고정술(슬관절)	N0739	자73다
	비관혈관절수동술	N0780	자78

II. 절골술, 인공관절 수술

수술명	수술료 산정
1. Osteotomy	
근위경골 절골술(HTO)	자30-1다(1), N0304 -경골과 비골 중 하나 자30-1다(2), N0307 -경비골 동시

70세 이하의 환자로 슬관절 내반변형(HKA5도 이상)이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 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내측 구획에 국한하여 관절 간격의 감소 소견을 보이는 골관절염
 대퇴 내과 박리성 골연골염
 대퇴 내과 골 괴사증
 후외측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반월상 연골판 골기시부 파열이 있는 경우
 관절경 소견 상 관절연골 손상이 Outerbridge grade 2(직경 1.3cm이하의 조각이나 균열이 있는 병변)이상 있는 경우
 상기 가. 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 인정하지 않음.
 염증성 관절염(류마티오이드 관절염 포함)
 슬관절 운동범위가 90도 이하인 경우
 외측부 골관절염이 '켈그랜-로렌스 분류법'(Kellgren-Lawrence) grade III 이상인 경우
 T-score ≤ -3 인 경우

수술명	수술료 산정
급여 관련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III, grade IV의 세부 적용 기준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급여기준」의 '켈그렌-로렌스분류법(Kellgren Lawrence)'에 따른 grade III, grade IV의 적용기준은 방사선 영상자료 (또는 수술 중 병변 촬영 사진)로 확인 가능한 경우 우로써 다음과 같이 함. 가. '켈그렌-로렌스분류법(Kellgren Lawrence)' grade III는 중요소견으로 관절간격감소(joint space narrowing)가 50% 이상이면서 골극(osteophyte), 경화(sclerosis), 결손(bone end deformity)의 2차적 소견이 함께 동반된 경우 나. '켈그렌-로렌스분류법(Kellgren Lawrence)' grade IV는 중요소견으로 관절간격 감소(joint space narrowing)가 75%이상인면서 골극(osteophyte), 경화(sclerosis), 결손(bone end deformity)의 2차적 소견이 함께 동반된 경우
인공슬관절 전치환술	자71(가), N2072 단순 자71(가)주, N2077 복잡

가.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아 래-

- 1) 일반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가) 연령이 60세~64세인 경우 '켈그렌-로렌스분류법'(Kellgren Lawrence) grade IV
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켈그렌-로렌스분류법'(Kellgren Lawrence) grade III 이상
- 2) 타수술(인대재건술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 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불안정성
- 3)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강직
- 4) 다발성 관절염 (류마티오이드 관절염 포함)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 5)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 6) 위1)~5)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전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상기 가. 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아 래-

- 1)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 2) 성장기 아동
- 3)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술명	수술료 산정
인공슬관절 부분치환술	자71(나), N2712 단순 자71(나)주, N2717 복잡

가.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아 래-

- 1)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검사 등에서 내측, 외측 중 한구획에 국한되어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가) 연령이 60세 미만인 경우 '켈그렌-로렌스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IV
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켈그렌-로렌스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III
- 2)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 3) 외상으로 인해 외상 후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
- 4) 위 1)-3)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상기 가. 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아 래-

- 1) 염증성 관절염(감염성, 류마티오이드 관절염 등)이 있는 경우
- 2) 다른 구획에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Lawrence) grade II 이상의 관절염이 존재하는 경우
- 3)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 4) 하지 정렬의 역학적 축 변형 15도 이상, 슬관절의 내반 또는 굴곡 구축 15도 이상,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90도 이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5) 성장기 아동
- 6)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치환술-전치환:	자71-1(가), N3712 단순 자71-1(가)주, N3717 복잡
-----------	---

재치환술-부분치환:	자71-1(나), N4712 단순 자71-1(나)주, N4717 복잡
------------	---

제거료	자71-1(가), N3722 -모두제거 자71-1(가)주, N3727-모두제거복잡 자71-1(나), N4722 -부분제거 자71-1(나)주, N4727 -부분제거복잡
-----	---

골수염	자29, N0021
-----	------------

1. 기존치환물 제거 후 바로 대퇴골 및 경골 부품 모두 재치환술을 시행한 경우(One-stage)

: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슬관절/ 자71-1가N3712 단순, 자71-1가주N3717 복잡, 복잡 기준 해당 시 복잡으로 산정) + 제거료(자71-1가N3722 단순, 자71-1가주N3727 복잡, 복잡 기준에 해당 있으면 복잡으로 산정)

2. 감염으로 기존 치환물 제거 후 일정 기간 후에 대퇴골 및 경골 부품 모두 재치환술을 시행한 경우(Two-stage)

1) 1st stage (기존 치환물 제거, debridement, cement spacer 삽입)

: 제거료(복잡: 감염 자체가 복잡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음, 자71-1가주N3727 복잡, 주수술)+ 골수염 골결핵수술(복잡, 자29가주, N0021, 주수술)

2) 2nd stage (cement spacer 제거 및 경골, 대퇴골 부품 재치환)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슬관절,복잡/ 자71-1가주N3717 복잡)

3. 대퇴골 혹은 경골 부품 중 하나만 혹은 중간 부속품만 교체하는 경우 수가 적용방법

1) 슬개골(patella), 대퇴골(femur), 경골(tibia)부품을 교체시

예시) ㉠ 슬개골·대퇴골 또는 경골을 단독 시행, ㉡ 슬개골과 대퇴골을 동시 시행, ㉢ 슬개골과 경골을 동시 시행
: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 자71-1나, N4712) + 제거료(자71-1나N4722단순, 복잡 기준 해당 시 복잡 산정)

2) 위'1)'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 부속품(bearing, poly liner 등)만 교체시

: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 자71-1나, N4712) (제거료 산정 불가)

4. 감염으로 경골 및 대퇴골 부품은 제거하지 않고 open debridement 후 poly insert만 교체한 경우

: 사지관절절제술 복잡(재료대는 인정)

슬관절에 실시하는 비관혈관절수동술

자78 N0780

1. 견관절, 슬관절에 실시하는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Brisement Force [Manipulation of Joint])은 보존적치료(약물치료, 관절강내주사, 물리치료 등) 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동적 관절가동범위(Passive ROM)가 50% 이상 감소하여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유착성관절낭염(Adhesive Capsulitis)은 12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실시한 경우 인정함.

나. 수술후 관절섬유화(Postoperative Arthrofibrosis)는 슬관절 수술 4주 이후에 실시한 경우 인정하며, 슬관절치환술(Knee Arthroplasty)은 수술 후 3주~12주 내에 실시한 경우 인정함.

2. 관련 수술시 부수적으로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3. 상기1. 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제1절 마취료 및 그에 준하는 제3절 신경차단술료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수술명	수술료 산정
관절고정술	자73다 N0739(단순) 슬관절 복잡코드 없음
인공슬관절치환술과 관련된 재료	
로봇보조 인공관절치환술	인공관절치환술시, 로봇을 이용하여 절삭 및 절골후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인공관절재치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관련치료재료 (고시제2009-210호. 2009.11.27) 로봇보조인공관절치환술용절삭기:BONE CUTTER(BE3001NZ) : 비급여고시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 Extension Stem, Rod류'의 인정기준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Extension Stem, Rod류'의 급여기준」에서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해당 치료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함. 1) 수술 부위의 골결손부위가 큰 경우 : 5mm이상의 깊이 혹은 내측/외측 경골과 표면 50% 이상의 결손으로 골이식이 필요한 경우 2) 골다공증 : 중심골 [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3) 절골술 후 발생한 불유합 혹은 골절 후 발생한 불유합 4) 부정유합 5) 심한 각 변형 : 15도 이상의 내반 혹은 외반 변형으로 수술 후 관절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 급여기준	1. 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는 수술 시 혈액, 골 조직 파편 등의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가. 적응증 1) 혈액매개감염병 환자(「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의한 혈액매개감염병환자)의 수술 2)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 3)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수술을 하는 경우 나. 인정개수: 수술 참여 인원에 따라 수술 당 최대 4개 이내의 실사용량을 인정함 2. 상기 적응증 수술시 Face shield와 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종류에 관계 없이 합산하여 수술 당 최대 4개 이내 실사용량을 인정함.
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	1. 수용성합성물질로 만들어진 뼈 지혈제는 BONE WAX에 비해 뼈 생성 및 골 융합 용이성, 뼈 감염을 방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하되, 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 한하여 사용량을 5g 까지 인정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다음의 경우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가. 상기 1항의 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서 인정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나. 65세미만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 다. 출혈이 많은 수술인 골반골절수술 라. 비구골절수술 마. 장관골의 관혈적정복술 바. 척추수술 사. 인공관절 삽입술

수술명	수술료 산정
골 시멘트(Bone Cement) 혼합기의 급여기준	골시멘트(Bone Cement) 혼합기는 골시멘트 분말과 액체를 혼합하고 혼합된 시멘트를 수술부위에 넣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식약처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적응증 1) 인공관절치환술 2) 골다공증성 골절환자에서의 골시멘트 보강술 나. 골시멘트 혼합 방식: 도수 또는 진공 다. 혼합기 형태: Bowl 또는 Syringe Type
병변부위 세정 및 흡인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의료용세정기(장비)와 연결하여 병변부위를 세정하고 세정된 내용물을 흡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치료재료(Pulsavac Series, Power Pulse Disposable Unit With Suction 등)는 관련 행위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Burr, 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검사 및 수술시 전동장비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골 및 조직을 절삭, 연마하는데 사용되는 Burr, Saw 등 절삭기류는 시술과정상 여러종류가 동시에 반복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류 및 사용개수를 불문하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하고, 2가지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시술되는 경우 등의 수기로 산정방법에 따른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의 세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코드 N0051001~N0051020) 가.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한 경우 1) 동일 피부 절개 하 수술 시(동일 병소에 대하여 절개부위를 달리 하는 수술 시 포함) 주된 수술에 해당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만 1회 산정함. 2) 양측 수술 또는 병소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피부 절개 하 수술의 경우 해당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각각 산정함. 나. Burr, Saw 등 절삭기류와 관절경 수가(N0031003, Q9923)는 동일병소에 동시(중복) 산정할 수 없음. 다. 치과의 치아 당(또는 1/3약당) 시술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는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1회만 산정함.
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의 급여기준	1. 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심장수술환자 나. 희귀혈액형 또는 다수의 비예기항체 등으로 적합한 동종혈액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다. 급속한 실혈이 있거나 광범위한 수술로 인하여 600ml 이상 혈이 상되는 우 (다만, 40kg이하의 소아는 전혈량 대비 15% 이상 실혈이 예상되는 경우) 라. 위 적응증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가수혈비용(치료재료 비용포함)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2. Reservoir set 등의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하되, 대칭기관에 대한 양측 수술 시에는 각각 인정함.

III. 주요검사

수술명	수술료 산정
일반 전산화 영상진단(CT)의 급여	다24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Computed tomography, CT)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일반기준 1)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질환(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2)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3) 급성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4)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5)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뇌, 안구, 안면, 측두골, 척추 및 체부의 심부) 6) 대동맥질환, 동맥류 7) 손상통제수술 후 단계적 수술을 위해 해부학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 중 략 - 사. 상지 및 하지(Upper or Lower Extremity) 1)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부위의 골절(관절, 수족골, 안면, 두개기저, 측두골, 척추 등) 2) 관절 내 유리골편의 확인 3) 염증 또는 외상 후 관절 내 이상소견의 치료 전 평가 및 치료 후 경과 관찰 4) 골연골증의 수술 전 진단 및 범위 결정 5) 수술 후 내고정물의 정확한 위치 평가 6) 골수염의 활동성 여부 결정 7) 일반 X선 사진 상 골절 유합의 평가가 어려울 때 8) 만성관절염, 척추분리증의 수술여부 정밀 평가 자. 3차원 CT 상기 가.~아.의 급여대상 중 해부학적 부위가 복잡하여 선행검사로는 진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 상기 가.~자. 이외 진료담당의사의 진단 및 치료방향 설정을위해 부득이 촬영했을 때는 합당한 관련 자료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요양급여함.

수술명	수술료 산정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	<p>1.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적응증</p> <p>1) 암</p> <p>가) 원발성 암(부위별)</p> <p style="padding-left: 20px;">-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p> <p>나) 전이성 암(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p> <p>다)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p>4) 관절질환</p> <p>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p> <p>나) 골수염</p> <p>다) 화농성 관절염</p> <p>라) 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탈구 포함)</p> <p style="padding-left: 20px;">(1) 무릎부위(반달연골, 무릎안의 유리체 등)만 해당되며, 타 부위는 해당되지 않음</p> <p style="padding-left: 20px;">(2) (1)의 경우, 급성만 해당되며, 퇴행성 등 만성은 해당되지 않음</p>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p>2) 위 1) 이외에도 환자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p> <p>나. 인정횟수</p> <p>1) 진단시: 1회</p> <p>2) 추적검사 (단, 가.2)는 제외)</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1개월 경과 후 1회 인정</p> <p style="padding-left: 20px;">나) 방사선치료 후: 3개월 경과 후 1회</p> <p style="padding-left: 20px;">다) 항암치료중: 2-3주기(cycle) 간격</p> <p>3) 위 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악성종양은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p> <p>4) 상기 나.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p> <p>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 받은 질환의 특성상 특정부위의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p>

수술명	수술료 산정
골밀도 검사	<p>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적용기준을 정한 경우, 해당 고시에 따름.</p> <p>3.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 시 시행된 MRI는 상기 1. 또는 2.의 적응증 및 인정횟수에 해당되는 경우「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산정함.산정함</p> <p>골밀도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p> <p>1. 18세 이상인 경우</p> <p>가. 급여대상</p> <p>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p> <p>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p> <p>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p> <p>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p> <p>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p> <p>6)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장기간(3개월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p> <p>7)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p> <p>* 상기 가. 2)의 고위험요소는 아래와 같음</p> <p>1. 저체중(BMI < 18.5)</p> <p>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p> <p>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p> <p>나. 급여횟수</p> <p>1) 진단 시1회 인정하되, 말단골(peripheral bone)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추가검사 인정함.</p> <p>2) 추적검사</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추적검사의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함.</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위 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는 종전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시행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1) 정상골밀도(T-score ≥ -1)인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 첫 1년에 1회 측정,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회</p> <p>(2) T-score ≤ -3 인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p>

수술명	수술료 산정
	라) 임신과 연관된 골다공증성(Pregnancy & lactation Associated Osteoporosis)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2회 마)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 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2. 10세 이상 ~ 18세 미만인 경우	
	골밀도검사의 국내 소아청소년 참고치가 있는 다334가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DXA)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경우 선별급여하며,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80%로 적용함
-아 래-	
가. 급여대상	1)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2)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장기간(3개월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3)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나. 급여횟수	1) 진단 시 1회 인정 2) 추적검사 가) Z-score > -1.0 인 경우: 2년에 1회 나) $-2.0 \leq Z\text{-score} \leq -1.0$ 인 경우: 1년에 1회 다) Z-score < -2.0 인 경우: 첫 1년은 6개월에 1회,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라)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다. 검사결과 제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명세서'특정내역(JT024)'란에 검사 결과를 작성·청구함
자각증상은 없으나 진찰과정에서 골다공증이 의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실시한 골밀도검사 고시 (고시 제2000-73호, '01.1.1.시행)	1.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요양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자각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신체 및 기능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알기 위하여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3-가에 의거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그러나, 최근 갱년기 여성에게 골조직내 무기질 손실에 의한 골다공증 정도를 알기 위하여 골밀도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설사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검사실시 전에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치게 되므로 진찰과정에서 골다공증의 의심이 있다고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하여 지시한 검사를 행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수치의 이상유무에 관계없이 급여하며 검사결과가 정상이어서 상병명을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추정 질병명 또는 증상을 기재하여 청구함

수술명	수술료 산정
골밀도검사 DEXA 기종으로 L-spie의 AP와 Lateral에 골밀도 검사 동시 실시시 수가 산정	요추부위에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 (DEXA)시 좀 더 정확한 골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L-Spine AP와 Lateral을 동시에 실시하더라도 다334가(1)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1부위) 소정 점수만 인정함.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 진단의 급여기준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촬영은 단순촬영, 파노라마촬영 등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인정하며, 세부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마. 상지 및 하지 부위	(1)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부위의 골절(관절, 수족골) (2) 관절 내 유리골편의 확인 (3) 염증 또는 외상 후 관절 내 이상소견의 치료 전 평가 및 치료 후 경과 관찰 (4) 골연골증의 수술 전 진단 및 범위 결정 (5) 수술 후 내고정물의 정확한 위치 평가 (6) 단순 X선 사진 상 골절 유합의 평가가 어려울 때 (7) 만성관절염의 수술여부 정밀 평가

Part 8

족부

I. 족부족관절 분야 수가목록표

II. Great toe

III. Lesser toe

IV. 신경 질환

V. 신경근육성 장애

VI. 편평족

VII. 요족

VIII. 아킬레스건염

IX. 아킬레스건 파열

X. 족저근막염

XI. 장무지굴곡건질환

XII. 후경골건 기능장애

XIII. 비골건질환

XIV. 신전건 질환

XV. 당뇨발

XVI. 절단술

XVII. 관절염

XVIII. 스포츠 손상

XIX. 부골

XX. 족근골 결합

XXI. 골연골증

XXII. 발톱

XXIII. 골수염 및 감염

Part 8 **족부**

I. **족부족관절 분야 수가목록표**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Great toe				
Metatarsal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Akin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Bunionectomy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Lateral soft tissue release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Lapidus arthrodesis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중수골, 중족골,지골 (복잡)	자-60가(6)주	N0615	5,173.45
1st MTPJ arthrodesis	관절고정술 (지관절)	자-73마	N0734	3,150.10
Cheilectomy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Excision of the medial sesamoid or Excision of the lateral sesamoid	양성골종양의소파술(절제술)-기타	자-28다	N0283	3,017.67
Medial displacement calcaneal osteotomy (MDCO)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수근골,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Achilles tendon lengthening, triple hemiresection	아킬레스건 연장술	자-92주	N0921	5,439.10
Gastrocnemius recession	근막절개술 (단순)	자-92-2가	N0922	2,185.48
PTT transfer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Lessor toe				
골건 이전술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절제 관절 성형술 (Resection arthroplasty)	절제관절성형술 (지관절) 추가 pinning 할 경우: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72다 자-60나(6)	N0723 N0606	2,421.51 1,974.14
중족골 단축 절골술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중수골,중족골,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연부조직 유리술 - 족배부 관절낭 절개술 (Dorsal capsulotomy)	연부조직 유리술 1-2개 시: (단, capsulotomy만 시행한 경우는 인정 안됨)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 근위지간관절 족장판 유리술 (Plantar plate release)	연부조직 유리술 3개 이상 시: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 장족지굴건 절단술 - 장족지신건 연장술				
지간관절 유합술	관절고정술-지관절	자-73마	N0734	3,150.10
말단 Syme 수술	사지절단술 (지골)	자-57마	N0575	1,836.73
DuVries 중족골두 성형술	절제관절성형술 (지관절) 추가 pinning 할 경우: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72다 자-60나(6)	N0723 N0606	2,421.51 1,974.14
제5중족골두 외측 절제술 (Lateral condylar resection)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경피적 절골술 (SERI)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중수골,중족골,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내측 사형 활주 절골술 (Medial oblique sliding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중수골,중족골,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골간부 사형 절골술 (Diaphyseal oblique osteotomy)				
근위 중족골 절골술 (Proximal metatarsal osteotomy)				
갈매기형 절골술 (Chevron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중수골,중족골,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중족골두 중심감압술 (Central decompression)	사지관절절제술 & 활막절제술포함 (지관절) 단, 타 수술시 부수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자-70마	N0704	1,535.63
골 이식술 (Autologous cancellous bone graft)	골편절제술 골이식술	자-31 자-31-1	N0311 N0312	2,707.13 1,193.82
중족골두 골연골 이식술 (Autologous osteochondral transplantation)	산정 불가,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만 인정			
중족골두 절제술	절제관절성형술 (지관절)	자-72다	N0723	2,421.51
신경질환				
신경종 절제술	신경종양절제술-양성	자-461-1가	S4615	3,018.04
신경 감압술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 [절제,봉합,박리]	자-93가	N0931	3,728.23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중족골 단축술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족근관 유리술	신경 유리술만 시행 시: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Venowrapping 시행 시: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신경 유리술 (신경 유리술만 시행시)	신경성형술 (수족지부)	자-459라	S4596	2,894.68
골극제거술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신경봉합술	신경봉합술 (수족지부)	자-460-1라	S4604	2,496.22
신경 이식	신경이식술[이식편채취 포함] (4cm 미만)	자-460가(1)	S4605	8,215.09
	신경이식술[이식편채취 포함] (4cm 이상)	자-460나(2)	S4606	11,727.54
신경근육성 장애				
아킬레스건 연장술 (Strayer, Vulpius, TAL)	아킬레스건 연장술	자-92주	N0921	5,439.10
경피적 삼중 반절단술 (percutaneous triple hemisection)	아킬레스건 연장술	자-92주	N0921	5,439.10
전/후 경골근건 연장술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전/후 경골근건 이적술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족저근막유리술	근막절개술(단순)	자-92-2가	N0922	2,185.48
Dwyer calcaneal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1st metatarsal extension osteotomy (BRT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Cuneiform dorsal close wedge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관절고정술(족관절에삼중관절고정술실시)	자-73라주2	N0735	6,497.22
삼중관절 유합술	관절고정술(족관절에삼중관절고정술실시)(복잡)	자-73라주3	N0737	7,746.4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종골 외측주 연장술 (lateral column lengthening)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종골 절골술 MDCO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내측 설상골 개방뼈기 절골술 (dorsal opening wedge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Subtalar arthrodesis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자-73라	N0733	6,376.16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복잡)	자-73라주1	N0736	7,354.04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족저 절제관절성형술	절제관절성형술(지관절)	자-72다	N0723	2,421.51
	추가 pinning 할 경우: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60나(6)	N0606	1,974.14
Flexor tenotomy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1	N0911	1,874.73
Girdlestone-Taylor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Plantar plate repair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Tibialis Posterior Tendon Transfer to Foot Dorsum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Split Transfer of Tibialis Anterior Tendon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편평족				
후경골건 활막절제술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장족지골건 이적술/보강술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스프링인대 봉합술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내측 전위 종골 절골술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외측주연장술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내측설상골 족배 개방뼈기 절골술 (Cotton)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TTC fusion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150(170)%	자-73라	N0733	6,376.16
삼중관절 유합술	관절고정술(족관절에삼중관절고정술실시)	자-73라주2	N0735	6,497.22
	관절고정술(족관절에삼중관절고정술실시)(복잡)	자-73라주3	N0737	7,746.41
범거골관절유합술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200%	자-73라	N0733	6,376.16
거골하관절 제동술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자-70라	N0703	3,621.05
요족				
족저근막 유리술	근막절개술(단순)	자-92-2가	N0922	2,185.48
장족무지신건 이적술 (EHL transfer)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장비골건 이적술(Peroneus longus to brevis transfer)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TA transfer to 3rd cuneiform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TP (split) transfer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종골조면 근위 전위 절골술 / Dwyer 종골 절골술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제1중족골 기저부 족배부 폐쇄 뼈기 절골술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Midtarsal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Arthrodesis(Double, subtalar)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자-73라	N0733	6,376.16
Arthrodesis (Triple)	관절고정술(족관절에 삼중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	자-73라주2	N0735	6,497.22
아킬레스건염				
아킬레스건 변연절제술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Endoscopic retrocalcaneal decompression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자-70라	N0703	3,621.05
후종골점액낭 제거술	갱그리온 적출술	자-90	N0900	1,665.75
아킬레스건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아킬레스건 재건술	자-92	N0920	3,992.59
Haglund 변형 제거술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FHL transfer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아킬레스건 파열				
아킬레스건 봉합술	아킬레스건 재건술	자-92	N0920	3,992.59
Percutaneous repair	아킬레스건 재건술	자-92	N0920	3,992.59
Bosworth repair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Turn-down flap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V-Y advancement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FHL transfer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족저근막염				
비복근 근막 절제술 /비복근 유리술	근막절개술(단순)	자-92-2가	N0922	2,185.48
족저근막 부분 절제술/절제술	근막절개술(단순)	자-92-2가	N0922	2,185.48
내시경적 족저근막 부분절제술 /유리술	근막절개술(단순) (내시경 수술료 및 재료대 인정 불가)	자-92-2가	N0922	2,185.48
종골 골극절제술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장족지굴곡건질환				
장족지굴곡건 소파수술/유리술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관절경적 발목후방 장족지굴곡건 소파수술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내시경 수술료 및 재료대 인정 불가)	자-93가	N0931	3,728.23
삼각부골 절제	양성골종양의소파술(절제술)-기타	자-28다	N0283	3,017.67
거골 후방골극 절제술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장족지굴곡건 파열시 봉합술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장족지굴곡건 연장술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장족지굴곡건 절단술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후경골건 기능장애				
후경골건 소파수술/활막절제술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부주상골제거술	양성골종양의소파술(절제술)-기타	자-28다	N0283	3,017.67
비복근 근막 절제술	근막절개술(단순)	자-92-2가	N0922	2,185.48
종골절골술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비골건질환				
비골건 봉합술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비부골 절제술	양성골종양의소파술(절제술)-기타	자-28다	N0283	3,017.67
비골건 고정술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건 변연절제술과 조관술(tubularization)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장족지굴곡건 이전술(FDL transfer)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슬괘근 이식술(Hamstring tendon graft)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가건 이용시에도 채취에 대한 수가는 불인정 (무릎 십자인대 재건술에 만 인정))	자-93나	N0932	5,328.79
상비골지대 봉합술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지대 재건술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비골건 경로변경술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비골 성형술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비골건 활액막 절제술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비대비골결절 절제술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신전건 질환				
단단 봉합술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인접 신전건 이전술, 건 이식술, V-Y 전진술(V-Y advancement)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당뇨발				
변연절제술	창상청소 및 변연절제만 실시한 경우	자-2다	SC027	337.08
변연절제술 + 배농술	근농양배농술(기타근농양)	자-84라	N0844	1,003.64
변연절제술 광범위	근막절제술(단순)	자-92-2가	N0922	2,185.48
변연절제술 + 골수염소파술	골수염 또는 골농양 수술(기타)	자-29다	N0023	3,761.27
	골수염 또는 골농양 수술(기타)(복잡)	자-29다주	N0026	4,409.57
티눈 제거	티눈제거술(절제, 근층심부포함)	자-14-1나	N0144	1,001.97
음압창상치료(VAC)	진공음압창상치치 교환(염증성 처치)	자-2-1가(2)	M0121	141.38
	진공음압창상치치 교환(당일 아닌 경우(단순치치))	자-2-1가(1)	M0111	75.51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사지관절절제술	사지관절절제술(Elbow, Wrist, Ankle) (지관절은 해당없음)	자-70라	N0703	3,621.05
	사지관절절제술(Elbow, Wrist, Ankle)(복잡) (지관절은 해당없음)	자-70라주	N0708	4,341.71
절제관절성형술	절제관절성형술(지관절)	자-72다	N0723	2,421.51
Bumpectomy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아킬레스건 연장술	아킬레스건 연장술	자-92주	N0921	5,439.10
고압산소치료	고압산소요법 1시간까지	자-586가	M0586	302.06
	고압산소요법 1시간까지(상급·종합병원)	자-586가주	M0581	116.51
	고압산소요법 1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 까지	자-586나	M0587	734.83
	고압산소요법 1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 까지 (상급·종합병원)	자-586나주	M0582	283.42
	고압산소요법 2시간을 초과 1일당	자-586다	M0588	1,907.08
	고압산소요법 2시간을 초과 1일당(상급·종합병원)	자-586다주	M0583	735.54
국소산소치료	국소산소 상처치료(단순처치)	자-2-1가(1)	M0111	75.51
절단술				
Phalangectomy	사지절단술(지골)	자-57마	N0575	1,836.73
Toe dislocation	사지관절이단술(지관절)	자-56바	N0566	2,113.98
Ray amputation	사지절단술(수족)	자-57라	N0574	4,681.75
Transmetatarsal amputation	사지절단술(수족)	자-57라	N0574	4,681.75
Lisfranc amputation	사지절단술(수족)	자-57라	N0574	4,681.75
Chopart amputation	사지절단술(수족)	자-57라	N0574	4,681.75
Syme amputation	사지절단술(상완,전완,하퇴)	자-57다	N0573	6,730.88
Below knee amputation	사지절단술(상완,전완,하퇴)	자-57다	N0573	6,730.88
Knee dislocation	사지관절이단술(슬관절)	자-56라	N0564	6,715.24
Above knee amputation	사지절단술(대퇴)	자-57나	N0572	8,022.47
관절염				
Supramalleolar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경골과 비골 중 하나)	자-30-1다(1)	N0304	5,923.37
Supramalleolar + fibular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경비골 동시)	자-30-1다(2)	N0307	6,468.27
Distraction arthroplasty	체외금속 고정술(하퇴골)(복잡)	자-60-1나주	N0986	4,254.03
Ankle arthrodesis	관절고정술(족관절)	자-73라	N0733	6,376.16
	관절고정술(족관절)(복잡)	자-73라주1	N0736	7,354.04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Ankle arthroplasty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족관절)	자-71가(6)	N2075	7,620.00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족관절)(복잡)	자-71가(6)주	N2079	11,505.05
Revisional ankle arthroplasty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족관절)	자-71-1가(6)	N3715	9,672.83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족관절)(복잡)	자-71-1가(6)주1	N3719	11,298.73
Ankle joint debridement (synovectomy)	사지관절 절제술 [활막절제를 포함] (주관절,완관절,족관절)	자-70라	N0703	3,621.05
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e treatment (BMAC)	자가 골수 유래 줄기세포 치료	조-85가	SZ085	비급여
Modified Brostrom operation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Heel cord lengthening	아킬레스건 연장술	자-92주	N0921	5,439.10
Gastrocnemius recession	근막절개술(단순)	자-92-2가	N0922	2,185.48
Tarsal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수근골,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Metatarsal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중수골,중족골,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Bone graft	골이식술	자-31-1	N0312	1,193.82
Ostectomy	골편 절제술	자-31	N0311	2,707.13
Subtalar arthrodesis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자-73라	N0733	6,376.16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복잡)	자-73라주1	N0736	7,354.04
Talonavicular fusion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자-73라	N0733	6,376.16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복잡)	자-73라주1	N0736	7,354.04
Calcaneocuboid fusion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자-73라	N0733	6,376.16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복잡)	자-73라주1	N0736	7,354.04
Double arthrodesis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자-73라	N0733	6,376.16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복잡)	자-73라주1	N0736	7,354.04
TTC fusion	관절고정술(주관절,완관절, 족관절) 150(170)%	자-73라	N0733	6,376.16
Triple arthrodesis	관절고정술(족관절에삼중관절고정술실시)	자-73라주2	N0735	6,497.22
	관절고정술(족관절에삼중관절고정술실시)(복잡)	자-73라주3	N0737	7,746.41
Lisfranc joint arthrodesis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족근골(복잡)	자-60가(5)주	N0614	6,819.29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중수골, 중족골, 지골 (복잡)	자-60가(6)주	N0615	5,173.45
MTP, IP joint arthrodesis	관절고정술(지관절)	자-73마	N0734	3,150.00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Metatarsophalangeal Joint debridement (synovectomy)	사지관절절제술(지관절)	자-70마	N0704	1,535.63
통풍결절절제술	연부조직종양적출술(근막또는근육내양성)	자-23가(2)	N0234	2,532.50
스포츠 손상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신전지지대 봉합(개방)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Suture anchor를 통한 전 거비, 원위경비인대 보강 (ex. internal brace)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관절경적 전거비인대 봉합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관절경하 수술	자-992다	Q9923	2,018.36
자가건을 이용한 재건술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자가건 이용시 채취에 대한 수가는 불인정(무릎 십자인대 재건술에 만 인정))	자-93나	N0932	5,328.79
동종건을 이용한 재건술	건 및 인대 성형술 (복잡)	자-93나	N0932	5,328.79
종골 절골술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 (거골하관절)	관절경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 (족관절)	자-70라	N0703	3,621.05
원위 경비인대 단단 봉합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Suture anchor 혹은 internal brace를 통한 원위경 비인대 보강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Syndesmotic fixation (screw or tightrope)	사지골절정복술-Closed pinning (비골)	자-60나(4) (나)	N1000	3,017.51
삼각인대 봉합 or Suture anchor 통한 삼각인대 재건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관절경적 활액막절제술	관절경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 (족관절)	자-70라	N0703	3,621.05
	관절경하 수술	자-992다	Q9923	2,018.36
1.5cm ² 미만 골연골병변 미세천공술	관절경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 (족관절) 준용	자-70라	N0703	3,621.05
	관절경하 수술	자-992다	Q9923	2,018.36
1.5cm ² 이상 골연골병변 미세천공술	자가골연골이식술 준용	자-69-1	N0693	3,757.53
	관절경하 수술	자-992다	Q9923	2,018.36
자가골연골이식술(OATS)	자가골연골이식술	자-69-1	N0693	3,757.53
	자가골연골이식술 (복잡)	자-69-1주	N0695	4,853.25
	관절경하 수술	자-992다	Q9923	2,018.36
Supramalleolar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경골과 비골 중 하나)	자-30-1다(1)	N0304	5,923.37
BMAC, BMIC	자가 골수 유래 줄기세포 치료	조-85가	SZ085	비급여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리스프랑 인대 봉합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리스프랑 손상 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족근골 (복잡)	자-60가(5)주	N0614	6,819.29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중수골, 중족골, 지골 (복잡)	자-60가(6)주	N0615	5,173.45
리스프랑 손상 시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사지골절정복술-Closed pinning(족근골)	자-60나(5)	N0995	1,997.52
	사지골절정복술-Closed pinning (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60나(6)	N0606	1,974.14
인대 봉합(plantar plate or collateral ligament등)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중족족지관절 인대 손상 시 경피적 핀 고정술	사지골절정복술-Closed pinning (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60나(6)	N0606	1,974.14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중수골, 중족골, 지골 (복잡)	자-60가(6)주	N0615	5,173.45
Fasciotomy	근막절개술 (단순)	자-92-2가	N0922	2,185.48
	근막절개술 (복잡)	자-92-2나	N0923	3,738.01
삼각골 제거술	양성골종양의소파술(절제술)-기타	자-28다	N0283	3,017.67
활액막 절제술	관절경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족관절)	자-70라	N0703	3,621.05
부골				
부주상골 절제	양성골종양의소파술(절제술)-기타	자-28다	N0283	3,017.67
Kidner procedure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양성골종양의소파술(절제술)-기타	자-28다	N0283	3,017.67
부주상골 유합술	가관절수술(쇄골, 슬개골, 수근골, 족근골) (복잡)	자-62다	N0624	5,985.76
비부골 절제	양성골종양의소파술(절제술)-기타	자-28다	N0283	3,017.67
장비골건의 봉합 또는 조관술 (tubulization)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Tenodesis to peroneus brevis tendon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삼각골 제거술	양성골종양의소파술(절제술)-기타	자-28다	N0283	3,017.67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	관절경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 (족관절)	자-70라	N0703	3,621.05
족근골 결합				
Resection of bone bridge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Subtalar arthrodesis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자-73라	N0733	6,376.16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복잡	자-73라주1	N0736	7,354.04
Triple arthrodesis	관절고정술(족관절에삼중관절고정술실시)	자-73라주2	N0735	6,497.22
	관절고정술(족관절에삼중관절고정술실시)(복잡)	자-73라주3	N0737	7,746.41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골 이식술(Autologous cancellous bone graft)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골이식술	자-31-1	N0312	1,193.82
골연골증				
Talonavicular arthrodesis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자-73라	N0733	6,376.16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복잡)	자-73라주1	N0736	7,354.04
Triple arthrodesis	관절고정술(족관절에 삼중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	자-73라주2	N0735	6,497.22
	관절고정술(족관절에 삼중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 (복잡)	자-73라주3	N0737	7,746.41
골 이식술 (Autologous cancellous bone graft)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골이식술	자-31-1	N0312	1193.82
관절경적 활액막절제술	관절경하 사시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족관절)	자-70라	N0703	3,621.05
1.5cm ² 미만 골연골병변 미세천공술	관절경하 사시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족관절) 준용	자-70라	N0703	3,621.05
	관절경하 수술	자-992다	Q9923	2,018.36
1.5cm ² 이상 골연골병변 미세천공술	자가골연골이식술 준용	자-69-1	N0693	3,757.53
	관절경하 수술	자-992다	Q9923	2,018.36
자가골연골이식술(OATS)	자가골연골이식술	자-69-1	N0693	3,757.53
	자가골연골이식술 (복잡)	자-69-1주	N0695	4,853.25
	관절경하 수술	자-992다	Q9923	2,018.36
Ankle arthrodesis	관절고정술 (족관절)	자-73라	N0733	6,376.16
	관절고정술 (족관절) (복잡)	자-73라주1	N0736	7,354.04
Ankle arthroplasty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 (족관절)	자-71가(6)	N2075	7,620.00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 (족관절) (복잡)	자-71가(6)주	N2079	11,505.05
발톱				
전 발톱판 제거술	발조술	자-20	N0200	215.74
조갑거터술	조갑 거터술	자-21-1	N0215	275.97
발톱 모서리 및 발톱기질 화학적 절제술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자-21	N0210	626.83
발톱판 및 기질 부분 제거술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자-21	N0210	626.83
발톱판 및 배아기질 제거술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자-21	N0210	626.83
발톱주름 제거 혹은 축소술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자-21	N0210	626.83
손발톱바닥 편평 방식의 수술적 교정술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손발톱바닥 편평방식의 수술적 교정술을 시행한 경우	자-21주	N0211	902.99
말단 사임 절단술	사시절단술 (지골)	자-57마	N0575	1,836.73
발톱 변연부 부분 절제술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자-21	N0210	626.83
변연절제술	창상봉합술(창상청소 및 변연절제만 실시한 경우)	자-2다	SC027	337.08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변연절제술 + 배농술	근농양배농술(기타근농양)	자-84라	N0844	1,003.64
조갑하 외골증 절제술	양성골종양의소파술(절제술)(기타)	자-28다	N0283	3,017.67
사구종 절제술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피하양성종양)	자-23가(1)	N0233	1,939.16
골수염 및 감염				
골수염 수술 (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 (골천공술, 골개창술, 배형성형술, 골부분절제술 포함)(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자-29가	N0021	4,980.29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 (골천공술, 골개창술, 배형성형술, 골부분절제술 포함)(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복잡)	자-29가주	N0024	6,065.85
골수염 수술 (상완골, 전완골, 쇄골)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 (상완골, 전완골, 쇄골)	자-29나	N0022	4,495.90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 (상완골, 전완골, 쇄골)(복잡)	자-29나주	N0025	5,345.94
골수염 수술(기타)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 (기타)	자-29다	N0023	3,761.27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 (기타) 복잡	자-29다주	N0026	4,409.57
급성 화농성 관절염시 절개 배농술(고관절)	급성화농성관절염 절개술 (고관절)	자-68가	N0681	4,419.61
	급성화농성관절염 절개술 (고관절) (복잡)	자-68가주	N0680	5,180.90
급성 화농성 관절염시 절개 배농술(견관절, 슬관절)	급성화농성관절염 절개술 (견관절, 슬관절)	자-68나	N0684	3,248.95
	급성화농성관절염 절개술(견관절, 슬관절)(복잡)	자-68나주	N0687	3,849.29
급성 화농성 관절염시 절개 배농술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급성화농성관절염 절개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자-68다	N0685	2,989.37
	급성화농성관절염 절개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복잡)	자-68다주	N0688	3,542.35
급성 화농성 관절염시 절개 배농술(지관절)	급성화농성관절염 절개술 (지관절)	자-68라	N0686	1,692.77
	급성화농성관절염 절개술 (지관절) (복잡)	자-68라주	N0689	2,115.72
변연절제술	창상봉합술(창상청소 및 변연절제만 실시한 경우)	자-2다	SC027	337.08
변연절제술 + 배농술(요장근)	근농양 배농술(요장근)	자-84가	N0841	3,664.33
변연절제술 + 배농술(둔근)	근농양 배농술(둔근)	자-84나	N0842	2,700.49
변연절제술 + 배농술(대퇴근)	근농양 배농술(대퇴근)	자-84다	N0843	2,695.65
변연절제술 + 배농술(기타)	근농양 배농술(기타)	자-84라	N0844	1,003.64
변연절제술 광범위	근막절제술(단순)	자-92-2가	N0922	2,185.48
음압창상치료(VAC)	진공음압창상치치 교환(염증성 치치)	자-2-1가(2)	M0121	141.38
	진공음압창상치치 교환당일 아닌 경우(단순치치)	자-2-1-가(1)	M0111	75.51
초음파 창상소파술 및 변연절제술	창상봉합술(창상청소 및 변연절제만 실시한 경우)	자-2다	SC027	337.08
이물 제거술	피부 및 피하조직 또는 근육내 이물제거술 (근막절개하)	자-3가	M0031	1,060.88
	피부 및 피하조직 또는 근육내 이물제거술 (기타)	자-3나	M0032	590.08

II. Great toe

II-1. 무지외반증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Metatarsal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Akin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Bunionectomy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Lateral soft tissue release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Lapidus arthrodesis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중수골, 중족골, 지골(복잡)	자-60가(6)주	N0615	5,173.45
1st MTPJ arthrodesis	관절고정술(지관절)	자-73마	N0734	3,150.10

심사기준

자-30-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중수골, 중족골, 지골)

엄지발가락 외반증 상병으로 중족골(metatarsal bone) 및 근위지골(proximal phalanx)에 각각 절골술(osteotomy)과 체내고정술(internal fixation)을 시행하고 중족골 내측 돌출부 절제(medial eminence)를 시행한 경우,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이루어지므로 자30-1마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중수골, 중족골, 지골)은 150%로 산정하며, 중족골 내측 돌출부 절제술은 자31 골편절제술(Ostectomy)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Lapidus arthrodesis

Lapidus arthrodesis를 시행하는 경우, 동반하여 MT osteotomy, MT ostectomy, lateral release등을 하는 경우 이 수술들 중 하나를 선정하여 주수술로 하고, 나머지는 부수술로 청구하여야 한다.

예) Lapidus arthrodesis + lateral capsule release + Akin osteotomy를 한 경우:

N0615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중수골,중족골,지골 (복잡) 1.0 + N0931 건인대 간단 0.5(0.7) + N0319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1근위지골) 0.5(0.7)

1st MTPJ arthrodesis

동시 시행하는 bunionectomy는 일련의 행위로 인정 안됨

Lateral soft tissue release

capsular release만 시행한 경우는 인정 안됨

II-2. 무지강직증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Cheilectomy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Proximal phalangeal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1 st MTPJ arthrodesis	관절고정술 (지관절)	자-73마	N0734	3,150.10
Soft tissue release (Flexor or extensor lengthening, Lateral release)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심사기준

1st MTPJ arthrodesis

동시 시행하는 bunionectomy는 일련의 행위로 인정 안됨

Lateral soft tissue release

capsular release만 시행한 경우는 인정 안됨

II-3. 무지종자골 질환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Excision of the medial sesamoid or Excision of the lateral sesamoid	양성골종양의소파술(절제술)-기타	자-28다	N0283	3,017.67
Medial displacement calcaneal osteotomy (MDCO)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수근골,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Achilles tendon lengthening, triple hemiresection	아킬레스건 연장술	자-92주	N0921	5,439.10
Gastrocnemius recession	근막절개술 (단순)	자-92-2가	N0922	2,185.48
PTT transfer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III. Lessor toe

III-1. 소족지 변형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굴건 절단술	굴건 개수가 1-2개 시: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굴건 개수가 3-5개 시: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굴건 이전술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절제 관절 성형술 (Resection arthroplasty)	절제관절성형술 (지관절)	자-72다	N0723	2,421.51
	추가 pinning 할 경우: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60나(6)	N0606	1,974.14
중족골 단축 절골술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연부조직 유리술 - 족배부 관절낭 절개술 (Dorsal capsulotomy)	연부조직 유리술 1-2개 시: (단, capsulotomy만 시행한 경우는 인정 안됨)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 근위지간관절 족장판 유리술 (Plantar plate release) - 장족지굴건 절단술 - 장족지신건 연장술	연부조직 유리술 3개 이상 시: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지간관절 유합술	관절고정술-지관절	자-73마	N0734	3,150.10
말단 Syme 수술	사지절단술 (지골)	자-57마	N0575	1,836.73

심사기준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굴곡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200%까지 산정

2. 신전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개: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2-3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다) 건·인대 개수가 4-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라)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비고: 실제 건·인대 봉합술의 경우 급여기준의 전신이 된 근, 건의 절제술에 비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며, 해당 술기 자체도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으므로, 해당 시술의 보상 차원에서 6개 이상의 시술시 가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0% → 20%) 고시함.
[고시 제 2017-118호, 2017.7.1. 시행]

III-2. 중족족지관절의 불안정성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DuVries 중족골두 성형술	절제관절성형술 (지관절)	자-72다	N0723	2,421.51
	추가 pinning 할 경우: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60나(6)	N0606	1,974.14
중종골 절골술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연부조직 유리술 - 족배부 관절낭 절개술 (Dorsal capsulotomy)	연부조직 유리술 1-2개 시: (단, capsulotomy만 시행한 경우는 인정 안됨)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 근위지간관절 족장판 유리술 (Plantar plate release) - 장족지굴건 절단술 - 장족지신건 연장술	연부조직 유리술 3개 이상 시: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심사기준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굴곡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200%까지 산정

2. 신전축

- 가) 건·인대 개수가 1개: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2-3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4-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라)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비고: 실제 건·인대 봉합술의 경우 급여기준의 전신이 된 근, 건의 절제술에 비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며, 해당 술기 자체도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으므로, 해당 시술의 보상 차원에서 6개 이상의 시술시 가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0% → 20%) 고시함.
[고시 제 2017-118호, 2017.7.1. 시행]

III-3. 소족지 중족골통(Metatarsalgia)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Weil 절골술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원위 중족골 골간단 절골술 (Distal metatarsal metaphyseal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중족골 간부 절골술 (Metatarsal diaphyseal oste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III-4. 소족지 건막류 (Bunionette)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제5중족골두 외측 절제술 (Lateral condylar resection)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경피적 절골술 SERI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내측 사형 활주 절골술 (Medial oblique sliding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골간부 사형 절골술 (Diaphyseal oblique osteotomy)				
근위 중족골 절골술 (Proximal metatarsal osteotomy)				
갈매기형 절골술 (Chevron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제 5중족골두 절제술	절제관절성형술(지관절)	자-72다	N0723	2,421.51

III-5. Freiberg's disease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중심감압술 (Central decompression)	사지관절절제술 & 활막절제를포함 (지관절) 단, 타 수술시 부수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자-70마	N0704	1,535.63
골 이식술 (Autologous cancellous bone graft)	골편절제술 골이식술	자-31 자-31-1	N0311 N0312	2,707.13 1,193.82
골연골 이식술 (Autologous osteochondral transplantation)	산정 불가,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만 인정			
중족골 족배 폐쇄쇄기 절골술 (Metatarsal dorsal closing wedge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중수골, 중족골, 지골) 골편절제술	자-30-1마 자31	N0319 N0311	3,616.12 2,707.13
중족골두 절제술	절제관절성형술 (지관절)	자-72다	N0723	2,421.51

심사기준

자-31 골이식술 (Bone graft) 급여 인정기준

- 골 결손부위에 보존 및 보강 목적으로 실시하는 자31-1 골이식술(Bone graft)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가. 자31 골편절제술 후 자가골 이식의 경우
 - 나.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를 사용하여 골이식하는 경우
 - 1) 골성 종양 수술시 골결손이 있는 경우
 - 2) 사지 장관골 골절 수술 후 불유합이나 지연유합이 있는 경우
 - 3) 사지 관절(견관절, 주관절, 완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재수술시 불유합이나 지연유합이 있는 경우

[고시 제2017-118호, 2017.7.1시행]

IV. 신경 질환

IV-1. 지간신경증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신경종 절제술	신경종양절제술-양성	자-461-1가	S4615	3,018.04
신경 감압술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 [절제,봉합박리]	자-93가	N0931	3,728.23
중족골 단축술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중수골,중족골,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심사기준

자-45 신경종양절제술-양성

<적응증>

1. 감각신경에서 발생하는 신경종과 함께 발현되는 심한 동통성 증후군
2. 신경의 주행에서 발생한 신경초종, 신경 섬유종과 같은 양성 신경인성종양

IV-2. 족근관증후군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족근관 유리술	신경 유리술만 시행 시: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Venowrapping 시행 시: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IV-3. 신경포착증후군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신경 유리술(신경 유리술만 시행시)	신경성형술 (수족지부)	자-459라	S4596	2,894.68
골극제거술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IV-4. 신경손상과 외상성 신경증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신경봉합술	신경봉합술 (수족지부)	자-460-1라	S4604	2,496.22
신경종 절제술	신경종양절제술-양성	자-461-1가	S4615	3,018.04
신경 이식	신경이식술[이식편채취 포함] (4cm 미만)	자-460가(1)	S4605	8,215.09
	신경이식술[이식편채취 포함] (4cm 이상)	자-460나(2)	S4606	11,727.54

심사기준

자-45 신경종양절제술-양성

<적응증>

1. 감각신경에서 발생하는 신경종과 함께 발현되는 심한 동통성 증후군
2. 신경의 주행에서 발생한 신경초종, 신경 섬유종과 같은 양성 신경인성종양

자-460 신경이식술

<적응증>

1. 종양절제술 후 신경절단
2. 말초 신경 손상 후 일차 치료에 실패한 경우
3. 말초 신경 손상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급성 말초 손상으로 결손이 심하여 일차 직접 봉합이 안되는 경우

V. 신경근육성 장애

V-1. 침족변형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아킬레스건 연장술 (Strayer, Vulpius, TAL)	아킬레스건 연장술	자-92주	N0921	5,439.10
경피적 삼중 반절단술 (percutaneous triple hemisection)	아킬레스건 연장술	자-92주	N0921	5,439.10

V-2. 침내반족변형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아킬레스건 연장술 (Strayer, Vulpius, TAL)	아킬레스건 연장술	자-92주	N0921	5,439.10
경피적 삼중 반절단술 (percutaneous triple hemisection)	아킬레스건 연장술	자-92주	N0921	5,439.10
전/후 경골근건 연장술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전/후 경골근건 이적술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족저근막유리술	근막절개술(단순)	자-92-2가	N0922	2,185.48
Dwyer calcaneal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1 st metatarsal extension osteotomy (BRT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Cuneiform dorsal close wedge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삼중관절 유합술	관절고정술(족관절에삼중관절고정술실시)	자-73라주2	N0735	6,497.22
	관절고정술(족관절에삼중관절고정술실시)(복잡)	자-73라주3	N0737	7,746.41

심사기준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음 -

1. 굴곡측

가) 건·인대 개수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나) 건·인대 개수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다)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200%까지 산정

2. 신전측

가) 건·인대 개수가 1개: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나) 건·인대 개수가 2-3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다) 건·인대 개수가 4-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라)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비고: 실제 건·인대 봉합술의 경우 급여기준의 전신이 된 근, 건의 절제술에 비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며, 해당 술기 자체도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으므로, 해당 시술의 보상 차원에서 6개 이상의 시술시 가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0% → 20%) 고시함.

[고시 제 2017-118호, 2017.7.1. 시행]

자73 족관절 삼중관절고정술 복잡 행위 기준

1. 관절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해당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
2. 해당 관절의 감염(화농성관절염, 골수염)으로 인한 수술
3. 골변형 교정이 필요한 경우
4. 신경병증성 관절증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
5. 인공관절치환술 실패 후 시행한 경우

V-3. 편평외반족 변형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종골 외측주 연장술 (lateral column lengthening)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종골 절골술 MDCO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제1 중족골 굴곡절골술 1 st MT plantar flexion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내측 설상골 개방뼈기 절골술 dorsal opening wedge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아킬레스건 연장술 (Strayer, Vulpius, TAL)	아킬레스건 연장술	자-92주	N0921	5,439.10
경피적 삼중 반절단술 (percutaneous triple hemisection)	아킬레스건 연장술	자-92주	N0921	5,439.10
Subtalar arthrodesis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자-73라	N0733	6,376.16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복합)	자-73라주1	N0736	7,354.04

심사기준

자73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복합 행위 기준

- 관절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해당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
- 해당 관절의 감염(화농성관절염, 골수염)으로 인한 수술
- 골변형 교정이 필요한 경우
- 신경병증성 관절증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
- 인공관절치환술 실패 후 시행한 경우

V-4. 족지변형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족지 절제관절성형술	절제관절성형술(지관절)	자-72다	N0723	2,421.51
	추가 pinning 할 경우: 사지골절정복술 [복합골절 포함]-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60나(6)	N0606	1,974.14
Flexor tenotomy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1	N0911	1,874.73
Girdlestone-Taylor	건 및 인대 성형술(복합)	자-93나	N0932	5,328.79
Plantar plate repair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V-5. 구축된 연부 조직 이완술 및 건 전이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Tibialis Posterior Tendon Transfer to Foot Dorsum	건 및 인대 성형술(복합)	자-93나	N0932	5,328.79
Split Transfer of Tibialis Anterior Tendon	건 및 인대 성형술(복합)	자-93나	N0932	5,328.79

심사기준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굴곡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200%까지 산정

2. 신전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개: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2-3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4-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라)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비고: 실제 건·인대 봉합술의 경우 급여기준의 전신이 된 근, 건의 절제술에 비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며, 해당 술기 자체도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으므로, 해당 시술의 보상 차원에서 6개 이상의 시술시 가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0% → 20%) 고시함.

[고시 제 2017-118호, 2017.7.1. 시행]

VI. 편평족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후경골건 활막절제술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장족지골건 이전술/보강술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스프링인대 봉합술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내측 전위 종골 절골술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외측주연장술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내측설상골 족배 개방뼈기 절골술 (Cotton)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TTC fusion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150(170)%	자-73라	N0733	6,376.16
삼중관절 유합술	관절고정술(족관절에삼중관절고정술실시)	자-73라주2	N0735	6,497.22
	관절고정술(족관절에삼중관절고정술실시)(복잡)	자-73라주3	N0737	7,746.41
범거골관절유합술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200%	자-73라	N0733	6,376.16
거골하관절 제동술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자-70라	N0703	3,621.05

심사기준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골곡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200%까지 산정

2. 신전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개: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2-3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4-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라)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비고: 실제 건·인대 봉합술의 경우 급여기준의 전신이 된 근, 건의 절제술에 비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며, 해당 술기 자체도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으므로, 해당 시술의 보상 차원에서 6개 이상의 시술시 가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0% → 20%) 고시함.

[고시 제 2017-118호, 2017.7.1. 시행]

자73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복잡 행위 기준

1. 관절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해당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
2. 해당 관절의 감염(화농성관절염, 골수염)으로 인한 수술
3. 골변형 교정이 필요한 경우
4. 신경병증성 관절증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
5. 인공관절치환술 실패 후 시행한 경우

편평족 치료재료인 Kalix의 급여여부 (거골하관절 제동술)

편평족 치료재료인“Kalix”는 전세계적으로 사용실적이 미비하고 국내 임상자료도 없으며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비급여대상으로함.

VII. 요족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족저근막 유리술	근막절개술(단순)	자-92-2가	N0922	2,185.48
장족무지신건 이전술 (EHL transfer)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장비골건 이전술 (Peroneus longus to brevis transfer)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TA transfer to 3rd cuneiform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TP (split) transfer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종골조면 근위 전위 절골술 / Dwyer 종골 절골술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제1중족골 기저부 족배부 폐쇄뼈기 절골술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Midtarsal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Arthrodesis (Double, subtalar)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자-73라	N0733	6,376.16
Arthrodesis (Triple)	관절고정술(족관절에삼중관절고정술실시)	자-73라주2	N0735	6,497.22
	관절고정술(족관절에삼중관절고정술실시)(복잡)	자-73라주3	N0737	7,746.41

심사기준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굴곡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200%까지 산정

2. 신전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개: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2-3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4-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라)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비고: 실제 건·인대 봉합술의 경우 급여기준의 전신이 된 근, 건의 절제술에 비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며, 해당 술기 자체도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으므로, 해당 시술의 보상 차원에서 6개 이상의 시술시 가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0% → 20%) 고시함. [고시 제 2017-118호, 2017.7.1. 시행]

자-73 족관절 삼중관절고정술 복잡 행위 기준

- 1. 관절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해당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
- 2. 해당 관절의 감염(화농성관절염, 골수염)으로 인한 수술
- 3. 골변형 교정이 필요한 경우
- 4. 신경병증성 관절증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
- 5. 인공관절치환술 실패 후 시행한 경우

VIII. 아킬레스건염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아킬레스건 변연절제술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Endoscopic retrocalcaneal decompression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자-70라	N0703	3,621.05
후종골점액낭 제거술	갱그리온 적출술	자-90	N0900	1,665.75
아킬레스건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아킬레스건 재건술	자-92	N0920	3,992.59
Haglund 변형 제거술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FHL transfer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FHL transfer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심사기준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굴곡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200%까지 산정

2. 신전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개: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2-3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4-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라)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비고: 실제 건·인대 봉합술의 경우 급여기준의 전신이 된 근, 건의 절제술에 비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며, 해당 술기 자체도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으므로, 해당 시술의 보상 차원에서 6개 이상의 시술시 가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0% → 20%) 고시함. [고시 제 2017-118호, 2017.7.1. 시행]

IX. 아킬레스건 파열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아킬레스건 봉합술	아킬레스건 재건술	자-92	N0920	3,992.59
Percutaneous repair	아킬레스건 재건술	자-92	N0920	3,992.59
Bosworth repair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Turn-down flap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V-Y advancement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FHL transfer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	자-93나	N0932	5,328.79

심사기준

자-92 아킬레스건 재건술 적응증

1. 진구성 아킬레스 건 파열
2. 심부열창으로 인한 아킬레스 건 결손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굴곡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200%까지 산정

2. 신전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개: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2-3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4-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라)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비고: 실제 건·인대 봉합술의 경우 급여기준의 전신이 된 근, 건의 절제술에 비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며, 해당 술기 자체도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으므로, 해당 시술의 보상 차원에서 6개 이상의 시술시 가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0% → 20%) 고시함.

[고시 제 2017-118호, 2017.7.1. 시행]

X. 족저근막염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비복근 근막 절제수술 /비복근 유리술	근막절개술(단순)	자-92-2가	N0922	2,185.48
족저근막 부분 절제수술/절제술	근막절개술(단순)	자-92-2가	N0922	2,185.48
내시경적 족저근막 부분절제수술 /유리술	근막절개술(단순) (내시경 수술료 및 재료대 인정 불가)	자-92-2가	N0922	2,185.48
종골 골극절제수술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심사기준

자-992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급여기준

1.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의 행위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다만, 별도 산정토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산정함.
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시에는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을 다음과 같이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산정대상

- 1) 자992가 복강경을 사용한 경우: 복강경하(내시경하 갑상선 수술 포함) 수술 시
- 2) 자992나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흉강경하 수술 시
- 3) 자992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관절경하 수술 시

나. 산정방법

- 1) 동일 경으로 양측 또는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1회만 산정 하며, 다른 경으로 수술할 경우는 경별로 각각 산정함.
- 2) 관혈적 수술 또는 내시경 수술(2가지 이상 수술 시에는 주된 수술)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도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다.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아 래 -

- 1) 자992나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에 시행한 경우를 제외한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 교정(Nuss OP) 수술
- 2) 자992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에 시행한 경우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

자-992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의 산정방법

가. 관절경·복강경·흉강경하 수술시

관절경 등을 이용한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산정함.

1) 관절경(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아래와 같이 인정함.

-아 래-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시행 시에만 인정함.

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XI. 장무지굴곡건질환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장족무지 굴곡건 소파수술/유리술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관절경적 발목후방 장족무지 굴곡건 소파수술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내시경 수술료 및 재료대 인정 불가)	자-93가	N0931	3,728.23
삼각부골 절제	양성골종양의소파술(절제술)-기타	자-28다	N0283	3,017.67
거골 후방골극 절제수술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장족무지굴곡건 파열시 봉합술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장족무지굴건 건 연장술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장족무지굴건 건 절단술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심사기준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다 음-

1. 굴곡측

가) 건·인대 개수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나) 건·인대 개수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다)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200%까지 산정

2. 신전측

가) 건·인대 개수가 1개: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나) 건·인대 개수가 2-3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다) 건·인대 개수가 4-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라)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비고: 실제 건·인대 봉합술의 경우 급여기준의 전신이 된 근, 건의 절제술에 비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며, 해당 술기 자체도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으므로, 해당 시술의 보상 차원에서 6개 이상의 시술시 가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0% → 20%) 고시함.

[고시 제 2017-118호, 2017.7.1. 시행]

자-31 골편절제술 적응증

1. 장관골의 골편 제거
2. 관절 주위 골극 제거
3. 골이식을 위한 골편 채취
4. 과도한 골용기로 인한 피부 압박 부위(무지외반증, 피부뭉..)

자-992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의 산정방법

가. 관절경·복강경·흉강경하 수술시

관절경 등을 이용한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산정함.

1) 관절경(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아래와 같이 인정함.

-아 래-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시행 시에만 인정함.

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XII. 후경골건 기능장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후경골건 소파수술/활막절제술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부주상골제거수술	양성골종양의소파술(절제술)-기타	자-28다	N0283	3,017.67
비복근 근막 절제수술	근막절개술(단순)	자-92-2가	N0922	2,185.48
중골절골수술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수근골,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심사기준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굴곡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200%까지 산정

2. 신전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개: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2-3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4-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라)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비고: 실제 건·인대 봉합술의 경우 급여기준의 전신이 된 근, 건의 절제술에 비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며, 해당 술기 자체도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으므로, 해당 시술의 보상 차원에서 6개 이상의 시술시 가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0% → 20%) 고시함.

[고시 제 2017-118호, 2017.7.1. 시행]

자-31 골편절제술 적응증

1. 장관골의 골편 제거
2. 관절 주위 골극 제거
3. 골이식을 위한 골편 채취
4. 과도한 골용기로 인한 피부 압박 부위(무지외반증, 피부뭉..))

XIII. 비골건질환

XIII-1. 비골건(장비골건, 단비골건) 파열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비골건 봉합술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비부골 절제술	양성골종양의소파술(절제술)-기타	자-28다	N0283	3,017.67
비골건 고정술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건 변연절제술과 조관술 (tubularization)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장족지굴건 이전술 (FDL transfer)	건 및 인대 성형술 (복잡)	자-93나	N0932	5,328.79
슬괘근 이식술 (Hamstring tendon graft)	건 및 인대 성형술 (복잡) (자가건 이용시에도 채취에 대한 수가는 불인정(무릎 십자인대 재건술에 만 인정))	자-93나	N0932	5,328.79

심사기준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굴곡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200%까지 산정

2. 신전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개: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2-3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4-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라)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비고: 실제 건·인대 봉합술의 경우 급여기준의 전신이 된 근, 건의 절제술에 비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며, 해당 술기 자체도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으므로, 해당 시술의 보상 차원에서 6개 이상의 시술시 가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0% → 20%) 고시함.

[고시 제 2017-118호, 2017.7.1. 시행]

자-31 골편절제술 적응증

1. 장관골의 골편 제거
2. 관절 주위 골극 제거
3. 골이식을 위한 골편 채취
4. 과도한 골용기로 인한 피부 압박 부위(무지외반증, 피부뭉..))

XIII-2. 비골건의 탈구 및 아탈구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상비골지대 봉합술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지대 재건술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비골건 경로변경술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비골 성형술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심사기준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골극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200%까지 산정

2. 신전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개: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2-3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4-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라)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비고: 실제 건·인대 봉합술의 경우 급여기준의 전신이 된 근, 건의 절제술에 비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며, 해당 술기 자체도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으므로, 해당 시술의 보상 차원에서 6개 이상의 시술시 가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0% → 20%) 고시함.
[고시 제 2017-118호, 2017.7.1. 시행]

자-31 골편절제술 적응증

1. 장관골의 골편 제거
2. 관절 주위 골극 제거
3. 골이식을 위한 골편 채취
4. 과도한 골융기로 인한 피부 압박 부위(무지외반증, 피부뭉..))

XIII-3. 비골건 건초염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비골건 활액막 절제술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비대비골결절 절제술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심사기준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골극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200%까지 산정

2. 신전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개: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2-3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4-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라)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비고: 실제 건·인대 봉합술의 경우 급여기준의 전신이 된 근, 건의 절제술에 비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며, 해당 술기 자체도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으므로, 해당 시술의 보상 차원에서 6개 이상의 시술시 가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0% → 20%) 고시함.
[고시 제 2017-118호, 2017.7.1. 시행]

자-31 골편절제술 적응증

1. 장관골의 골편 제거
2. 관절 주위 골극 제거
3. 골이식을 위한 골편 채취
4. 과도한 골융기로 인한 피부 압박 부위(무지외반증, 피부뭉..))

XIV. 신전건 질환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단단 봉합술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인접 신전건 이적술, 건 이식술, V-Y 전진술 (V-Y advancement)	건 및 인대 성형술 (복잡)	자-93나	N0932	5,328.79

심사기준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골극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200%까지 산정

2. 신전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개: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2-3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4-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라)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비고: 실제 건·인대 봉합술의 경우 급여기준의 전신이 된 근, 건의 절제술에 비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며, 해당 술기 자체도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으므로, 해당 시술의 보상 차원에서 6개 이상의 시술시 가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0% → 20%) 고시함.

[고시 제 2017-118호, 2017.7.1. 시행]

XV. 당뇨발

XV-1. 당뇨발 궤양의 국소 치료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변연절제술	창상청소 및 변연절제만 실시한 경우	자-2다	SC027	337.08
변연절제술 + 배농술	근농양배농술(기타근농양)	자-84라	N0844	1,003.64
변연절제술 광범위	근막절제술(단순)	자-92-2가	N0922	2,185.48
변연절제술 + 골수염소파술	골수염 또는 골농양 수술(기타)	자-29다	N0023	3,761.27
	골수염 또는 골농양 수술(기타) (복잡)	자-29다주	N0026	4,409.57
티눈 제거	티눈제거술 (절제,근층심부포함)	자-14-1나	N0144	1,001.97
음압창상치료 (VAC)	진공음압창상치치 교환 (염증성 처치)	자-2-1가(2)	M0121	141.38
	진공음압창상치치 교환당일 아닌 경우(단순처치)	자-2-1가(1)	M0111	75.51
사지관절절제술	사지관절절제술(Elbow, Wrist, Ankle) (지관절은 해당없음)	자-70라	N0703	3,621.05
	사지관절절제술(Elbow, Wrist, Ankle) (복잡)(지관절은 해당없음)	자-70라주	N0708	4,341.71

심사기준

자-29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자-68 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골수염 또는 골농양 수술 또는 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해당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해부학적 범위를 포함하는 다발성 골수염
- 골수염, 골농양, 화농성관절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 감입 골 시멘트를 삽입하는 경우

(2014.8.1.시행)

자-2-1가(2)주5 진공음압창상치치 교환

수술창의 심한 염증 처치, 심한 욕창, 염증이 심한 상처의 처치에 산정

(심한 욕창에 Betadine soaking dressing 또는 wet dressing 등을 시행한 경우 인정 (단순처치 후 습윤드레싱을 붙여주는 경우 해당되지 않음))

Dressing 재료 교환당일에는 자-2-1 가(2) 염증성 처치, 교환당일이 아닌 경우에는 자-2-1가(1) 단순처치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2009.12.1 시행)

자-14-1 티눈제거술의 급여기준

티눈제거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1호 나목에 의거 비급여 대상이나 손·발에 실시한 티눈제거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가. 급여대상

- 1) 손(2부위): ①다섯 손가락, ②손등과 손바닥
- 2) 발(2부위): ①다섯 발가락, ②발등과 발바닥

나. 산정방법

손·발 각 부위별로 산정하며, 각각의 동일 부위내에서 2개 이상을 제거하는 경우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제1의 것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시행일: 2023.7.1.부터)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 & 활막절제를포함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결핵, 류마티스, 통풍, 색소염모결절성 활액막염(PVNS), 화농성관절염으로 광범위한 활액막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과거수술 후 호전되지 않아 전원되어 재수술 하는 경우

(2014.8.1 시행)

XV-2. 하중 경감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절제관절성형술	절제관절성형술(지관절)	자-72다	N0723	2,421.51
티눈제거	티눈제거술(절제,근층심부포함)	자-14-1나	N0144	1,001.97
Bumpectomy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아킬레스건 연장술	아킬레스건 연장술	자-92주	N0921	5,439.10

심사기준

자-14-1 티눈제거술의 급여기준

티눈제거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1호 나목에 의거 비급여 대상이나 손·발에 실시한 티눈제거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가. 급여대상

- 1) 손(2부위): ①다섯 손가락, ②손등과 손바닥
- 2) 발(2부위): ①다섯 발가락, ②발등과 발바닥

나. 산정방법

손·발 각 부위별로 산정하며, 각각의 동일 부위내에서 2개 이상을 제거하는 경우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제1의 것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시행일: 2023.7.1.부터)

자-31 골편절제술 적응증

1. 장관골의 골편 제거
2. 관절 주위 골극 제거
3. 골이식을 위한 골편 채취
4. 과도한 골용기로 인한 피부 압박 부위(무지외반증, 피부뒹..)

XV-3. 조직의 산소공급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고압산소치료	고압산소요법 1시간까지	자-586가	M0586	302.06
	고압산소요법 1시간까지(상급·종합병원)	자-586가주	M0581	116.51
	고압산소요법 1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 까지	자-586나	M0587	734.83
	고압산소요법 1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 까지(상급·종합병원)	자-586나주	M0582	283.42
	고압산소요법 2시간을 초과 1일당	자-586다	M0588	1,907.08
	고압산소요법 2시간을 초과 1일당(상급·종합병원)	자-586다주	M0583	735.54
국소산소치료	국소산소 상처치료(단순치치)	자-2-1가(1)	M0111	75.51

심사기준

자-586 고압산소요법의 급여기준

자586 고압산소요법은 동일 날 오전·오후로 나누어 시행할 경우에는 실 처치시간을 합산하여 해당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가. 일산화탄소중독, 감염병(잠수병), 가스색전증, 혐기성세균감염증(가스괴저증), 시안화물중독증, 시력소실 24시간 이내 급성기 중심망막 동맥폐쇄, 수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과도한 출혈에 의한 빈혈

나. 화상, 버거씨병, 식피술 또는 피판술 후, 수지접합수술 후, 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조직괴사, 당뇨병성 족부 궤양(Wagner grade 3 이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난치성 골수염, 두개내 농양 등에 통상 2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 인정

다. 초기 청력역치 80dB 이상의 돌발성 난청환자에서 고압산소요법을 1회 60~120분이내로 실시한 경우 인정
(2019.1.1. 시행)

휴대용 산소 공급장치를 이용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 급여기준 고시 2025-23호

당뇨병성 족부궤양(Diabetic Foot)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국소 산소 상처치료를 위해 창상치치를 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로 인정함.

가. 급여대상: 1)~3)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1) 궤양 지속기간: 4주 이상
- 2) 궤양의 크기: 35cm² 이하
- 3) Wagner 1~2등급 환자

나. 수가산정방법

치료재료(산소전달장치) 적용 혹은 교체 당일, 자2-1가(1) 일반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1일당]-창상치치-단순치치를 산정하고, 동일 병변에 흡입배능 및 배액치치 등 다른 처치가 함께 이루어질 경우 주된 처치 1종을 산정함.

다. 치료재료

- 1) 인정횟수: 2회/주, 3주간
- 2) 인정개수: 1개
- 3) 상기 가. 급여대상에 사용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다만, 횟수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로 함.

(2025.2.1시행)

XVI. 절단술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Phalangectomy	사지절단술(지골)	자-57마	N0575	1,836.73
Toe dislocation	사지관절이단술(지관절)	자-56바	N0566	2,113.98
Ray amputation	사지절단술(수족)	자-57라	N0574	4,681.75
Transmetatarsal amputation	사지절단술(수족)	자-57라	N0574	4,681.75
Lisfranc amputation	사지절단술(수족)	자-57라	N0574	4,681.75
Chopart amputation	사지절단술(수족)	자-57라	N0574	4,681.75
Syme amputation	사지절단술(상완,전완,하퇴)	자-57다	N0573	6,730.88
Below knee amputation	사지절단술(상완,전완,하퇴)	자-57다	N0573	6,730.88
Knee dislocation	사지관절이단술(슬관절)	자-56라	N0564	6,715.24
Above knee amputation	사지절단술(대퇴)	자-57나	N0572	8,022.47

XVII. 관절염

XVII-1. 족관절 관절염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Supramalleolar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경골과 비골 중 하나)	자-30-1다(1)	N0304	5,923.37
Supramalleolar + fibular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경비골 동시)	자-30-1다(2)	N0307	6,468.27
Distraction arthroplasty	체외금속 고정술(하퇴골)(복잡)	자-60-1나주	N0986	4,254.03
Ankle arthrodesis	관절고정술(족관절)	자-73라	N0733	6,376.16
	관절고정술(족관절)(복잡)	자-73라주1	N0736	7,354.04
Ankle arthroplasty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족관절)	자-71가(6)	N2075	7,620.00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족관절)(복잡)	자-71가(6)주	N2079	11,505.05
Revisional ankle arthroplasty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족관절)	자-71-1가(6)	N3715	9,672.83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족관절)(복잡)	자-71-1가(6)주1	N3719	11,298.73
Ankle joint debridement (synovectomy)	사지관절 절제술 [활막절제를 포함] (주관절,완관절,족관절)	자-70라	N0703	3,621.05
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e treatment (BMAC)	자가 골수 유래 줄기세포 치료	조-85가	SZ085	비급여
Modified Brostrom operation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	자-93가	N0931	3,728.23
Heel cord lengthening	아킬레스건 연장술	자-92주	N0921	5,439.10
Gastrocnemius recession	근막절개술(단순)	자-92-2가	N0922	2,185.48
Tarsal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Metatarsal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Bone graft	골이식술	자-31-1	N0312	1,193.82
Ostectomy	골편 절제술	자-31	N0311	2,707.13

심사기준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의 급여기준

1. 적응증

가. 왜소증 및 사지부동에 실시한 골연장술 시

- 1) 왜소증: 「기질적 왜소증에 실시한 사지골연장술의 급여 인정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 2) 사지부동: 좌·우 길이 차이가 상지는 6cm 이상, 하지는 2.5cm 이상인 경우

나. 골 및 연부조직의 기형 및 결손: 단지증 상병에는 1cm 이상 단축이 있는 경우

다. 악성종양 절제술, 만성골수염 등으로 인한 골소실

라. 후 외상성 및 후 감염성 골단판 손상

마. 불유합 및 부정유합

바. 관절고정술에 선별적으로 시행 시

사. 골절

1) 일반적인 인정기준

가) Intra-articular comm. Fx (knee, ankle, wrist, elbow)

나) 간부의 분쇄골절, 개방성 골절에 선별적으로 시행 시

2) 소아골절의 인정기준

가) 위 "1) 일반적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나) 6-10세 사이의 다발성 장관골 골절을 동반한 대퇴골 간부골절

다) 대퇴골 간부골절에서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 중 교정이 필요할 정도의 단축 또는 각변형이 진행되는 경우

2. 수가 산정방법 동일 부위에 자60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 또는 자30 절골술과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을 동시 실시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3. 치료재료 산정방법치료재료는 체내고정용 재료와 체외고정용 기구로 구분하여 보상토록 하되 반드시 요양기관에서 직접 구입·사용하여야 함.

가. 체외 고정용: 제품별 요양기관 실구입가+재사용 가능 횟수

나. 체내 고정용: 제품별 요양기관 실구입가×실사용 개수(2023.3.29시행)

자-60-1나 체외금속 고정술 (하퇴골) 복잡 행위 기준

- 왜소증 및 사지부동에 실시한 골연장술 시

- 악성종양절제술, 만성골수염 등으로 인한 골소실

- 불유합 또는 부정유합

- 관절을 포함하여 체외금속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2014.8.1시행)

자-73라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복잡 행위 기준

1. 관절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해당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

2. 해당 관절의 감염(화농성관절염, 골수염)으로 인한 수술

3. 골변형 교정이 필요한 경우

4. 신경병증성 관절증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

5. 인공관절치환술 실패 후 시행한 경우

자-71 인공관절치환술·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술 복잡 행위 기준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아 래-

(1) 해당 전문의(내과는 세부전문분야) 협진으로 아래의 질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1-1) 만성 신부전증 환자

(1-2)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필요한 환자

(1-3) 심혈관 스텐트를 가지고 있어 혈전제를 복용중인 자

(1-4) 고도의 심근 경색/협심증이 있는 자 - Goldman cardiac risk III 이상

(1-5) 조절되지 않는 당뇨(HbA1C > 7.0) 환자

(1-6) 간경화가 있는 환자

(1-7) 혈액암 환자

(1-8) 혈우병 환자 또는 혈액 응고이상인 환자

(1-9) 고도의 폐쇄성 폐질환 환자

(1-10) 정맥혈전색전증으로 치료 과거력이 있는 자

(1-11) 뇌경색 등으로 aspirin보다 상위의 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

(2) 치료 중인 상태의 류마티스 질환자로 DAS 28이 5.1 초과일 때

(3) 말초동맥 폐색성 질환을 가진 자

(4) 진행성 척수마비 또는 마미 증후군 환자

(5) 병적 골절이 동반된 환자 : 원발성 골암, 전이성 골암 및 골다공증이 동반된 환자

(6) 감염성 후유증이나 삽입물 주위 감염 후 인공관절치환술

(7) 장축 1 inch 이상의 골결손이 동반된 인공관절치환술

(8) 15° 이상의 골변형이 동반된 인공관절치환술

(9) 가성마비, 회전근개파열관절증, 광범위 파열 후 인공관절치환술을 재수술로 시행하는 경우

(10) 관절구축이 20° 이상인 경우

(11) 인공관절재치환술의 재치환술

(2014.8.1 시행)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다 음-

1. 굴곡측

가) 건·인대 개수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나) 건·인대 개수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다)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200%까지 산정

2. 신전축

- 가) 건·인대 개수가 1개: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2-3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4-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라)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비고: 실제 건·인대 봉합술의 경우 급여기준의 전신이 된 근, 건의 절제술에 비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며, 해당 술기 자체도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으므로, 해당 시술의 보상 차원에서 6개 이상의 시술시 가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0% → 20%) 고시함.
[고시 제 2017-118호, 2017.7.1. 시행]

XVII-2. 족부 관절염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Subtalar arthrodesis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자-73라	N0733	6,376.16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복잡)	자-73라주1	N0736	7,354.04
Talonavicular fusion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자-73라	N0733	6,376.16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복잡)	자-73라주1	N0736	7,354.04
Calcaneocuboid fusion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자-73라	N0733	6,376.16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복잡)	자-73라주1	N0736	7,354.04
Double arthrodesis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자-73라	N0733	6,376.16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복잡)	자-73라주1	N0736	7,354.04
TTC fusion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150(170)%	자-73라	N0733	6,376.16
Triple arthrodesis	관절고정술(족관절에삼중관절고정술실시)	자-73라주2	N0735	6,497.22
	관절고정술(족관절에삼중관절고정술실시) (복잡)	자-73라주3	N0737	7,746.41
Lisfranc joint arthrodesis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족근골 복잡	자-60가(5)주	N0614	6,819.29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중수골, 중족골, 지골 (복잡)	자-60가(6)주	N0615	5,173.45
MTP, IP joint arthrodesis	관절고정술 (지관절)	자-73마	N0734	3,150.00
Heel cord lengthening	아킬레스건 연장술	자-92주	N0921	5,439.10
Gastrocnemius recession	근막절개술(단순)	자-92-2가	N0922	2,185.48
Tarsal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Metatarsal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30-1마	N0319	3,616.12
Bone graft	골이식술	자-31-1	N0312	1,193.82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Ostectomy	골편 절제술	자-31	N0311	2,707.13

심사기준

자-73라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복잡 행위 기준

1. 관절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해당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
2. 해당 관절의 감염(화농성관절염, 골수염)으로 인한 수술
3. 골변형 교정이 필요한 경우
4. 신경병증성 관절증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
5. 인공관절치환술 실패 후 시행한 경우

TTC fusion

: N0733 ankle fusion 1.0 + N0733 ankle fusion 0.5(0.7)으로 산정

Pantalar fusion

: N0733 ankle fusion 1.0 + N0735 triple fusion 1.0으로 산정

Lisfranc joint arthrodesis

: N0614 Tarsal OR/IF(복잡) 1.0 + N0615 Metatarsal OR/IF(복잡) 0.5(0.7)으로 산정

XVII-3. 결정 유발성 관절염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Ankle joint debridement (synovectomy)	사지관절 절제술 [활막절제를 포함]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자-70라	N0703	3,621.05
Metatarsophalangeal Joint debridement (synovectomy)	사지관절절제술(지관절)	자-70마	N0704	1,535.63
통풍결절절제술	연부조직종양적출술(근막또는근육내양성)	자-23가(2)	N0234	2,532.50

XVIII. 스포츠 손상

XVIII-1. 족관절 외측인대 염좌 및 불안정성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신전지지대 포함 (개방)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Suture anchor를 통한 전거비, 원위경비인대 보강 (ex. internal brace)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관절경적 전거비인대 봉합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관절경하 수술	자-992다	Q9923	2,018.36
자가건을 이용한 재건술	건 및 인대 성형술 (복잡)(자가건 이용시 채취에 대한 수가는 불인정(무릎 십자인대 재건술에만 인정))	자-93나	N0932	5,328.79
동종건을 이용한 재건술	건 및 인대 성형술 (복잡)	자-93나	N0932	5,328.79

심사기준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굴곡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200%까지 산정

2. 신전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개: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2-3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4-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라)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비고: 실제 건·인대 봉합술의 경우 급여기준의 전신이 된 근, 건의 절제술에 비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며, 해당 술기 자체도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으므로, 해당 시술의 보상 차원에서 6개 이상의 시술시 가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0% → 20%) 고시함.

[고시 제 2017-118호, 2017.7.1. 시행]

자-992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의 산정방법

가. 관절경·복강경·흉강경하 수술시

관절경 등을 이용한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산정함.

1) 관절경(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아래와 같이 인정함.

- 아 래 -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시행 시에만 인정함.

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다. 진단적 경검사 시

진단적 경검사 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2개까지 인정함. [고시 제2024-227호, 2024.11.1.시행]

족관절불안정 등 상병에 변형브로스트롬술(MBO) 및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 시행 시 치료재료(관절경) 인정여부

○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6호, '14.8.1.시행)」에 의하면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수 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건·인대의 개수에 따라 수가 산정을 달리하고 있는바, 굴곡측 인대 1~2개, 신전측 인대 2~3개인 경우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절제,봉합,박리](N0931)으로 산정함.

따라서, 변형브로스트롬술(MBO)은 통상 인대 2개(전거비인대, 종비인대)를 봉합하는 술기이므로 자93가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한 것(N0931)으로 인정함.

○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6호, '10.11.1.)에 의거 수술부위에 따라 수가산정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족관절 병변에 관절경을 이용한 시술에는 수술시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활막제거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는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활막제거술, 연골성형술, 골극제거술 등의 술식을 2~3가지 이상 동시에 시행한 경우 또는 변형브로스트롬술(MBO) 시행이 관절경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을 인정함.

[2016.11.2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동종건의 급여기준

1. 건 및 인대 손상 시 사용하는 동종건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슬관절

- 1) 전방십자인대(ACL) 재건 시 자가건 사용이 어려운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 가) 여러개의 이식건이 필요한 경우
- 나) 자가건 중 필요한 형태의 이식건을 얻을 수 없는 경우
- 다) 재수술로 인해 적절한 자가건이 없을 경우

- 2) 후방십자인대(PCL) 재건 시
- 3) 외측측부인대(LCL)와 불안정성후외측 회전 인대(PLRI) 동시 재건 시

나. 족관절

- 1) 족관절 인대 재건술 후 재발하여 다시 재건하는 경우
- 2) 내측, 외측, 원위경비인대 중 부위가 다른 2개 이상 인대의 만성 불안정성이 지속되어 해당 인대를 동시에 재건하는 경우

다. 견관절

- 1) Rockwood type III,IV,V,VI에 해당하는 견쇄관절의 만성 탈구
- 2) 오구쇄골 간격이 견 측에 비해 100% 이상 증가한 불안정형의 원위 쇄골의 골절

라. 주관절

- 1) 주관절 인대 재건술 후 재발하여 다시 재건하는 경우
- 2) 상완 삼두근 원위부 결손으로 인해 재건하는 경우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20-85호, '20.5.1.시행)

- 다 음 -

1. 굴곡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200%까지 산정

2. 신전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개: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2-3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4-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라)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비고: 실제 건·인대 봉합술의 경우 급여기준의 전신이 된 근, 건의 절제술에 비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며, 해당 술기 자체도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으므로, 해당 시술의 보상 차원에서 6개 이상의 시술시 가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0% → 20%) 고시함. [고시 제 2017-118호, 2017.7.1. 시행]

자-70 사지관절절제술 & 활막절제를포함 복잡 행위 기준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아 래 -

- 결핵, 류마티스, 통풍, 색소용모결절성 활액막염(PVNS), 화농성관절염으로 광범위한 활액막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과거수술 후 호전되지 않아 전원되어 재수술 하는 경우

(2014.8.1 시행)

XVIII-2. 거골하 관절의 염좌 및 불안정성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종비인대, 신전지지대 봉합 (개방)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종골 절골술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수근골, 족근골)	자-30-1라	N0318	4,387.53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거골하관절)	관절경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족관절)	자-70라	N0703	3,621.05

심사기준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XVIII-3. 족근동 증후군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관절경적 활액막 및 섬유성 반흔 조직 절제술	관절경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 (족관절)	자-70라	N0703	3,621.05

XVIII-4. 원위 경비관절 염좌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원위 경비인대 단단 봉합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Suture anchor 혹은 internal brace를 통한 원위경비인대 보강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Syndesmotic fixation (screw or tightrope)	사지골절정복술-Closed pinning (비골)	자-60나(4)(나)	N1000	3,017.51

심사기준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굴곡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200%까지 산정

2. 신전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개: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2-3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4-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라)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비고: 실제 건·인대 봉합술의 경우 급여기준의 전신이 된 근, 건의 절제술에 비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며, 해당 술기 자체도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으므로, 해당 기술의 보상 차원에서 6개 이상의 시술시 가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0% → 20%) 고시함.

[고시 제 2017-118호, 2017.7.1. 시행]

XVIII-5. 족관절 내측 염좌 및 불안정성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삼각인대 봉합 or Suture anchor 통한 삼각인대 재건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자가건을 이용한 재건술	건 및 인대 성형술 (복잡)(자가건 이용시 채취에 대한 수가는 불인정(무릎 십자인대 재건술에 만 인정))	자-93나	N0932	5,328.79
동종건을 이용한 재건술	건 및 인대 성형술 (복잡)	자-93나	N0932	5,328.79

심사기준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굴곡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200%까지 산정

2. 신전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개: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2-3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4-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라)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비고: 실제 건·인대 봉합술의 경우 급여기준의 전신이 된 근, 건의 절제술에 비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며, 해당 술기 자체도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으므로, 해당 기술의 보상 차원에서 6개 이상의 시술시 가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0% → 20%) 고시함.

[고시 제 2017-118호, 2017.7.1. 시행]

동종건의 급여기준

1. 건 및 인대 손상 시 사용하는 동종건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슬관절

- 1) 전방십자인대(ACL) 재건 시 자가건 사용이 어려운 아래와 같은 경우

-아 래-

- 가) 여러개의 이식건이 필요한 경우
- 나) 자가건 중 필요한 형태의 이식건을 얻을 수 없는 경우
- 다) 재수술로 인해 적절한 자가건이 없을 경우
- 2) 후방십자인대(PCL) 재건 시
- 3) 외측측부인대(LCL)와 불안정성후외측 회전 인대(PLRI) 동시 재건 시

나. 족관절

- 1) 족관절 인대 재건술 후 재발하여 다시 재건하는 경우
- 2) 내측, 외측, 원위경비인대 중 부위가 다른 2개 이상 인대의 만성 불안정성이 지속되어 해당 인대를 동시에 재건하는 경우

다. 견관절

- 1) Rockwood type III,IV,V,VI에 해당하는 견쇄관절의 만성 탈구
- 2) 오구쇄골 간격이 견 축에 비해 100% 이상 증가한 불안정형의 원위 쇄골의 골절

라. 주관절

- 1) 주관절 인대 재건술 후 재발하여 다시 재건하는 경우
- 2) 상완 삼두근 원위부 결손으로 인해 재건하는 경우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20-85호, '20.5.1.시행)

XVIII-6. 골연골 병변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관절경적 활액막절제술	관절경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 (족관절)	자-70라	N0703	3,621.05
1.5cm ² 미만 골연골병변 미세천공술	관절경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 (족관절) 준용	자-70라	N0703	3,621.05
	관절경하 수술	자-992다	Q9923	2,018.36
1.5cm ² 이상 골연골병변 미세천공술	자가골연골이식술 준용	자-69-1	N0693	3,757.53
	관절경하 수술	자-992다	Q9923	2,018.36
자가골연골이식술(OATS)	자가골연골이식술	자-69-1	N0693	3,757.53
	자가골연골이식술 (복잡)	자-69-1주	N0695	4,853.25
	관절경하 수술	자-992다	Q9923	2,018.36
Supramalleolar osteotomy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경골과 비골 중 하나)	자-30-1다(1)	N0304	5,923.37
BMAC, BMIC	자가 골수 유래 줄기세포 치료	조-85가	SZ085	비급여

심사기준

자-992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급여기준

1.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의 행위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다만, 별도 산정토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산정함.
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시에는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을 다음과 같이 별도 산정함.

-다 음-

가. 산정대상

- 1) 자992가 복강경을 사용한 경우: 복강경하(내시경하 갑상선 수술 포함) 수술 시
- 2) 자992나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흉강경하 수술 시
- 3) 자992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관절경하 수술 시

나. 산정방법

- 1) 동일 경로로 양측 또는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1회만 산정 하며, 다른 경로로 수술할 경우는 경별로 각각 산정함.
 - 2) 관혈적 수술 또는 내시경 수술(2가지 이상 수술 시에는 주된 수술)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도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다.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아 래-

- 1) 자992나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에 시행한 경우를 제외한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 교정(Nuss OP) 수술
- 2) 자992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에 시행한 경우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

자-992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의 산정방법

가. 관절경·복강경·흉강경하 수술시

관절경 등을 이용한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산정함.

- 1) 관절경(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아래와 같이 인정함.

- 아 래 -

-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시행 시에만 인정함.
- 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자-70 사지관절절제술 & 활막절제술포함 복잡 행위 기준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결핵, 류마티스, 통풍, 색소용모결절성 활액막염(PVNS), 화농성관절염으로 광범위한 활액막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과거수술 후 호전되지 않아 전원되어 재수술 하는 경우
 (2014.8.1 시행)

자-69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가골연골이식술 급여기준

고시 제2023-293호(행위)

1.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가골연골이식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슬관절

- 1) 대상질병
 - 박리성 골연골염
 - 국소부위의 외상성 연골 또는 골연골 결손 등
- 2) 대상부위: femoral condyle
- 3) 연골손상의 크기: 1.5-4.0cm²이하
- 4) 연골손상 상태: Outerbridge grade III이상 (photo, MRI, 관절경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함)
- 5) 대상연령: 15-55세
- 6) 치료재료 인정개수: 1세트

나. 족관절

- 1) 대상질병
 - 박리성 골연골염
 - 골 연골 결손 등
- 2) 대상부위: talar dome
- 3) 연골손상의 크기: 1.5-3.0cm²
- 4) 연골손상 상태
 - 족관절면의 연골 손상에 대해 일차적인 관절경적 변연부 절제술(debridement) 즉 소파술(curettage)이나 또는 천공술(drilling)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골연골성 병변이 지속적으로 손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 거골의 골연골성 병변이 연골 결손 하에 낭종(cyst)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자가 연골 이식술이 가능
- 5) 대상연령: 15-55세
- 6) 치료재료 인정개수: 1세트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슬관절 및 족관절에 자가골연골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복잡 행위 기준

아래 제시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슬관절의 경우: 5° 이상의 심한 변형이 동반된 경우, 연골손상크기가 3cm² 이상인 경우
 - 족관절의 경우: 관절절개로 도달할 수 없어 절골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 연골손상크기가 2cm² 이상인 경우
 (2014.8.1시행)

XVIII-7. 리스프랑 인대 손상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리스프랑 인대 봉합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족근골 (복잡)	자-60가(5)주	N0614	6,819.29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중수 골,중족골,지골 (복잡)	자-60가(6)주	N0615	5,173.45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사지골절정복술-Closed pinning (족근골)	자-60나(5)	N0995	1,997.52
	사지골절정복술-Closed pinning (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60나(6)	N0606	1,974.14

심사기준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굴곡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200%까지 산정

2. 신전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개: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2-3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4-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라)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비고: 실제 건·인대 봉합술의 경우 급여기준의 전신이 된 근, 건의 절제술에 비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며, 해당 술기 자체도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으므로, 해당 시술의 보상 차원에서 6개 이상의 시술시 가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0% → 20%) 고시함.

[고시 제 2017-118호, 2017.7.1. 시행]

XVIII-8. 중족족지관절 인대 손상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인대 봉합(plantar plate or collateral ligament 등)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활액막 절제술 or 미세 천공술	관절경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 (족관절)	자-70라	N0703	3,621.05
경피적 핀 고정술	사지골절정복술-Closed pinning (중수골, 중족골, 지골)	자-60나(6)	N0606	1,974.14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사지골절정복술[복합골절포함]-관혈적 (중수골, 중족골, 지골(복합))	자-60가(6)주	N0615	5,173.45

심사기준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굴곡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200%까지 산정

2. 신전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개: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2-3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4-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라)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비고: 실제 건·인대 봉합술의 경우 급여기준의 전신이 된 근, 건의 절제술에 비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며, 해당 술기 자체도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으므로, 해당 시술의 보상 차원에서 6개 이상의 시술시 가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0% → 20%) 고시함.

[고시 제 2017-118호, 2017.7.1. 시행]

자-992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급여기준

1.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의 행위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다만, 별도 산정토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산정함.
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시에는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을 다음과 같이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산정대상

- 1) 자992가 복강경을 사용한 경우: 복강경하(내시경하 갑상선 수술 포함) 수술 시
- 2) 자992나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흉강경하 수술 시
- 3) 자992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관절경하 수술 시

나. 산정방법

- 1) 동일 경으로 양측 또는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1회만 산정 하며, 다른 경으로 수술할 경우는 경별로 각각 산정함.
- 2) 관혈적 수술 또는 내시경 수술(2가지 이상 수술 시에는 주된 수술)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도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다.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아 래 -

- 1) 자992나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에 시행한 경우를 제외한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 교정(Nuss OP) 수술
- 2) 자992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이물제거술 및 추박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에 시행한 경우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

자-992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의 산정방법

가. 관절경·복강경·흉강경하 수술시

관절경 등을 이용한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산정함.

1) 관절경(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아래와 같이 인정함.

-아 래-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시행 시에만 인정함.

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자-70 사지관절절제술 & 활막절제술을포함 복잡 행위 기준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결핵, 류마티스, 통풍, 색소용모결절성 활액막염(PVNS), 화농성관절염으로 광범위한 활액막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과거수술 후 호전되지 않아 전원되어 재수술 하는 경우

(2014.8.1 시행)

XVIII-9. 과사용 증후군

XVIII-9-(1).만성 운동 구획 증후군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Fasciotomy	근막절개술 (단순)	자-92-2가	N0922	2,185.48
	근막절개술 (복잡)	자-92-2나	N0923	3,738.01

심사기준

자-92-2 근막절개술-단순 절개 적응증

1. 하퇴부의 급성 구획 증후군
2. 급성 구획 증후군을 의심할 만한 증상(근육의 수동운동 시에 통증, 근력저하, 감각저하 및 이상감각)
3. 구획압력이 30 mmHg 이상

XVIII-9-(2).삼각골 증후군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삼각골 제거술	양성골종양의소파술(절제술)-기타	자-28다	N0283	3,017.67
활액막 절제술	관절경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술포함](족관절)	자-70라	N0703	3,621.05

심사기준

자-992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급여기준

1.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의 행위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다만, 별도 산정토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산정함.
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시에는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을 다음과 같이 별도 산정함.

-다 음-

가. 산정대상

- 1) 자992가 복강경을 사용한 경우: 복강경하(내시경하 갑상선 수술 포함) 수술 시
- 2) 자992나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흉강경하 수술 시
- 3) 자992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관절경하 수술 시

나. 산정방법

- 1) 동일 경로로 양측 또는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1회만 산정 하며, 다른 경로로 수술할 경우는 경별로 각각 산정함.
- 2) 관혈적 수술 또는 내시경 수술(2가지 이상 수술 시에는 주된 수술)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도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다.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아 래-

- 1) 자992나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에 시행한 경우를 제외한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 교정(Nuss OP) 수술
- 2) 자992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에 시행한 경우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

자-992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의 산정방법

가. 관절경·복강경·흉강경하 수술시

관절경 등을 이용한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산정함.

1) 관절경(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아래와 같이 인정함.

-아 래-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시행 시에만 인정함.

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XIX. 부골

XIX-1. 부주상골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부주상골 절제	양성골종양의소파술(절제술)-기타	자-28다	N0283	3,017.67
Kidner procedure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양성골종양의소파술(절제술)-기타	자-28다	N0283	3,017.67
부주상골 유합술	가관절수술(쇄골, 슬개골, 수근골, 족근골)	자-62다	N0624	5,985.76

심사기준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굴곡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200%까지 산정

2. 신전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개: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2-3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4-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라)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비고: 실제 건·인대 봉합술의 경우 급여기준의 전신이 된 근, 건의 절제술에 비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며, 해당 술기 자체도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으므로, 해당 시술의 보상 차원에서 6개 이상의 시술시 가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0% → 20%) 고시함.

[고시 제 2017-118호, 2017.7.1. 시행]

XIX-2. 동통성 비부골 증후군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비부골 절제	양성골종양의소파술(절제술)-기타	자-28다	N0283	3,017.67
장비골건의 봉합 또는 조관술 (tubulization)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Tenodesis to peroneus brevis tendon	건 및 인대 성형술 (간단)	자-93가	N0931	3,728.23

심사기준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굴곡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200%까지 산정

2. 신전측

- 가) 건·인대 개수가 1개: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나) 건·인대 개수가 2-3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다) 건·인대 개수가 4-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라)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비고: 실제 건·인대 봉합술의 경우 급여기준의 전신이 된 근, 건의 절제술에 비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며, 해당 술기 자체도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으므로, 해당 시술의 보상 차원에서 6개 이상의 시술시 가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0% → 20%) 고시함.

[고시 제 2017-118호, 2017.7.1. 시행]

XIX-3. 삼각부골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삼각골 제거술	양성골종양의소파술(절제술)-기타	자-28다	N0283	3,017.67
활액막 절제술	관절경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 (족관절)	자-70라	N0703	3,621.05

심사기준

자-992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급여기준

1.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의 행위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다만, 별도 산정토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산정함.
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시에는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을 다음과 같이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산정대상

- 1) 자992가 복강경을 사용한 경우: 복강경하(내시경하 갑상선 수술 포함) 수술 시
- 2) 자992나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흉강경하 수술 시
- 3) 자992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관절경하 수술 시

나. 산정방법

- 1) 동일 경으로 양측 또는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1회만 산정 하며, 다른 경으로 수술할 경우는 경별로 각각 산정함.
- 2) 관혈적 수술 또는 내시경 수술(2가지 이상 수술 시에는 주된 수술)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도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다.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아 래 -

- 1) 자992나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에 시행한 경우를 제외한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 교정(Nuss OP) 수술
- 2) 자992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에 시행한 경우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

자-992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의 산정방법

가. 관절경·복강경·흉강경하 수술시

관절경 등을 이용한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산정함.

1) 관절경(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아래와 같이 인정함.

- 아 래 -

-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시행 시에만 인정함.
- 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XX. 족근골 결합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Resection of bone bridge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Subtalar arthrodesis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자-73라	N0733	6,376.16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복잡	자-73라주1	N0736	7,354.04
Triple arthrodesis	관절고정술(족관절에삼중관절고정술실시)	자-73라주2	N0735	6,497.22
	관절고정술(족관절에삼중관절고정술실시)(복잡)	자-73라주3	N0737	7,746.41
골 이식술 (Autologous cancellous bone graft)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골이식술	자-31-1	N0312	1,193.82

심사기준

자-31 골편절제술 적응증

1. 장관골의 골편 제거
2. 관절 주위 골극 제거
3. 골이식을 위한 골편 채취
4. 과도한 골용기로 인한 피부 압박 부위(무지외반증, 피부뭉..)

자-73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복잡 행위 기준

1. 관절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해당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
2. 해당 관절의 감염(화농성관절염, 골수염)으로 인한 수술
3. 골변형 교정이 필요한 경우
4. 신경병증성 관절증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
5. 인공관절치환술 실패 후 시행한 경우

XXI. 골연골증

XXI-1. Müller-Weiss 증후군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Talonavicular arthrodesis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자-73라	N0733	6,376.16
Triple arthrodesis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복합)	자-73라주1	N0736	7,354.04
Triple arthrodesis	관절고정술(족관절에 삼중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	자-73라주2	N0735	6,497.22
	관절고정술(족관절에 삼중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복합)	자-73라주3	N0737	7,746.41
골 이식술(Autologous cancellous bone graft)	골편절제술	자-31	N0311	2,707.13
	골이식술	자-31-1	N0312	1,193.82

심사기준

자-73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복합 행위 기준

1. 관절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해당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
2. 해당 관절의 감염(화농성관절염, 골수염)으로 인한 수술
3. 골변형 교정이 필요한 경우
4. 신경병증성 관절증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
5. 인공관절치환술 실패 후 시행한 경우

자-73 족관절 삼중관절고정술 복합 행위 기준

1. 관절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해당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
2. 해당 관절의 감염(화농성관절염, 골수염)으로 인한 수술
3. 골변형 교정이 필요한 경우
4. 신경병증성 관절증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
5. 인공관절치환술 실패 후 시행한 경우

자-31 골편절제술 적응증

1. 장관골의 골편 제거
2. 관절 주위 골극 제거
3. 골이식을 위한 골편 채취
4. 과도한 골용기로 인한 피부 압박 부위(무지외반증, 피부뭉..))

자-31 골이식술 (Bone graft) 급여 인정기준

골 결손부위에 보존 및 보강 목적으로 실시하는 자31-1 골이식술(Bone graft)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자31 골편절제술 후 자가골 이식의 경우

나.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를 사용하여 골이식하는 경우

- 1) 골성 종양 수술시 골결손이 있는 경우
- 2) 사지 장관골 골절 수술 후 불유합이나 지연유합이 있는 경우
- 3) 사지 관절(견관절, 주관절, 완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재수술시 불유합이나 지연유합이 있는 경우

[고시 제2017-118호, 2017.7.1시행]

XXI-2. Kashin-Beck병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관절경적 활액막절제술	관절경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족관절)	자-70라	N0703	3,621.05
1.5cm ² 미만 골연골병변 미세천공술	관절경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족관절) 준용 관절경하 수술	자-70라 자-992다	N0703 Q9923	3,621.05 2,018.36
1.5cm ² 이상 골연골병변 미세천공술	자가골연골이식술 준용 관절경하 수술	자-69-1 자-992다	N0693 Q9923	3,757.53 2,018.36
자가골연골이식술(OATS)	자가골연골이식술	자-69-1	N0693	3,757.53
	자가골연골이식술 (복합)	자-69-1주	N0695	4,853.25
	관절경하 수술	자-992다	Q9923	2,018.36
Ankle arthrodesis	관절고정술 (족관절)	자-73라	N0733	6,376.16
	관절고정술 (족관절) (복합)	자-73라주1	N0736	7,354.04
Ankle arthroplasty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 (족관절)	자-71가(6)	N2075	7,620.00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 (족관절) (복합)	자-71가(6)주	N2079	11,505.05

심사기준

자-992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급여기준

1.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의 행위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다만, 별도 산정토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산정함.
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시에는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을 다음과 같이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산정대상

- 1) 자992가 복강경을 사용한 경우: 복강경하(내시경하 갑상선 수술 포함) 수술 시
- 2) 자992나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흉강경하 수술 시
- 3) 자992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관절경하 수술 시

나. 산정방법

- 1) 동일 경으로 양측 또는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1회만 산정 하며, 다른 경으로 수술할 경우는 경별로 각각 산정함.
 - 2) 관혈적 수술 또는 내시경 수술(2가지 이상 수술 시에는 주된 수술)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도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다.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아 래-

- 1) 자992나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에 시행한 경우를 제외한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 교정(Nuss OP) 수술
- 2) 자992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에 시행한 경우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

자-992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의 산정방법

가. 관절경·복강경·흉강경하 수술시

관절경 등을 이용한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산정함.

1) 관절경(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아래와 같이 인정함.

-아 래-

-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시행 시에만 인정함.
- 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자-70 사지관절절제술 & 활막절제를포함 복잡 행위 기준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결핵, 류마티스, 통풍, 색소용모결절성 활액막염(PVNS), 화농성관절염으로 광범위한 활액막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과거수술 후 호전되지 않아 전원되어 재수술 하는 경우

(2014.8.1 시행)

자-69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가골연골이식술 급여기준

고시 제2023-293호(행위)

1.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가골연골이식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가. 슬관절

- 1) 대상질병
 - 박리성 골연골염
 - 국소부위의 외상성 연골 또는 골연골 결손 등
- 2) 대상부위: femoral condyle
- 3) 연골손상의 크기: 1.5-4.0cm²이하

4)연골손상 상태: Outerbridge grade III이상 (photo, MRI, 관절경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함)

5) 대상연령: 15-55세

6) 치료재료 인정개수: 1세트

나. 족관절

1) 대상질병

- 박리성 골연골염
- 골 연골 결손 등

2) 대상부위: talar dome

3) 연골손상의 크기: 1.5-3.0cm²

4) 연골손상 상태

- 족관절면의 연골 손상에 대해 일차적인 관절경적 변연부 절제술(debridement) 즉 소파술(curettage)이나 또는 천공술(drilling)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골연골성 병변이 지속적으로 손상조건을 보이는 경우
- 거골의 골연골성 병변이 연골 결손 하에 낭종(cyst)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자가 연골 이식술이 가능

5) 대상연령: 15-55세

6) 치료재료 인정개수: 1세트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슬관절 및 족관절에 자가골연골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복잡 행위 기준

아래 제시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슬관절의 경우: 5° 이상의 심한 변형이 동반된 경우, 연골손상크기가 3cm² 이상인 경우
- 족관절의 경우: 관절절개로 도달할 수 없어 절골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 연골손상크기가 2cm² 이상인 경우(2014.8.1시행)

자-73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복잡 행위 기준

1. 관절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해당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
2. 해당 관절의 감염(화농성관절염, 골수염)으로 인한 수술
3. 골변형 교정이 필요한 경우
4. 신경병증성 관절증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
5. 인공관절치환술 실패 후 시행한 경우

자-71 인공관절치환술·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술 복잡 행위 기준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아 래-

- (1) 해당 전문의(내과는 세부전문분야) 협진으로 아래의 질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1-1) 만성 신부전증 환자
 - (1-2)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필요한 환자
 - (1-3) 심혈관 스텐트를 가지고 있어 혈전제를 복용중인 자
 - (1-4) 고도의 심근 경색/협심증이 있는 자 - Goldman cardiac risk III 이상
 - (1-5) 조절되지 않는 당뇨(HbA1C > 7.0) 환자
 - (1-6) 간경화가 있는 환자
 - (1-7) 혈액암 환자
 - (1-8) 혈우병 환자 또는 혈액 응고이상인 환자
 - (1-9) 고도의 폐색성 폐질환 환자
 - (1-10) 정맥혈전색전증으로 치료 과거력이 있는 자
 - (1-11) 뇌경색 등으로 aspirin보다 상위의 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
- (2) 치료 중인 상태의 류마티스 질환자로 DAS 28이 5.1 초과일 때
- (3) 말초동맥 폐색성 질환을 가진 자
- (4) 진행성 척수마비 또는 마미 증후군 환자
- (5) 병적 골절이 동반된 환자 : 원발성 골암, 전이성 골암 및 골다공증이 동반된 환자
- (6) 감염성 후유증이나 삼입물 주위 감염 후 인공관절치환술
- (7) 장축 1 inch 이상의 골결손이 동반된 인공관절치환술
- (8) 15° 이상의 골변형이 동반된 인공관절치환술
- (9) 가성마비, 회전근개파열관절증, 광범위 파열 후 인공관절치환술을 재수술로 시행하는 경우
- (10) 관절구축이 20° 이상인 경우
- (11) 인공관절재치환술의 재치환술

(2014.8.1 시행)

XXII. 발톱

XXII-1. 내향성 발톱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전 발톱판 제거술	발조술	자-20	N0200	215.74
조갑거터술	조갑 거터술	자-21-1	N0215	275.97
발톱 모서리 및 발톱기질 화학적 절제술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자-21	N0210	626.83
발톱판 및 기질 부분 제거술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자-21	N0210	626.83
발톱판 및 배아기질 제거술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자-21	N0210	626.83
발톱주름 제거 혹은 축소술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자-21	N0210	626.83
손발톱바닥 편평 방식의 수술적 교정술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손발톱바닥 편평방식의 수술적 교정술을 시행한 경우	자-21주	N0211	902.99
말단 사임 절단술	사지절단술 (지골)	자-57마	N0575	1,836.73

심사기준

자-21주 손발톱바닥 편평방식의 수술적 교정술의 급여기준

집게손발톱 환자 및 손발톱바닥의 기형 또는 변형이 동반되어 통증으로 인한 보행장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내향성 손발톱 환자를 대상으로 조갑판의 부분 또는 완전 절제 후 손발톱바닥의 용기된 부위를 편평하게 하는 경우 인정하며, 사진 및 진료기록부 등에서 손발톱바닥의 상태 등이 확인되어야 함

고시 제2024-159호(2024.8.1. 시행)

XXII-2. 발톱 주위염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발톱 변연부 부분 절제술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자-21	N0210	626.83
변연절제술	창상봉합술(창상청소 및 변연절제만 실시한 경우)	자-2다	SC027	337.08
변연절제술 + 배농술	근농양배농술(기타근농양)	자-84라	N0844	1,003.64

XXII-3. 조갑하 외골증 및 사구종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조갑하 외골증 절제술	양성골종양의소파술(절제술)(기타)	자-28다	N0283	3,017.67
사구종 절제술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피하양성종양)	자-23가(1)	N0233	1,939.16

심사기준

자-14 피부양성종양적출술, 자-23가 연부조직종양적출술(양성종양) 급여기준

자-14 피부양성종양적출술 또는 자-23가 연부조직종양적출술(양성종양)을 여러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8부위(두경부 전후면, 몸통(Trunk) 전후면, 상지 하지 좌우)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제1병변은 소정점수의 100%, 제2병변부터는 50%를 산정하되 부위별 최대 200%까지 산정함(2021.10.1시행)

XXIII. 골수염 및 감염

XXIII-1. 골수염 및 급성 화농성 관절염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골수염 수술(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 (골천공술, 골개창술, 배형성형술, 골부분절제술 포함)(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자-29가	N0021	4,980.29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 (골천공술, 골개창술, 배형성형술, 골부분절제술 포함)(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복잡)	자-29가주	N0024	6,065.85
골수염 수술(상완골, 전완골, 쇄골)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 (상완골, 전완골, 쇄골)	자-29나	N0022	4,495.90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 (상완골, 전완골, 쇄골) (복잡)	자-29나주	N0025	5,345.94
골수염 수술(기타)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 (기타)	자-29다	N0023	3,761.27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 (기타) 복잡	자-29다주	N0026	4,409.57
급성 화농성 관절염시 절개 배농술 (고관절)	급성화농성관절염 절개술 (고관절)	자-68가	N0681	4,419.61
	급성화농성관절염 절개술 (고관절) (복잡)	자-68가주	N0680	5,180.90
급성 화농성 관절염시 절개 배농술 (견관절, 슬관절)	급성화농성관절염 절개술 (견관절, 슬관절)	자-68나	N0684	3,248.95
	급성화농성관절염 절개술 (견관절, 슬관절)(복잡)	자-68나주	N0687	3,849.29
급성 화농성 관절염시 절개 배농술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급성화농성관절염 절개술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자-68다	N0685	2,989.37
	급성화농성관절염 절개술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복잡)	자-68다주	N0688	3,542.35
급성 화농성 관절염시 절개 배농술 (지관절)	급성화농성관절염 절개술 (지관절)	자-68라	N0686	1,692.77
	급성화농성관절염 절개술 (지관절) (복잡)	자-68라주	N0689	2,115.72

심사기준

자-29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자68 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골수염 또는 골농양 수술 또는 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해당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해부학적 범위를 포함하는 다발성 골수염
- 골수염, 골농양, 화농성관절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 감입 골 시멘트를 삽입하는 경우

XXIII-2. 근농양 및 감염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변연절제술 + 배농술 (요장근)	근농양 배농술(요장근)	자-84가	N0841	3,664.33
변연절제술 + 배농술 (둔근)	근농양 배농술(둔근)	자-84나	N0842	2,700.49
변연절제술 + 배농술 (대퇴근)	근농양 배농술(대퇴근)	자-84다	N0843	2,695.65
변연절제술 + 배농술 (기타)	근농양 배농술(기타)	자-84라	N0844	1,003.64
변연절제술 광범위	근막절제술(단순)	자-92-2가	N0922	2,185.48
음압창상치료 (VAC)	진공음압창상치치 교환 (염증성 처치)	자-2-1가(2)	M0121	141.38
음압창상치료 (VAC)	진공음압창상치치 교환당일 아닌 경우(단순치치)	자-2-1-가(1)	M0111	75.51
초음파 창상소파술 및 변연절제술	창상봉합술(창상청소 및 변연절제만 실시한 경우)	자-2다	SC027	337.08
이물 제거술	피부 및 피하조직 또는 근육내 이물제거술	자-3가	M0031	1,060.88
	피부 및 피하조직 또는 근육내 이물제거술 (기타)	자-3나	M0032	590.08

심사기준

자-2-1가 진공음압창상치치

Dressing 재료 교환당일에는 자-2-1 가(2) 염증성 처치, 교환당일이 아닌 경우에는 자-2-1가(1) 단순치치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2009.12.1 시행)

초음파 창상소파술 및 변연절제술

자2다 창상봉합술·창상청소 및 변연절제만 실시한 경우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22-26호(행위)]

Part 9

척추

I. 척추 분야 수가 목록표

II. 척추 MRI

III. 척추 시술

IV. 척추 수술

V. 척추 변형

VI. 기타 재료 및 수술 장비 관련

Part 9 척추

I. 척추 분야 수가 목록표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검사				
척추 MRI				
시술				
척추체 시술	경피적 척추 성형술	자-47		
	가. 제1부위	자-47	N0471	3,317.99
	나. 제2부위부터 [1부위당]	자-47	N0472	1,385.32
	경피적 척추후골풍선복원술	자-47-1		
	가. 제1부위	자-47-1	N0473	3,493.46
	나. 제2부위부터 [1부위당]	자-47-1	N0474	1,589.23
	경피적 천추 성형술	자-47-2	N0475*	3,317.99
추간판 시술	척추수핵용해술 (Chemonucleolysis)	자-49	N1495	2,553.79
	척추수핵흡인술 (Nucleotome)	자-49	N1496	2,898.36
신경 시술	경막외 신경차단술	바-22		
	가. 일회성 차단	바-22		
	(1) 경추 및 흉추	바-22	LA321	897.40
	(2) 요추 및 천추	바-22	LA323	527.64
	(3) 미추	바-22	LA324	527.64
	경막외 조영	다-210	HA102	1,668.19
	경추간공 차단	바-22		
	(1) 경추 및 흉추	바-22	LA325	1,668.19
	(2) 요추 및 천추	바-22	LA326	1,668.19
	척추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바-25		
	라. 선택적 신경근	바-25	LA354	887.37
	마. 척추후근신경절 DRG	바-25	LA355	887.37
	자. 후지내측지	바-25	LA358	887.37
	차. 추간관절차단	바-25	LA359	933.60
	카. 천장관절차단	바-25	LA360	933.60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신경성형술	자-459	S4594	4,808.18
	경막외신경파괴술	바-32	LB320	1,572.54
	경피적 척추 고주파 열응고술	자-482-1		
	가. 단순 Simple		S4825	2,983.86
	나. 복잡 [3부위 이상]		S4826	3,919.00
감압술				
추간판 제거술	가. 관혈적	자-49		
	(1) 경추	자-49	N1491	10,604.91
	(2) 흉추	자-49	N1492	13,302.71
후궁절제술	가. 경추	자-49-1		
	일반	자-49-1	N1497	9,286.15
	복잡	자-49-1	N2497	10,068.28
	나. 흉추	자-49-1		
	일반	자-49-1	N1498	11,433.33
	복잡	자-49-1	N2498	12,196.38
	다. 요추	자-49-1		
	일반	자-49-1	N1499	7,483.73
	복잡	자-49-1	N2499	8,692.95
	후궁성형술	경추후궁성형술	자-49-2	
가. 제1부위		자-49-2	N2491	13,258.61
나. 제2부위부터 [1부위당]		자-49-2	N2492	7,363.93
골화증 제거술	인대골화증 제거술	자-45-1		
	가. 전방접근 후종인대골화증 제거술	자-45-1	N0454	25,999.67
	나. 후방접근 항색인대골화증 제거술	자-45-1	N0455	14,282.03
Corpectomy	척추체제거술	자-45		
	가. 경추	자-45	N0451	19,960.69
	나. 흉추	자-45	N0452	24,934.92
	다. 요추	자-45	N0453	25,964.33
Costotransversectomy	늑골척추횡돌기절제술	자-50	N0500	7,059.62
고정 및 유합술, 인공디스크				
전방고정(인공디스크)	(1) 경추	자-46		
	(가) 경구강 접근	자-46	N2461	20,294.84
	(나) 경추 치상돌기 나사못 고정술	자-46	N2462	15,369.76
	(다) 기타의 경우	자-46	N2463	19,359.05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2) 흉추	자-46		
	(가) 경흉골병 접근, Transmanubrial	자-46	N2464	30,490.11
	(나) 경흉골 접근, Transsternal	자-46	N2465	27,814.60
	(다) 기타의 경우	자-46	N2466	30,022.97
	(3) 요추	자-46	N0466	9,759.71
	복합	자-46	N0466	11,604.35
후방고정	(1) 경추	자-46		
	(가) 후두골-경추간	자-46	N2467	20,283.98
	(나) 제1-2 경추간	자-46자-46	N2468	19,048.76
	(다) 기타의 경우	자-46	N2469	18,223.37
	(2) 흉추	자-46	N0468	12,462.72
	(3) 요추	자-46	N0469	9,310.43
	복합	자-46	N1469	10,938.46
	Cage 사용	자-46	N2470	11,424.86
	복합 Cage 사용	자-46	N1460	13,161.11
기기 제거술	척추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자-46-1		
	가. 전방	자-46-1	N2471	5,400.06
	나. 후방	자-46-1	N2472	4,779.01
골이식술		자-31-1	N0312	1,193.82
변형 및 선천 기형				
절골술		자-30	N0303	20,157.67
유합술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	자-44		
	가. 전방고정	자-44		
	(1) 7구간 (척추분절) 미만	자-44	N0444	26,789.74
	(2) 7구간 (척추분절) 이상	자-44	N0445	32,536.27
	나. 후방고정	자-44		
	(1) 7구간 (척추분절) 미만	자-44	N0446	21,046.92
	(2) 7구간 (척추분절) 이상	자-44	N0447	26,160.72
Growing rod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 교정술	자-44-1		
	가. 삽입술	자-44-1	N1400*	19,363.50
	나. 연장술	자-44-1	N1401*	608.10
Thoracoplasty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	자-44-2		
	가. 삽입술	자-44-2	N1402*	17,469.43
	나. 연장술	자-44-2	N1403*	2,389.50
척추열수술	척추열수술 (Spina Bifida)	자-48	N0480	8,252.14

수술명	행위명	분류번호	수술코드	상대가치점수(2025)
외상				
Closed Reduction	척추 골절 및 탈구의 도수정복술	자-48-1	N0630	651.65
Open Reduction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 수술	자-59	N0591	12,940.31
감염				
골수염 기타		자-29	N0023	3,761.27
종양				
척추 경막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가. 경추	자-469		
	(1) 3구간 미만	자-469	S6691	24,177.72
	(2) 3구간 이상	자-469	S6692	29,146.37
	나. 흉추	자-469		
	(1) 3구간 미만	자-469	S6693	23,306.20
	(2) 3구간 이상	자-469	S6694	26,373.16
	다. 요추	자-469		
	(1) 3구간 미만	자-469	S6695	21,088.54
	(2) 3구간 이상	자-469	S6696	26,153.27
척수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가. 경추	자-469-1	S4694	31,140.60
	나. 흉추	자-469-1	S4695	29,706.06
	다. 요추	자-469-1	S4696	25,713.61
척추 경막외 종양 및 병소절제술	가. 경추	자-470		
	(1) 척추경 또는 척추체를 포함하는 경우	자-470	S4704	27,405.82
	(2) 척추경 및 척추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자-470	S4705	19,264.73
	나. 흉추	자-470		
	(1) 척추경 또는 척추체를 포함하는 경우	자-470	S4706	25,427.35
	(2) 척추경 및 척추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자-470	S4707	18,190.30
	다. 요추	자-470		
	(1) 척추경 또는 척추체를 포함하는 경우	자-470	S4708	23,751.97
	(2) 척추경 및 척추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자-470	S4709	17,026.54
기타				
Navigation	무탐침정위기법	자-485		
	가. 기본	자-485	S4851*	3,073.70
	나.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	자-485	S4852*	8,933.58
	다.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자-485		
	(1) 척추분절 7구간 미만	자-485	S4853*	5,840.99
	(2) 척추분절 7구간 이상	자-485	S4854*	7,149.01

II. 척추 MRI

1.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가. 급여대상

- 1) 아래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아 래-

가)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양성종양

다)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 (1) 척추염
- (2) 추간판염
- (3) 경막내·외 농양 및 육아종(척수내 포함)
- (4) 척수염
- (5) 급성 횡단성 척수염

라)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외상성 질환

- (1) 척추 골절 및 탈구
- (2) 척수손상

마)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혈관성 질환

- (1)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동정맥루 포함), 척수내정맥염
- (2) 자발성 척추출혈

바) 척수질환

- (1) 척수병증
- (2)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 (3) 척수탈출

사)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선천성 질환

아) 척추변형

- (1) 성장기아동의 선천성 척추 후·측만증
- (2) 신경섬유종 척추측만증
- (3) 신경근육성 척추측만증
- (4) 70도 이상의 특발성 척추측만증

2) 퇴행성 질환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인정

*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정보 제출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결과(표준서식)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신부 등)

나. 급여횟수: 상기 가.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2) 추적검사

가) 악성종양

- (1)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시행 전: 치료목적(수술및 방사선치료 범위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1회
- (2)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개월 내 1회, 2~6개월 내 추가 1회,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회
- (3)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단,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
- (4)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나) 양성종양으로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개월 이내 1회

다)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척수손상, 혈관성질환, 척수질환, 선천성질환으로 수술(중재적 시술 포함)후 1회

3) 상기 나.1) 또는 나.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가)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단,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 암은 4회/년 5년간(또는 완치 시까지)

나) 양성종양: 1회/년 2년간(최대 2년)

단,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이외의 양성종양은 수술한 경우에 한하며 이외는 비급여함.

4) 상기 나.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

5) 상기 나.1)~3)의 급여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단, 최대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최대범위 내에 한하며,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는 급여횟수 초과 시 비급여함.)

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받은 질환의 특성상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함.

라. 산정기준

1) 상기 가.~다.의 경우 영상진단료는 아래와 같이 표준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하며, 판독소견서 기재 범위는 아래와 같음.

-아 래-

가) 표준영상의 범위

- (1) 경추, 흉추, 요추

(가)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시상면 T2 강조영상(sagittal T2WI), 시상면 T1 강조영상(sagittal T1WI)과 추가 맥동파 순서열 중 1가지를 포함하여 총 4가지 영상을 포함하여야 함.

- 추가 맥동파 순서열: 축상면 T1 강조영상(axial T1WI), 축상면 기울기회복에코 영상(axial GRE image), 시상면 지방억제 T2강조영상(sagittal fat-suppressed T2WI), 전척추 선별 시상영상(whole spine sagittal survey image), 사상면 신경공 영상(oblique foraminal image), 굴곡 영상(flexion image), 신전 영상(extension image), 오른쪽 회전 영상(right rotation image), 왼쪽 회전 영상(left rotation image), 관상 영상(coronal image), 삼차원 T2 강조영상(3D T2WI)

(나) 절편: 시상면에 해당

두께는 4mm 이하, 간격은 0.8mm 이하

(다) 조영제 주입 후 촬영: 축상면과 시상면을 포함한 조영제 주입 전 영상과 같은 평면의지방억제 혹은 지방억제 하지 않은 조영증강 T1 강조영상을 2개 이상 획득함.

(2) 척추강

(가)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시상면 T2 강조영상(sagittal T2WI), 삼차원 재구성한 영상 중 T2 강조영상(3D heavily T2WI) 3가지를 포함하여야 함

(나) 절편: 시상면에 해당

두께는 4mm 이하, 간격은 0.8mm 이하

(다) 경추, 흉추, 요추, 경흉추, 흉요추, 경흉요추로 촬영 가능

(3) 전척추

(가)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경흉추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경흉추 시상면 T2 강조영상(sagittal T2WI), 경흉추 시상면 T1 강조영상(sagittal T1WI), 흉요천추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흉요천추 시상면 T2 강조영상(sagittal T2WI), 흉요천추 시상면 T1 강조영상(sagittal T1WI)을 포함하고 추가 맥동파 순서열 중 1가지를 포함하여 총 7가지 영상을 포함하여야 함.

- 추가 맥동파 순서열: 축상면 T1 강조영상(axial T1WI), 축상면 기울기회복에코 영상(axial GRE image), 시상면 지방억제 T2 강조영상(sagittal fat-suppressed T2WI), 사상면 신경공 영상(oblique foraminal image), 굴곡 영상(flexion image), 신전 영상(extension image), 오른쪽 회전 영상(right rotation image), 왼쪽 회전 영상(left rotation image), 관상 영상(coronal image), 삼차원 T2 강조영상(3D T2WI)

(나) 절편: 시상면에 해당

두께는 4mm 이하, 간격은 0.8mm 이하

(다) 조영제 주입 후 촬영: 축상면과 시상면을 포함한 조영제 주입 전 영상과 같은 평면의 지방억제 혹은 지방억제 하지 않은 조영증강 T1 강조영상을 2개 이상 획득함.

나) 판독소견서 기재범위

(1) 임상정보(병력, 검사실시 사유 등), 획득한 영상기법, 조영제 사용 여부

(2) 주요 이상소견 여부를 포함하되, 이상이 있는 경우 병변의 위치와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함.

(가) 척추(경추, 흉추, 요천추):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골병변, 척수병변, 마미총 및 신경근병변, 그 외 감염성, 염증성, 종양성, 퇴행성 병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함.

(나) 척추강: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골병변, 척수병변, 마미총 및 신경근병변, 그 외 퇴행성 병변 등을 포함하며, 자발두개내압 저하와 같이 뇌척수액 누출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병변의 유무와 위치를 상세 기술함.

(다) 전척추: 척추체 골수의 이상 및 골수 침범 병변이 있는 경우, 척수의 이상 및 척수 침범 병변이 있는 경우, 추간판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골병변, 척수병변, 마미총 및 신경근 병변, 그 외 퇴행성 병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함.

(3) 촬영 범위에 포함된 후복강 및 척추 주위 연부 조직 등 척추 외 영역의 주요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기술함.

2) 상기 라.1) 이외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산정기준은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에 의함.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담당 진료의가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개정사항: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수정

시행일자: 2024.1.1.

III. 척추 시술

III-1.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자47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수술 전 2주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아래 1), 2)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정함.

- 아 래 -

- 1) 압박 골절의 확인방법: 가)~다)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 가) MRI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 나) CT 검사에서 골절이 확인되고,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비교에서 압박의 진행이 확인된 경우
 - 다)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비교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 2) 골다공증의 확인방법: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된 T-score ≤ -2.5로 확인된 경우
 - 나. 종양에 의한 골절
 - 다. Kummell's disease
- 라. 다만, 아래의 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함.
- 1) 울혈성심부전
 - 2) 폐렴
 - 3)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 4) 80세 이상인 환자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297호 (2025.1.1.시행)

III-2. 경피적 척추후굴 금속복원술 Kyphoplasty using a metal elevator

경피적 척추체강화술 Percutaneous Vertebral Augmentation

고점도 척추강화술 Percutaneous Extrapedicular Vertebral Augmentation

자47 경피적 척추성형 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III-3.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은 압박변형이 30-60%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변형이 60%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함.

- 다 음 -

가. 수술 전 3주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아래 1), 2)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정함.

- 아 래 -

- 1) 압박 골절의 확인방법: 가)~다)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 가) MRI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 나) CT 검사에서 골절이 확인되고,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비교에서 압박의 진행이 확인된 경우
 - 다)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비교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 2) 골다공증의 확인방법: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된 T-score ≤ -2.5로 확인된 경우
 - 나. 종양에 의한 골절
 - 다. Kummell's disease
- 라. 다만, 아래의 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함.
- 1) 울혈성심부전
 - 2) 폐렴
 - 3)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 4) 80세 이상인 환자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297호 (2025.1.1.시행)

III-4.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압박변형을 측정방법

척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시 압박변형을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하며, 일반 방사선 측면영상(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음 -

- 가. 인접 상·하부 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없는 경우
- 인접 상·하부 전방 추체높이의 평균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
 - 인접 상부 또는 하부의 전방 추체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
- 나. 인접 상·하부 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골절인 경우
- 인접한 상부 또는 하부의 정상추체 전방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10호(2024.10.1.시행)

III-5. 「자47 경피적 척추 성형술 인정기준」 및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인정기준」에서 Kummell's disease의 확인방법

「자47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및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에서 Kummell's disease의 확인방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다 음 -

가. 방사선일반영상진단상 공기간극(Air Cleft)이 보이거나, MRI상 추체 내 유체신호(Fluid Signal)가 있거나, CT상 종판과 연결되지 않은 가스음영(Gas Shadow)이 확인된 경우

나.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굴곡·신전 비교에서 전방 추체 높이의 변화가 확인된 경우

공고 제2024-282호(2025.1.1.시행)

III-6. 경추부의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 등)의 급여기준

경추부에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 등) 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경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은 후외측(postero-lateral)으로 전위된 심한 연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소견이 명확하고 수술 전 12주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지방사통이 있는 경우에 인정함.

나. 경추부에 실시한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24-297호 (2025.1.1.시행)

III-7. 요추부의 척추수핵용해술, 척추수핵흡인술

요추부의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은 수술 전 6주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되, 조기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만,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불인정함.

고시 제2024-297호 (2025.1.1.시행)

III-8. Steroid Intra Discal Therapy (SIDT) 시 수가 산정방법

1. Lumbar Disc Herniation, 요부동통, 퇴행성 척추증 등에 실시하는 Steroid Intra Discal Therapy(SIDT)는 척추간 Disc내로 Betamethasone, Triamcinolone등 Steroid 약물을 주입하여 Disc의 Pressure를 감소시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방사선료 포함]의 50%로 준용 산정함.
2. 동시에 2부위 이상 시술한 경우 제2부위 이상의 수가는 동 소정점수의 50%(자49다 소정점수의 25%)를 산정하되 최대 3부위 이내로 산정함.
3. C-arm형 장치를 포함한 영상증폭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였거나 조영술(Discogram)을 별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조영술시 소모된 필름 및 조영제는 실사용량을 산정함.

(2023.3.29. 시행)

III-9. 디지털 추간판조영술 및 디스크 내 약물 주입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점수의 50% 를 산정함. 이 경우 Discogram은 해당 소정점수에 포함됨.

(고시 제2000-73호)

III-10. 신경차단술

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정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 시술에 대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진료기록부에서 신경차단술 실시 부위가 확인되어야 함.

- 다 음 -

가. 산정횟수 및 기간

- 1) 신경차단술은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를, 15회를 초과 시는 5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Z로 기재)를 산정함.
- 2)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실시기간은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함. 다만, 대상포진후통증, 척추수술실패후통증, 신경병증성통증(neuropathic pain), 척추손상후통증, 말기암성통증인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함.
- 3) 동일 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의 종류에 불문하고 실시횟수를 합산함.
- 4)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하여 신경차단술을 하는 경우 억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1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여야 함. 다만,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와 바25차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은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여야 함.

나. 수가 산정방법

- 1) 동일 병소에 동시에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신경차단술만 산정하되, 주된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제2의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횡수는 1회로 산정함. 다만, 주 신경에서 세분된 분지신경차단을 주 신경차단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 신경차단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 주 신경차단의 소정점수만 인정함.
- 2) 각 분류된 신경차단술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함.

- 아 래 -

가) 바22 경막외 신경차단술: 요천추부 신경차단술과 미추(Caudal) 신경차단술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주된 신경차단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나)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 (1) 대·소후두신경을 양측으로 실시한 경우는 바24가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소후두신경 소정점수의 150%를 각각 산정함.
- (2) 바24자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은 늑골마다 지배하는 신경이 다르므로 분절(level)별로 산정하되, 동시에 2분절(level) 이상의 늑간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을 경우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 제2분절(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로 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하며, 좌우 양측 동시 실시 시에는 각각 산정함.
- (3) 대퇴신경, 좌골신경에서 분지되는 신경에 실시하는 차단술은 실시부위에 따라 무릎에서 발목까지는 해당 신경에 따라 바24거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또는 바24파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소정점수의 50%, 발목아래는 바24거 또는 바24파 소정점수의 25%를 산정함.

다)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각 분류항목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되, (1) 분절(level) 적용 및 (2) 분절(level) 미적용 신경차단술은 경추, 흉추, 요천추 부위로 구분하여 산정함.

(1) 분절 적용 차단술

- 항목: 선택적 신경근, 척추후근신경절, 척수회백신경교통지, 후지내측지, 추간관절
- 편측: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제2분절(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3분절(level)까지 산정(최대200%)
- 양측(또는 편측, 양측 동시):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50%(100%+ 50%), 제2분절(level)부터는 좌우 각 50%를 산정하되, 3분절을 초과하여 시술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까지 산정

(2) 분절 미적용 차단술

- 항목: 경신경총, 방척추신경, 미골신경, 요천골신경총(Psoas Compartment 포함), 천장관절
- 편측: 소정점수의 100% 산정
- 양측: 소정점수의 150%(100%+50%) 산정

(3) 분절·부위 미적용 차단술

- 항목: 척수신경 후지
- 편측: 소정점수의 100% 산정
- 양측: 소정점수의 150%(100%+50%) 산정

라) 바26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 (1) 흉부, 요부 별도 실시 시 각각 산정하되, 인접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 제2분절(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로 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함.
- (2) 복강신경은 좌우 기능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좌우 양측으로 복강신경총을 차단한 경우는 바26나(3)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복잡한 것-복강신경총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은 아래와 같이 준용하여 산정함.

- 아 래 -

- 1) 수지신경차단술(Digital Nerve Block): 바24사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액와하부신경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부위를 불문하고 편측은 100%, 양측은 200%를 산정함.
- 2) 족지신경차단술(Digital Nerve Block): 바24파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소정점수의 25%를 산정하며, 편측당 최대 100%를 산정함.
- 3) 교감신경국소차단술(IRSB: IV Regional Sympathetic Block): 바1나 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 소정점수를 산정함.

라. 1일 최대 산정범위: 상기 가.~다.에도 불구하고 부위를 불문하고 최대 300%를 산정함.

고시 제2023-242호(2024.1.1.)

III-11. 신경차단술에서 C-arm

1.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다음의 신경차단술은 영상자료로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동 신경차단술을 C-Arm 등 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 가. 바22 경막외 신경차단술 관련: 경추간공 차단(Transforaminal Block)
- 나. 바23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 관련: 삼차신경절(Trigeminal Ganglion), 상악신경(Maxillary Nerve), 하악신경(Mandibular Nerve), 접구개신경절(Sphenopalatine Ganglion)
- 다.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관련: 상박신경총(Brachial Plexus : supraclavicular approach 경우만)
- 라.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관련: 방척추신경(Paravertebral Nerve), 선택적 신경근(Selective Spinal Nerve Root), 척추후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on), 척수회백신경교통지(Gray Rami Communicans), 요천골신경총(Lumbar or Sacral Plexus), 후지내측지(Posterior Medial Branch), 추간관절(Facet Joint),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 마. 바26나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관련: 흉부교감신경절(Thoracic Sympathetic Ganglion), 요부교감신경절(Lumbar Sympathetic Ganglion), 복강신경총(Celiac Plexus), 하장간막신경총(Inferior Mesenteric Plexus), 상하복신경총(Superior Hypogastric Plexus), 외톨이신경절(Ganglion Impar)

2. 세부적용기준

가. 시술 부위 및 주사 바늘 끝의 위치는 정면상, 측면상, 경사상 중 하나 이상의 영상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필요 시 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신경차단술의 경우에는 두 가지 영상에서 확인되어야 함.

1) 후지내측지, 추간관절

가) 경흉추는 정면상과 측면상

나) 요천추는 (1) 경사상과 정면상 혹은 (2) 경사상과 측면상

2) 경추간공 차단, 척수회백신경교통지: 정면상과 측면상

나. 경추간공 차단, 선택적 신경근, 척추후근신경절, 척수회백신경교통지, 요천골신경총, 추간관절, 천장관절 차단술은 시술 시 조영제를 사용하여야 함.

다. 상기 가 또는 나 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고시 제2023-242호(2024.1.1.)

III-12. 경막외강유착부위박리시술

척추수술 후 또는 추간판탈출증 등에서 발생하는 척추내 유착으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천골열공(Sacral Hiatus) 부위로 Catheter를 삽입하여 경막외강내 유착부위에 위치시킨 후 Hypertonic Saline(10%), hyaluronidase(성분명) 등의 약제를 주입하는 시술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행위료

- 1) 지속적 경막외 차단과 유사한 행위이므로 바22나 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의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함.
- 2) 위 시술은 투시 하 경막외강 내 유착부위에 Catheter를 정확히 위치시킨 후 약제를 주입하여야 하므로 시술 전·후 경막외조영(Epidurography)은 반드시 실시하는바, 다210나 척추-경막외조영을 별도 산정함.

나. 약제비: 사용된 약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별도 산정함.

- hyaluronidase(성분명, 1500IU/amp), 국소마취제, steroid, 조영제

다. 치료재료비: Epidural Catheter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IV. 척추 수술

IV-1. 척추 수술 공통 내용

IV-1-(1) 보존적 치료의 일반원칙

1. 척추수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척추수술 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도록 하는 경우 세부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보존적 치료의 범위: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해당 질환으로 임상적 진단을 받고 증상에 대한 진료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한방치료

나. 보존적 치료에 대한 기간의 시작시점: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해당 질환으로 임상적 진단을 받은 날을 시작시점으로 하되,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임상적 진단 시점과 증상이 악화된 시점이 다른 경우 증상이 악화된 시점으로 함.

다. 보존적 치료의 확인방법

- 1) 보존적 치료 내용 및 기간에 대해 작성된 진료기록
- 2) 타 요양기관 치료내역의 경우 해당기관의 진료기록, 소견서 등

3. 위 1, 2에도 불구하고 세부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한 수술은 각 수술의 고시 및 심사지침을 따름.

고시 제2024-297호 (2025.1.1.시행)

IV-2.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척추수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1. 자46 척추고정술과 자45 척추체제거술, 또는 전방 척추고정술과 후방 척추고정술, 또는 자49 추간판제거술과 척추고정술을 동시 실시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 다만, 기기고정을 위한 추체 일부소파술이나 후궁 일부 절제의 경우에는 척추고정술 수가료만 산정함.

(2019.1.1. 시행)

IV-3. 복잡수술(자46가(3)/자46나(3)척추고정술(요추)·자49-1 척추후궁절제술(경·흉·요))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아 래-

- (1) 해당 전문의(내과는 세부전문분야) 협진으로 아래의 질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1-1)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 (1-2)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대기 중인 환자
 - (1-3) 심혈관 스텐트를 가지고 있어 혈전제를 복용중인 자
 - (1-4) 고도의 심근 경색/협심증이 있는 자 - Goldman cardiac risk III 이상
 - (1-5) 조절되지 않는 당뇨(HbA1C > 7.0) 환자
 - (1-6) 간경화가 있는 환자
 - (1-7) 혈액암 환자
 - (1-8) 혈우병 환자 또는 혈액 응고 이상이 있는 환자
 - (1-9) 고도의 폐쇄성 폐질환 환자
 - (1-10) 정맥혈전색전증으로 치료 과거력이 있는 자
 - (1-11) 뇌경색 등으로 aspirin 보다 상위의 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
- (2) 치료 중인 상태의 류마티스 질환자로 DAS 28이 5.1 초과일 때
- (3) 진행성 척수마비 환자
- (4) 암질환(원발성골암, 전이성골암)에 의한 척추골절환자
- (5) 척추 종양 [보험급여과-2502, 2014년 8월 1일 시행]

IV-4.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 및 후궁 절제술

추간판탈출증은 배부 동통 및 방사통을 동반한 질환으로 많은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은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근 또는 척수압박이 영상검사서 확인되고, 진료기록에서 관련 증상 및 징후가 확인된 환자 중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수술 전 4~6주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심한 경우
- 나. 다만, 아래의 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함.

-아 래-

- 1)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 2)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저하
- 3) 척수병증(Myelopathy)
- 4)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 5)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시각 통증 등급(Visual Analogue Scale, VAS) 7 이상의 참기 힘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제2024-297호 (2025.1.1.시행)

IV-5.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의 조기 수술 인정 기준

- 가. 근력저하: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약화가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한 결과로, 영상소견에서 해당 병변에 의한 신경의 압박부위와 일치하여야 하며 이는 진료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함.
- 나. 척수병증(Myelopathy): 영상검사서 척수 압박이나 척수 내 신호강도 변화가 동반되고 척수병증과 관련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2개 이상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어야 함.
- 다.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영상 검사서 해당 병변의 신경압박 증가가 확인되어야 함.
- 라. 적극적인 통증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주사치료와 함께 진통제(마약성진통제 포함)의 종류 및 용량을 단계별로 증량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의미함. 다만, 해당 치료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소견서로 확인되어야 함.

공고 제2024-282호(2025.1.1.시행)

IV-6.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디스크 수술 Automated Open Lumbar Discectomy (AOLD)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요 추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소요재료: Nucleotome kit(별도산정 불가)

(고시 제2009-45호, 2009.3.15. 시행)

IV-7. 관혈적 미세현미경 홀뮴 야그레이저 디스크 부분절제술 Open lumbar Microdiscectomy with Holmium YAG Laser (Infratome)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은 자49 가 추간판제거술, 관혈적의 소정점수 를 산정함

(고시 제2009-26호, 2009.3.1. 시행)

IV-8. 관혈적 현미경요추디스크 자동절제술 Arthrocare openwand automated open lumbar microdiscectomy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소정 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9-214호, 2009.12.1. 시행)

* 관련 치료재료고시 (고시 제2009-210호, 2009.11.27) : ARTHROCARE SPINE WAND (BF0501DI)

: 비급여 --> 산정불가

IV-9. 미세추간판절제술[METRX-MD System 이용] Microdiscectomy with METRX-MD System

자49 -가. 추간판제거술 -관혈적의 소 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3-86호, 2004.1.1. 시행)

IV-10. 다분절 후궁 절제술

척추관협착증에 신경압박을 위해 실시하는 자49-1 척추후궁절제술은 level당 산정하되, 여러 level을 실시하더라도 최대 200%까지 산정함.

(예시:L4-5 spinal stenosis 상병으로 L4, L5 laminectomy 실시 시 자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

(2023.3.29. 시행)

IV-11. 경피적 척추사이구멍내시경 디스크기구 절제술 Percutaneous Transforaminal Manual Discectomy with Perscope

신경구멍 내시경 레이저 부분절제술 AMD Laser Discectomy 관절경적 척추 레이저 척추시술

자49나(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의 소 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IV-12. 척추 후궁절제술 시 Fat graft의 별도 인정 여부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게 척추 후궁절제술 후 유착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한 Fat Graft는 부수적인 수술로서 주된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 하지 아니함.

(고시 제2000-73호)

IV-13. Hemilaminectomy 또는 Total Laminectomy의 수가 산정방법

Hemilaminectomy 또는 Total Laminectomy는 자49-1 척추후궁절제술의 해당부위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제1 후궁은 소정점수의 100%, 제2후궁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2023.3.29. 시행)

IV-14. 척추 극들기 간 고정술

자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의 소정점수에 포함 됨.

(고시 제2005-8호)

IV-15. 후궁성형술

1. 자49-2 경추후궁성형술은 경추에서 다분절의 척수압박이 영상검사서 확인되고, 관련 증상 및 징후가 명확히 확인 된 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함.

- 다 음 -

- 가. 경추 척수병증(Cervical Myelopathy)
- 나. 척수신경근병증(Myeloradiculopathy)
- 다. 후종인대골화증(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OPLL)

2. 단, 단분절이라도 압박정도가 심하여 다분절의 감압이 필요한 경우 인정함.

(고시 제2020-243호, 2020.11.1.시행)

IV-16. 전종인대 제거술

경추부위의 전종인대골화증 제거술은 연하곤란을 주증상으로 영상검사서 전종인대골화증이 확인된 경우 인정하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 가. 경추부위의 전종인대골화증 제거술은 1 level 시행한 경우 자49가(1) 관혈적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경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 나. 동시에 여러 level을 시행한 경우 2 level부터는 자49가(1) 소정점수의 25% 씩 산정하되 최대 3 level까지만 산정함.

(2022.6.1. 시행)

IV-17.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하여 척추골 절제/절개술 시 수가산정방법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하여 실시한 수술의 행위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다만, 시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의 산정방법에 따름.

(2020.7.1.시행)

IV-18. Corpectomy**IV-18-(1) 여러 level 시행한 자45 척추체제거술의 수가 산정방법**

자45 척추체제거술(Vertebral corpectomy)을 여러 level 시행한 경우 제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제2부위부터는 50%씩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IV-19. 자45 척추체제거술 산정방법에 대하여

척추체제거술은 척추체 상하 추간판제거를 포함하는 행위이므로 추체 인접부위 추간판제거술 소정점수는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시행일: 2020.8.1. 진료분부터

IV-20.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불안정성 척추골절

- 1) 척추의 삼주(three column)가 모두 손상된 경우
- 2) 방출성 척추골절로 인해 후만각 30도 이상 또는 압박율 4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척추관 침습이 50% 이상인 경우
- 3) MRI상 후방인대복합체의 전체 구조의 손상이 확인된 경우
- 4) 근력저하를 포함한 뚜렷한 신경학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 5)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동통 또는 신경증상을 동반한 후만각의 진행이 발생하는 경우

나. 골다공증성 골절(T-score ≤ -2.5)

- 1) 뚜렷한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 2) 적절한 타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며 변형의 진행으로 인해 교정이 필요한 경우
- 3) 골다공증의 확인방법: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된 T-score ≤ -2.5인 경우

다. 척추 종양

라. 감염성 척추 질환

마. 척추 변형

1) 특발성 척추측만증

- 가)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Risser stage 4 이하) 환자에서 4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 나) 성장이 끝난(Risser stage 5) 환자에서 5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 다) 흉추부의 전만곡이 동반된 경우

라) 기타: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inclinometer(경사측정기)로 10도 이상 경사나 늑골고 측정기로 3cm 이상의 늑골고가 확인되는 경우 흉곽 성형을 위한 늑골절제술은 자54나 늑골절제술-기타의 늑골로 별도 인정하며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 퇴행성 측만증

- 가) 수술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로서, 아래의 영상학적·임상적 측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수술 직전 6주 이내에 2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가 포함되어야 함.

-아 래-

(1) 영상학적 측면: 방사선일반영상진단상 30도 이상의 측만이 있거나, 측만과 동반된 추간공 협착증과 관상면 불균형이 5cm(C7 plumb line과 center sacral line의 거리)를 초과하여 함께 있는 경우

(2) 임상적 측면: 의무기록상 척추변형으로 인해 보행장애를 포함한 일상생활의 심한 장애와 통증이 있는 경우

- 나) 다만, 과도한 장분절 고정의 경우는 각도의 측정이나 증상의 정도 판정, 전후방 유합술의 인정 등에서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바. 퇴행성 척추질환에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시는 「고정기기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함. 다만, cage와 병용 사용시는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사. Flexible rod system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척추 유합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정기준은 「고정기기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에 따름.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297호 (2025.1.1.시행)

IV-21. 「고정기기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에서 조기수술 적응증의 확인방법

「고정기기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에서 조기수술 적응증의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가. 척수병증(Myelopathy): 영상검사에서 척수 압박이나 척수 내 신호강도 변화가 동반되고 척수병증과 관련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2개 이상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어야 함.

나.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하거나,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행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 하나 이상에서 확인되어야 함.

다. 적극적인 통증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주사치료와 함께 진통제(마약성진통제 포함)의 종류 및 용량을 단계별로 증량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의미함. 다만, 해당 치료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소견서로 확인되어야 함.

공고 제2024-282호(2025.1.1.시행)

IV-22.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가. 2) 방출성(불안정성) 척추골절 시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기로 함.

-다 음-

가. 후만각은 일반 방사선 측면영상(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Cobb's 방법에 의한 후만각(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부 추체 상연의 연장선과 급성 골절부위 인접 하부 추체 하연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으로 함.

나. 압박률은 일반 방사선 측면영상(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하부 전방 추체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로 함.

다만, 다발성 급성기 골절인 경우는 '측정하고자 하는 골절부위의 인접한 상부 또는 하부의 정상추체 전방높이에 대한 골절된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로 함.

다. 척추관 침습은 전산화단층촬영 축상 영상(axi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하부 전후 중시상거리(Midsagittal canal AP diameter) 평균에 대한 손상 받은 추체 전후 중시상거리(Midsagittal canal AP diameter)의 침습 비'로 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64호(2024.10.1.진료분부터 적용)

IV-23. 「고정기기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에서 '불안정성'에 대한 방사선적 확인방법

「고정기기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에서 적응증 중 '1.가.1) 신경학적 증상 또는 불안정성이 동반된 척추전방전위증, 1.가.4)나) 분절간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의 방사선적 확인방법은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요추부 측면 굴곡·신전 비교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 다 음 -

가. 시상면 전위(sagittal plane displacement) 4mm 이상

나. 시상면 굴곡도(sagittal plane angulation)

- L1-2, L2-3, L3-4: 15° 이상

- L4-5: 20° 이상

- L5-S1: 25° 이상

공고 제2024-282호(2025.1.1.시행)

IV-24. Cage 사용

1. 고정기기(Cage 단독사용 또는 Cage와 pedicle screw system 병용사용)를 이용한 척추유합술은 수술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영상검사서 신경근 또는 척수압박이 확인되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다만, 수술 직전 6주 이내에 2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가 포함되어야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신경학적 증상 또는 불안정성이 동반된 척추전방전위증

2) 임상증상이 동반된 중등도(MRI상 신경공의 perineural fat의 소실이 확인된 경우) 이상의 추간공협착증

3) 광범위한 후방감압술(편측 후관절의 전절제 및 양측 후관절의 각 1/2 이상 절제)이 불가피한 다음의 질환

가) 척추관협착증

나) 수술 후 재발한 추간판탈출증

4) 심한 요통이 지속되는 퇴행성 추간판 질환 중

가) MRI상 퇴행성 변화가 1-2개 분절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뚜렷한 추간 간격 협소가 동반되고 추간판조영술(discography)상 병변이 확인된 경우

나) 분절간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나. 금기증

1) 감염성 질환

2) 이전의 추체간 유합술 부위

3) 골다공증(T-score ≤ -2.5):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된 값(Cage 단독사용 시에만 해당)

2. 다만, 아래의 가.~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함.

- 아 래 -

가.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나. 척수병증(Myelopathy)

다.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라. 위 1.가.1)~3)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급성 추간판탈출증 또는 재발한 추간판탈출증이 동반되고,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시각 통증 등급(Visual Analogue Scale, VAS) 7 이상의 참기 힘든 동통이 지속되는 경우

3. 위 1., 2.에 의한 기준은 모든 종류의 cage 또는 고정기기 중 Flexible rod system을 이용한 경우 적용함.

고시 제2024-297호(2025.1.1.시행)

IV-25. 척추고정술을 동일 병소에 대하여 같은 날 전·후방으로 시술 시 수가 산정 방법

1.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은 동일 병소에 대하여 같은 날 전·후방으로 절개 부위를 달리하여 시술 하였더라도 동일 마취하에 연속하여 수술을 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다만, 질환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동일 병소에 전·후방으로 접근한 척추고정술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다 음 -

가. 골절탈구 또는 척추관침습이 50% 이상이거나 상, 하 종판을 포함한 전체 추체의 분쇄로 전방 보강이 필요한 경우

나. 추체의 상당 부분을 침습한 종양 또는 감염성 질환

다. Grade II이상의 척추전방전위증

2. 미세침습(경피적 등)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1. 본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

(2023.3.29. 시행)

IV-26.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추간판제거술, 후방고정술 및 후방추체유합술(PLIF)을 동시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

1. 후방 도달법으로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추간판제거술, Pedicle screw와 Rod를 이용한 후방고정술(PLF) 및 자가골 또는 Cage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PLIF)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척추고정술은 절개 approach을 기준으로 1회만 산정함.
2. 이 경우 자49 추간판제거술과 자46나 척추후방고정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21.7.1. 시행)

IV-27. 경흉추, 흉요추 이행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 산정방법

경흉추, 흉요추 이행부(예: 제7경추-제1흉추 또는 제11흉추-제1요추)의 병변으로 경추에서 흉추까지 또는 흉추에서 요추까지 자46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료는 고정에 포함된 분절 중 소정점수가 높은 부위로 산정함.

(2020.2.1. 시행)

IV-28. 경피적 척추경나사못고정술

자46 척추고정술의 해당항목 소정점수를 산정함.

IV-29. SEXTANT SYSTEM을 이용하여 3level 이상 시행한 척추후방고정술 인정여부 (치료재료)

SEXTANT SYSTEM을 이용해 Prebended Rod를 3level 이상 연속적으로 고정하는 기술은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신설 사유

미세침습에 의한 경피적 로드삽입 방식으로 척추후방고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SEXTANT SYSTEM을 이용하여 3level 이상 연속적으로 고정하는 것은 의학적 안정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기준을 마련함.

시행일 : 2011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IV-30.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급여기준

1. 자가골을 대체하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는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가.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 나.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 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 또는 골다공증($T\text{-score} \leq -2.5$: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 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함 값)
- 라. 안면-두개골 수술 시
 - 1) 모발선(hair line) 이하의 안면부 골결손이 있는 경우
 - 2) 1차 두개골 성형술에 실패했을 경우
 - 3) 뇌기저부 수술[경비적접합동접근법(TSA)포함] 시 뇌척수액 누출이 예상되는 경우
 - 4) 성장하는 소아에서 두개골 결손이 있는 질환. 단, 4세 미만에서 경막이 손상되지 않고 온전한(intact) 경우는 제외
- 마. 척추 수술 시 척추체제거술, 요추 3분절 이상, 경·흉추 5분절 이상의 장분절 유합의 경우
- 바. 사지 및 골반골 수술 시 골결손이 심해 자가골 이식만으로 부족한 경우
- 사. 수술 중 허혈성 속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 아. 약골에 골결손이 심해 자가골 이식이 어려운 경우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상기 1., 2.의 경우에도 다음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 가. 골대체제간의 병용 사용
- 나. 슬관절치환술시 수술과정에서 기구 장착을 위해 발생하는 원위 대퇴골 골수강내 구멍(intramedullary hole)을 메우는데 사용한경우

(고시 제 2023-85호, 2023.5.1.)

IV-31.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 2를 이용한 골 이식 시 수가 산정방법

외상성 상하지 급성골절, 요추 유합술(단분절 후외방 유합술, 단분절 전방/사측방 추체간 유합술) 환자에서 재조합 골형성 단백질 2를 적용 시 행위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범주에 해당함.

다만, 골이식술의 급여기준 내 시술 시 자-31-1 골이식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아울러,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고시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2호(2021.4.1. 시행)

IV-32. 경추용 전방 PLATE SET와 동시 사용한 경추용 CAGE의 급여기준

‘자-46가(1) 척추고정술(전방고정-경추)’에 경추용 CAGE와 경추용 전방 PLATE SET를 동시 사용한 경우, 경추용 CAGE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9-190호(2019.9.1.시행)

IV-33. Cage와 인조뼈 병합재료 급여기준

1. 척추 치료재료인 경추 및 요추용 Cage(골대체제 포함형)는 Cage와 인조뼈의 단순 병합 재료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토록 함.

- 다 음 -

- 가. 흉, 요추 : 척추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 인정기준 및 골대체제(인조뼈) 인정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 나. 경추 : 아래의 1) 골대체제 인정기준(척추수술)과 2) Cage 적응증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1 level에 한하여 인정하며, 전방 plate 또는 후방 척추고정기기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아 래 -

1) 골대체제 인정기준(척추수술)

가) 70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의 유합술 또는 골다공증(T-score ≤ -2.5: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된 값)

나) 장골능에서 자가골 채취술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환자

기타 수술 중 허혈성 속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2) Cage 적응증 : 추간판탈출증 또는 척추관협착증

2. 추가로 사용되는 골대체제는 인정하지 않음.

고시 제2015-139호, '15.8.1 시행

IV-34. 추체보강용 SET 급여기준

추체보강용SET(EXPANDABLE TYPE, MESH TYPE)는 자가골 이식이 어려운 다음의 적응증에서 1개 이상의 척추체 전제거술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 1) 흉요추부의 골절, 기형 또는 종양
- 2) 경추부의 골절, 기형, 종양 또는 척수압박
- 3) 척추 결핵

나. 상기 가.의 적응증에도 불구하고 화농성 병소의 경우는 인정대상에서 제외함.

(고시 제2017-173호, 2017.10.1 시행)

IV-35. Stand-alone Cage(Cage 단독사용)의 산정기준

Stand-alone Cage(Cage 단독사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6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요통이 지속되는 퇴행성추간판질환에서 MRI 상 퇴행성 변화가 1-2개 분절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뚜렷한 추간 간격 협소가 동반된 경우
 2. Grade I 척추전방전위증
 3. 심한 척추관협착증 또는 관혈적 수술 후 재발한 추간판탈출증에서 광범위한 후방감압술이 불가피한 경우
 4. 양측 후궁절제술이 필요할 정도의 huge central disc herniation(수술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5. 금기 : 골다공증, 추간 간격이 12mm이상인 경우, 이전의 추체간유합술 부위, 감염성 질환 등
- *상기 기준은 모든 종류의 cage에 적용됨

고시 제2009-180호(2009.10.1 시행)으로 변경

IV-36.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한 척추고정술 수가 산정방법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자46나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후방고정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동 재료를 이용한 척추편측(일측)고정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2023.3.29. 시행)

IV-37. 편측 전·후 장골능에서 골편채취시 수기로 산정방법

편측의 전·후 장골능에서 골편채취 시 동일 피부절개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골편의 개수를 불문하고 자31 골편절제술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서로 다른 피부 절개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자31 골편절제술 소정점수 200%를 산정함.

(고시 제2017-118호, 2017.7.1. 시행)

IV-38. 골이식술의 급여기준

골 결손부위에 보존 및 보강 목적으로 실시하는 자31-1 골이식술(Bone graft)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자31 골편절제술 후 자가골 이식의 경우
- 나.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를 사용하여 골이식하는 경우
 - 1) 골성 종양 수술시 골결손이 있는 경우
 - 2) 사지 장관골 골절 수술 후 불유합이나 지연유합이 있는 경우
 - 3) 사지 관절(견관절, 주관절, 완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재수술시 불유합이나 지연유합이 있는 경우

(고시 제2017-118호, 2017.7.1. 시행)

IV-39. 골수천자 이식법(Bone Marrow Injection) 수기로 산정방법

장관골의 지연유합 또는 불유합시에 골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골수천자이식법(Bone Marrow Injection)은 골수천자 행위와 불유합(지연유합)부위에 대한 골수주사 행위를 나852 골수천자생검과 자31-1 골이식술로 준용하여 산정함.

(고시 제2017-118호, 2017.7.1. 시행)

IV-40.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골시멘트 보강술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골시멘트 보강술은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 내고정술 시행 시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polymethyl methacrylate, PMMA)계 시멘트를 주입하는 행위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1. 급여대상

가. 골다공증성 골절(상지골, 하지골, 골반골) 환자에서 내고정술 시행 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 음-

- 1) 65세 이상
- 2)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으로 측정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 3) 척추 골절 등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었던 환자에서 발생한 골절

2. 수가산정방법

가. 행위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고시되어 있는 다음의 해당 관혈적 수술의 범주에 해당되어 별도산정하지 아니함.

-다 음-

- 1) 자59다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
- 2) 자60가(1)~(4)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 포함]
- 나. 치료재료: 사용된 골시멘트는 별도 산정함.

3. 실시횟수

가. 골절에 대한 내고정술 시행 시 해부학적 부위 당 1회
 나. 단, 재골절 발생 혹은 불유합으로 인하여 내고정물 제거 후 재고정술 시행할 때 추가인정

고시 제2023-121호(2023.7.1.)

IV-41. 인공디스크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은 자46가 척추전방고정술의 소정점수를 준용 산정하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경추 추간판전치환술

1) 적응증

18세 이상의 환자에서 제3-4경추간부터 제6-7경추간 사이의 한 분절 또는 인접한 두 분절에 국한된 병변으로 수술 전 6주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추간판탈출에 의한 척수병증(myelopathy) 또는 신경근증(radikulopathy)이 확인되는 경우 (병변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2분절까지 시행 가능)

2) 금기증

가) 감염성 질환

나) 골다공증(T-score ≤ -2.5):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된 값

다)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굴곡·신전 비교에서 해당 분절의 불안정성이 있거나, 분절 운동이 3도 이하인 경우

라) 연결성 골극(bridging osteophytes)이 있거나, 추간판 높이가 정상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

마) 후방 종인대, 후관절 또는 황색인대의 비후 소견이 있는 경우

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다분절(세분절 이상)에서 나타나는 경우

3) 치료재료: 경추 인공디스크(cervical disc prosthesis)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비급여대상임.

나. 요추 추간판전치환술

1) 적응증

가) 25세~60세의 환자에서 수술 전 6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요통이 지속되며, L4-5 또는 L5-S1 중 단일 분절에 국한된 퇴행성 추간판 질환이 MRI와 통증유발 추간판조영술에서 확인되는 경우

나) 영상 확인방법: MRI의 T2 시상면 영상에서 추간판의 신호강도 저하 소견이 L4-5 또는 L5-S1 중 단일 분절에 국한하여 확인되고, 추간판조영술 검사상 동 분절에서 동형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2) 금기증

가) 골다공증(T-score ≤ -2.5):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된 값

나)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는 경우

다) 척추분리증, 척추 탈위증 또는 척추관 협착증

라)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 또는 후궁 전절제술 후 상태

3) 치료재료: 요추인공디스크(lumbar disc prosthesis)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비급여대상임.

고시 제2024-297호 (2025.1.1.시행)

IV-42. 전방후복막경유 요추 추간판전치환술 Total Disc Arthroplasty (Retroperitoneal Approach)

자46-가 (3) 척추고정술 -전방고정-요추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IV-43. 경추추간판전치환술

자46-가 (1) 척추고정술 -전방고정-경추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IV-44.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급여기준 중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적용기준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급여기준」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MRI의 T2강조영상(T2WI) 시상면에서 신호강도 저하로 추간판이 검게 보이는 Black disc 또는 Dark disc를 의미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40호(2021.1.1. 시행)

V. 척추변형

V-1. 척추 측만증

척추측만증수술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가. 전방 수술 시: 자44가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1) 추간판제거술(Discectomy) 병행 시: 자49가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관혈적 소정점수의 50%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별도 산정

2) Auto Bone Graft 병행 시: 자31 골편절제술과 자31-1 골이식술로 산정

나. 후방 수술 시: 자44나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후방고정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1) 추간판제거술(Discectomy) 또는 척추후궁절제술(Laminectomy) 병행 시: 자49가 또는 자49-1 척추후궁절제술 소정점수의 50%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별도 산정

2) Auto Bone Graft 병행 시: 자31 골편절제술과 자31-1 골이식술로 산정

다. 전·후방 동시 수술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전·후방 중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023.3.29. 시행)

V-2. Growing rod

1. 적응증 및 수가 산정방법

가. 삽입술

2세 이상 10세 이하의 조기 발현형 척추 측만증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1) 4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특발성 측만증

2) 선천성 측만증

3) 흉추부의 전만곡이 동반된 측만증

나. 연장술

자44-1가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삽입술 시행 후 외부조절기를 이용하여 2~3개월의 간격으로 시행하며, 척추의 성장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인정함.

다. 제거술

척추고정술 없이 단독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만 '자46-1나 척추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후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아 래-

- 1) 골감소증(osteopenia)과 같이 장치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병리학적 조건 또는 감염이 있는 경우
- 2) 금속알러지와 민감성이 있는 경우
- 3) 심장박동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4) 몸무게가 11.4kg 이하인 경우

3. 치료재료: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MAGEC ROD)은 별도 산정함.

시행일자: 2024.1.1.

V-3. Thoracoplasty

1. 적응증 및 수가 산정방법

가. 삽입술

10세 이하의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1) 흉곽부전증후군

: 흉곽이 정상호흡 및 폐 성장을 지지할 수 없는 상태의 경우 (선천성 측만증, 동요가슴, 흉곽 형성 부전 증후군-연골무형성증, Ellis van Creveld 증후군, 자코-레빈 증후군, 쾨르 증후군, VATER 증후군 등)

2) 늑골 유합을 동반한 조기 발현 측만증

3) 조기 발현 측만증 중 흉곽부전증후군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고도 측만증(X-Ray 추적 관찰 시 1년 이내 15° 이상의 측만각 증가를 보이면서 70°이상의 측만각이 확인된 경우)

나. 연장술 및 교체술

자44-2가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삽입술 시행 후 6개월의 간격으로 시행하며, 척추의 성장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인정함. 다만, 성장에 따라 EXTENSION BAR나 ROD로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삽입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제거술

척추고정술 없이 단독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만 '자46-1나 척추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후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아 래-

- 1) VEPTR을 시술하기에 부적절한 길이의 뼈
- 2) VEPTR을 부착할 Proximal, distal rib이 없는 경우
- 3) 가로막(횡격막, Diaphragmatic) 기능의 부재
- 4) VEPTR을 덮을 연조직이 부적절한 경우
- 5) 생후 6개월 미만인 경우

6) 기기의 원자재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3. 치료재료: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VEPTR)은 별도 산정함.

(시행일자: 2024.1.1.)

V-4. 후방고정기밴드인 추간체고정용 Clamp의 급여기준

후방고정기밴드인 추간체고정용 Clamp는 특발성 척추측만증 중 15세 미만의 환자에서 40도 이상 만곡이 있는 경우로 척추경 나사못(pedicle screw set)을 이용한 척추고정술 시 부위를 달리하여 보조적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281호, 2019.1.1.시행)

V-5. 요추퇴행성후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 LDK) 수술의 인정기준

요추퇴행성후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 LDK) 수술은 다음의 가, 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의무기록지와 동영상에서 아래 임상증상이 3개 이상 확인된 경우

- 1) 기립 및 보행 중 체간의 구부러짐(stooping)
- 2) 무거운 물건 들기의 장애
- 3) 주관절부의 굳은 살 형성
- 4) 언덕길 또는 계단 보행 장애

나. 기립 전신 척추 방사선 사진 (Standing whole spine)에서 국소적 후만 변형(또는 0도 이상의 요추부 후만 변형)과 시상 불균형 (sagittal imbalance)의 소견이 확인되며, 골다공성 압박 골절이 없는 경우

(2007.8.30 시행)

V-6. 요추퇴행성후만증수술 인정기준 중 기립전신척추 방사선사진의 적용기준

「요추퇴행성후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 LDK) 수술 인정기준」에 있는 기립전신척추방사선사진은 서 있는 상태에서 경추부에서 골반부까지 포함된 전척추(Standing whole spine)를 촬영한 방사선사진을 말하며, 부위별로 촬영한 방사선 사진으로 전척추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은 시상면 불균형(sagittal imbalance)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기립전신척추 방사선사진으로 보지 아니함.

VI. 기타 재료 및 수술 장비 관련

VI-1. 무탐침정위기의 급여기준

1. 자485 무탐침정위기는 수술부위로의 정확한 유도과 병소 부위의 정밀한 위치측정을 위하여 뇌항법 장치(Navigation System)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기본 무탐침정위법

1) 급여대상

- 가) 뇌종양 수술(생검 포함)
- 나) 경접형동 뇌하수체종양수술(Trans-sphenoidal approach)
- 다) 정상혈관과의 구분 및 위치파악이 필요한 뇌혈관기형수술
- 라) 뇌동맥류 수술
- 마) 뇌실과 타부위간 단락술 또는 측로 조성술
- 바) 뇌실이 작은 경우에서의 뇌실천자술
- 사) 뇌전증병소 제거술 또는 mapping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뇌전증수술
- 아) 심부 뇌농양, 뇌내 이물질 제거 수술
- 자) 심부 뇌실질내 혈종제거술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아래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가) 부비동 재수술
- 나) 비강, 부비동의 용종, 발육 이상, 해부학적 이상, 외상 및 종양으로 인한 정상적인 해부학적 지표의 소실
- 다) 두개강내 침범이 없는 두개저 병변이나 종양 질환에 대한 수술
- 라) 측두골 심부 수술

3) 상기 1), 2)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나.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법

1) 급여대상

- 가) 뇌종양 수술 중 축내종양(intra-axial tumor)
- 나) 주요 뇌구조물 또는 뇌혈관을 침범한 뇌기저부 종양

2) 상기나.1)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법

1)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 환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가) 뇌기저부-척추 또는 두개골-척추 접합부 종양 수술
- 나) 추골동맥 또는 주요 척수와 인접한 부위로 구분 및 위치 파악이 필요한 척추수술
- 다) 선천성 기형이 동반된 척추변형 수술
- 라) 후방 유합된 분절에서의 나사못 삽입이 필요한 척추 재수술

2)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 환자 중 상기 다.1)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2. 무탐침정위기법 사용을 위하여 진단목적 이외 CT 또는 MRI를 추가 촬영한 경우 제한적 CT(다245) 또는 제한적 MRI(다246)로 산정함.

3. 상기 1.의 무탐침정위기법(기본 무탐침정위기법,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1회용 무탐침 정위기법용”, “1회용 무탐침 정위기법용(생검)”, “무탐침 정위기법용”)는 해당 행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고시 제2020-330호(2021.1.1.시행))

VI-2. 수술 중 3D C-Arm을 이용한 임플란트 삽입술(척추 및 골절, 달팽이관 이식)

다101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주'에 의거 도수 또는 관혈적정복술시 별도 산정하며, 신경차단술이나 골수내 주사, Stereotaxic OP, 척추수술(도수 또는 관혈적정복술 제외)등에는 소정 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20-150호, 2020.8.1. 시행)

VI-3. 척추수술 중 너681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의 급여기준

척추수술 중 너681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척수증(Myelopathy)이 있는 경우

나. 측만증, 후만증 등의 기형(Deformity)이 있는 경우

다. 척수의 선천성 또는 종괴성 병변[척수종양, 척수공동증, 혈관기형, 당김 척수 증후군(Tethered cord syndrome) 등]이 있는 경우

라. 두개저 경추 연결 부위(Craniovertebral junction), 상부 경추(C1-C2) 척추 불안정이 있는 경우

(고시 제2020-163호, 2020.8.1. 시행)

VI-4. 국소지혈제

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수술범위

1) 간절제술(자722), 간파열봉합술(자724), 척장수술(자751, 자752, 자754, 자756, 자757, 자758, 자759, 자816), 간, 척, 십이지장절제술(자723)

2) 개두술, 경막을 여는 수술(자462, 자462-1, 자463, 자464, 자465, 자466, 자468, 자471, 자472, 자473, 자473-1, 자476, 자477, 자478, 자479, 자480-1, 자480-2, 자34나, 자482나 척추신경근절제술(Spinal Rhizotomy))

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자164, 자168, 자170, 자170-1, 자170-2, 자181, 자183, 자184), 개심술 [인공판막치환술(자179), 복잡심장수술(자180, 자185) 등]

4) 척수수술(자469, 자467-1)

5) 장기이식(간절제술[이식용](생체) 등)

나. 한 수술 당 인정되는 국소지혈제 및 투여용량 범위: 베리플라스트-피콤비세트 1ml 및 3ml, 그린플라스트키트 1ml, 아비텐압축형 1매(70×35×1mm), 타코실 1매(7.5cm² 및 23.04cm²), 티셀 2ml 및 4ml, 노바콜패드 1매(80×100mm),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 2ml 및 4ml, 에비셀 2ml 및 4ml, 베라셀프리필드시린지 2ml 및 4ml

다. 투여기준

1) 상기 수술 및 용량 범위 내에서 한 수술 당 국소지혈제 1종을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가'의 범위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나'의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와 상기 수술 및 용량범위 이내이나 국소지혈제를 2종 이상 중복 투여한 경우 또는 국소지혈제(약제)와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치료재료)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함.

라. 그간 인정사례

1) 투여소견서 첨부 시 인정

○ 청신경종양적출술(자574), 전정신경절제술(자479-가), 외림프누공수술, 신경이식술(자460), 이과적두개내수술, 인공와우이식술(자580)

2) 투여소견서 첨부시 사례별 인정

○ 고실성형술(자564), 이소골재건술(자579), 등골수술(자569), 후두마비수술(자126), 후두협착증수술(자127)

3) 투여소견서 참조 인정

○ 폐절제술 후 발생한 기관지 늑막루중 열개부위가 비교적 적은 경우

○ 수술 후 발생한 기관지 식도루 등에 내시경적 국소 주입법으로 사용한 경우

○ 위장관출혈, 내시경적 시술 후 발생한 출혈, 위장관누공, 기타 내시경적 시술의 보조요법

4) 국소지혈제의 진료비 청구는 실사용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 규격의 단위당 금액을 산정토록 함.

(고시 제2024-37호(2024.3.1.))

VI-5. 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 방법

검사 및 수술시 전동장비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골 및 조직을 절삭, 연마하는데 사용되는 Burr, Saw등 절삭기류는 시술 과정상 여러종류가 동시에 반복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류 및 사용개수를 불문하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하고, 2가지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시술되는 경우 등의 수기로 산정방법에 따른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의 세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코드 N0051001~N0051020)

- 다 음 -

- 가.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한 경우
 - 1) 동일 피부 절개 하 수술 시(동일 병소에 대하여 절개부위를 달리 하는 수술 시 포함) 주된 수술에 해당하는 치료재료 비용(정액수가)만 1회 산정함.
 - 2) 양측 수술 또는 병소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피부 절개 하 수술의 경우 해당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각각 산정함.
- 나. Burr, Saw등 절삭기류와 관절경 수가(N0031003, Q9923)는 동일병소에 동시(중복) 산정할 수 없음.
- 다. 치과의 치아 당(또는 1/3약당) 시술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는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1회만 산정함.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

VI-6. 관혈적 수술용 클립 (혈관 결찰용, 혈관 및 경막 봉합용)의 급여기준

- 1. 관혈적 수술용 결찰재료인 혈관 결찰용 클립은 요양급여를 인정함.
- 2. 혈관 및 경막 봉합용 클립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가. 혈관에 사용 시에는 혈관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혈관당 2개까지 인정함.
- 나. 경막에 사용 시에는 봉합사를 사용한 경막 봉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1) 급여대상
 - 가) 자463나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천막하부)
 - 나) 자463다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 다) 자468 중추신경계기형수술
 - 라) 자469 척수 경막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 마) 자472 뇌척수액루수술
 - 바) 자480-1 뇌기저부수술
 - 사) 자480-2 뇌기저부수술후 경막복원술
 - 아) 자49가 추간판제거술(관혈적) 수술 중 경막손상이 발생한 경우

2) 급여개수: 10개 이내 실사용량
 3) 단, 상기 1)의 급여대상에 사용되는 생체조직접착제와 병용사용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고시 제2020-126호, 2020.7.1. 시행)

VI-7. 생체조직접착제의 급여기준

- 1. 생체조직접착제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하며, 동일 수술에서 생체조직접착제 간 병용사용은 급여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생략)

- 나. 경막봉합 수술
 - 1) 급여대상
 - 가)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 나) 중추신경계기형수술
 - 다) 뇌척수액루수술
 - 라) 뇌기저부수술
 - 마) 뇌기저부수술 후 경막복원술
 - 바) 척수경막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 사) 천막하개두술
 - 2) 급여용량
 - 가) Bioglue Surgical Adhesive: 상기 수술 시 2cc/개 범위 내에서 인정
 - 나) Duraseal Dural Sealant System: 상기 수술 시 5cc/kit 범위 내에서 인정
 - 다) 다만, 동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

(생략)

(고시 제2023-121호, 2023.7.1. 시행)

VI-8. 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

1. 수용성합성물질로 만들어진 뼈 지혈제는 BONE WAX에 비해 뼈 생성 및 골 융합 용이성, 뼈 감염을 방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하되, 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 한하여 사용량을 5g까지 인정함.
2. 상기1항의 급여대상 이외 다음의 경우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 가. 상기 1항의 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서 인정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나. 65세 미만의 흉골 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
- 다. 출혈이 많은 수술인 골반골절수술
- 라. 비구골절수술
- 마. 장관골의 관혈적정복술
- 바. 척추수술
- 사. 인공관절 삽입술

(고시 제2023-293호 2024.1.1.시행)

VI-9. Gelatin sponge 외 용제(품명: 큐탄플라 스트스폰지 등)

수술 시 결찰 등의 지혈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허 허가상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상 범위 (효능·효과,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색전 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51호, 2013.10.1. 시행)

VI-10. “Neurosurgical Sponge”, “Bone Wax”, “Surgical Patties”, “Bemsheet” 등의 요양 급여 대상여부

“Neurosurgical Sponge”, “Bone Wax”, “Surgical Patties”, “Bemsheet” 등은 외과수술시 조직의 보호 및 지혈 보조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Insurance Guide Book**

대한정형외과학회보험청구 지침서

발행일 2025년 10월 15일

발행처 대한정형외과학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 A타워 905호

디자인 민컴(02-323-3133)